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금융 지원 / 3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7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1
1-4 신성장기반자금	24
1-5 재도약지원자금	27
1-6 긴급경영안정자금	32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
제2장 신용보증 지원	39
2-1 신용보증	40
2-2 기술보증기금	44
2-3 지역신용보증재단	47
2-4 매출채권보험	50

제2부

기술개발 지원 / 55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59
3-1 창업성장기술개발	60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4
3-3 산학연 Collabo R&D	68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71
3-5 연구기반 활용	74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77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81
3-8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85
3-9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88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91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94
3-12 미세먼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97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100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103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106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08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112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115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118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121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25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26
4-2 뿌리기업 지원사업	132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139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140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143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146
5-4 스마트 마이스터	148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150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152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154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58

CONTENTS

제3부

인력 지원 / 165

제6장 인력 양성	167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168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171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174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177
제7장 인력유입 촉진	179
7-1 내일채움공제	180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3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185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187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190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92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94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196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198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00

제4부

판로 지원 / 201

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공공기관 납품제도	205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6
8-2 직접생산확인제도	209
8-3 계약이행능력심사	211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213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215
8-6	공공구매론(loan)	216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218
제9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221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22
9-2	성능인증제도	226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28
제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231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232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235
10-3	온·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237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240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43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246

제5부

수출 지원 / 249

제11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다양한 수출지원	251
11-1	수출바우처	252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256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259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61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64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267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70

CONTENTS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 273

제12장 여성기업 지원	275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276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279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281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283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287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290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292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294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296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298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00
제13장 장애인기업 육성	301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302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304
13-3 장애인 창업 육성	307
13-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10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312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314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316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318
제14장 지역기업 지원	321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322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4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327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332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5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338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창업기업 지원 / 343

제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345
1-1 예비창업패키지	346
1-2 창업성공패키지	348
1-3 초기창업패키지	352
1-4 창업도약패키지	354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357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35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361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365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67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372
제2장 창업저변 확대	377
2-1 청소년 비즈쿨	378
2-2 창업에듀	380
2-3 메이커 문화 확산	381
2-4 실전창업교육	383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385
2-6 도전! K-스타트업	387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89
2-8 K-스타트업	392

CONTENTS

제3장 창업지원 인프라	393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394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96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98
3-4 창조경제혁신센터	400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402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404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06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 409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1
4-1 재도약 지원자금	412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415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417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419
4-5 재도전성공패키지	421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소상공인 / 425

제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429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30
1-2 상권정보시스템	433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436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438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439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440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42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44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46
2-5 나들가게 육성	449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52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455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58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461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463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465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67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69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471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73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476

CONTENTS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479
3-1 희망리턴패키지	480
3-2 재창업패키지	483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85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87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89
4-1 소공인특화자금	490
4-2 성장촉진자금	492
4-3 일반경영안정자금	494
4-4 청년고용특별자금	496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498

제2부

전통시장 / 501

제5장 전통시장 지원	503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04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07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509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512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14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518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522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525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528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30

제3부

보증지원 제도 / 533

제6장 보증지원 제도	535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536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539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42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544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547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549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551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554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557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560
부 록	563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568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기 타 / 571

제1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573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574
제2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577
2-1 거래 공정화	578
2-2 성과공유제	584
2-3 협력이익공유제	587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589
2-5 상생결제제도	591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 593

제3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595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596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598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602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605
3-5 중소기업음부즈만 제도	608
3-6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610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613
부 록	617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618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621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626



제 **1** 편

중소기업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 1 부



금융 지원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 오피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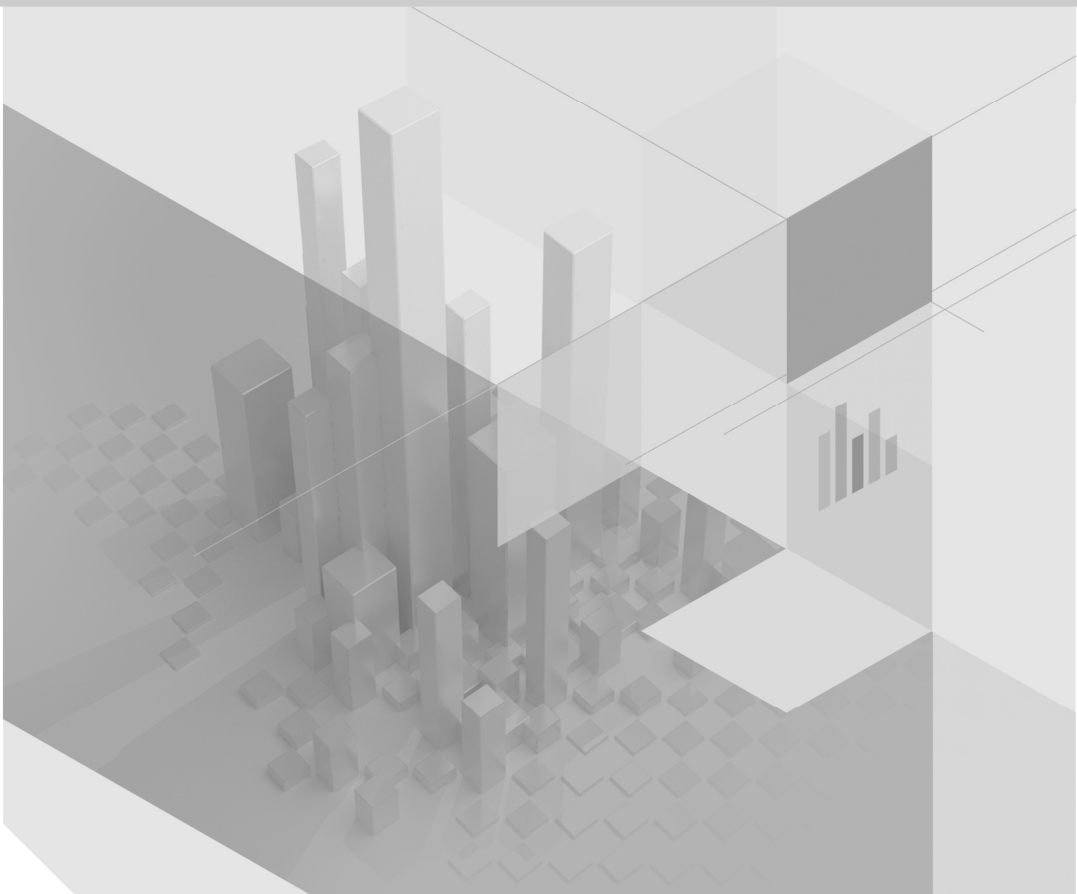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1
1-4 신성장기반자금	24
1-5 재도약지원자금	27
1-6 긴급경영안정자금	32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5,90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5,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3,3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 한도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 방식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 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자금상당) 신청예약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당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당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 기업, 소재·부품·장비 대중소상생모델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장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제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수산정 제외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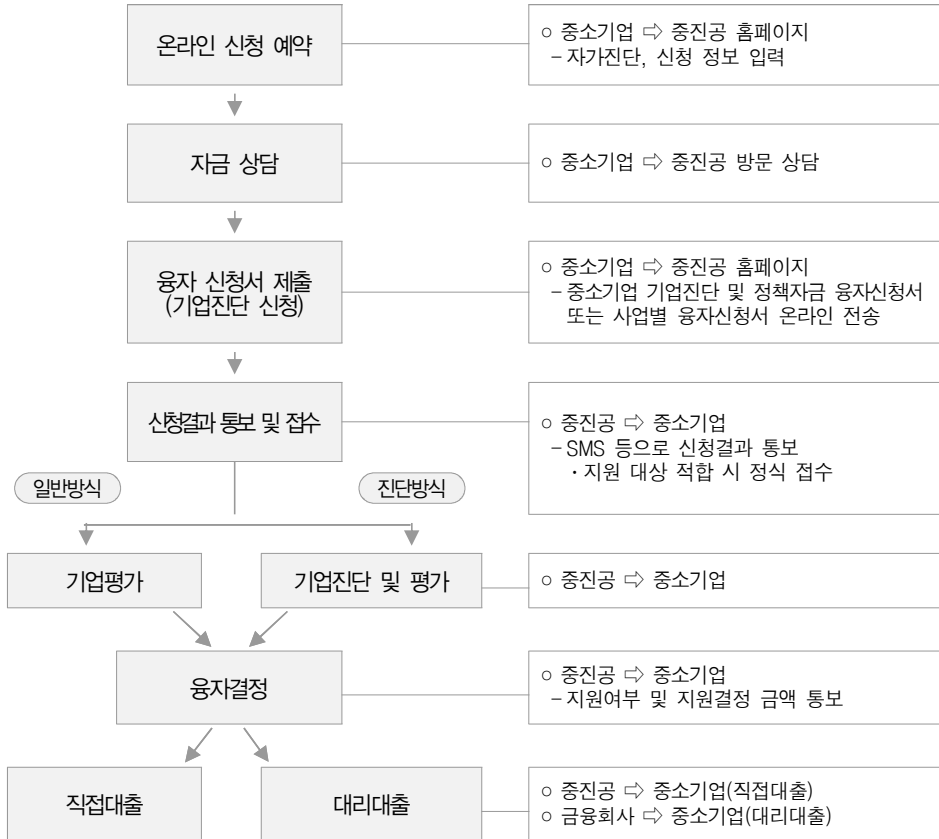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온라인신청예약 → 자금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2,00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 2019년 성장공유형대출 6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2.6억원

지원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 (용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 (용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 용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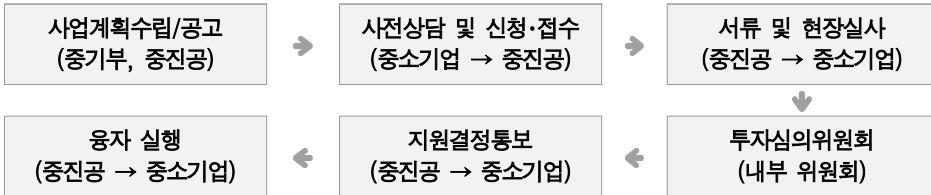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성장공유형 대출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4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13,3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1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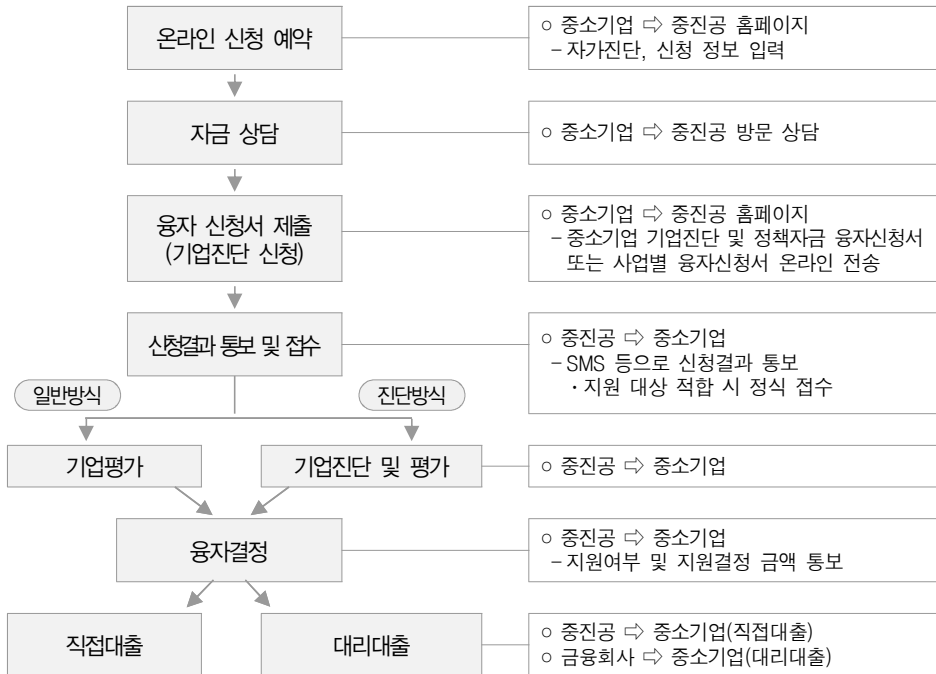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융자제한기업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용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용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용자제한)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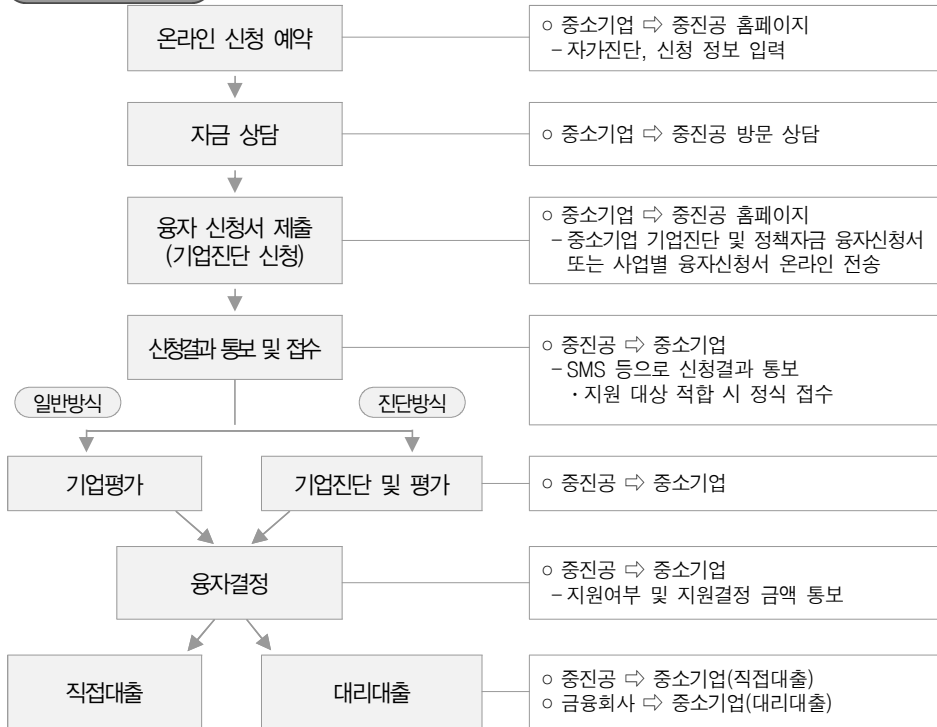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제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부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 규모 1,0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13개사 중 1,11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용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용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용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유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일본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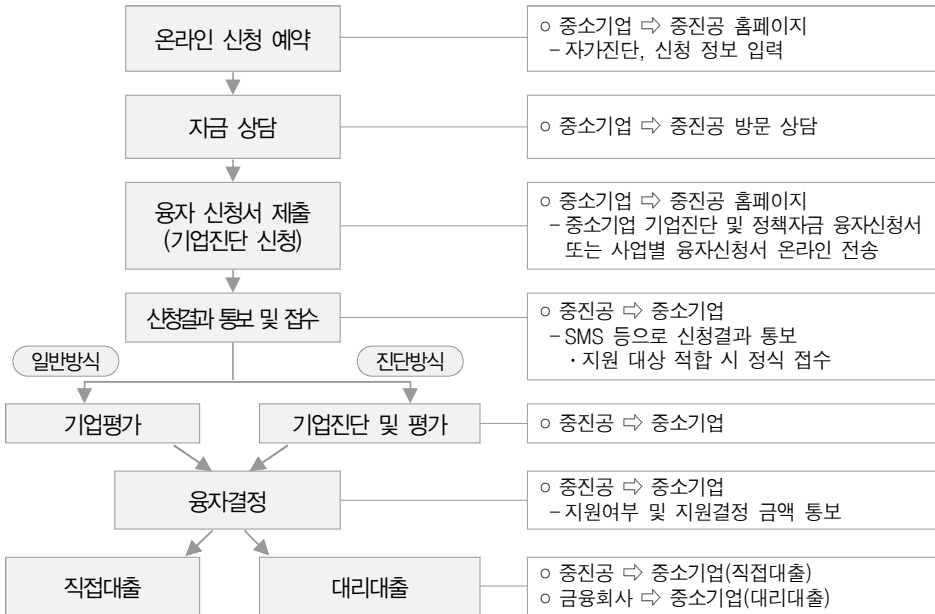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2,0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1,439개사 신청기업 중 1,335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1억원)

지원 대상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차세대 글로벌기업(직전년도 수출 300만불 이상) 육성 자금의 용자대상, 용자조건, 용자 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용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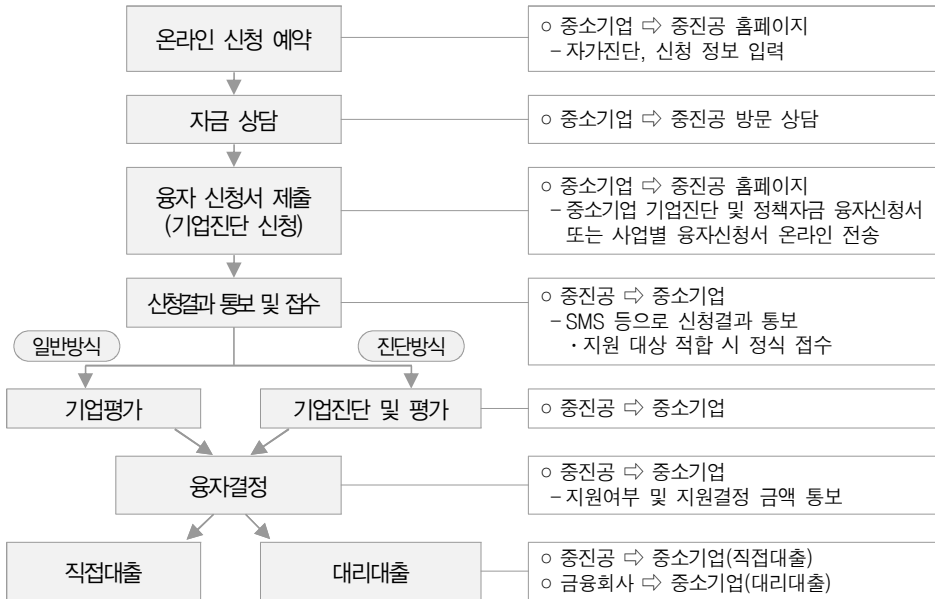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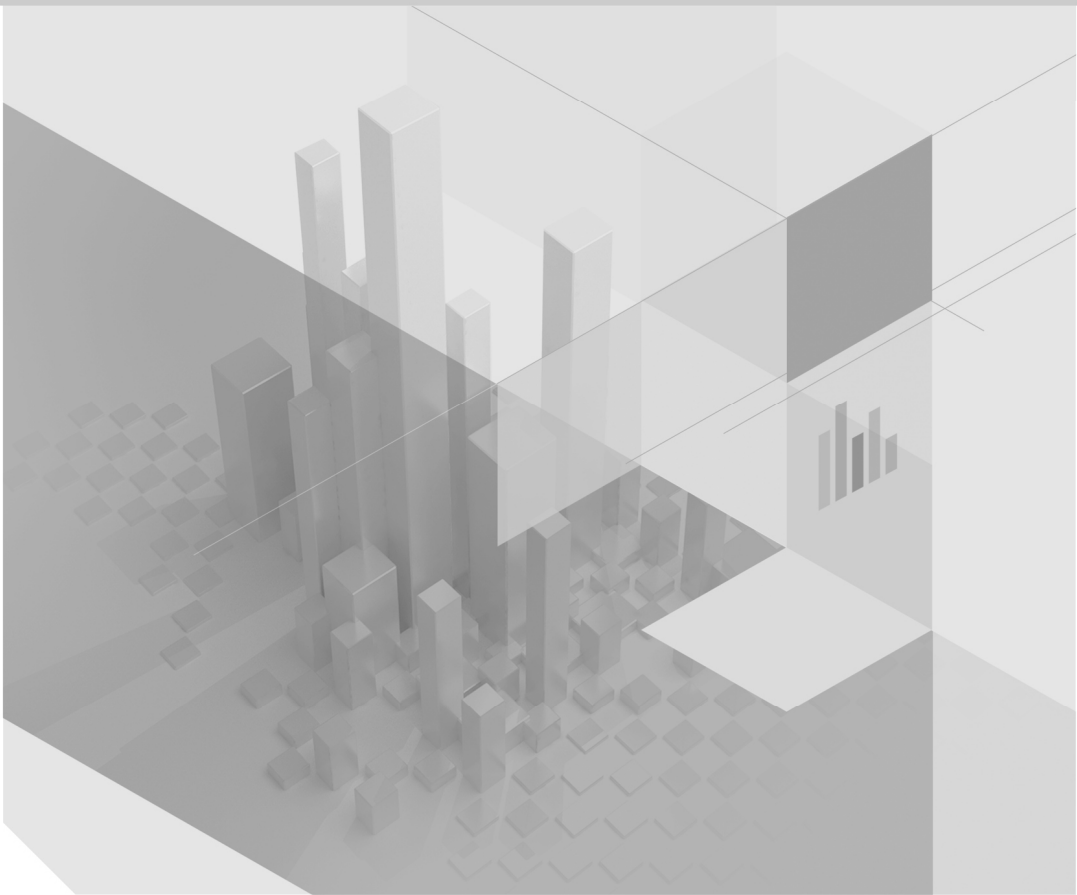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신용보증 지원

2-1 신용보증	40
2-2 기술보증기금	44
2-3 지역신용보증재단	47
2-4 매출채권보험	50

2-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9.3조원으로 운용예정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47.5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금종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 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년 기술보증 잔액 22.2조원으로 운용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19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7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26.4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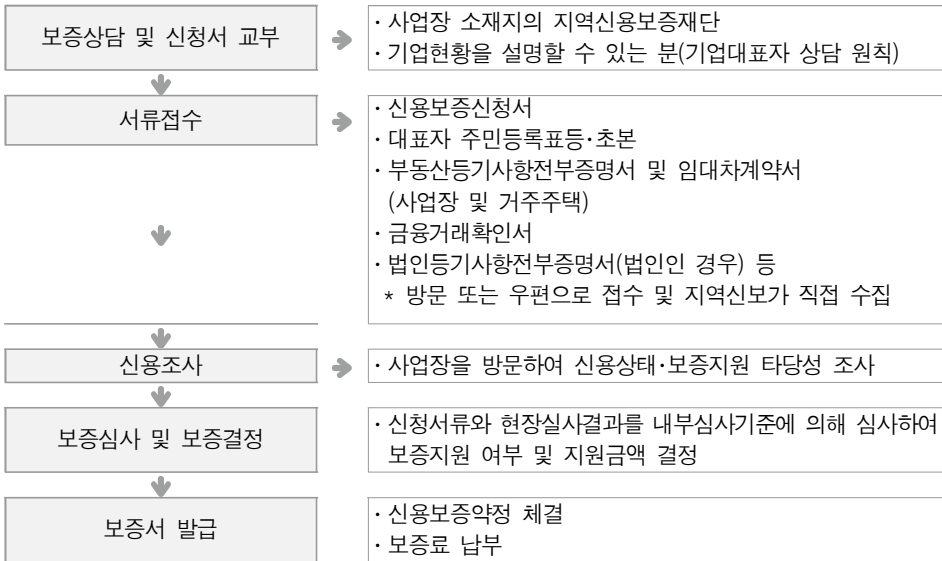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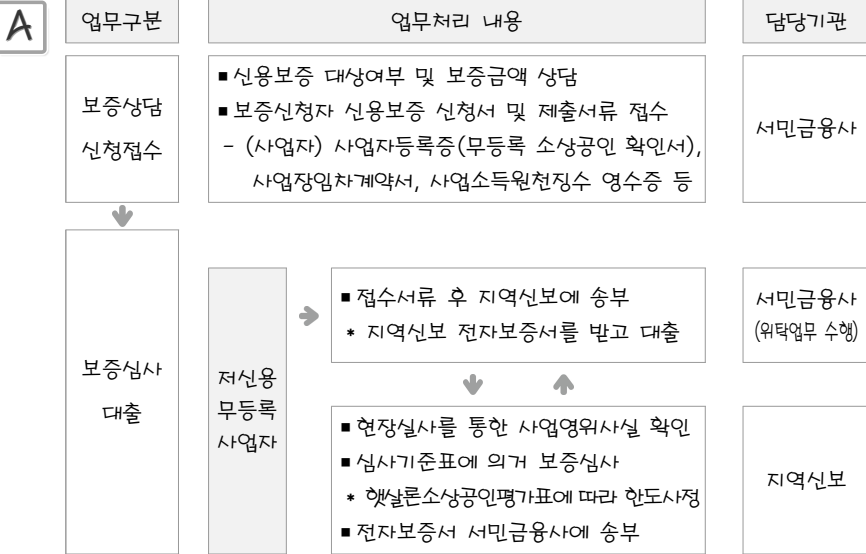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2-4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령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보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구 분		온라인 간편보험	온라인 심플보험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보 험 한 도	보험계약자	20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자의 구매자별	10~50백만원	20~40백만원	10백만원
	구매자 한도	30~200백만원	60~100백만원	30백만원
보 험 료 율		1.0~1.5%	1.1~1.5%	1.0~1.5%
신 용 등 급		(10등급 중) 7등급 이상	<좌 동>	등급산출생략
신용도 취약기업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성 보험(B2B PLUS+보험) 출시

- (상품내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계약자가 B2B Plus+보험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보험대상)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보험계약자)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1년, 신용등급 AR12 (UR7) 이상인 제조업
- (구매자) 당기말 기준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보유한 AR11(UR6)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들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2부



기술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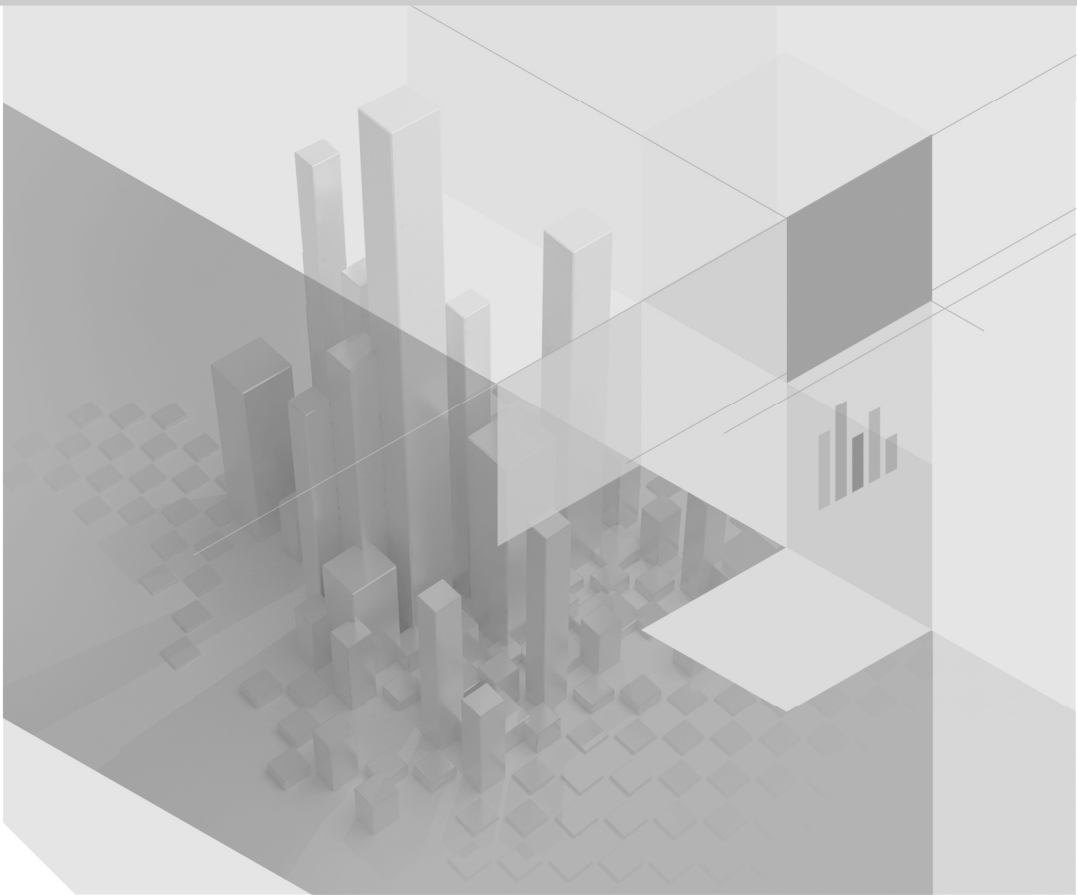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 Q** LED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대폰용 LED 부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판매처는 확보되었는데, 저희 회사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 A**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 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3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화자문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창업성장기술개발	60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4
3-3 산학연 Collabo R&D	68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71
3-5 연구기반 활용	74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77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81
3-8 S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85
3-9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88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91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94
3-12 미세면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97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100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103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106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08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112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115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118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121

3-1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피노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현행		→	개선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TIPS 과제 (성장 단계)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혁신형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디딤돌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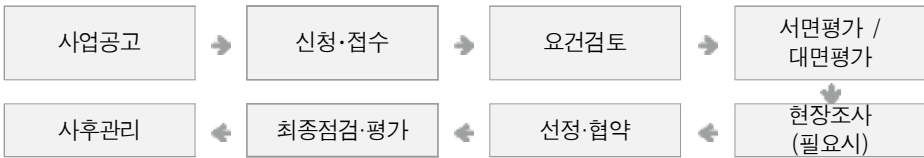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 Q A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025억원(신규 1,096억원, 계속 9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750개 중 520개 선정지원(3.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선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大 1:1, 中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수시접수*)

* 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 수요처 부담금 확대 : 수요처 부담 비중 상향(15%→20%) 및 현금 부담비율 60% 적용(5%→12%)
 - * 다만, 사전에 수요처와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부담비율 상향 및 수요처 부담금 면제(정부 65%, 주관기관 35%, 수요처 0%)
- 공동투자형(민관공동투자)
 -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과제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까지 확대
 - * 정부출연금 12억원 + 투자기업출연금 12억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 기타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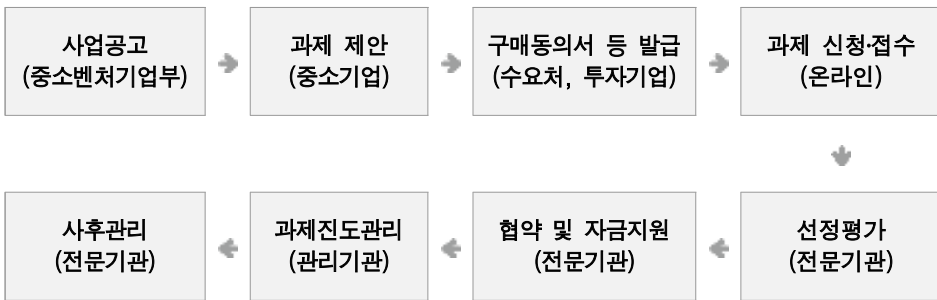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자유용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3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 규모

317억원(신규 317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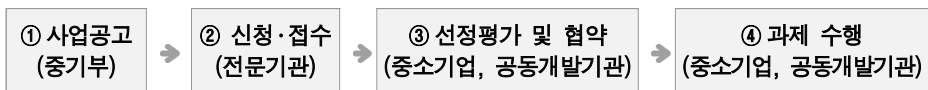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과 제만 2단계 사업화 R&D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 시에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희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 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사전진단) 희망기업 진단	기업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기술개발) 산연협력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 *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주관하는 선도연구기관에 지급
- * 3단계(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산연협력 기술개발)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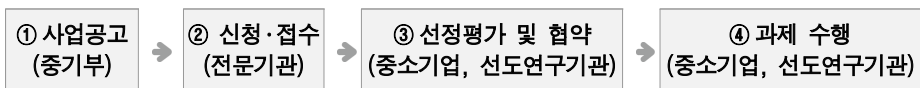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도연구기관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R&VD 지원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단계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연협력 적합도, 2단계 개발결과물의 사업성, 기술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에 참여하고 싶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선도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3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용어설명

선도연구기관 :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이 우수한 기관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 창출을 추가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3-5

연구기반 활용

|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132억원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 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 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 활용촉진비로 지급

- (지원 내용) 장비 이용료 총액의 60~70%

구 분	기 준	지원 비율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7,142천원 (2,142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8,333천원 (3,333천원)	116,666천원 (46,666천원)

* 해당 금액까지 발행 시 국비 지원 한도는 공유확산형 500만원, 연구집중형 7,000만 원임.(공유 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을 합산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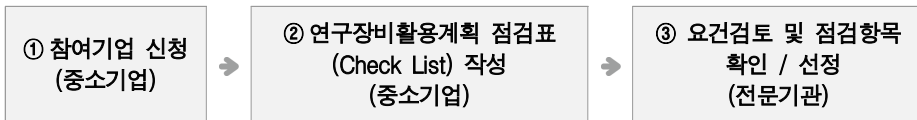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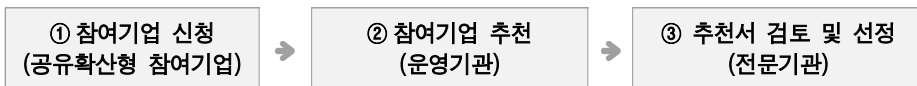
처리 절차

신청 완료 후 요건검토 완료까지 7일 내외 소요

- 공유확산형



- 연구집중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유확산형은 연구 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연구 집중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Q 연구집중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중 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73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5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93개 중 34개 선정지원(11.6:1)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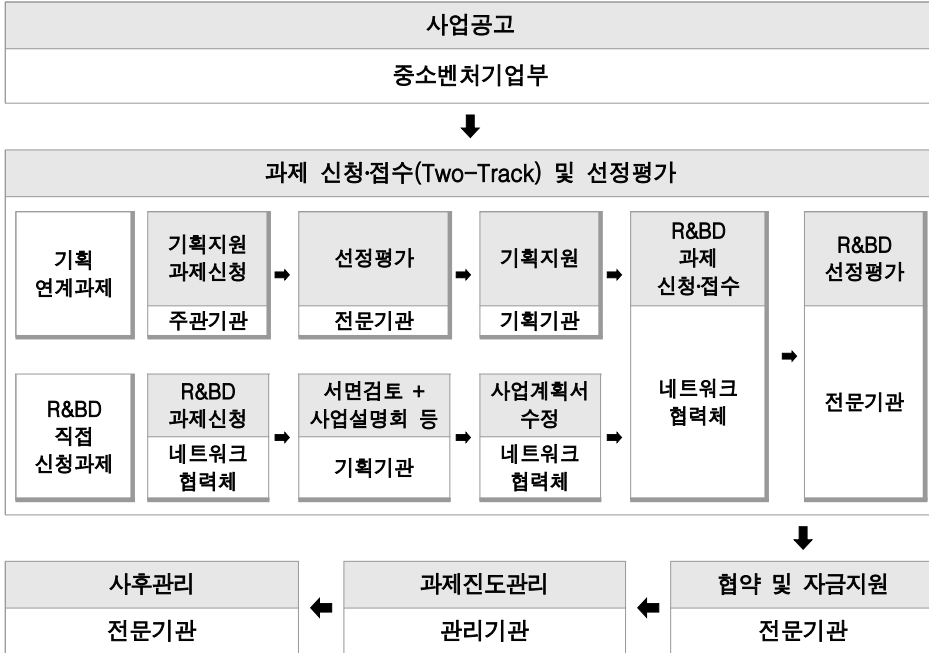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성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지원 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4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혁신형R&D 및 현장형R&D 지원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 규모 총 396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억원)

* 기획평가비 14.6억 및 회계연도 일치과제 98.5억 포함

- 혁신형 R&D(213개 기업, 133억원)
- 현장형 R&D(423개 기업,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1,846개 기업 신청, 690개 기업 신규 지원
(뿌리기업공정) 343개 기업 신청, 101개 기업 신규 지원

지원 대상

- (혁신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현장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 * 최대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년
-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정혁신에 특화된 공정 R&D로 개편 : 제품공정개선, 뿌리기업공정기술 개발 → 혁신형R&D , 현장형R&D
- 상·하반기 신청·접수 진행: 2, 7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형R&D	'20년 1월	'20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8월	'20년 4월~10월
현장형R&D	'20년 1월	'20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9월	'19년 4월~11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형R&D)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심층평가
- (현장형R&D)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등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혁신형R&D만 해당)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042-388-0761~076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3-8 시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AI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동력 확보

기존 제품·서비스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9억원(신규 14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등) 참여기업으로 AI전문기업 필요시 참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를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S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3-9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 규모 125억원(신규 12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테크브릿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KTRS 평가: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기획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컨설팅 연계 지원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총 95억원(신규 기획과제 160개, R&D 60개 과제)

지원 대상

- (기획기관)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
 - *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리스트 공개 예정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이노비즈(Inno-Biz)기업
 - ③ 벤처기업
 -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존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희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 규제내용·절차 검토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을 검토·제시할 수 있는 기관

-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 내용 및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등 규제 대응 기획지원
-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과제기획	3주 이내, 5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과제수행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 (1단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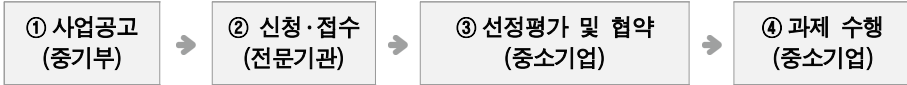
단계별 평가 주요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기획대상 서면평가 → 기획과제 선정
 - 기술규제의 애로사항, 사업추진 역량, 기술개발의 요약, 기대효과 등을 평가
- (2단계 R&D지원) 대면평가 → R&D 지원과제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기획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시험, 인증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Q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기술규제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약 37%정도 과제만 2단계 R&D+규제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구과제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나요?

A 네,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 신산업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육성지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확충

지원 규모

총 72억원(신규 10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개)+ 자회사(4개)

- (주관기관) 기술지주회사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업) 상기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기반의 신산업분야 발굴 및 자회사(출자회사) 설립·육성, 자회사(출자회사)의 사업화 R&D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최대 3년, 30억 (컨소시엄당 연간 10억원 내외) * 참여기업에 85% 이상 지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월	'20년 2월~3월	'20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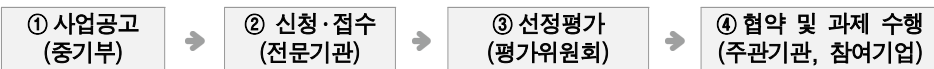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과제 선정평가)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역량·기획·활동·성과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Q** 주관기관(기술지주회사)와 참여기업(자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회사이며, 자회사는 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 Q** 주관기관(기술지주회사)과 참여기업(자회사)의 구성 및 사업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 A** 주관기관이 투자한 회사(자회사) 중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기업 4개사 내외와 협약하여 신청하고, 정부출연금 85% 이상을 참여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Q** 연구과제 신청은 참여기업이 하나요?
- A**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를 받아 참여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3-12 미세먼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 국민생활공간 및 중소형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국민생활 밀착공간 및 중소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 증대

지원 규모 103억원 (신규 10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배출 규모 4종, 5종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공간(식당, 학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개선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19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용어설명

미세먼지 대응기술 : 미세먼지(PM10, PM2.5) 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술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자원 규모

총 62.5억원(신규)

자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전략분야 설정 (품목지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R&D)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 비중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6월	'20년 6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데이터 분석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BM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의 적정성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
- (사업성)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의 적절성, 과제 종료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화의 적정성을 검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92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데이터 관련 업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본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자체보유데이터 및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지역 대학을 활용한 맞춤형 R&D 종합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기술 혁신역량 제고 지원

지원 규모 60억원(신규 60억원)

지원 대상

- (주관 운영기관)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권역별 1개씩, 총 5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 · 연구인력 · 장비 · 기술이전 ·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 분석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중소기업 파견인력과 대학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지원 한도>

구 분	개발 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기술역량 분석(기업진단)	1개월,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최대 2년, 3억원	75%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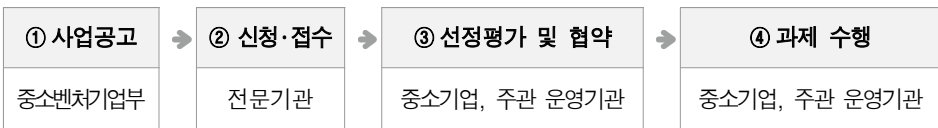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 운영기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맞춤형 R&D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 운영기관 추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협력 적합도,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고용 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창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지원내용 중에 맞춤형 R&D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여건에 필요한 R&D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기술 이전·교육 등을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과제 수행 동안 중소기업 인력 1인 이상을 대학에 파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A 네 의무이며,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 1인 이상을 파견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주관 운영기관 :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기술개발, 연구장비 지원, 기술이전,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의 권역별*로 1개씩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5개 대학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

지원 규모 72억원(신규 7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47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고성장 유망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품목 지정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 규모

2,441억원(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 ~ 700억원의 중소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 등 시장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사업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별도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미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4년, 20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65% 이내)

- 수출지향형(125억 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9억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788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 개편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수출지향형 (글로벌경쟁)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시장확대형 (경쟁 단계)	최대 2년, 6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 활용
시장대응형 (역량 초기)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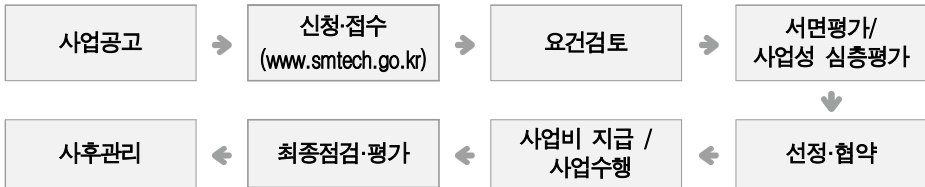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고용창출 및 유지계획)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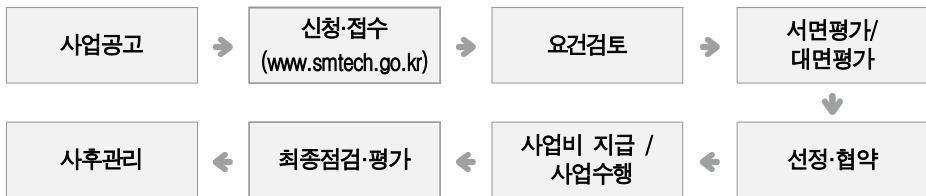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



<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기술개발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 A**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방식입니다.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을 대학·연구기관·조합(단체)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발굴·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 개발과제 기획
-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 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 개발
 - *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8개 권역. (권역별 최소 2개, 최대 4개 과제 지원)

-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지원 및 지역 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단 계	지원대상	개발 기간 및 한도	정부 출연금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6개월, 최대 0.3억원	100% 이내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대학·연구기관	2년, 최대 10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중소기업	1년, 최대 1억원	75% 이내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3개 이상),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된 근거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수요기술 R&D를 주관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사업화 R&D를 수행할 권역 내 지역 중소기업 3개 이상, 그리고 공동수요기술의 보급·확산을 수행할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의 민간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기업(최소 3곳)과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용어설명

공동수요기술 :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기술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한-러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기술 역량강화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지원 규모 24.4억원(신규24.4억원)

- (기술진단기획) 약 25개 과제,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약 13개 과제,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진단기획) 러시아 협력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로부터 기술기획 및 진단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65%이내	품목지정

*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불가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기술진단기획)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상용화기술개발) '20. 1월 중 사전공고, 3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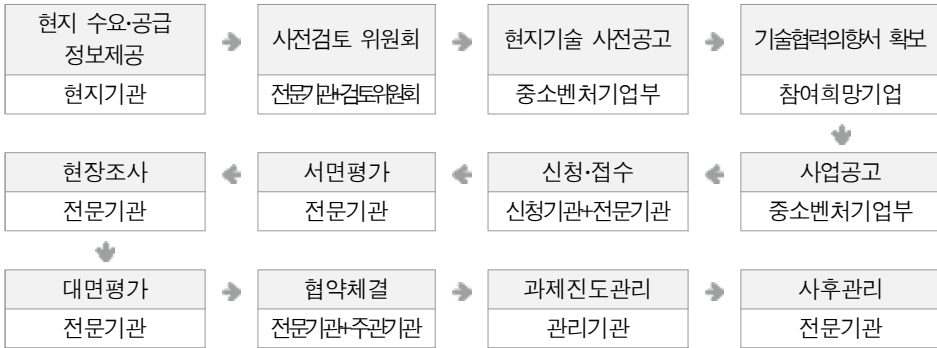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기술진단기획 추진절차 >



< 상용화기술개발 추진절차 >



* (전문기관) 지정원 (상용화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주관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1, 0176
- 홈페이지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기술협력의향서' 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지원 시, 자발적 기술협력의향서는 러시아 현지기관과 기술 협력을 위한 사전매칭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Q**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금지됩니다. 단, 기술진단·기획 혹은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완료 후 차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69.75억원(신규 69.75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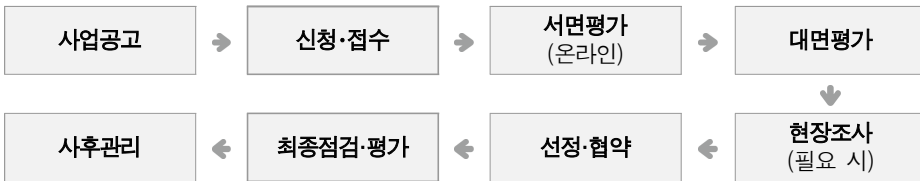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45억원(신규 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미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65% 이내)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신청 ·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3월	'20년 3월 ~ 4월	'20년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 →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 근거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리 절차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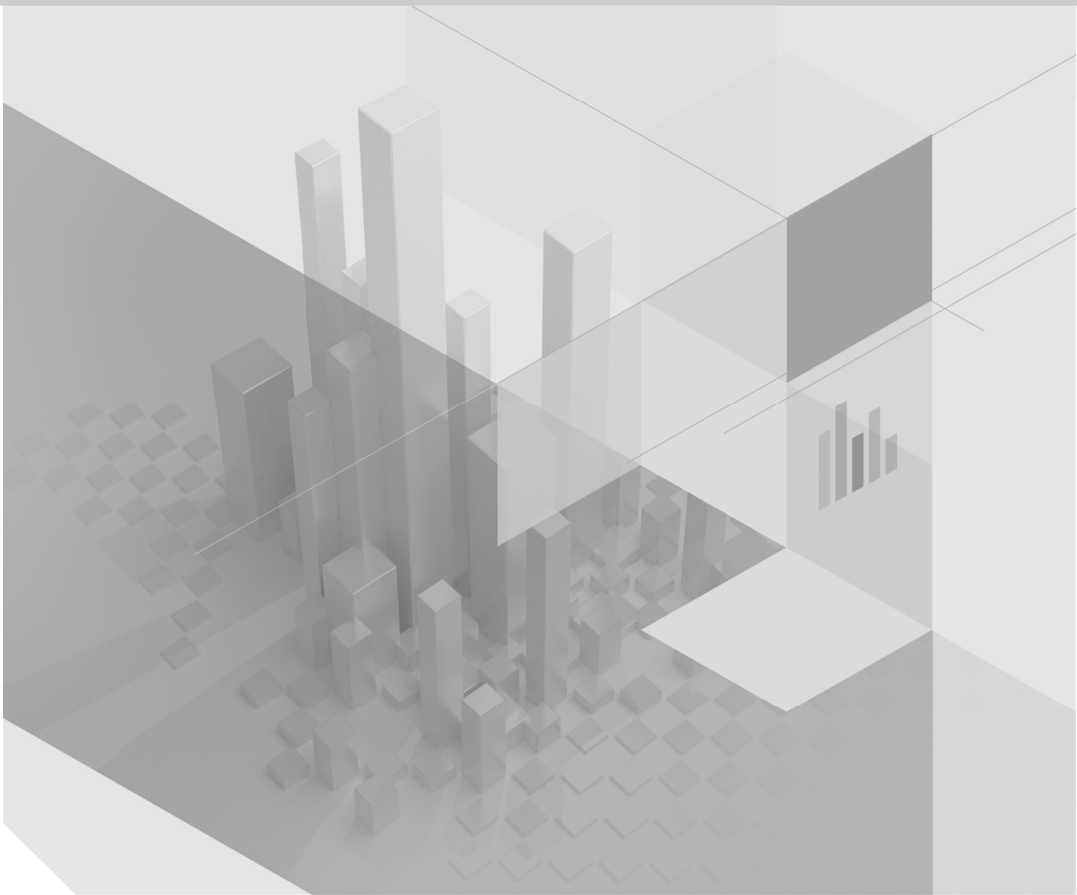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 중소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4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품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26
- 4-2 부리기업 지원사업 132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R&D 교육 및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38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10억원)

- R&D기획지원(38억원) : 13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49억원) : 126개 과제 내외(R&D과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포항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숲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첫걸음 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혁신기업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2~8백만원	100%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위기지역 R&D 지원대상에 포함지역 중소기업 포함
 - 17년도 지진으로 인해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포함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사업계획서 신청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등록 완료 후 방문접수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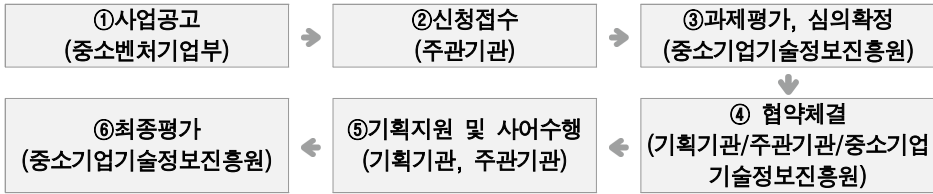
제출 서류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 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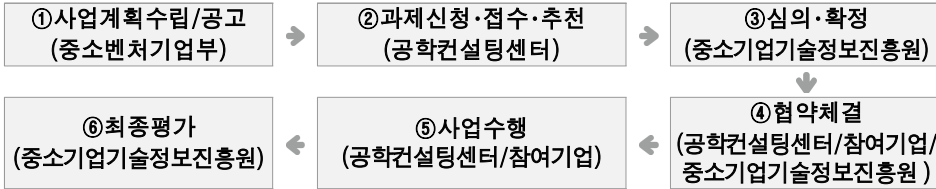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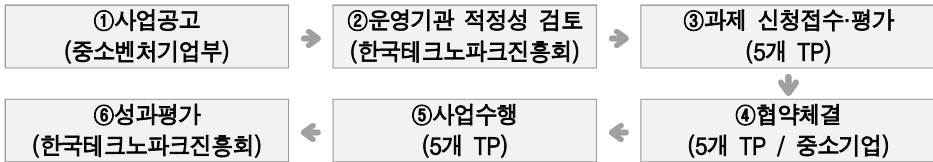
■ R&D기획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첫걸음 기획	1차/ 2차	'20.1월/4월	2월/5월	3월/6월	5/7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20.1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2차	'20.1 / 6	2~3 / 6~7	3~4 / 7~8	5 / 9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20.1월	2월	3월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6, 0741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홈페이지
 - (기획지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Scale-up) 아래의 각 지역 TP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남TP(www.gntp.or.kr)
 - 울산TP(www.utp.or.kr)
 - 전남TP(www.jntp.or.kr)
 - 전북TP(www.jbtp.or.kr)
 - 포항TP(www.ptp.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전략·분석보고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위기업종은 각각 무엇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조선·자동차 업종에 해당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지역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에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4-2 뿌리기업 지원사업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③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17.08.29)

-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지원 내용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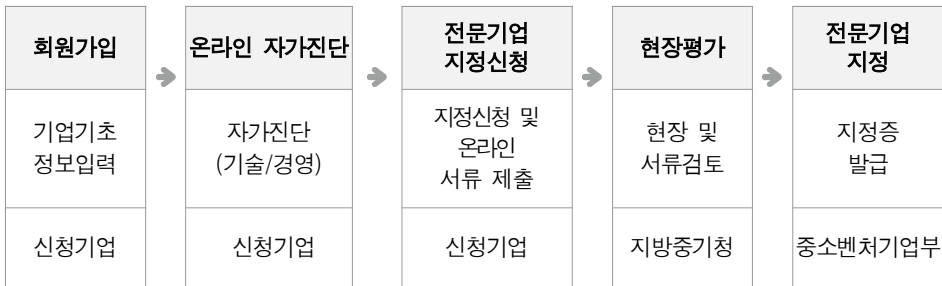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뿌리산업매출액확인서, 품목기술 설명서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Academy>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 현장의 니즈, 기업별 업무환경, 개별 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뿌리기술, 설비운영, 공정개선, 기술보호 등) 제공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기능·기술	뿌리기술	현장애로사항 해결, 현장개선, 기초기술이론, 기술고도화, 기술트렌드 분석, 자동화 공정설계, 에너지 관리 등
	기타	품질관리, 장비활용, 생산관리, 기술보호, 표준화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6대 업종별 교육기관 선정 후 재직자 교육 실시 예정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root-tech.org)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뿌리기술 코칭>**지원 규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업무환경, 고도화기술, 수행직무 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코칭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 뿌리산업 코칭전문가(교수, 연구원, 뿌리기술 명장 등)의 핵심공정별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재직자의 기술역량 강화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내용
뿌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 지원 •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관련 노하우, 공정개선 실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명장 중심 → 전문가 Pool을 확대(교수, 연구원)하여 현장수요, 고도화기술, 수행 직무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코칭 실시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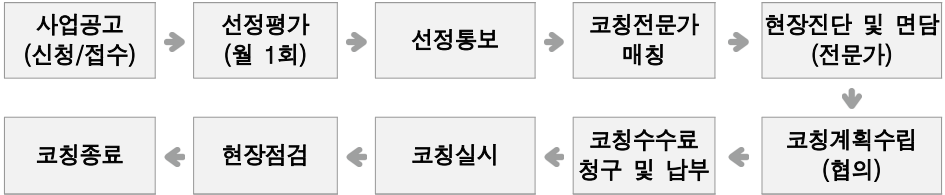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뿌리기술코칭 신청서

* 신청접수 : 뿌리기술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info.kpic.re.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맞춤형 코칭) 코칭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술파급효과,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현장중심형 Academys는 무엇인가요?
- A** 현장중심형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Q** 뿌리기술 코칭은 어떤 전문가가 오시나요?
- A**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위해 교수, 연구원, 뿌리기술명장, 설비운영 전문가 등 이 함께 지도합니다.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 규모 뿌리기업, 20개사 내외

* '19년 지원 : 23개사 지원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지원 내용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등 지원
 -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1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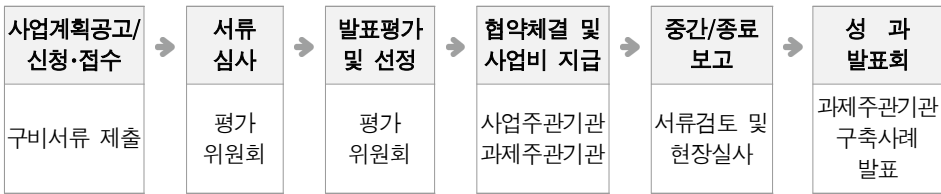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기업의 3년간 재무제표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 실적 명세서 (직·간접 수출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절성, 공정개선 기대효과, 목표 달성률, 사업비 집행,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A** 「뿌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확인서' 를 발급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140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143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146
5-4 스마트 마이스터	148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150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152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154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58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 예산 : '20년 4,150억원(4,125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 기업, 소비자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 신규구축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정부지원)** 고도화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상생형)** 신규구축 최대 0.6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상생형)** 고도화 기업당 최대 0.9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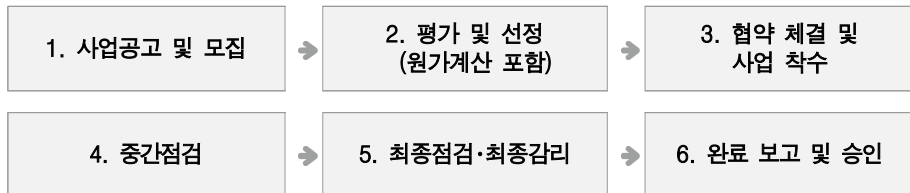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5, 0853, 0861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월말 공고예정)

지원 규모 예산 85억원(30개사 내외)

- * '19년 지원현황 : 전국 44개 제조기업 지원(예산 117.25억원)
- * 3억원 내외 지원(총 사업비 6억원 내외) 시 30개 기업 내외 지원 예정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 ①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 ③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 ④ 첨단제조로봇(협동로봇·무인이송로봇 등)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 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협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 053-210-9532(www.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창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요기업(또는 공급기업)이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 A** 참여기업(로봇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곳의 수요기업에서 다수의 로봇공급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 Q**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 현재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사업 내용 중복 불가)

용어설명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로봇기업 또는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수요기업에게 직접 로봇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컨설팅 지원)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지원 성과제고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20년 30억원(6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자문지원
 - (사전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전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효과 및 보안·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 (구축 중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과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조건

-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부담 10%(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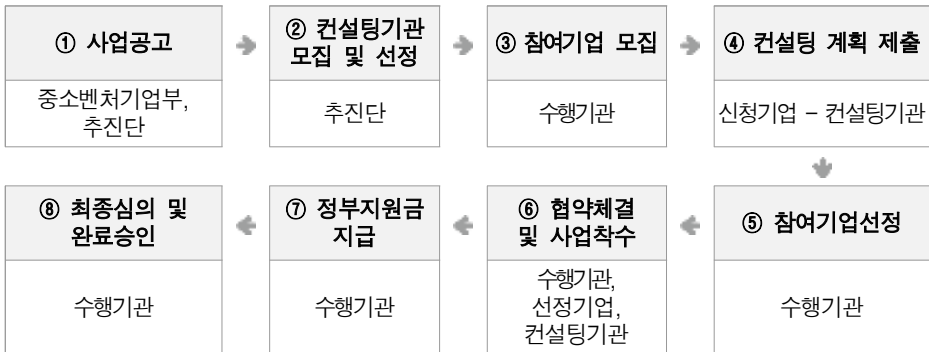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신청서(스캔본 등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일반문의), 042-388-0856

5-4 스마트 마이스터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가 파견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순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20년 약 70억원(8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우선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기업 출신 전문가(4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3개월간 파견(800개사)
 - 스마트공장 도입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현장개선, 기술애로 해결, 구축 순과정 지도 등)

- (지원조건) 마이스터 3개월 인건비의 90%(837만원)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00%(930만원)	90%(837만원)	10%(93만원)

- (지원기간) 마이스터 기업당 파견기간 3개월(주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일은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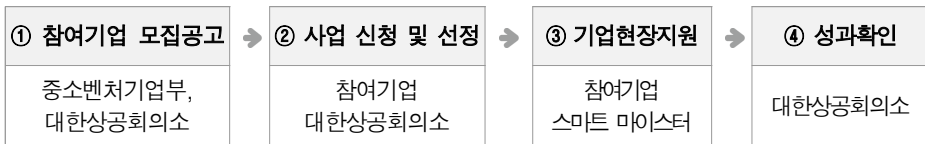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www.sbmi.korcham.net)
 - * 단,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마이스터 활용 체크로 신청 완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 * 신청양식은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www.sbmi.korcham.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제출 서류
1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처리 절차**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1, 3855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 기업 제조수준의 객관적인 진단 및 수준확인 지원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원 규모

11.9억원(1,190개사 수준확인 지원)

* '19년 지원현황 : 914개기업 수준확인 지원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수준확인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및 보증기관 보증료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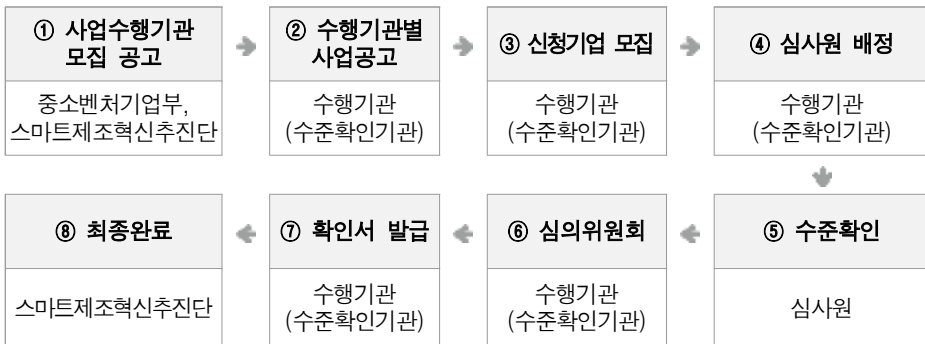
- 수준확인 비용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자가진단지 및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자가진단지,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단체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솔루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화 애로 해소

지원 규모

40.6억원(10개 솔루션 내외)

* '19년 지원현황 : 12개 솔루션 구축 지원(스마트공장솔루션 8개, 공동활용솔루션 4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특화솔루션은 '13 ~ '19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지원
- (공동활용 솔루션) 유사·동업종으로 구성된 협·단체 회원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솔루션 구축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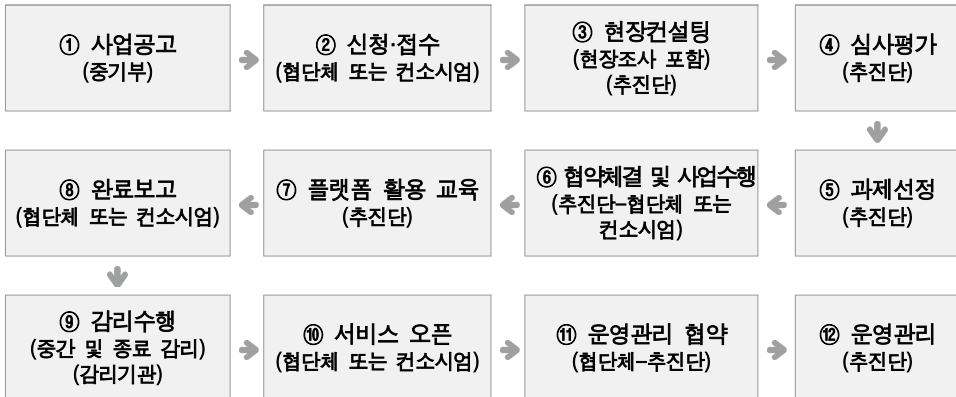
신청·접수

'20년 1월~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문 의 처**

- 경영혁신플랫폼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6, 086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 사업신청 및 과제관리 : it.smplatform.go.kr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20년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9년 지원현황 : 55개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447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 02-368-8737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19년 지원현황 : 7,559건(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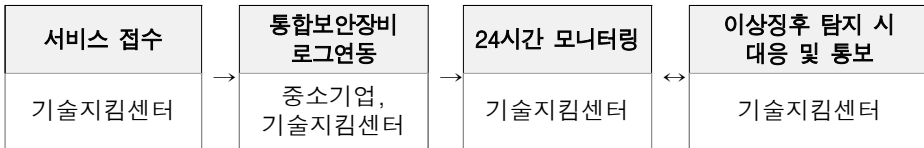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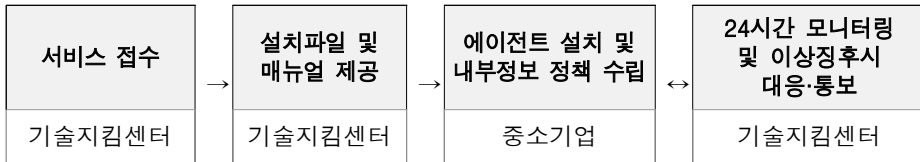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19년 지원현황 : 535건(11월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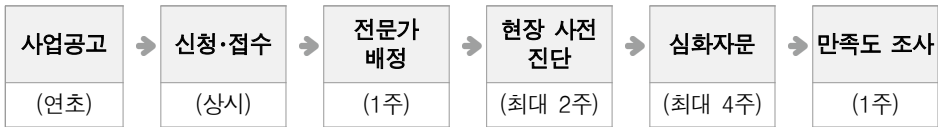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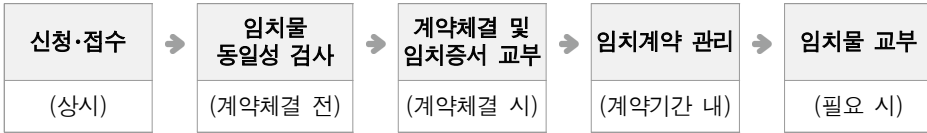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 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5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 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94건('19.11월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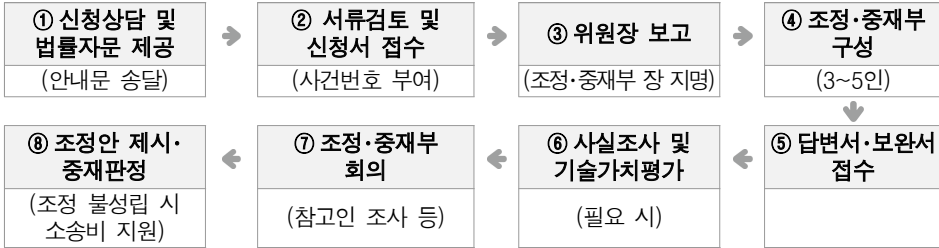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0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4.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규모 10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기술유출·분쟁 등 기술침해 관련 법적대응, 지적권 분야 및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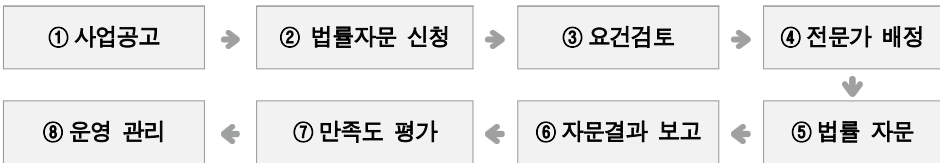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술유출·분쟁 등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의 비밀 유지협약(NDA) 체결 등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지원 확대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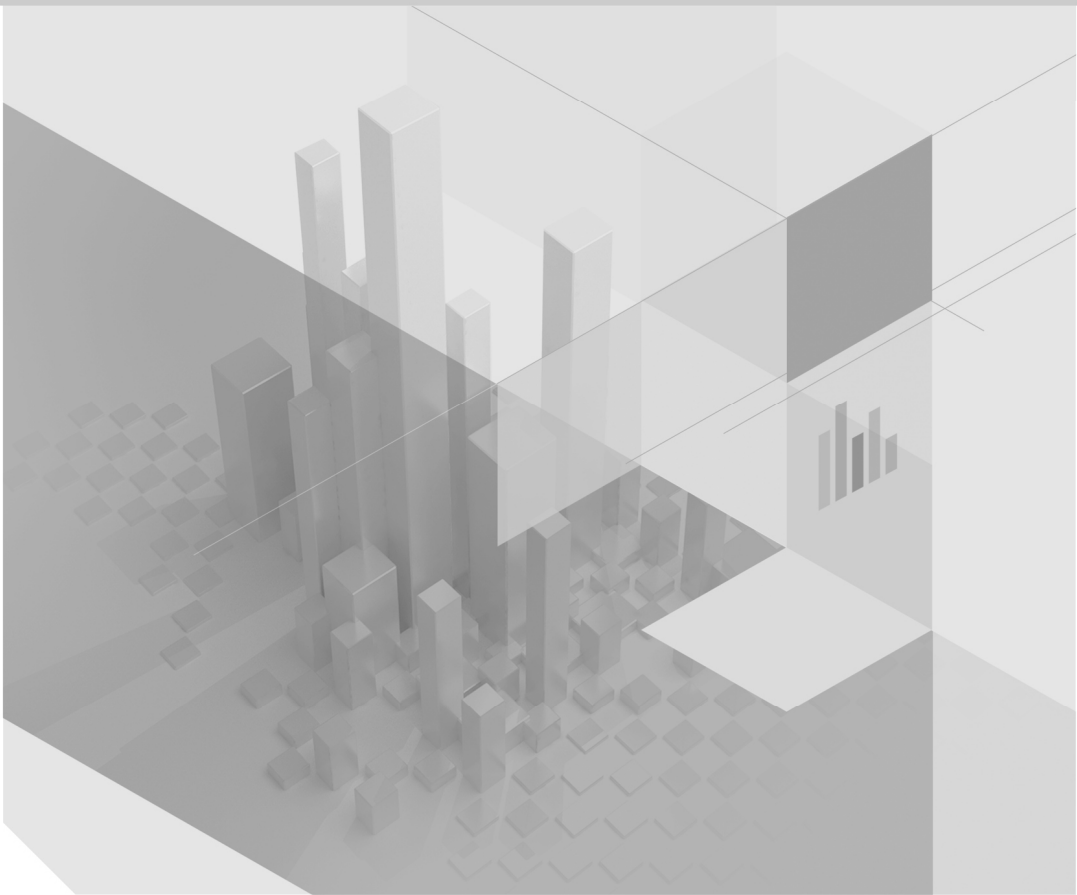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3부



인력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6장

인력 양성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168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171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174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177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230개 특성화고('20년 예산 : 346.4 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 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참여 방법

'20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참여기업 혜택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추진 절차

절차	내 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1월
↓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		
사업비교부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		
사업비 정산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5, 9862, 986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 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용어설명

※ 취업맞춤반

-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학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생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9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98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12개 사업단(12개 전문대, 17개 특성화고, 9백개 협약기업, 1.2천명 교육

지원 대상

- 사업단 : 전문대(1개) + 특성화고(N개) 컨소시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 학생 :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사업단(전문대 - 특성화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참여학생은 특성화고 2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

-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대 상	지 원 내 용
사업단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참여학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 협약 가능

-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36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 사업단 중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기술사관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울산공고, 서부산공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영남공고
광주전남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충남대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양영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12개 사업단(전문대 12개 + 특성화고 17개)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실시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 채용 연계하는 사업

지원 규모

14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2개 전문대학, 1,200개 협약기업, 1,800명 교육

지원 대상

- 대 학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기 업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학 생 :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참여대학은 수요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참여학생은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 교육 이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 분	지 원 내 용
대 학	•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등
학 생	•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 업	•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대학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다운로드

대학 심사·평가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대상 대학 선별

기업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산학협력 유형을 선택 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학생 취업조건부 채용 협약 가능

구 분	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협회·단체간 산학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 채용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 참여기업의 50%이상 회원사로 구성
공통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참여기업 혜택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36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은 사업 참여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은 지정된 대학에 직접 문의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양성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학과 사전에 산학협력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규모

전국 51개 주관대학 69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20년 예산: 114억원)

* '19년 지원현황(가을학기 기준) : 51개 대학, 68개 학과, 참여학생 1,800명

지원 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학생 요건

-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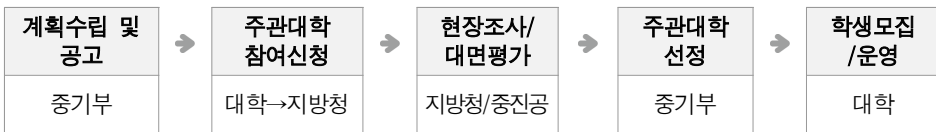
지원 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교로 문의 요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황
 - <http://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제7장

인력유입 촉진

7-1 내일채움공제	180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3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185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187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190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92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94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196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198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00

7-1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1.37% (2019년 지급이자율 기준, 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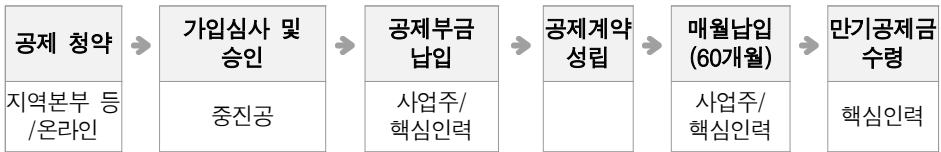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 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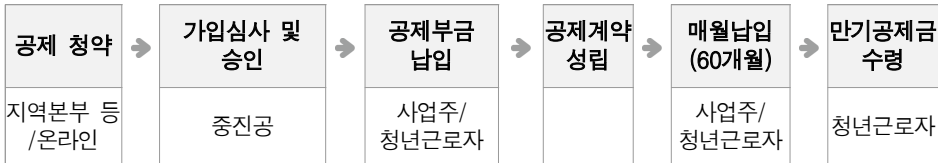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 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지원 규모 '20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개사 지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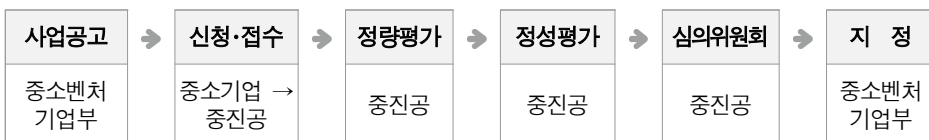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처리 절차



지정 기준

정량·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정

평가 방법

- 정량·정성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 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CEO의 의지 (10)	1-1.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방문평가	정성	5
	1-2. 우수인재 확보 노력	방문평가	정성	5
이익창출능력 (10)	2-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2-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성과공유제도 (40)	3-1. 일자리 양 증가수준	고용영향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정량	20
	3-2.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실적	성과공유 실적	정량	15
	3-2.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 (https://sanhakin.mss.go.kr)	정량	5
근무환경 (25)	4-1. 임금 수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정량	10
	4-2. 복리후생 수준	방문평가	정성	15
교육훈련 (20)	5-1. 교육훈련비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정량	10
	5-2. 교육훈련 인프라	방문평가	정성	10
합 계				100

신청·접수

'20 하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 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681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7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 기업 현장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지원 규모 전국 10개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 (예산 3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10개 컨소시엄(예산 30억원)

지원 대상 대학원(학과)-기업(기업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원에 부여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산학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기업수요에 따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참여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 유도
 -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실습장비 및 재료비,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내외 최대 5년 이내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도 4개 컨소시엄 신규선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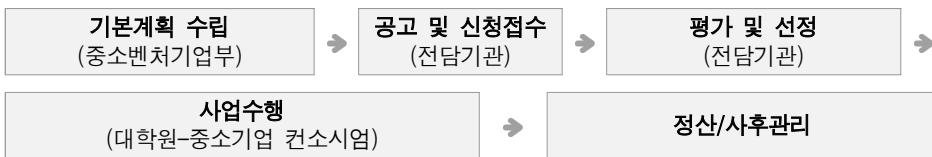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전산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세부내용 및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ar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추후 변동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02-6009-33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
- Q** 사업에는 학부생도 참여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Q**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되나요?
- 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학원과 공동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

지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대학 컨소시엄 6개(예산 18.3억)

* '19년 지원현황 : 대학 TP-컨소시엄 등, 총 6개 과제(예산 18.3억원)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 * 지원기준 : 인턴기간(4개월)동안 인턴 교육비 지원(150만원×4개월), 수료시 전공학점 12학점 내외 제공 (학교 내부기준에 따름)
 - * 산업인턴 :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ICT관련학과 제외)
 -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 R&D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처리 절차



신청·접수

기업모집은 권역별 주관 대학교에서 별도 공지하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주관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인천), 대전대학교(경기·강원), 한국교통대학교(충청권), 전북대학교(호남권), 금오공과대학교(대경권), 울산대학교(동남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산업인턴 참여학생 전공 제한이 있나요?

A 네, 공대소속 4학년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산업인턴 현장실습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R&D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연구인력 130여명 내외(예산 71.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50여명(예산 82.8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 기업
-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 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신청·접수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은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파견 인건비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8, 7386, 7382



Q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파견가능한 적정 연구 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도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연구인력 768명 내외(예산 157.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711여명(예산 150.6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장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최대 3년, 2명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3, 7373, 7365, 7380, 746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

지원 규모

연구인력 230명 내외('20년 예산 8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56여명(예산 56.7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3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23, 9167, 908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규모

7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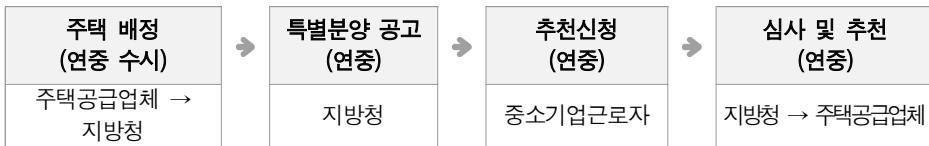
확인·추천기준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제조 소기업 재직여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19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통합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인시스템에서는 전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

지원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지원 내용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휴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이용안내 참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처리 절차

가입 신청



가입 승인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임직원별로 개별 아이디를 발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 02-6050-3455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4부



판로 지원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있는지요?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증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 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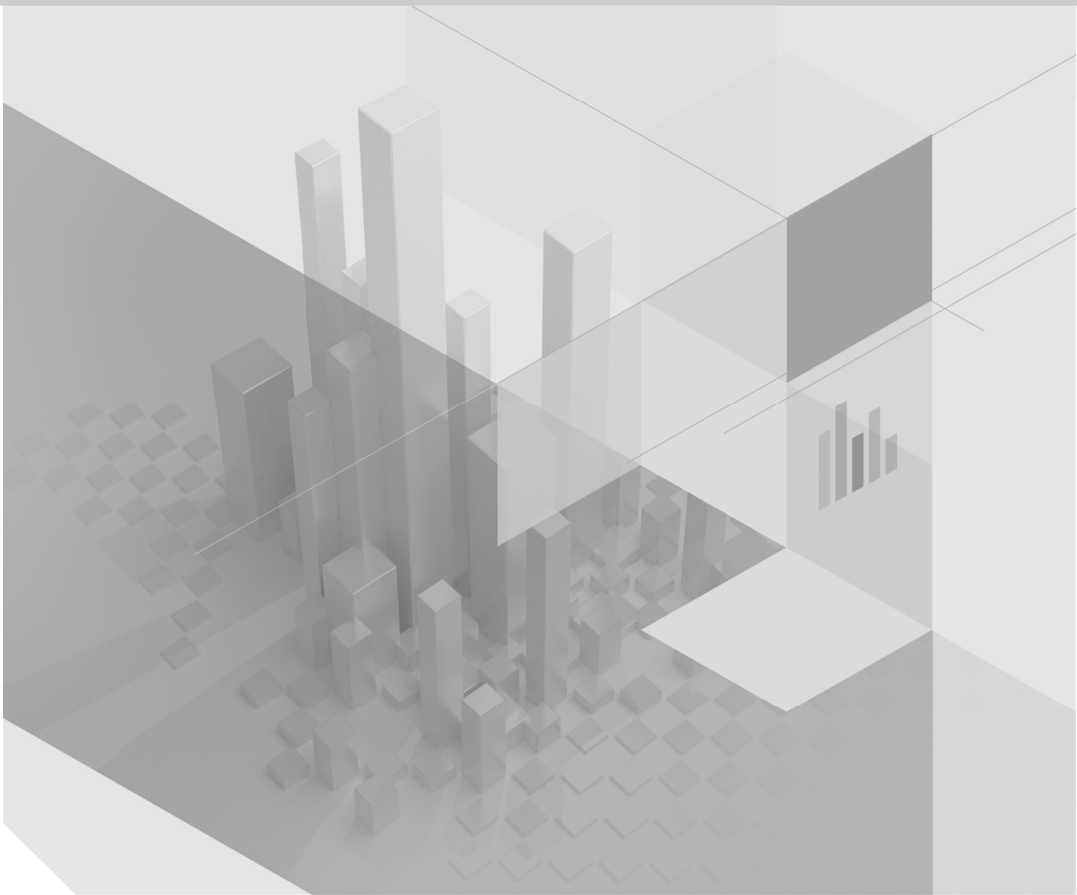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통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 해결 등 총 4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6
8-2 직접생산확인제도	209
8-3 계약이행능력심사	211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213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215
8-6 공공구매론(loan)	216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218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9.1.1~'21.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9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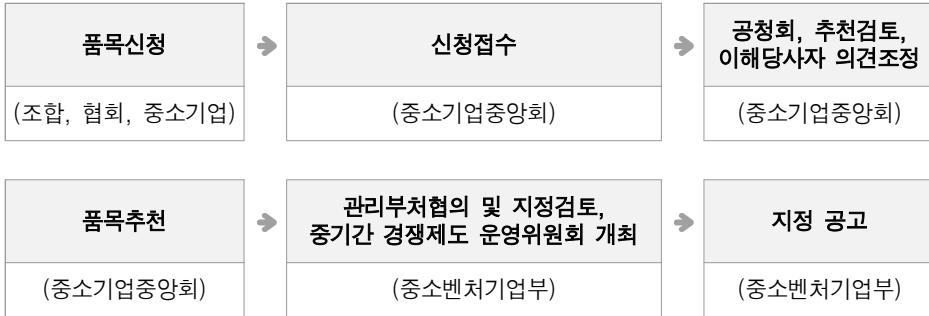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신청 서류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 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

(‘17) 27,395개사, (‘18) 28,697개사, (‘19.10) 22,391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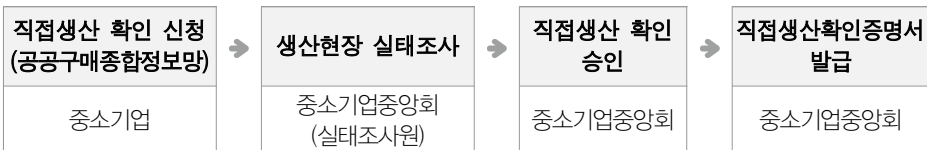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신청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1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 02-2124-325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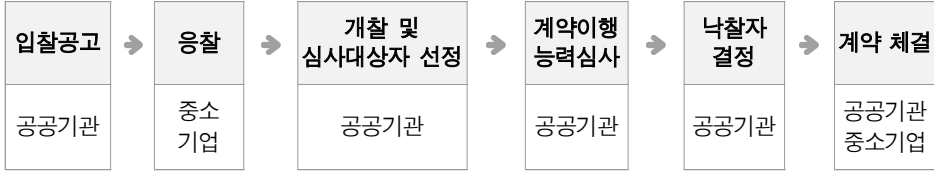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 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억원)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 비율로 평가
 -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7년 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46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적격조합('19.8) 137개 조합, 116개 제품(중복 제외)

확인 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 사항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6864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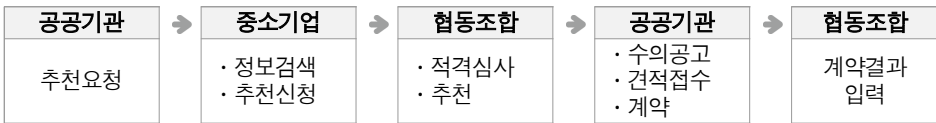
적용 품목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 에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8-6

공공구매론(loan)

| 중소기업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금융서비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16)1,121억원, (‘17)1,130억원, (‘18)1,098억원

지원 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조건 : 금리 및 조건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 공공구매론 대출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 ✓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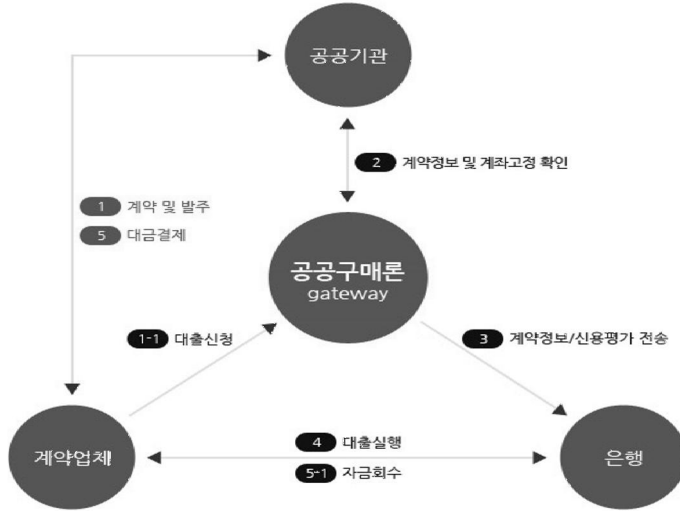
지원 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
-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smpp.go.kr 접속)으로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6864
-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23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구매수요에 따른 지원규모

지원 대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과제별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미대상 기업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지원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지원 내용

- (혁신성장형)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 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수입대체형)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를 지원
 -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역량강화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신청·접수

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심사 평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평가표 및 점검 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추진

< 제도 참여시 우대사항 >

유 형	우 대 사 항
혁신성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직접생산 확인기준 적용 시 특례 적용 가능 • 시장 지배적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수입대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역량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평가등급에 따라 PQ신인도 가점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정거래 가점 부여 •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시 최소협상가격 설계보정을 추가 가점

제출 서류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멘토기업간 상생협약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품규격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42-712-5661 ~ 5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466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A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 그리고 공공조달시장의 수입산 소재·부품 국산화 및 창업 기업 등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 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어설명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Protege program) : 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대기업·조달 경험기업과 조달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미국 프로그램



제9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22
9-2 성능인증제도	226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28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6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 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5) 3.11조원, ('16) 3.70조원, ('17) 4.50조원, ('18) 4.52조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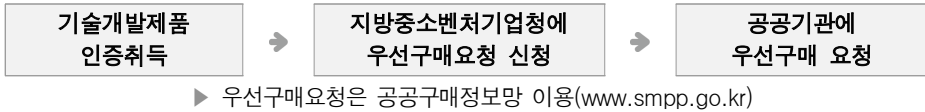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성능인증,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ICT 융합품질인증 제품,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국가R&D 혁신제품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 중앙관서의 장 인증 필요),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구매조건부 R&D 사업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제품,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국가 R&D 혁신제품 등 11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8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 절차



문의처

-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9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	051-601-5124	울산	052-210-0044
대구·경북	053-659-2233	강원	033-260-1641
광주·전남	062-360-9141	충북	043-230-5370
경기	031-201-6934	전북	063-210-6481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3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581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525
NET(교통)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18	NET(환경)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2
NET(건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9	NET(방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NET(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1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4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0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임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9-2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지원 규모

발급건수 : '17) 410건 → '18) 443건

-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규격추가, 연장신청, 법인정보 변경 등으로 나뉘며 해당 건수는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신규발급, 규격추가,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20종

- * NET, 적용제품, NEP,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제품 등이며 대상 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 내용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심사·평가 주요내용, 처리기간 등 기재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지방청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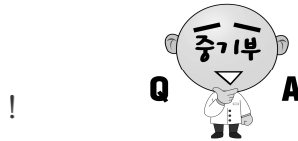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팀 042-712-5641~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Q**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성능인증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 정도 소요됩니다.
-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6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19년 누적)

- 창업과제 : 43,970백만원 (~'19.10)
- 일반과제 : 81,350백만원 (~'19.10)
- 소액과제 : 7,598백만원 (~'19.10)

지원 대상

구 분	세부과제	지원대상
공고형 시범구매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일정금액(10~20억) 이하인 제품
소액 시범구매	소액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인 첫걸음 기업 (제 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지원 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판로 개척지원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시범구매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첨부서류 :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 구매기관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현황(' 19.11월) >

(단위 : 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의료원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16	245	1	1	33	41	13	24	1	375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8919)
- 중소기업유통센터(공공구매지원팀, 042-712-5621~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시범구매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호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8종,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신청 가능한 제품으로, 상세 자격요건은 광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Q 시범구매제품 자격 유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 **기술개발제품 18종**
: 인증(지정)기간 까지(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제품의 인증(지정)기간 만료시 만료되는 날)

Q 인증을 신청했으나 아직 인증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 시범구매제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시범구매제도 신청 시 유효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232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235
10-3	온·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237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240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43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246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 국가공인브랜드를 통한 우수중기제품 판로지원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우수중기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브랜드(브랜드K)를 부착한 후 내수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50여개 제품 내외(예산 3.7억원 예정)

- * 동일 업체라도 신청 제품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별도 선발
- * 지원규모는 '20년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성,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조합·단체』
- 국내 제조기업 또는 단체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생산하는 기업 등
 - * 단, 기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명기 필요

< 'Made in Korea' 충족요건 >

- (ㄱ) 『Made in Korea』 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ㄴ) 『Made in Korea』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 국내생산 제품임을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91249) 등 사행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브랜드 K』 로고(상표) 사용권한 부여
 - 현장 실태조사 등 품질인증과정 통과 후 상표 사용권 획득
 - * 단, 'Made in Korea' 제품으로 인정(제조 주요공정의 60%, 성분·원료의 60% 이상)되는 제품·기업에 한함
- 주요 국가 행사 시 『브랜드 K』 전용관 설치·운영
 - 해외인사 국민 방문, 국제행사 등에 브랜드K 콘텐츠 활용 행사를 추진하고 브랜드K 제품으로 참여기회 제공
 - * 개별전시회 참여비용 지원 불가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항·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상업시설 내 '브랜드K'전용 홍보관 설치 및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 추진
- 브랜드 K 참여기업 도약·연계지원
 - 국내 유통망(TV홈쇼핑, 백화점, 동반성장몰 등)진출 희망 시, 입점연계 지원 및 해외 진출지원 사업인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기획전', 중기제품 전용 정책매장 '아임쇼핑' (휴게소·면세점 등) 입점 신청 시 가점 혜택 부여

신청·접수

'20년 수시 진행(e-mail 등 별도 안내 예정)

- E-mail(marketing16@sbdc.or.kr)을 통한 서류제출
- 평가 및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서면평가 → 선정
 - * 단, 최종선정 전 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Made in korea 제품여부 확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및 선택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접수

-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 (선택서류)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품 카탈로그, 기타 제품관련 인증서류 등

처리절차



* 단,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44, 9346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 전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소기업과 국내외 유통채널(MD)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수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3,000개 제품(예산 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및 국내 제조 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혁신제품 유통플랫폼'에 등록을 신청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상품정보 제공) 국내외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화) 창업·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등록정보를 유통MD가 상품성, 시장성 검증 후 DB화

신청·접수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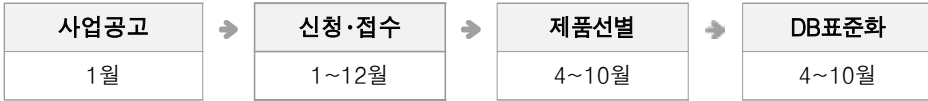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품성, 가격경쟁력,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발굴·등록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833, 9835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아임스타즈에 가입조건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하신 후 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3

온·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진출을 통한 온라인 기획전, 특별판매전을 비롯한 오프라인 기획전, 대한민국 마케팅Fair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홍보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온·오프라인 기획전, 대한민국 마케팅Fair 진행 등
(예산 93.6억원 예정)

- (온·오프라인시장진출) 온라인 기획전(온라인쇼핑몰 등) 170회/
오프라인 기획전 연간 10회 등
- (대한민국 마케팅Fair) 중소기업 200개 업체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제조한 제품 등

- (온·오프라인시장진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대한민국 마케팅Fair) 국내 중소기업 및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2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온·오프라인시장진출)
 - 온라인판매 관리지원,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홈쇼핑 방송지원, V커머스 홍보판매 등
 - 민간유통채널(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및 공적유통채널(지자체 판매전 등) 진출지원

○ (대한민국 마케팅Fair)

-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판로유공자 시상식, 히든 스타 상품 공개오디션 등 진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O2O 등 유통 트렌드 반영 온라인 기획전 확대 진행
- TV홈쇼핑 방송지원을 T커머스까지 확장
- V커머스 VOD제작·홍보지원 외 라이브 방송판매 지원으로 확장

신청·접수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세부일정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혹은 마케팅지원사업 공고문 등 참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카탈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증서류 등

처리절차

○ 온라인기획전



○ 오프라인기획전



○ 대한민국 마케팅Fair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시장진출 : 02-6678-9326, 9324, 9325, 9329
 - 오프라인시장진출 : 02-6678-9711, 9716
 - 대한민국 마케팅Fair : 02-6678-9322, 9325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Q V커머스가 무엇인가요?

A 비디오(Video)와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행위를 포괄합니다.
최근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맞추어 인터넷방송, 동영상광고 등의 영상제작 및 온라인쇼핑몰·SNS 등과 연계한 홍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Q 히트스타제품TOP5 공개오디션은 무엇인가요?

A 국내 중소기업제품 중 아이디어가 넘치는 제품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끄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대상의 행사(공개오디션)입니다.
1차 전문가 평가 및 2차 중간평가를 거쳐 뽑힌 Top5 제품은 마케팅대전의 공중파 생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 중기제품전용 오프라인판매장 운영을 통한 시장검증(TEST-BED) 수행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정책매장(아임쇼핑)'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홍보/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검증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기능을 수행

지원 규모

연간 3,000개 내외업체 정책매장(아임쇼핑) 입점지원
(예산 19.6억원 예정)

* '18년 지원현황 : 710개 업체신청 中 378개 신규업체 선정 (경쟁률 1.88 : 1)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판매될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단순수입제품, 1차식품, 냉장냉동을 필요로하는 식품 등 제외
-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 * OEM제품의 경우 증명서류 미구비시 선정제외 및 입점불가
- * 상품선정위원회 시 반영되는 가점사항

가점 및 선정 필요자료(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스마트공장 생산제품	자동선정
창업사업관련기관(TIPS, 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추천기업 추천서	자동선정
R&D 성공기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추천서	자동선정
경영혁신마일리지(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최대 3점
지역특수소재기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준함)	1점
지역우수(스타)기업 (지역우수기업 지정서)	1점
여성대표기업(여성기업확인서)	1점
명문장수기업(명문장수기업확인서)	1점
클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선정 확인서	3점
마케팅역량강화 사업 완료 기업 중 우수 평가 기업	3점

지원 내용

-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제품 및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매장 운영하며 전시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판촉·홍보
- 전매장 입점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반응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간 결과전달 및 레포트 추출 기능 구축(아임스타즈 마이페이지 활용)
-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다양한 기획전 및 판매행사 등을 통해 유통망 진출 및 판매성과 제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아임쇼핑 전매장 내 브랜드K관 개설
- 아임쇼핑 매장 11개소에 ‘브랜드K’ 제품관을 설치·운영
→ 국가주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의 판로확대 및 홍보전개
 - * 브랜드K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부족한 인지도로 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리고 중소기업이 민관합동으로 만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신청·접수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www.in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기간 : 상시
- 처리기간 : 사업신청일자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한 당월 말일 상품선정위원회 평가 → 다음달 2주 이내 결과통보 예정
 - * 15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月) 다음달 말일 상품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 후 2주 이내 결과통보

〈심사·평가 주요내용〉

- 매장별 입점가능업체수를 감안하여 적합성 30점, 상품성 30점, 마케팅력 30점, 수출잠재력 10점 (총 100점, 70% 환산) 및 고용지표(총 100점, 30%환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고용지표 : 중소기업고용영향평가시스템에서 일자리 양, 일자리 질, 고용질서 준수 등 각 항목 평가하여 책정한 점수 반영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아임스타즈 사업신청 시 서류 업로드

- (필수서류) 대표상품기술서, 제품리스트, 희망매장표기서, OEM증명서
- (선택서류) 제출희망 인증관련 서류, 수출실적인증서, 현대/신세계백화점 입점 필요 품목별 인증서류(품목별 인증서류 참고)
 - * 필수서류 미구비시, 상품선정위원회 담당자가 별도로 이메일 발송(미구비서류 요청)
 - * OEM증명서의 경우 국내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

처리절차

- 신청업체 입점 선정위원회 : 매월 선정 (필요 시 추가 개최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 - 9720~9729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제목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50개 업체(예산 62.3억원 예정)

* 지원규모는 '20년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 기업부담금 제도 시행 중(정부지원 70%, 기업 자부담 30%)

지원 내용

- A/S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사용법·고장·교환·반품 등 각종 고객민원 통합 대응 및 관리
- 기업현황에 따른 맞춤형 A/S INSIGHT 제공
 - * DATA기반 민원 트렌드 분석, 제품인지도 개선을 위한 사후마케팅 지원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A/S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체 실무자 대상 A/S핵심직무 역량강화 교육

신청·접수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확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계약서(국내외 주생산만 해당),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탈로그, 기타 인증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41~3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신다면 아래 17개 품목(완제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제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제품, 소프트웨어, 산업용기기, 생활용품, 패션 잡화, 뷰티, 홈인테리어·홈데코 품목

Q 아임스타즈를 통해 지원했는데, 그 이후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아임스타즈를 통해 지원해주셨다면, A/S센터에서 지원 제품(업체)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3~4일 내에 전화로 회신을 드립니다. 업체 방문 일정과 서류 제출 등 이후 단계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소모성자재 납품기업(MRO)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케팅지원, MRO 납품관리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900개사(예산 6억원 예정)

- * '19년 지원현황 : 온라인 교육(100개사, 현장 컨설팅(80개사), MRO납품 관리 시스템(5개사), 입찰정보 분석제공 등 판로지원(640개사), 상담(75개사)

지원 대상

국내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구매대행 기업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 내용

- MRO 시장의 마케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 및 판로 지원 (공공기관 입찰정보 분석제공), MRO납품관리 시스템 지원 등 입체적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 세부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 및 시스템 이용법 등 공공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입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국제기구 조달(UN/주한미군) • MRO 물품 구매 관리,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MRO 시장 마케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분 야	내 용
판로정보 제공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 구매와 관련된 종합정보를 지원
현장 컨설팅	• 전문 MRO 구매 대행 업무를 위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취급 품목 및 목표시장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제시
MRO 납품관리 시스템	• 납품관리시스템 무료 사용 지원을 통한 고객사와 주문, 납품, 결제, 상품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활용

신청·접수

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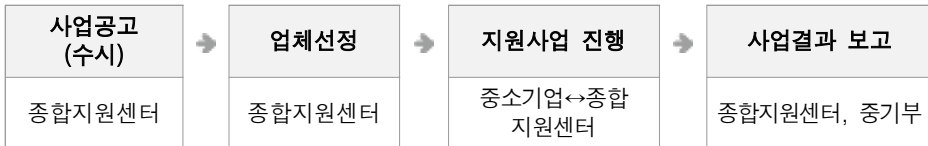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절차



- * 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1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8969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
- Q** 중소납품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A**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납품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Q**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 A**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 Q**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 A**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 용어설명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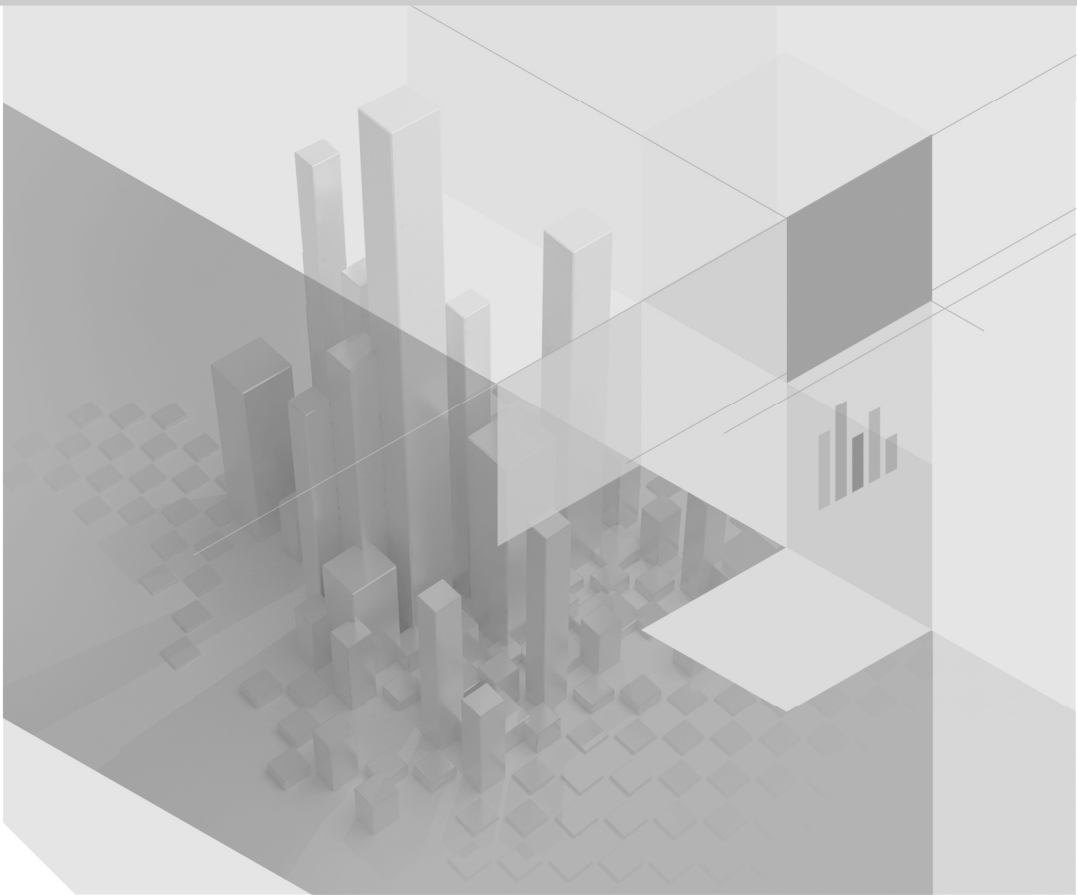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 5부

수출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1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수출바우처	252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256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259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61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64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267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70

11-1 수출바우처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934여개사(전체 예산 99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43억원	141개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253억원	936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237억원	878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216억원	48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139억원	279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강소	110억원	22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1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최대 1억
합 계	998억원	2,934개사		

*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로 중기부 수출비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비우처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공고 시 예외로 정한 별도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 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 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영역	지원항목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 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 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 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지문, 법률지문, 법안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 방식

수출바우처사이트(www.exportvoucher.com)를 활용,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바우처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신청·접수

'19.12월, '20.5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동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콜센터 1357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62-8580(www.exportvoucher.com)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 까지 사전·사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140개 컨소시엄 내외, 155.5억원

* '18년 지원현황 : 63개 컨소시엄, 총 6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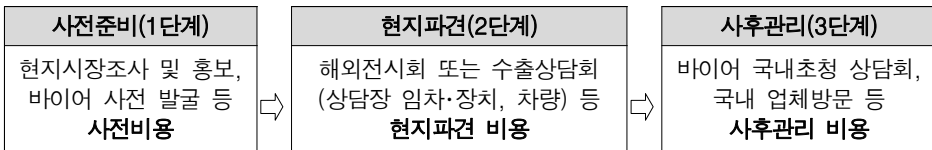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비율 : 사전준비 50~70%, 현지파견 50~70%, 사후관리 50~70%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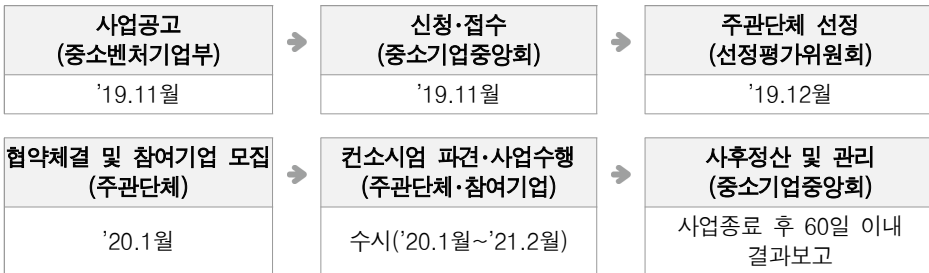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각 지방청으로 제출
 - 참여기업 :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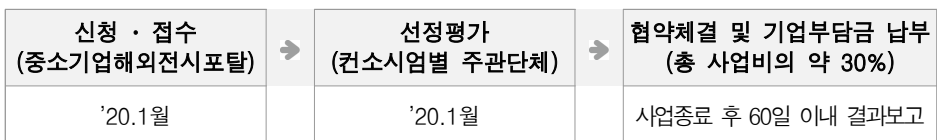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 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스타기업 육성, 온라인수출 교육 강화 및 공동물류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820개사(359억원)

* '18년 지원현황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2,011개사, 독립몰 육성지원 47개사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독자적인 글로벌 쇼핑몰 계정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계정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 기업화) 글로벌 플랫폼(B2C, B2B) 입점을 위해 온라인수출 교육, 중점대학 운영, 글로벌 플랫폼 계정 생성 및 마케팅 등 지원
-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전시회) 3D 등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별,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상시 개최 지원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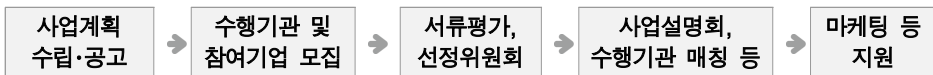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해외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 스타기업 육성 : 주요 수출국, 해외시장 진출 준비현황(현지어 포장, 메뉴얼 보유), 무역 및 마케팅 인력 현황, 온라인 마케팅 활용 계획 등
- 온라인수출 기업화 : 수출준비도(외국어 포장, 홈페이지 보유여부), 상품성(상품경쟁력, CS 대응) 등
-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지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희망 물류사 등
- 온라인전시회 : 사업성(시장니즈, 진입가능성), 기술차별성(제품 경쟁력), 수출준비도(수출전문인력,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0여개 사, 전체 예산 106.5억원

* 19년 지원현황 : 650여개사, 총 106.5억원 지원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 신청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컨설팅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신남방·신북방국가, 중국 인증의 경우 인증 신청 건수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접수

구분	1차	2차	3차
접 수	3월	6월	8월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관리기관 평가, 지방청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주요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조

제출 서류**(필수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시험·인증기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제출

(선택 서류)

- 시험·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 제출 (제출 시 평가 점수 반영)
- 해외 특허, 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현재 보유중인 해외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만 제출)
-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의 수출 또는 해외인증 교육 수수료증, 자격증, 학과 졸업증, 회사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1부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1부.
- 외국어카다로그 1부.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지원금 조정)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중간보고(필요시)	참여기업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문 의 처

-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 전화 : 02-2164-0172~8, FAX : 02-507-8118, E-mail : mail@ktr.or.kr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 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부, KOTRA, 무역보험 공사 등 20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선정현황 : ('17년) 771개사, ('18년) 1,056개사

지원 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등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 기술성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제출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 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3월, 9월)	→	신청·접수 (4월, 10월)	→	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문의처

- 중소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A**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을 받으며,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A**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4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A** 물론입니다. '18년 하반기 부터 일부 사행성 업종을 모든 업종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연도는 50%) 지원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15개국 23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19년 기준) 총 283개 독립실 : BI 13개국 21개소, KSC 3개국 2개소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업종 해당 기업
 - ①일반유희주점업, ②무도유희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스타트업 투자연계, 엑셀러레이팅, 네트워크 등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하고, 제출 서류에 대해 우편 접수
 -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진공 국제협력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우대

필요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지역본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82, 968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 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 가능합니다(최대 2년). 1년 입주 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해외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 내에 중기(3개월 수준) 또는 단기간(1개월)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사무 공간 등 지원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260개사 내외 ('20년 : 125억원)

* '18년 지원현황 : 1,189개사, 기업 당 평균 약 6백만원 지원(※ '19년 사업 진행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 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업종 공통/특화, 이업종 융합 동반진출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한류(K-POP, K-Food, 드라마/예능, 게임 등) 연계하여 뉴미디어(인플루언서, SNS, V커머스 등) 및 한류스타 IP 활용, 수출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일괄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최대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정보조율 50% 이내, 연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700 ~ 2,300만원 한도 (지역별 차등화 적용,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홈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지원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중소기업 부담금 있는 경우 7:3 비율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 **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진출 활동 지원 1회 지원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료, 통역 및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한류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300 ~ 1,700만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포함, 지역별 차등화 적용) *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가능

신청·접수

'20.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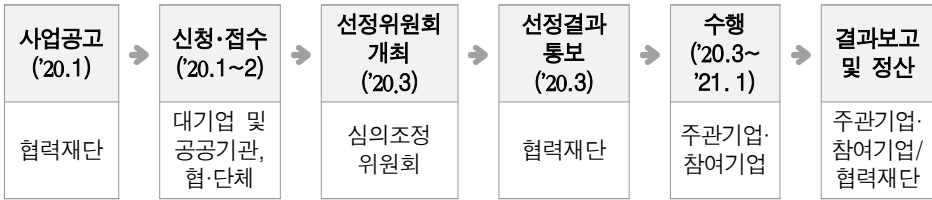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2~5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 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 Q** 가사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A**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 Q** 여성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물어보고 저의 일 같이 해결해주는 곳은 없나요?
- A**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 수도 있습니다.
-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기술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규모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A**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12장

여성기업 지원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276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279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281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283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287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290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292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294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296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298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00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

초기 여성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분야별 전문상담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17개 지역센터 226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 여성기업 경영환경 조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등

신청·접수

해당 지역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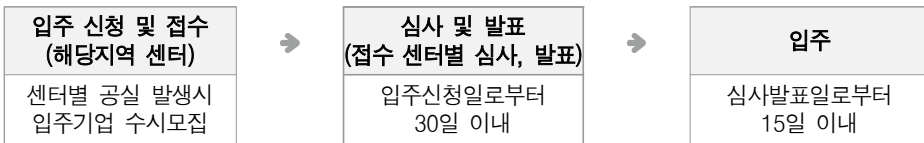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육실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상품화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지원 내용**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43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팔일프라자 5층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충북	(043) 236-6561	285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퀵벤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 Q** 입주시 임대보증금,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 A** 전국 17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에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사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m2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A**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및 육성하여 여성의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원 규모

32개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4, 특별상 2, 입상 20)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여성 창업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시상 및 포상(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투자유치 연계, 교육·네트워킹, 판로·마케팅 지원 등

신청·접수

'20.1 ~ 4월(예정)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기술성 사업성, 경영진, 재무계획성,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 내용

- 언론홍보, 글로벌 창업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강화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대상 창업자금(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0명 내외

* '19년 지원현황 : 10명 신규지원, 지원금액 605백만원, 1인당 평균 6,050만원 지원('19.12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신용등급 1~7등급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인,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자금 → 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심사·평가내용

-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현가능성, 시장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앞, 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등(우편발송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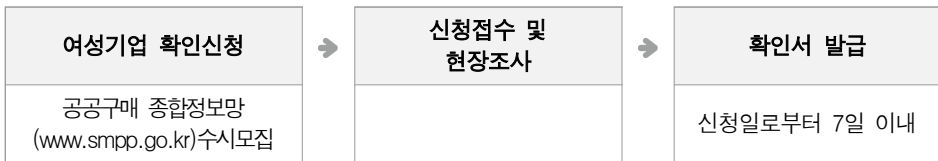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신청 서류

-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지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회	(02) 369-0932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393)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1-7807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신청하시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희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 업무→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용어설명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홍보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입찰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와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19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 (1,607개사, 14,605개 제품 등록)

지원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증대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찰실무교육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제공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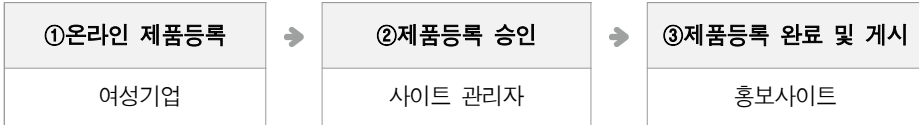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내 입찰실무교육 공고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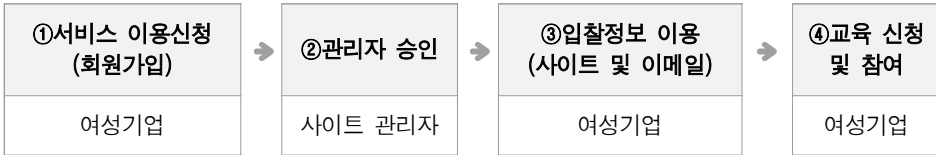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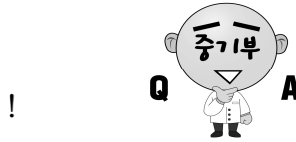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를 의미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38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6-49호)「여성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 여성기업의 TV홈쇼핑 진출지원

품질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150개사

* '19년 지원현황 : 163개사 교육 및 상담회 참가, 16개사 방송 송출

지원 대상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교육, 품평회, 방송수수료,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신청·접수 '20.1 ~ 3월(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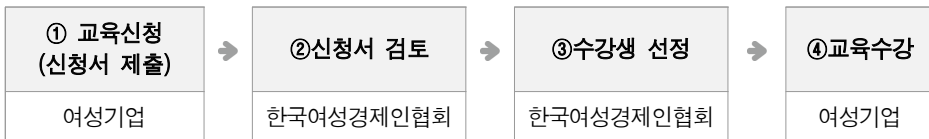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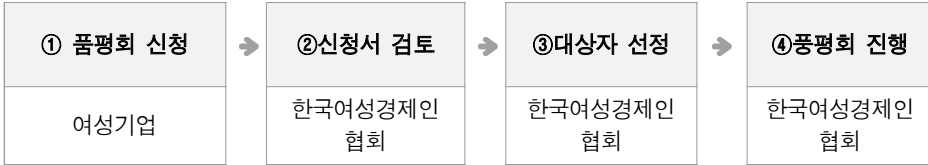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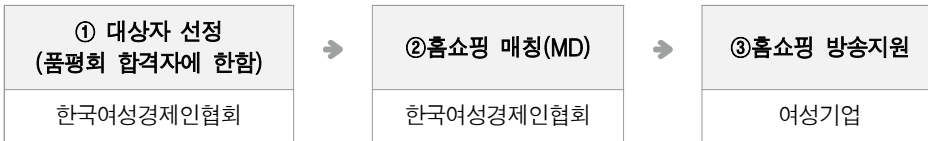
○ 홈쇼핑 입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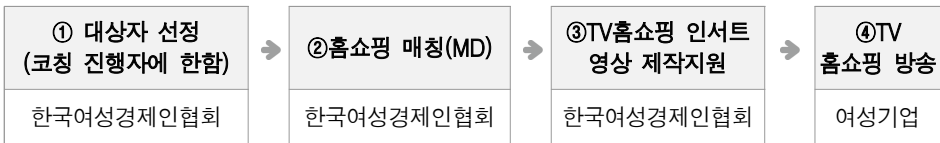
○ 상품품평회



○ 전문가 코칭



○ 방송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수출기업화 25개사, 해외전시회 24개사, 수출교육 100명

지원 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 내용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교육 등

- 수출기업화 : 수출초보기업 20개사, 수출도약기업 5개사
 - 수출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 해외마케팅(개별 전시회 참가 등 현지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패키지 제작 등)
 -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해외지사화 참가
- 해외전시회 참가 : 수출희망 여성기업 24개사
 - 부스임차 및 장치비 80%
 - * 한국여성기업관 구성
 - 현지 마케팅비 80%
 - * 바이어매칭,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방송 보도 등 전시회별 상이
 - 통역비 100%

- 수출교육 : 수출희망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100명
 -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실무 기초교육
 - 해외 전시 마케팅 및 SNS 마케팅 전략 교육
 - 교육비 및 교재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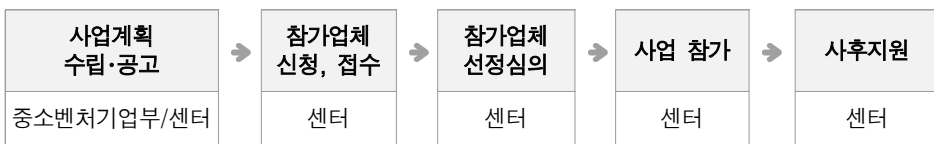
신청·접수

'20.1 ~ 3월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인터넷(e-mail)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 (기본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수출활동계획서 및 수출품목 설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 카다로그 등 제품 소개자료, 재무제표 사본1부(최근 3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최근 2년),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 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지원정책 연계·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여성기업 : 여성을 대표로 하는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
- 전문인력 : 분야별 경력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남녀 무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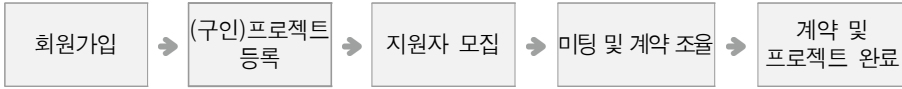
- 프로젝트(구인) 등록부터 완료까지 1:1 전담매니저가 관리
- 일자리지원 제도 발굴 및 매칭·교육·상담 등 구인구직 지원 사업 연계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의 인력검증 및 인재추천 등 자문 컨설팅
- 업무용 소프트웨어(MS오피스, Adobe, CAD등) 클라우드 방식으로 무상 제공
- 결제대금 예치제,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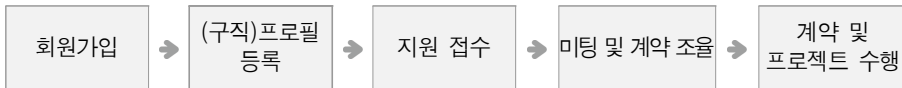
- PC 및 모바일에서 개인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등록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www.iljarahub.or.kr)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 (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a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a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및 해결 창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 DESK 상담위원들이 수시 상담하여 해소해 드리고, 정책 아이디어 건의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17개 권역 운영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 내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경영 분야 애로사항
-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 수출/외환, 해외마케팅 등 해외 수출 분야 애로사항
- 벤처, 투자 등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경영애로사항

○ 신청 및 상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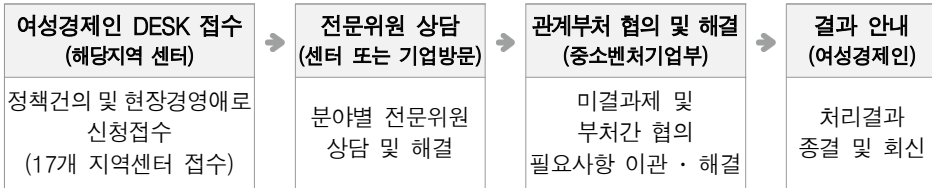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신청·접수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별도 신청서류 없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00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 02-369-0934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34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7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3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055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5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935-2864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3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49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충북	(043) 236-6561	285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325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4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CEO 300명

* '19년 지원현황 : 여성CEO 295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임원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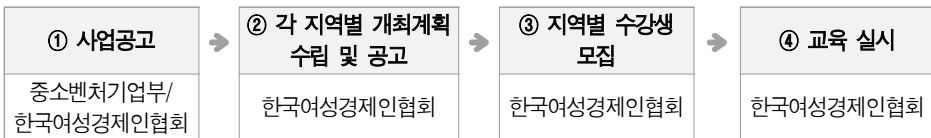
- 경영실무 교육 (HRD, 마케팅, 홍보, 재무, 경영전략 등)
- 협상스킬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 (입학식 및 수료식)

신청·접수 '20. 2~11월 중(지역별 개최일정 상이)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회원가입 → 교육/일자리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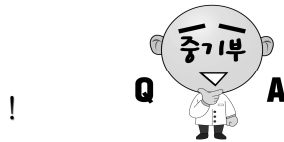
제출 서류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본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역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일자리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온라인 신청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 '19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800명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가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여성기업지원사업 홍보,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20.1 ~ 3월,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제13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302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304
13-3 장애인 창업 육성	307
13-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10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312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314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316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318

13-1

장애인가업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가업 경영안정 지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가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 기업지원정책 등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전국 16개 지원센터, 132개 보육실 운영(6.5억원)

* '19년 보육실 지원현황 : 전국 132개사(6.5억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가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지원 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등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제공

신청·접수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한 연중 수시 신청·접수(공실 발생시)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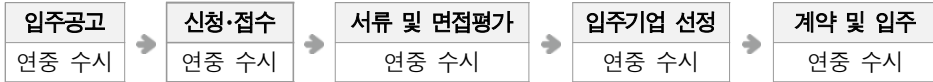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육성실 : 02-2181-6535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구분	주소	연락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0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Q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 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기업
-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기업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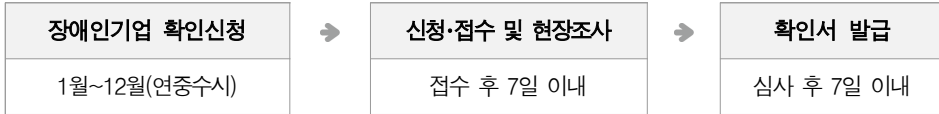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 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1	•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x	○
2	• 동업계약서 1부(공동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제출)	○	x
3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	○	○
4	• 기타 해당사항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5조의4 1항)	해당 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0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Q 조달청(나라장터)입찰 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으신 경우 자동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확인업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13-3 장애인 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 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우수아이템 발굴·포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교육생 1,500명, 아이템경진대회 11명, 사업화지원 65명,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2개소

* '19년 지원현황 : 창업교육 1,500명, 아이템경진대회 11개, 사업화지원 90명

지원 대상

- (창업교육, 사업화자금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 교육 수료 후 창업 멘토링, 사업화 지원 선별 지원
- (아이템경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지원 내용

- (창업교육) 창업의 기초소양 중심의 창업기초 온라인교육
 - 장애인 특화업종에 대한 기초 및 기술교육
 - 전문가와 아이팀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코칭 및 멘토링
- (사업화지원)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자금지원
- (아이템경진대회) 경쟁력 있는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포상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 최대 2년간 입주 지원(설비 및 기자재 등)

신청·접수

① 창업교육 : 연중수시(온라인), ② 사업화자금지원 : 연2회 (3월, 6월 예정), ③ 아이템경진대회 : 3월 예정, ④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 2월 예정

- (창업교육)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 (사업화지원)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아이템경진대회)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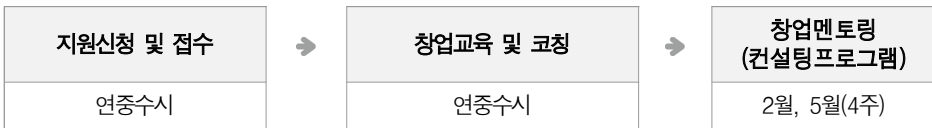
- (사업화지원)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아이템경진대회) 서류평가 → 모의크라우드 펀딩 → 발표평가
 - * 창업자의 전문성,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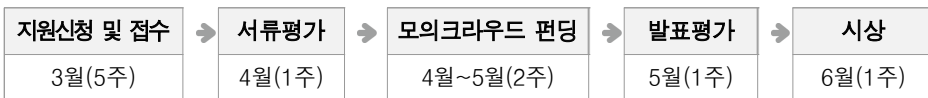
- (창업교육)



- (사업화지원)



- (아이템경진대회)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지역선정	→	설비구축	→	창업자 모집	→	사전교육	→	개소 및 입주
1월(4주)		1월~6월(20주)		2월~3월(4주)		3월~6월(12주)		6월(1주)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0
-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A** 네, 직전년도 이후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19년~2020년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Q**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A**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13-4

장애인가업 시제품 제작지원

|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가업의 기술개발 초기 시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4개사 내외(5.6억원)

* '19년 지원현황 : 24개사(5.6억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가업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모형 및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지원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가업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 개발 및 모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가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신청·접수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접수(start.debc.or.kr)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인가업 확인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A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90% 이내, 소기업은 80% 이내, 중기업은 70% 이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분야는 최대 10백만원, 시제품금형분야는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A코스)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활용 컨설팅 및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약 80개사 내외(1.3억 원)

* '19년 지원현황 : 122개사(2.3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신청·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접수(start.deb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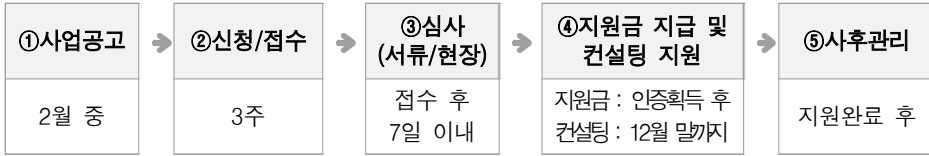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약 35개사 내외(1.3억 원)

* '19년 지원현황 : 38개사(1.3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번역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합도지원(부가세 제외)

구 분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 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물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신청·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start.debc.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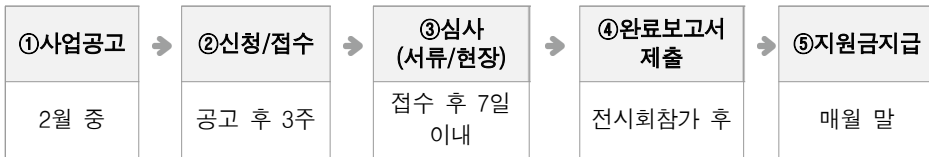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완료보고서
-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국내외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물 운영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입찰정보제공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입찰정보 접근성 제고
 - * 입찰 전문지식이 없는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라인 입찰 강좌 제공
-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물 : 장애인기업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제품이미지 및 기업홍보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공판로 마케팅 기회 제공



신청·접수 연중수시

- 입찰정보시스템(<http://biz.debc.or.kr/bid/>) 접속 후 회원가입
- 드림365(www.dream365.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제출 서류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처리 절차

회원가입



가입승인요청



가입승인



시스템활용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입찰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검색어 서비스, 내 서류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입찰정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입찰실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200개사 내외(4.2억 원)

* '19년 지원현황 : 40개사(2.4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지원구분	인증마크명
①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 • 셀링오퍼 & 인콰이어리 수신지원
② 타겟 바이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바이어 기초시장 조사 • 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③ 맞춤형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SNS 게재

- 무역사절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지원내용	인증마크명
① 항공·교통·통역지원	•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 (교통) 무역사절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
	• (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
② 바이어 발굴 및 검증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
③ 수출상담회 지원	• 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 공간 운영

- 수출교육 :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 대상 무역실무 교육,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진입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셀링 교육(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 추진
 - 수출입 주요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요내용, 주요 무역용어 안내,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무역 마케팅 사례 소개 등

신청·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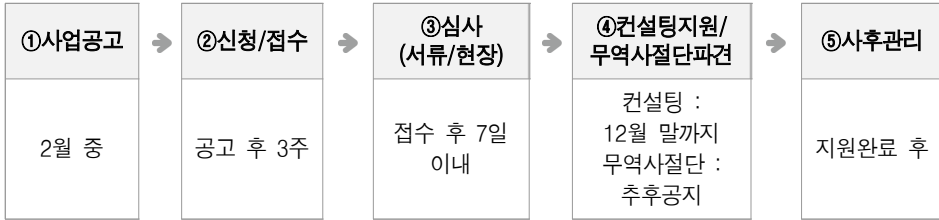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 고용기여도, 수출준비도, 수출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무역사절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제14장

지역기업 지원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322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4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327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332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5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338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청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 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예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연중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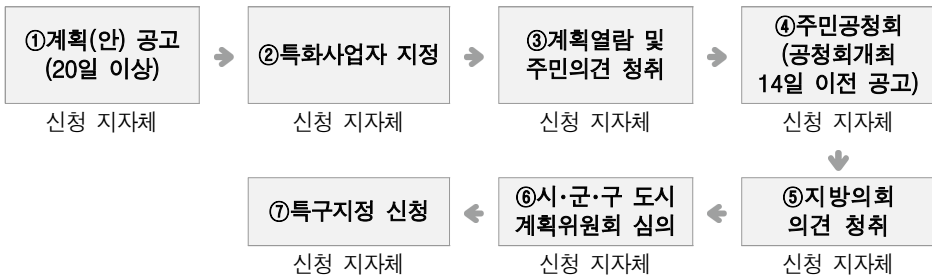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와 협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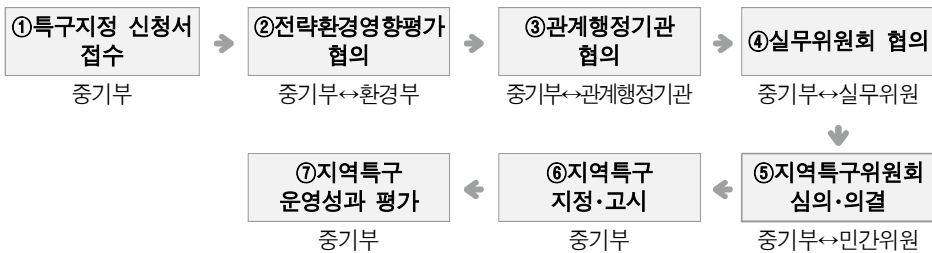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정보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 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05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의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산업·고용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 80개사 내외(예산 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위기대응 4개 지역 총 179개 기업 지원(본예산 64억원, 추경예산 40억원)

지원 대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 (협력업체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사·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수혜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 연계 후속 사업화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다각화 및 기술 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지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컨소시엄지원) 개별기업 이외 기업 간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기획 지원 등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예시: 협동조합, 기업 간 연계모델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존 출연금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

신청·접수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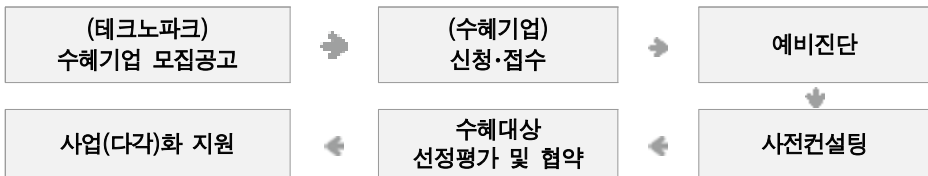
- (주관기관(TP))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수혜기업)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제출 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위기대응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 : 02-6009-374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기기업의 사업분야 다각화·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예산은 컨설팅 6백만원, 사업(다각)화지원 5천만원이며 사업(다각)화지원은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Q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업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한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에 소재하였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 규모

비수도권 4,000개 기업 내외(예산 862억원)

* '19년 지원현황 : 비수도권 4,282개 기업, 총 211개 과제(예산 865억원)

지원 대상

-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혁신기관 선정 후 해당 지역 기업 별도 모집·지원
- (지역혁신 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기업 별도 모집·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혁신기관 선정 후 사업화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스타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수출새싹기업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업지원서비스

-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 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내외, 1,800개 기업 내외)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지역혁신 바우처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상시적 맞춤형 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600개 기업 내외)

○ 시군구연고산업

- 지역 시·군·구내 연고산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5억원, 23개 과제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을 연간 200개사 선정·지원(기업당 최대 5천만원 내외)

○ 수출새싹기업지원

- 지역주력산업 내수 중심 지역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전문 역량을 활용한 밀착형 수출 전주기 지원(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내외, 100개 기업 내외)

신청·접수

- 주관기관(혁신기관) : k-pass 홈페이지(www.k-pas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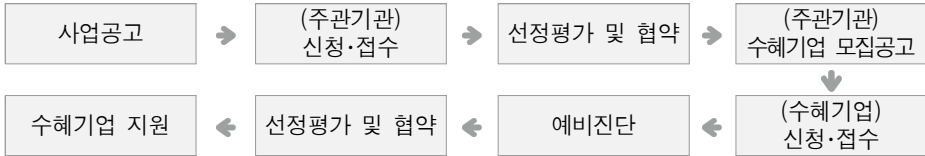
-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기업지원서비스)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혁신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시군구 연고산업)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 절차

○ (기업지원서비스)



○ (지역혁신바우처)



○ (시군구 연고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 (수출새싹기업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기업지원, 스타기업) : 02-6009-37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지역혁신바우처) : 02-6009-374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시군구연구산업) : 02-6009-372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수출새싹기업지원) : 02-6009-374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k-pass 홈페이지 (www.k-pass.kr)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 Q**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기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 A** 본 사업은 기업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후, 해당 주관기관에서 수혜기업을 모집하게 되는데, 2월경부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시군구 연구산업 기 지원 및 산업도 지원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하며, 후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구비해야합니다.
- Q** 지역우수(스타)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매출액 50~400억 이면서,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용어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등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조성하고 연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지원 규모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대상 61개 과제(128억원)

지원 대상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자유공모, 최대 2년, 연 3억원 내외)
 - * '20년 신규과제는 단년(1년) 지원 예정
 - * 동 사업은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한하여 지원, 입주협약 기업의 경우 신청 시 협약서 제출

< (참고)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사도	위치	사도	위치
부산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일원 등	충북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일원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일원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세종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등	경남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등

신청·접수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6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어떤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관기관의 경우 국가융복합단지에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타지역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서 언급된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시·도별 지정된 국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입주 약속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 입주(예정)기업으로 간주합니다.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R&D 지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규모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 대상 493개 과제 (999억원)

지원 대상

-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 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에서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시·도별 3~4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참고)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정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신청·접수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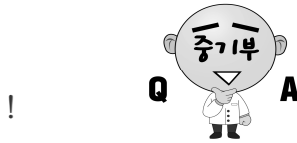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4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나요?

A 그간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오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이 '19년부로 일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2019년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6년간(20~25년), 1조 3,15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

A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

A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제조 중소기업 집중지원으로 기업혁신 촉진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혁신 촉진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예산 58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역별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제외 업종 : 33402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 차등지원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적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사업 기간 최대 1년

신청·접수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사업」 참조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 참조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사업 중 "제조 중소기업혁신 바우처" 사업설명 메뉴에서 "소기업 판단기준"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 1 부



창업기업 지원



-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 국가 언어에 능통하여야 합니다.
-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 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টে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예비창업패키지	346
1-2 창업성공패키지	348
1-3 초기창업패키지	352
1-4 창업도약패키지	354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357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35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361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365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67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372

1-1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예비창업자 1,700명 내외(1,113.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8,403명 / (선정) 2,205명

지원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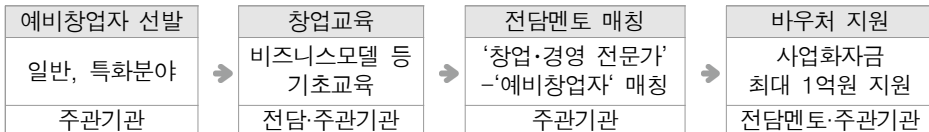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종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 이용자에게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주요 사업절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과 지속적 성장 위해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실전창업교육, 초기창업패키지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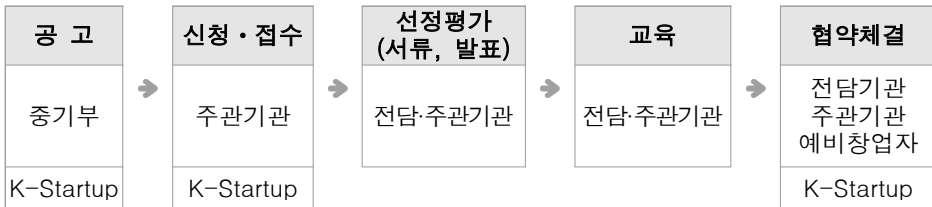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87, 4379, 4352, 438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1-2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CEO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진출지원

제조업 위주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소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1,035명(개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0명(개사) 내외(예산 1,041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00명(팀)(예산 922억원)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CEO 중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중도탈락 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기업) (일부제한)
-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아이টে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 인프라) 창업아이테을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실 운영, 신속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통한 One-Roof 제품개발 지원
 -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 (해외진출)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 (후속 연계지원)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 단계까지 패키지 지원
 - (글로벌화 지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제품·서비스 현지화, 글로벌 인력 채용, 해외 마케팅, 현지 파트너 구축비용 등 지원
 - (글로벌역량진단) 제품·BM/기업현황/인적역량 관련, 입교자의 글로벌 진출 준비도 진단
 - (교육 및 코칭) 전문적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수준별, 진출 국가별 맞춤형 교육·코칭
 - (현지화 지원) 창업기업의 현지진출 및 국내지원 프로그램 동시 운영을 통한 시너지 강화
 - * (해외) 글로벌 창업기관 파견, KSC 및 글로벌 BI 입주, (국내) 해외마케팅, 제품보완, 해외인증 등
 - (혁신성장 지원) 정책자금(융자), 투자유치 등 정책패키지 일관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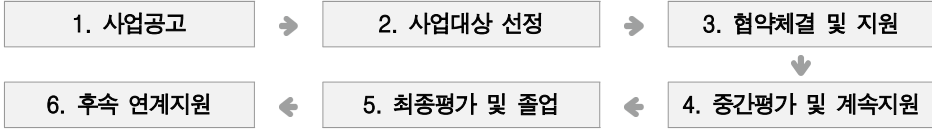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주 소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351, 1544, 1382, 1384
	서울(서울)	02-2130-1431, 1433, 1436~8
	인천(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7~8
	강원(원주)	033-748-0967~9
호남권 및 제주	광주(광주)	062-250-3031~4, 3039, 3042~3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70-4243-0958~9
	제주(제주)	064-759-9649
충청권	충남(천안)	041-589-0832~083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대전세종(대전)	042-862-9937~8
영남권	경북(경산)	053-819-5052~58, 5062
	경남(창원)	055-548-8050~4, 8020, 8062, 8064
	대구(대구)	053-656-8177~8
	울산(울산)	052-276-8937, 8939
	부산(부산)	051-305-9930~1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327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9년 기준)

1-3 초기창업패키지

|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30개사 내외(예산 1,0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1,078개사(일반기술트랙 최대 1억원 / 특화트랙 최대 1.5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특화(실험실/연구중심병원)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 일반기술트랙(최대 1억원), 특화트랙(최대 1.5억원)
-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 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주관기간별 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초기창업기업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트랙을 나누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을 세분화·고도화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 절차**문의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54~8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 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신청 시 나이제한은 없나요?

A 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1-4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지원 규모

1,350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내외(예산 1,2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016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선정지원기업 976개사, 평균지원금액 사업화 1.5억원, 성장촉진 25백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3억원)
- 성장지원 서비스 :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형별 맞춤형 지원 : 데스크리 극복, R&D연계, 혁신성장 등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고기술 중심으로 개편 : 고기술 중심으로 해외전시회를 개편하고, 디자인 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장촉진 강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01, 4482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09, 3991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규모 글로벌 진출 30억원, 희망기업 60개사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2개사, 선정 기업 60개사, 평균지원금액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 다수의 사업재(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적용
-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기 수혜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6주) : 국가별 현지 보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매칭된 1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시장조사, 아이템 현지화 등 밀착지원
 - 정부지원금(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참가비로 약 10백만원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현지 마케팅, 특허 출원, 체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다 준비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20년 3월경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로 상이하며, 글로벌 진출 준비도가 높은 창업기업의 신청·접수 서류를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평가 후 대면 평가 진행

제출 서류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과 : 042-481-6815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부 : 02-3440-7326, 732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 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약 6주) 등을 제공합니다.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 규모 외국인(재외동포) 참가팀 60개팀

* '19년 지원현황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40개팀 선정

지원 대상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해외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국내정착금 및 상금(4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창업공간 및 헬프데스크 등 보육인프라, 창업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등 후속지원

구 분	세부내용
액셀러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60개 창업팀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혜택 부여 약 3.5개월간 보육(컨설팅, 비즈니스 연계, 교육 등) 및 행정 지원
비자발급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ASIS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착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기간 동안 60개 팀에 생활비(각 10,840달러) 지원 데모데이 선정 30개 팀에 정착지원금(각 10,840달러, 3.5개월) 추가 지원
우수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팀으로 선정된 4개 팀에 최대 10만달러 상금* 지급 * (1위) 10만달러, (2위) 4만달러, (3위) 2만달러, (4위) 6천달러

신청·접수 '20.2월 ~ 6월 예정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 신청양식은 www.k-startupgc.or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31-8016-1771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c.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 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TIPS) 총 예산 1,777억원, 300개팀 내외
 - * (R&D) 1,456억, (연계사업) 321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개팀 내외

지원 대상

-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20년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TIP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Post-TIPS) 틱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틱스 프로그램 성공판정 기준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시 “성공”판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Pre-TIPS)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TIPS)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지분투자)를 추가 지원 가능
 -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Post-TIPS)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 (판로확대 등)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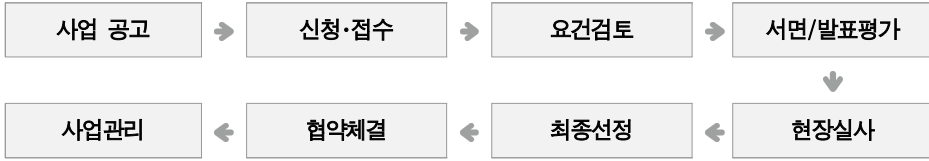
- (TIPS) 상시 접수 (팁스타운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 (Pre, Post)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심사·평가 주요내용) (Pre)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발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Post)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고용창출 효과 등

제출 서류

- (TIPS) 사업계획서(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 (Pre, Post)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 절차

○ (Pre-TIPS 선정절차)



○ (TIPS 선정절차)



○ (Post-TIPS 선정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3, 894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5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www.k-startup.go.kr),
팁스타운 홈페이지(www.jointips.or.kr)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유망 사내벤처팀의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규모 총 200억원, 150개 내외(사업화 지원 100개, 사업화 실증 50개)

* '19년 지원현황 : 운영기업 57개사, 사내벤처팀 133개사 선정·운영 중

지원 대상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내용 운영기업이 발굴·추천한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R&D 자금 등 연계지원

Track-1 (사내벤처팀)	민간(1억)+정부(1억) (1년, 2억원 이내)	▷ Spin off	▷ R&D연계 (2년, 4억원 이내)	▷ 사업화 실증* 연계 (1년, 2억원 이내)
₩				
Track-2 (분사창업기업)	사업화(1억)+R&D연계(4억) (2년, 5억원 이내)			

* 사업화 실증 : 부품·소재·장비 등 분야 전략과제 (TOP-DOWN) 최대 2억, 쏠분야 일반과제 (BOTTOM-UP) 최대 1억원

* 세부내용(지원조건, 선정절차 등)은 운영기업 및 지원대상에게 별도 안내

신청·접수 2020년 1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7, 7303, 7305, 73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응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피노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미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현행		→	개선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TIPS 과제 (성장 단계)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혁신형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디딤돌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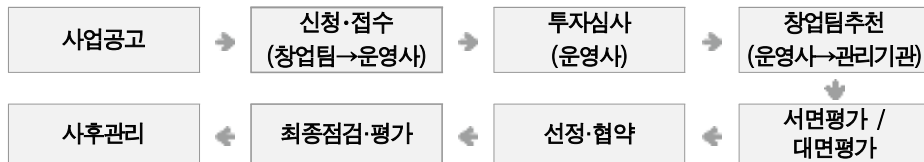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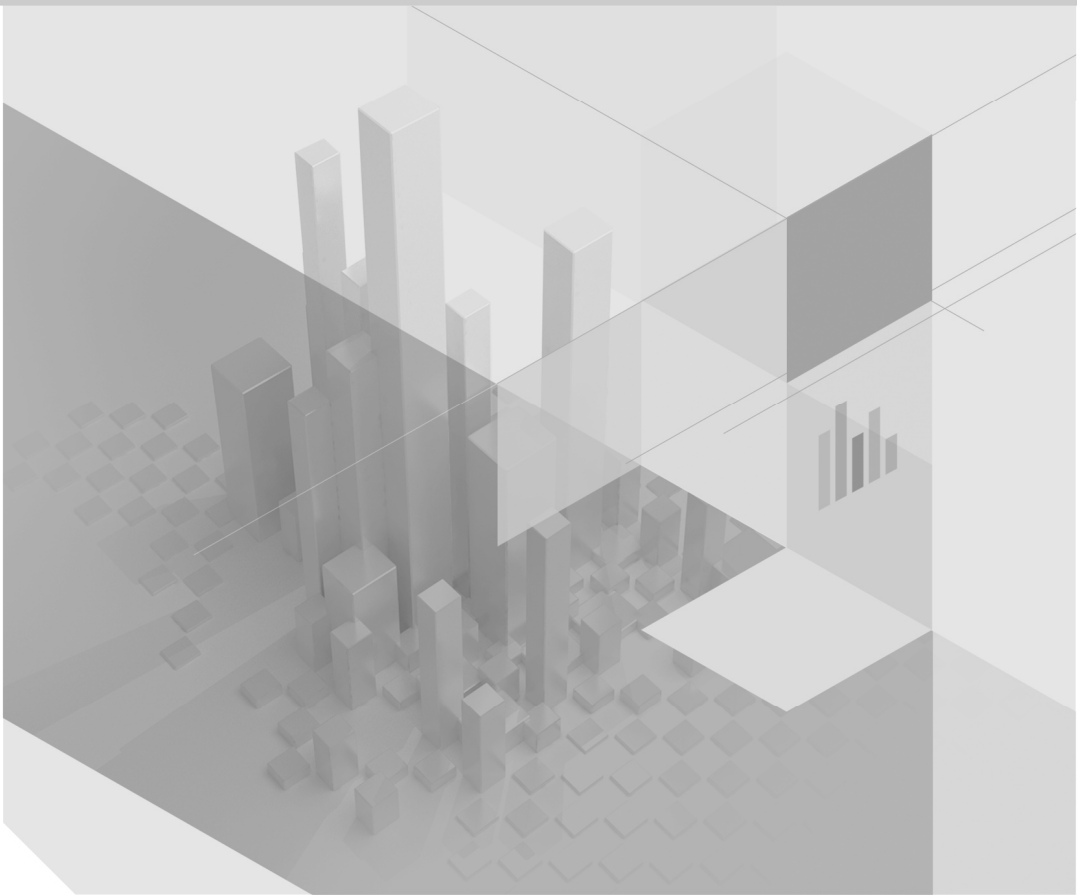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창업저변 확대

2-1 청소년 비즈쿨	378
2-2 창업에듀	380
2-3 메이커 문화 확산	381
2-4 실전창업교육	383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385
2-6 도전! K-스타트업	387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89
2-8 K-스타트업	392

2-1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20년 예산 : 66.68억원, 전국 약 495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495개 기관(초등 144개, 중등 91개, 고등 220개, 특수 25개, 대안 4개, 센터 11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2월 접수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19년 기 선정된 비즈쿨 운영학교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비즈쿨 운영학교의 자진 포기, 평가에 의한 탈락 등 잔여 TO를 확인하여 추가 모집 예정
 - * 비즈쿨 운영학교 잔여 TO에 따라 '20년은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등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1651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1~2, 4464, 4465, 430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2 창업에듀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 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 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 창업자 역량 개발에 필요한 기초 내용은 슬라이드 형태의 강좌 5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45, 4394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메이커 문화 확산

| 메이커 창작활동 등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메이커 창작활동 등 300여개 과제(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320개 과제(62억원)

지원 대상

-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 메이커 인력 양성, 메이커 창작활동, 연구조사 및 성과확산 등 지원
 - 동아리 지원 : 청소년 등 메이커 동아리 활동 지원
 - 메이커 전문교육 : 스페이스 운영자·교원 등 대상 메이커 전문교육 제공
 - 메이커 창작활동 :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 주도적 메이커 창작·복합 프로젝트 지원
 - 이동형 교육 :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메이커 행사 : 메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개최 지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2-4

실전창업교육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위한 실전형(Learning by Doing)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48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60명(팀) 교육, 332명(팀) 린스타트업 선정, 평균 788만원 지원

지원 대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아이디어 개발→비즈니스모델 수립→린스타트업’ 등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아이디어 개발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
- 비즈니스모델 수립 : 아이디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고객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지원
- 시장검증 :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고객반응 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모델 검증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45, 439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초기 창업기업 18,000개사 내외(예산 1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000개사 내외(예산 160억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19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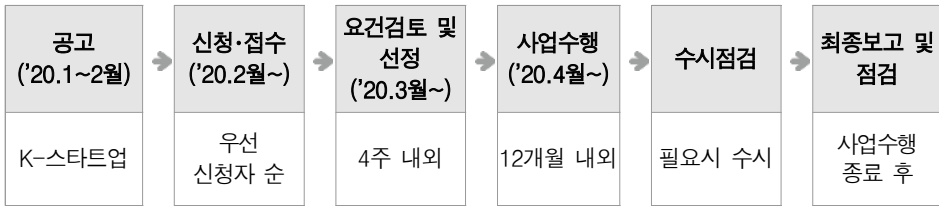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2-480-4481, 447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6 도전! K-스타트업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23.5억원, 20개팀 내외

지원 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창업 아이템에 상관없이 팀원 전원을 합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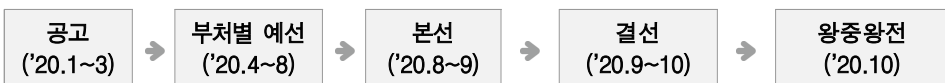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팀 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3.5억원(최고 3억원)의 상금 지급
- 본선 진출팀 중 우수팀에 창업 사업화,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 우대

처리 절차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중기부(혁신창업리그-전체 대상), 교육부(학생리그-학생 대상), 국방부(국방리그-군인 대상)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신청·접수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70, 439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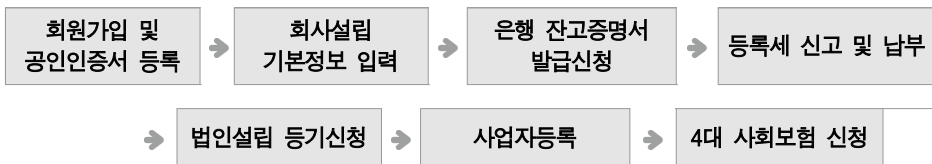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사용가능

처리 절차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16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2-8 K-스타트업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 주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 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전시·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 멘토링·경영지원) ② 창업실행(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재도전) ③ 창업성장(융자·보증, R&D)
 - ④ 창업인프라(창작공간, 입주공간, 지원센터)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윈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2,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제3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394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96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98
3-4 창조경제혁신센터	400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402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404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06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누적 191개소(312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 ('18년) 65개소, 235억원 → ('19년) 63개소(누적 128개소), 285억원

지원 대상

-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장비 구입, 공간 리모델링, 시설 등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구 분	전문랩	일반랩
유 형	전문창작활동 및 창업인프라 연계 사업화 지원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착형 창작활동 체험
지원규모	최대 15억원	최대 1.75억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응투자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투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18~'19년도 기구축 지역(서울, 경기, 대전, 대구, 경남, 광주)은 선정하지 않음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추진역량, 공간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엔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 내외('20년, 44.6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 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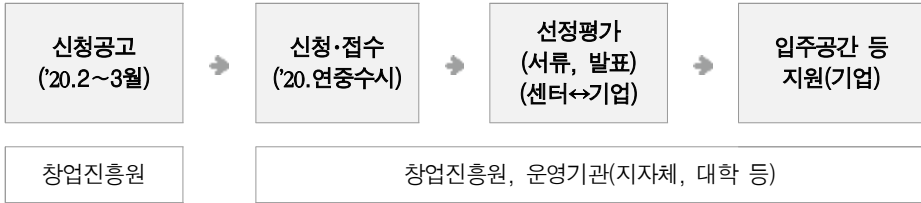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 절차



* '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연중수시)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7, 4423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7
부산	부산시	051-581-4050	인천	인천시	032-726-3883
대구· 경북	계명문화	053-589-7558	강원	춘천시	033-240-9832~3
	달서구	053-643-7994~5	경기	경기	031-259-6079
	수성구	053-784-8261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4~9605		의정부시	031-850-5815~7
광주· 전남	광주시	062-236-3262	고양시	고양시	031-936-7485
	전남	061-280-7499, 7494		경남	055-751-3610
충북	청주시	043-254-8666	경남	영산대	055-380-9573
	충북	043-217-1311~2		김해시	055-346-8440
충남	당진시	041-354-8558	전북	익산시	063-841-7480
대전	대전	042-939-4740		전북	063-717-1321
제주	서귀포	064-732-0039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지원 규모 전체예산 12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운영비 지원 190개 BI, 보육프로그램 지원 82개 BI, 리모델링 지원 7개 BI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 3년 미만 (예비)창업자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경영평가 기본요건 미충족(60점 미만) 창업보육센터는 제외

지원 내용

- 초기(예비)창업자 : 창업 사무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접수

- 초기(예비)창업자 : 연중 수시(창업보육센터별 상이)
- 창업보육센터 : 2020.1월 ~ 2월(운영비 지원, 보육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접수 없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보육센터 : 입지 및 건립계획, 사업추진계획, 기업지원 계획 등

제출 서류

- 초기(예비)창업자 : 입주 신청서 등
- 창업보육센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투자자금 조달 협약서, 창업보육 사업 계획 협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사)창업보육협회 : 042-346-9622, 9607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www.bi.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4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98.12억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e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0, 1692~1693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2-480-4410~4414, 4416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0005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015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64~7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28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8138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예산 62억원

* '20. 1월 중 입주공고 예정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기타 창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교육, 전문가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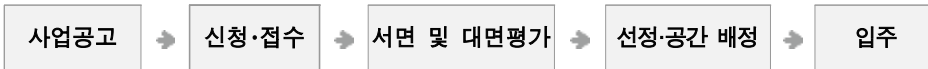
구 분	지원내용
통·번역센터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준운영팀 : 031-5182-9102~5, 910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70명(51억원)

지원 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 * 전통적인 골목산업 뿐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창업자

지원 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초기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BM, Branding, 디자인 등)
- (엑셀러레이터 연계 성장 지원) scale-up단계, 플랫폼 등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엑셀러레이터가 선별하여 先투자(1,000~2,000만원)하는 경우에 사업화 자금을 일정비율(2~3배)로 매칭·지원 및 보육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공모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0개소 내외('20년 53억원)

지원 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원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가 상담지원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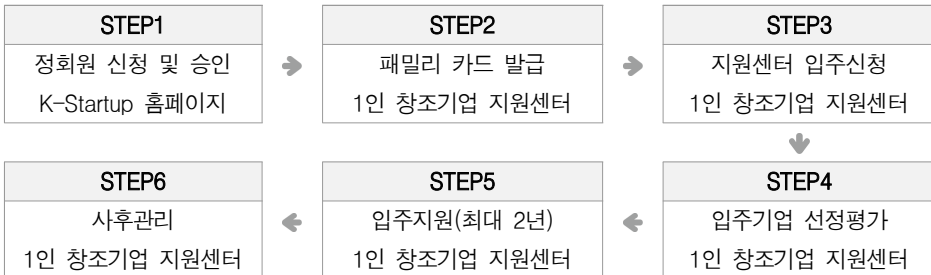
정회원 승인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47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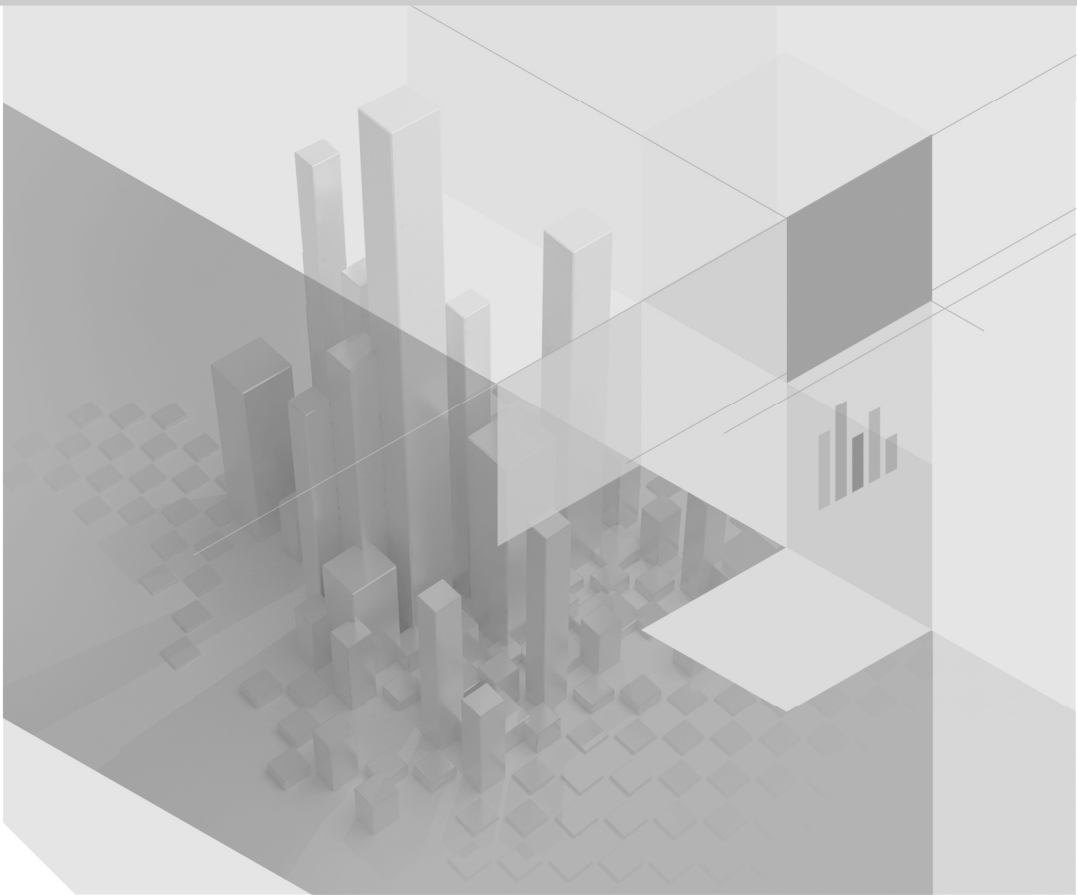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 지원자금	412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415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417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419
4-5 재도전성공패키지	421

4-1 재도약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100억원 규모('20)

* 사업전환 960억원, 구조개선 240억원, 재창업 9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원요건
사업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료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구 분	지 원 요 건
재창업	①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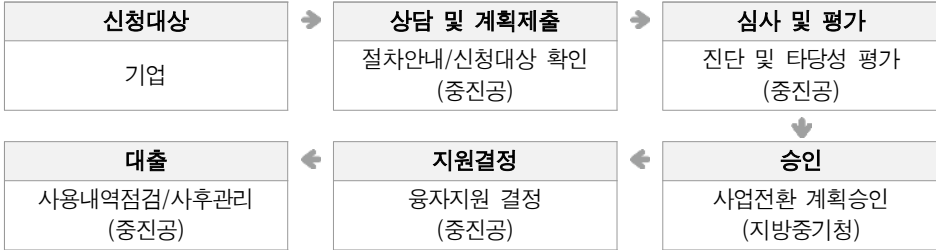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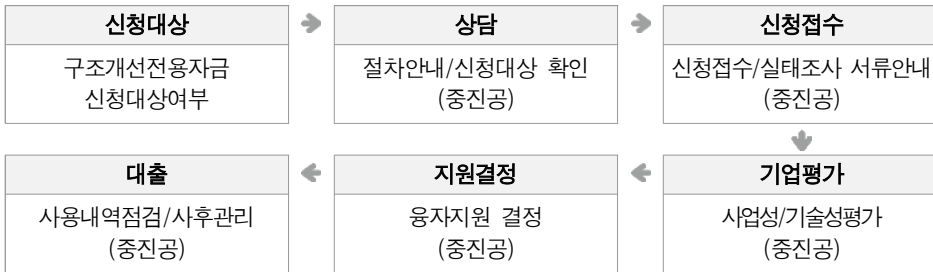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등
- 구조개선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재 창업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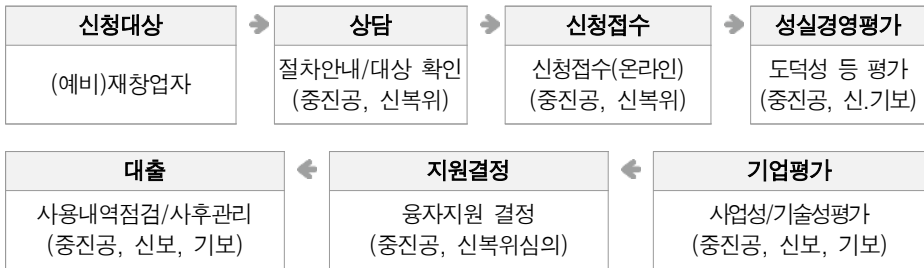
① 사업전환



② 구조개선



③ 재창업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8965, 4530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 96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정리 및 기업회생 정보제공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50여개 기업(예산 9.5억원)

* '20년 지원현황 : 275개 기업 선정완료, 기업당 평균 2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 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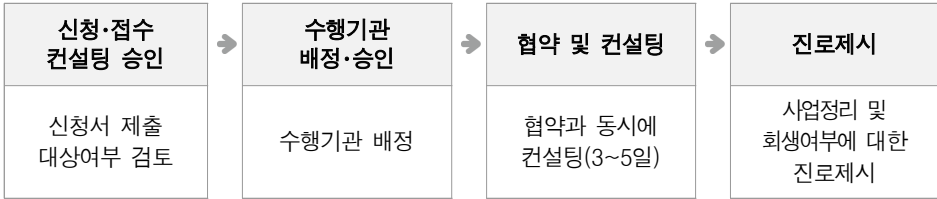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 전문가: 회계법인 전문 회계사 및 사업정리 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35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기업회생 정보제공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경영위기 기업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사업, 마케팅, 생산,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여개 기업(예산 10억원)

* '20년 지원현황 : 30개 기업 선정완료, 기업당 평균 2,4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 C, 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 ②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 ③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시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 ④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 ⑤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 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⑦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과제분류	컨설팅 내용
영업 마케팅 구조개선	거래처 및 산업 제품 서비스 분석, 마케팅 전략, 수출지원, 품목확장 및 다각화 전략 등
생산 / 구매 / 관리 구조개선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화, 원가비용 절감방안, 재고관리 등
조직 구조개선	인력효율화, 인건비 절감, 인사체계 개선 등
재무 구조개선	증자 등 자금조달, 유휴자산 매각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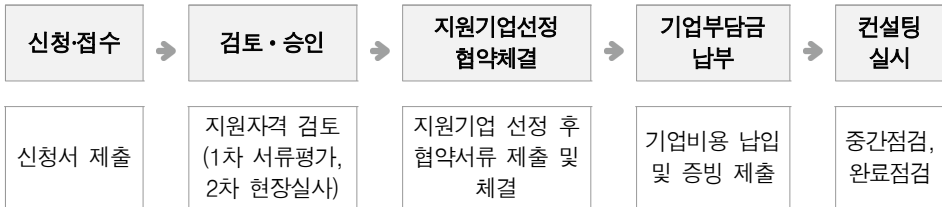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4530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운영기관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본부 070-7458-849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90여개 기업(예산 27억원)

* '20년 지원현황 : 95개 기업 선정 완료, 기업당 평균 2,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 협업법원 : 서울회생,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지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 컨설팅 범위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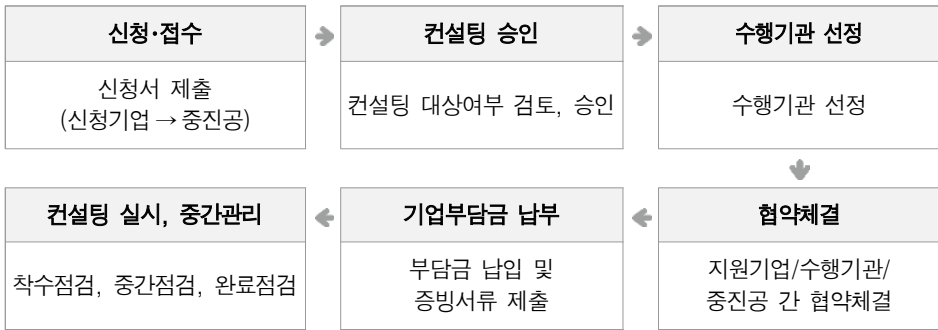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성실실패 기업인에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총 1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7개사,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사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실패원인분석,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재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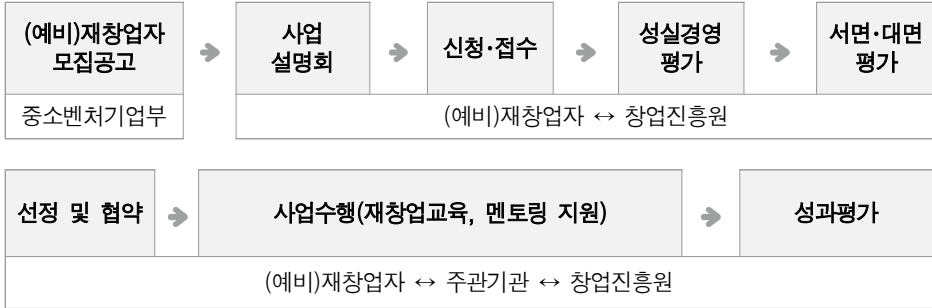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 042-480-4434~38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5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 1 부

소상공인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3,660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53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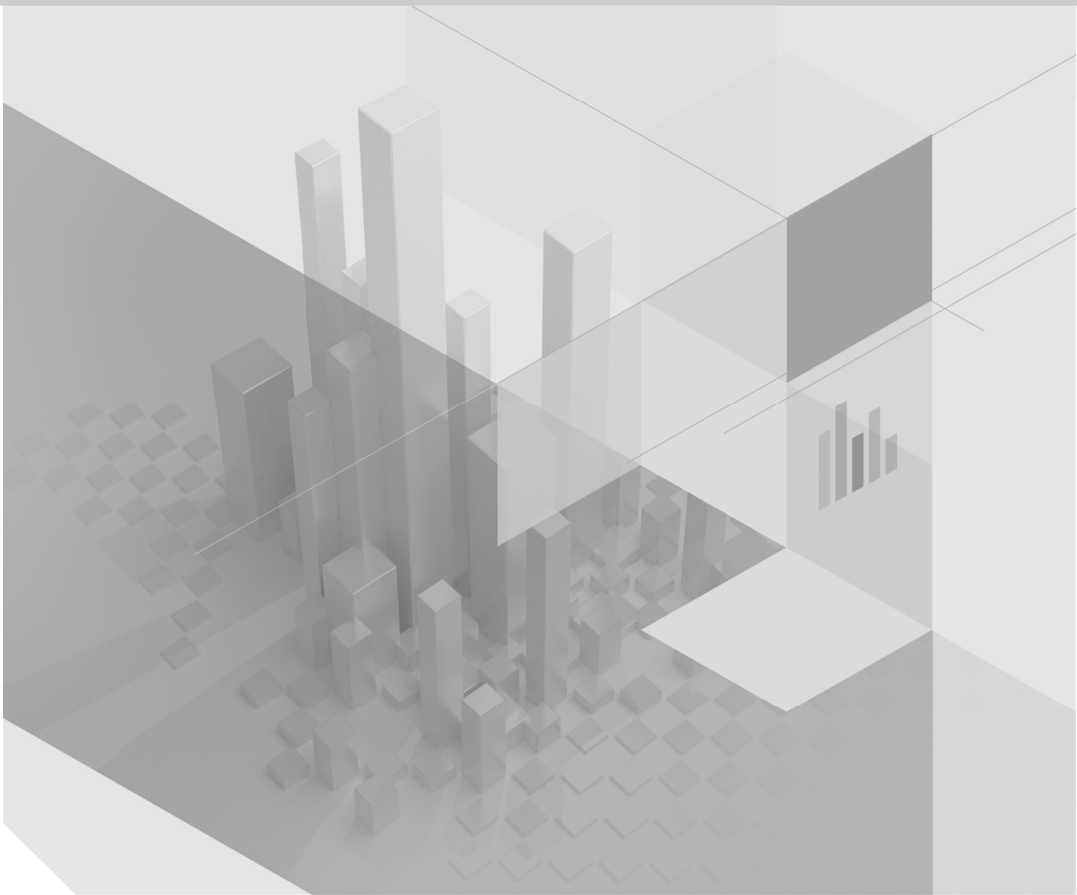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30
1-2 상권정보시스템	433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436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438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450명 내외(예산 166억원)

* '19년 지원현황 : 388명(예산 187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점포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창업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

- 창업 기초교육 및 상품화 지원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MD 연계하여 제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약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 (약 16주)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20.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2개지역, 기수 당 225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작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 인천, 경남, 전북 및 하반기 신설되는 3개 지역의 경우 별도 계약한 교육장 활용

- (창업자금)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 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 검사 결과표 등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기초교육 및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	사업화지원
11기	'20.1월중 ~'20.2월중	'20.2월말	'20.3월초 ~4월초	'20.4월말 ~8월말	'20.9월초 ~12월말
12기	'20.5월중 ~'20.6월말	'20.7월초	'20.7월중 ~8월말	'20.9월초 ~12월말	'21.1월초 ~'21.4월말

* 12기 사업화 보조금 지원의 경우, 2021년 예산으로 지원 예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고객센터: 1357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네,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A** 네, 사업화 지원 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총 사업비의 50%, 예정)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 예시 :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1-2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업종별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소국민(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 내용

- (상권분석)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정보 등의 상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 소분류 83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추이, 유사업종 추이, 전년대비 증가·감소 업종, 음식업종 업소 변화 추이, 전년대비 업소수 비교, 업소변화 추이, 한식업종 업소수 증감 추이, 한식/백반/한정식업종 업소수 증감, 중·대분류 업종별 창/폐업을 및 업력 통계, 선택업종·유사업종·시설
매출	월평균 매출액 비교, 건당 매출액 비교,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중분류 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주말/요일별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인구	인구 구성, 주거인구·직장인구·유동인구 현황,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세대 규모별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면적별 세대수, 아파트 기준기사별 세대수, 아파트 동/세대수 추이, 선택상권의 배후지 인구 변화 추이,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
지역	주요 집객시설 현황·추이,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지역별 점포 평균 임대시세 추이, 학교시설 현황, 교통시설,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 기업체수 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갈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곰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쟁컨설팅) 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5)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한식/백반/한정식,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	---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3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신규 제공 서비스〉

- (창업자가진단) 예비창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 (프랜차이즈정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의 위치정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정보 제공
 - * 프랜차이즈 상호명, 평균매출액, 임직원수 등

이용 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 : 042-363-7152,7154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6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응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지원 규모

1,000명 내외(발굴 6.36억원, 연계자금 150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00명(1인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응자 지원

* 응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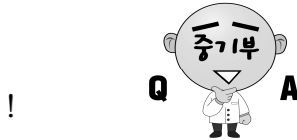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처리 절차**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A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성공불용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소상공인 사업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소상공인 전체

* '19년 지원현황 : 159,638명 수료

지원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먼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문의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440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42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44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46
2-5 나들가게 육성	449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52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455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58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461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463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465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67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69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471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73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476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7,000명 내외(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20,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 (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7,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전문기술교육



○ 경영개선교육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 용어설명

민간교육기관 : 학원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점포운영·경영진단·세무·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0개 업체 지원(지원예산 79.8억원)

* '19년 지원현황('19.11. 기준) : 4,551개 업체에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진단컨설팅 시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2~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컨설팅 자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 A**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분야 등이 결정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Q** 컨설턴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자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시스템을 통해 컨설턴트의 경력 등을 확인하신 후 직접 선정이 가능합니다.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예산 1억원)

지원 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금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법인사업자사업 수혜업체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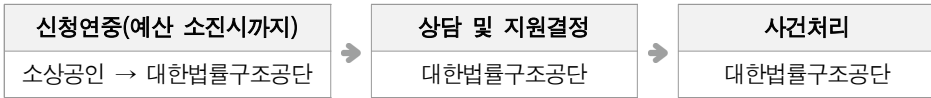
신청·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4,604,000원, 4인가구: 5,649,000원 <2018년 기준>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50개 조합(207억원)

* 공동사업(250개 내외), 판로사업(200개 내외)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회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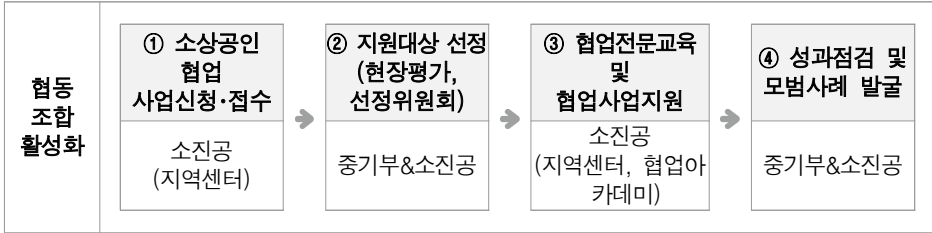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 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 7720~5),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 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2-5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00여개 나들가게(지원예산 52억원)

- 점포경영 지원 : 1,200개 내외 나들가게
- 나들가게 선도지역 : 10개 선도지역, 500개 내외 나들가게

지원 대상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① 점포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부진점포 회생지원(자부담 10%),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점주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접수

'20.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규개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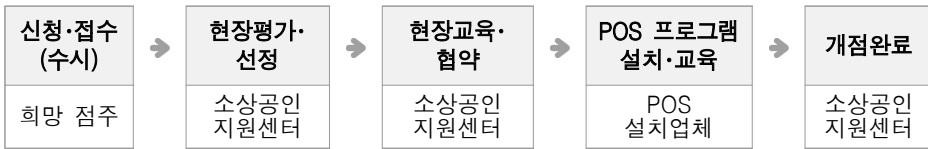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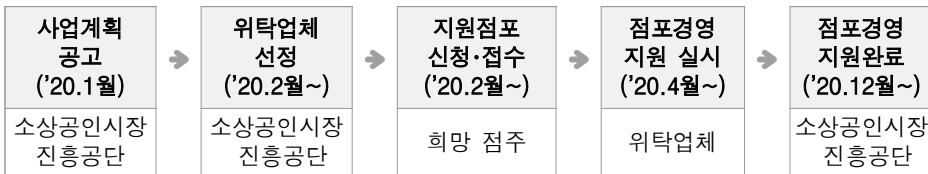
- 신규개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문의처

-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3952, 4583



!

Q 나들가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 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내외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가맹점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15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업력 최소 1년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항목	내 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60백만원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 코드 등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팸플릿,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신메뉴 개발	시장조사, 현지화, 소비자 기호조사, 등록·인증 등	
	가맹점 교육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 가맹점 운영관련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기타분야 신청가능)	- 시스템 체계 구축	선택형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 가맹점 교육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② 홍보, 교육(예비가맹창업자)	-	

신청·접수

'20.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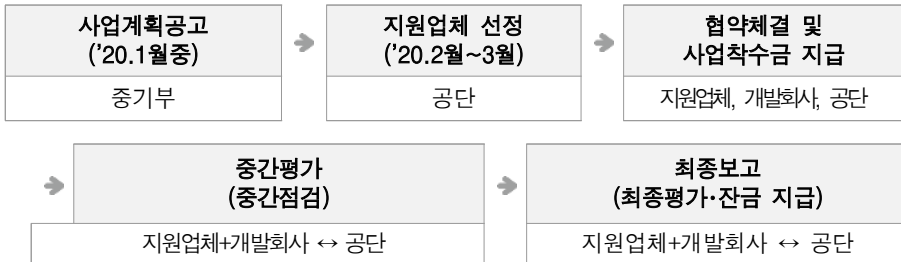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재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급	지원 내용	비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I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급	지원 내용	비고
I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20. 2~3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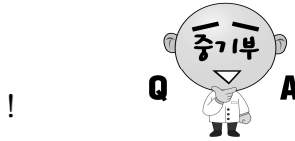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센터 설치·운영(예산 131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 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기술·경영 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업환경개선 : 소공인 작업장의 환풍시설, 분진제거기, 집진기, 위생 작업대, LED 조명 등 설치·교체 지원(45억원)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신청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04,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76-2692
8	광주	동구(총장동)	의류봉제 (한복)	광주 총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8
9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3
1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1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 (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3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4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5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2050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0
17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족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8	서울	종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19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0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2-2634-7727
21	경기	양주시(남면)	섬유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	031-860-0994
22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4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5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2-865-9213
2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1
28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2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31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대구 평리 의류 봉제 센터	053-721-7442
32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031-454-4881
33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 대봉 의류 봉제 센터	053-783-3399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김해 진례 도자 센터	055-345-6161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5.2억원)

* 지원현황 : 전국 23개 집적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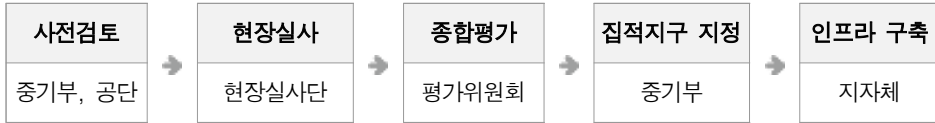
지원 내용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2/3 지원
(1곳당, 14.4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2, 79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61개사 지원(예산 80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80%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인증 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조사·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해외배송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항목별 한도를 폐지(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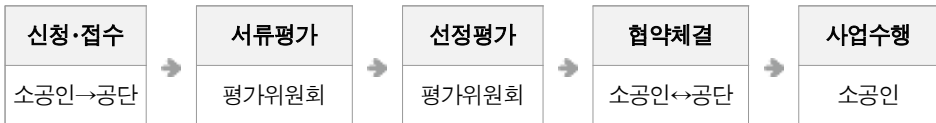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08, 79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개사 내외(예산 3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69개사 지원(예산 39.2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 내용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정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신설
- 스마트공장 전문기관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공장 인식변화 및 활용역량 제고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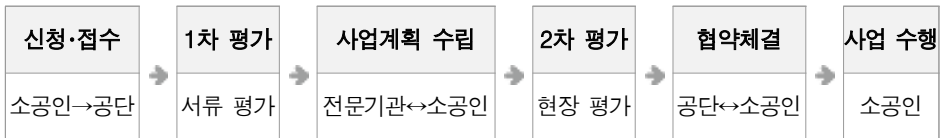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사·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복합지원센터 구축 2개 내외(예산 50억원)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 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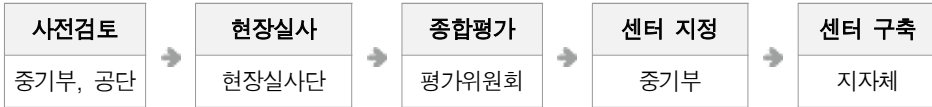
지원 내용 소공인 집적지에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신청·접수 '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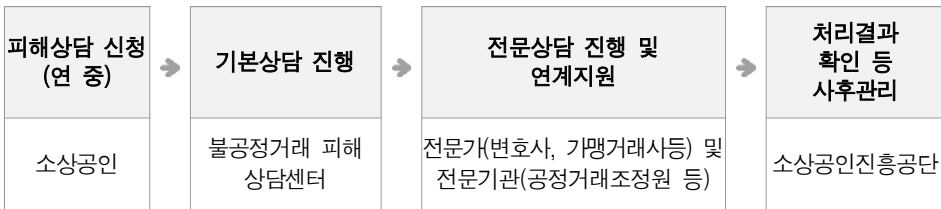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62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전국 62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http://www.semas.or.kr>)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4, 7742



Q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광고행위, 수위탁/하도급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반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소상공인 판로지원확대를 위하여 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313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홈쇼핑 입점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 지원('19. 200개사 → '20. 300개사)
- (V-커머스) 민간 쇼핑몰(예: CJ 쇼크라이브 등) 입점,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19. 200개 → '20. 1,000개)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쇼핑몰 메인화면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19. 25회 → '20. 100회), O2O 플랫폼에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 (해외 채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19. 50개사 → '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105개국)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PD, 편집)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 교육('19. 200명 → '20. 500명), 콘텐츠 제작 지원('19. 100개사 → '20. 1,000개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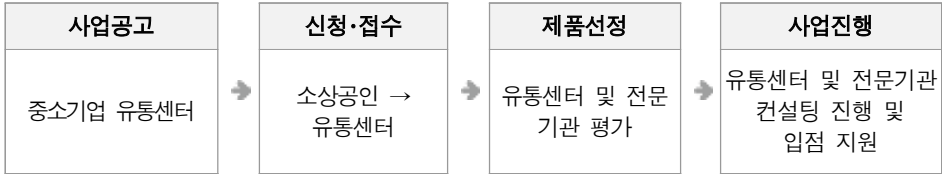
'20.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카달로그 등),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2
- 소상공인마당 : <http://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 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3990, 45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팀 : 042-363-7691, 7696~7699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01~5929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페이,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도 결제할 수 있는가요?

A 아니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 (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 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계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융)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공고문 참조)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20년도 우대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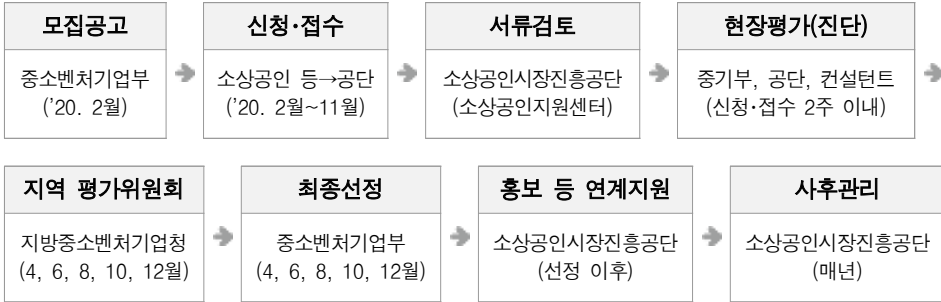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신청기간) '20.2월~11월말(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3	증빙자료(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해당부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
4	사업자등록증	1부	업력, 업종 등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5/798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3914/3916),
홈페이지(www.mss.go.kr)



-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희망리턴패키지	480
3-2 재창업패키지	483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85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87

3-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45억원, 25,000여개 업체

* '19년 344억원, 22,500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채무 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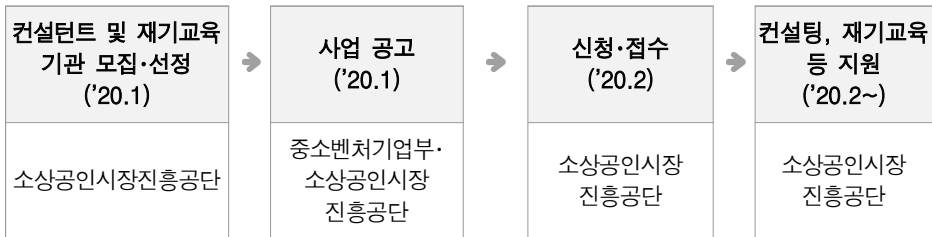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 취업성공패키지 : 3단계(취업상담 →취업훈련→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만 18~69세,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 법률자문 지원 : 폐업시 각종 법률(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급 지급 등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 법률자문 지원 규모 : ('19) 500건 → ('20) 3,000건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7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3-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75억원, 6,000여개 업체

* 19년 75억원, 6,000개 업체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과정당 60시간)
- 재창업멘토링 : 재창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1588-5302, 042-363-7827



Q 재창업패키지사업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
 -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가입 방법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앱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제금 지급 지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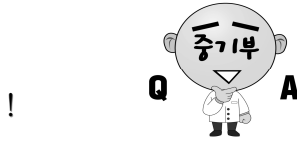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 기준이자율 : 폐업·사망시 2.7%, 노령·퇴임시 2.4%(‘20.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공제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3.4%(‘20년 1분기)로 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22.06억원, 9,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

처리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7867
- 국번없이 1357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소공인특화자금	490
4-2 성장촉진자금	492
4-3 일반경영안정자금	494
4-4 청년고용특별자금	496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498

4-1 소상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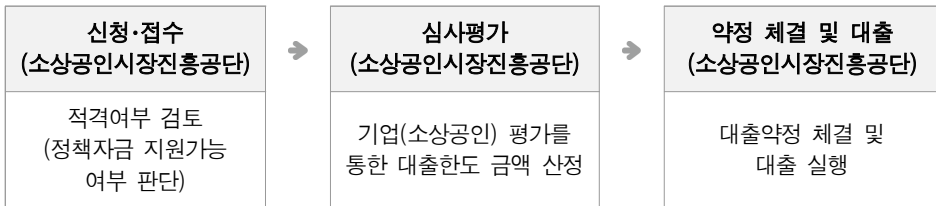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2 성장촉진자금

|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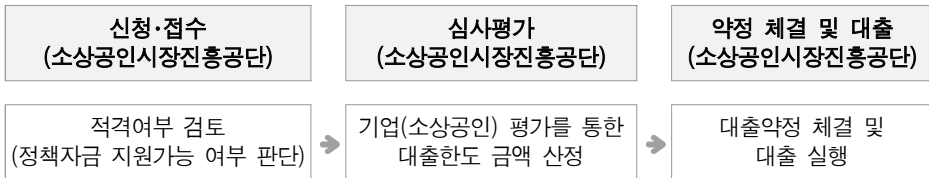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게시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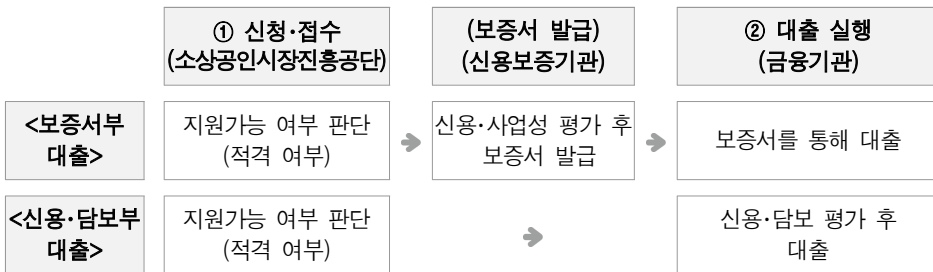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11,025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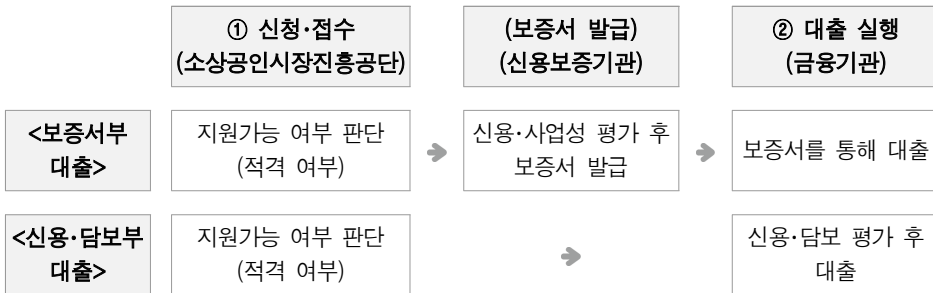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4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4,475억원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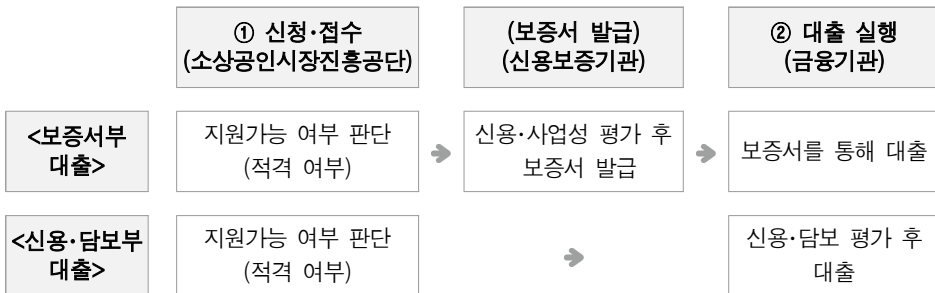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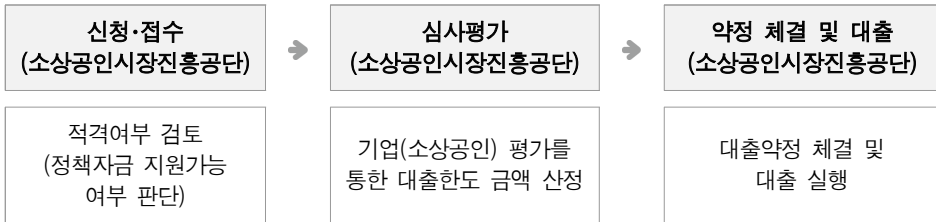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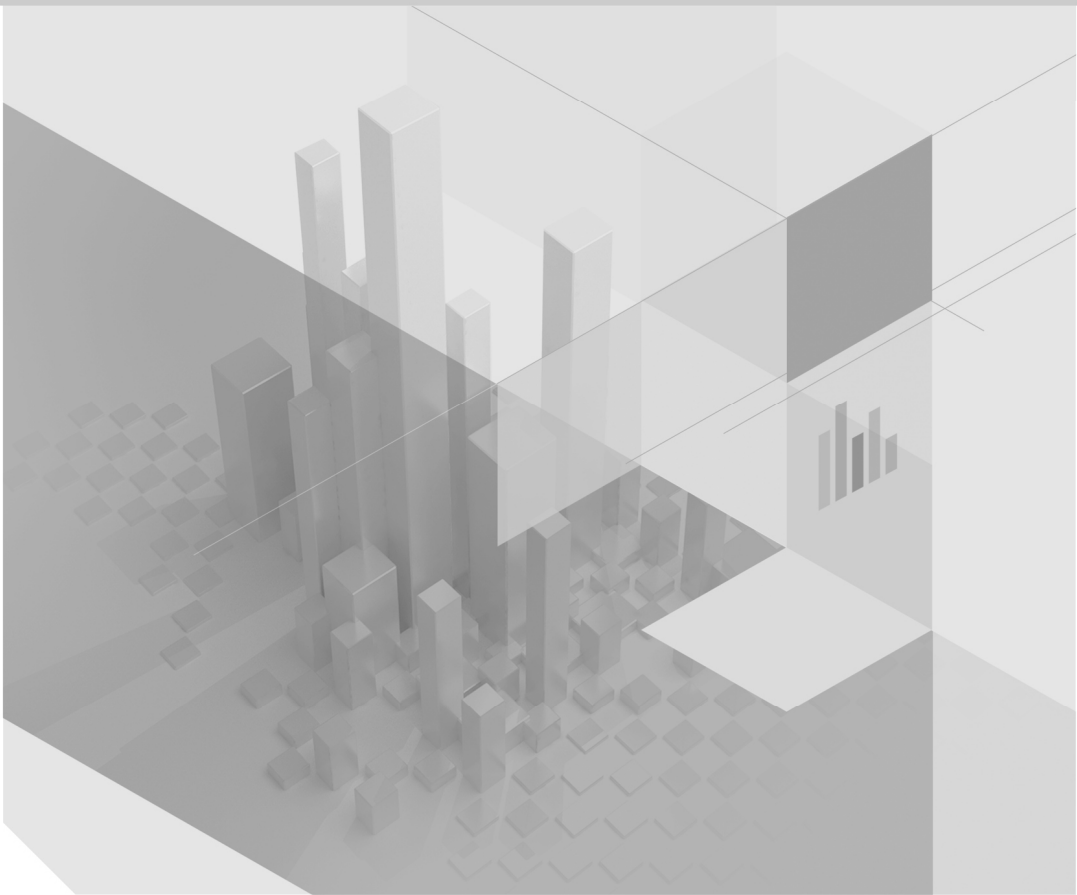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2부



전통시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5장

전통시장 지원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04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07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509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512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14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518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522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525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528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30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시장(1,424억원)

* '19년 지원현황(1,469억원) : 73곳(주차장 건립지원), 28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
- 지역과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설계·디자인 공모 의무화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20.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 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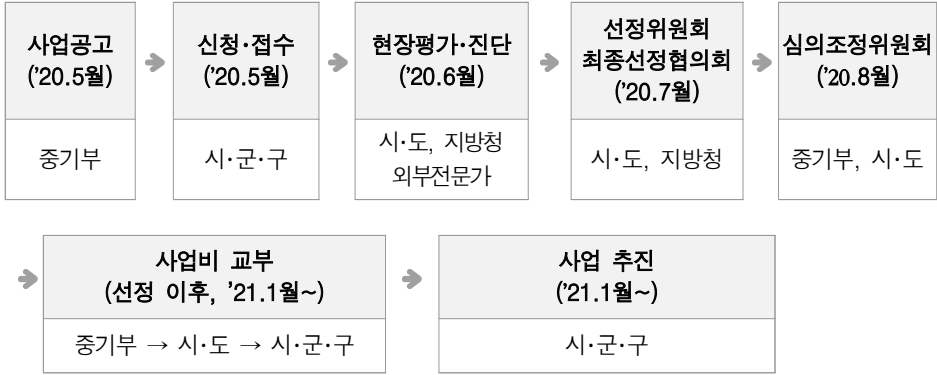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 '19년 지원현황 : 50개 시장 ('19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선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지자체 부담가능)
- 시장당 5억원 이내(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20.1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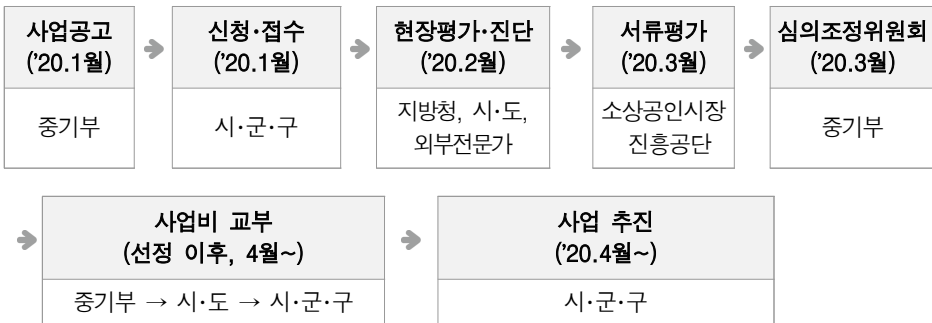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 바우처 지원 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곳

-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

바우처 등급	가	나	다
바우처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 바우처 활용 범위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PPL,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지원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지적권 등록,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의 시장 자문
	홍보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배송 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매니저 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 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비 일부 보조 등

- '21년 지원대상 신청·접수 : '20. 5~6월 예정
 - * '20년 지원대상은 '19. 9월 조기 선정 완료
 -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승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1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Q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는 사업·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교육기관, 이벤트 회사 등)에 제시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에 지급)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

발행규모

'20년 2.5조원 규모 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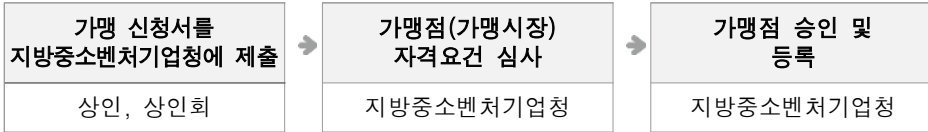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 · 신한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3개 간편결제사 앱(APP)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농협, 체크페이 · 비플 · 머니트리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s://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 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 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46, 7632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30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20년도 예산 292억원)

- * '19년 지원현황 : 신규 104곳 포함 179곳, 361억원 지원(국비 기준)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신청접수예정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20년 신규 2곳 이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20년 신규 44곳 내외-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에서 도약하는 시장 포함)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20년 신규 30곳 내외)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20년 신규 20곳 내외)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국비 100%)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지원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전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지원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등)을 지원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 공모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은 곳
- ✓ 사업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자세한 내용은 '20년도 공고 확인)

지원 내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 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 관광형시장) 사업 2년 연속지원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당해연도 상반기 공모하여 사업 착수 및 추진
- (올해) 전년도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청·접수

매년 5월경 다음년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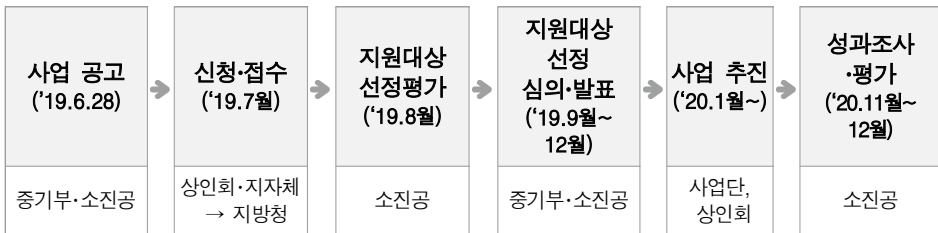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등)
 ②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 서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사업 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6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Q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
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3곳 내외(22.5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7곳 내외(53.5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19년 지원현황
 - * 청년몰 조성 : 6곳 12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상인 도약지원 : 218명 (1인 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자부담 0~10%)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2곳 8억원 (활성화 최대 3억원, 확장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몰 대학협력 : 12곳 16억원 (1곳 당 1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 대상

-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이며,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

*** 지원우대 사항(청년물)**

- 창업보육형 청년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및 상권르네상스 선정지에 포함된 경우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중이거나, 설치한 곳

지원제외(청년물)

-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 공고일 기준 시장내에 청년물(국가, 지자체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지원제외(청년물 입점 청년상인)

- ✓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물)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의 참여자
-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물)에 선정 후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지원 우대사항(청년물 입점희망 청년상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

지원 내용

- 청년물 조성(물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디자인 개선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3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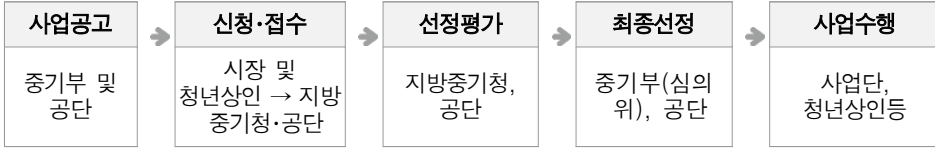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 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78, 7774
-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2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지원대상인 전국 청년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청년상인육성사업- 청년몰조성에서 전국 청년몰 지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19년 지원현황 : 총 12곳('18년 3곳, '19년 9곳) 선정하여 지원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정한 기한까지)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필요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지자체 ·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 · 커뮤니티 · 청년 창업, 힐링(문화 · 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 (기존) 상권당 80억원 → (변경)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총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신청·접수

'20년 상반기 공고예정

-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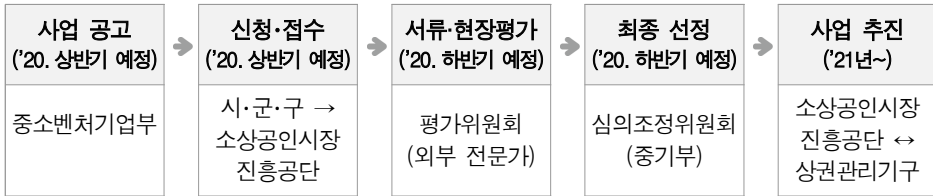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협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1, 7779, 75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 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 Q**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로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로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로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1599-5460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처리 절차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62개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2,458백만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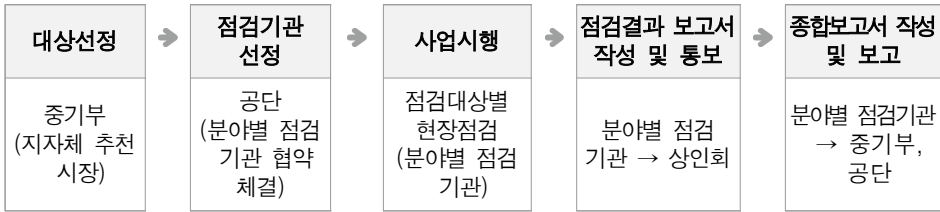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97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 규모

2,3만점포(132억원)

지원 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및 민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법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나요?

A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점포수가 전통시장 영업점포수의 30%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3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멘트로 소방서(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비

주소형감지기: 화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감지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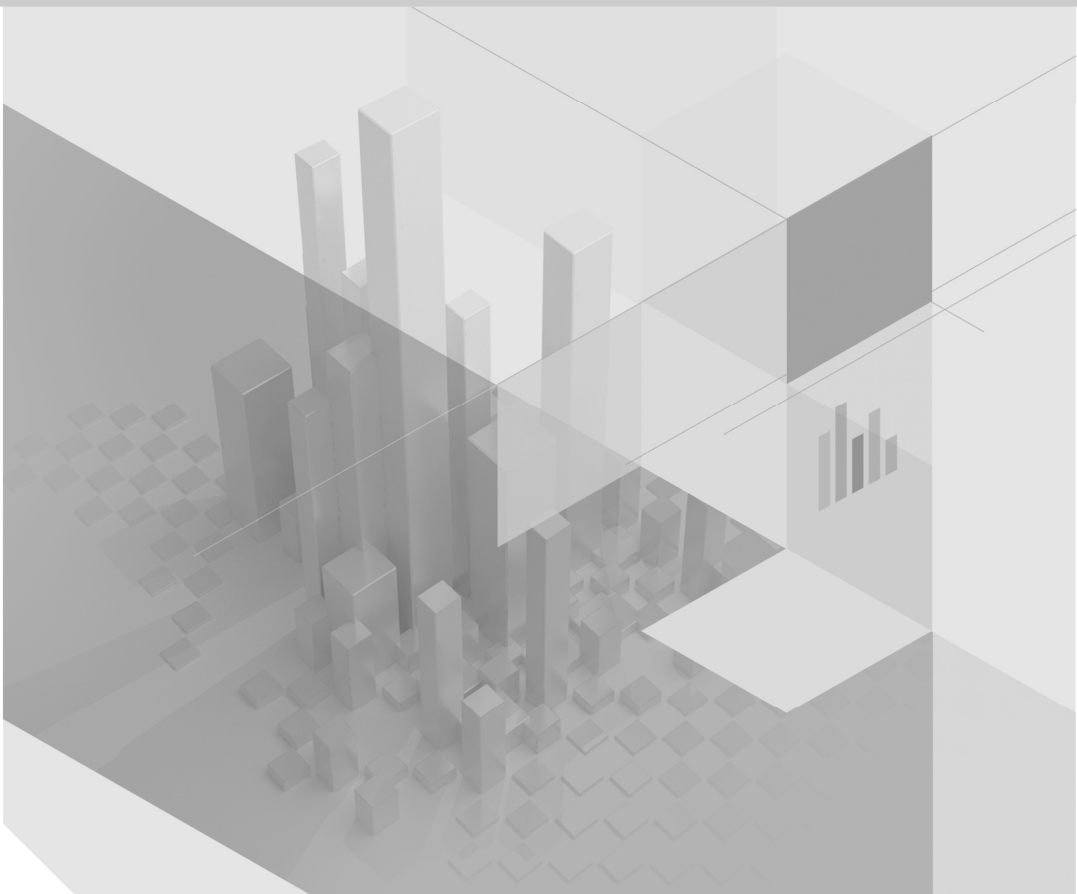
제3부



보증지원 제도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6장

보증지원 제도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536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539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42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544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547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549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551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554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557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560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26.4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19 11월
보증공급	건 수	375,150	448,844	464,329	478,419	497,304	538,953
	금 액	85,057	106,386	111,849	116,229	120,743	132,654
보증잔액	건 수	756,842	833,213	910,813	984,378	1,035,658	1,128,399
	금 액	144,501	162,423	179,713	191,673	204,606	228,82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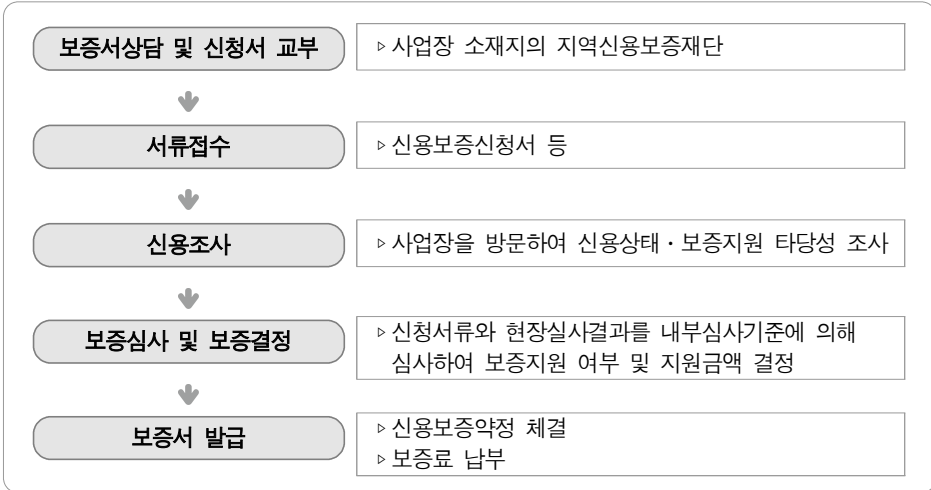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 규모 2조원

지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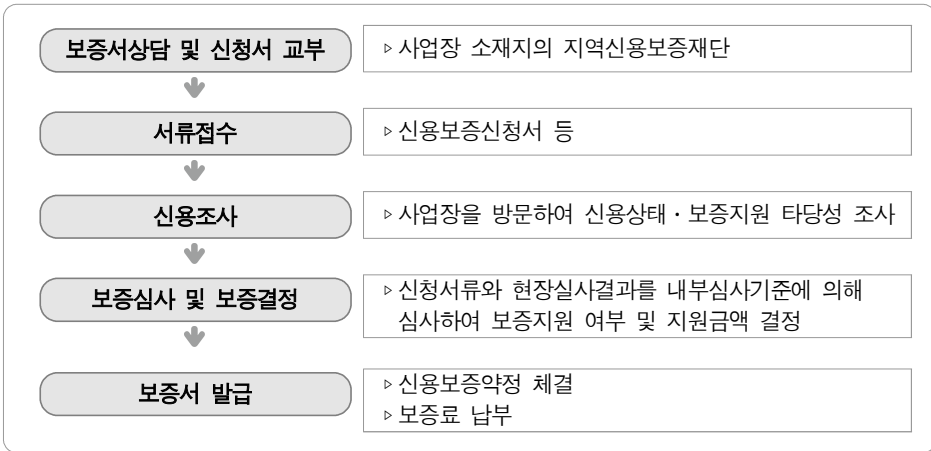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급여대장, 근로·고용계약서 등 • 법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기업)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명단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추가 우대사항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추가한도(1인당 300만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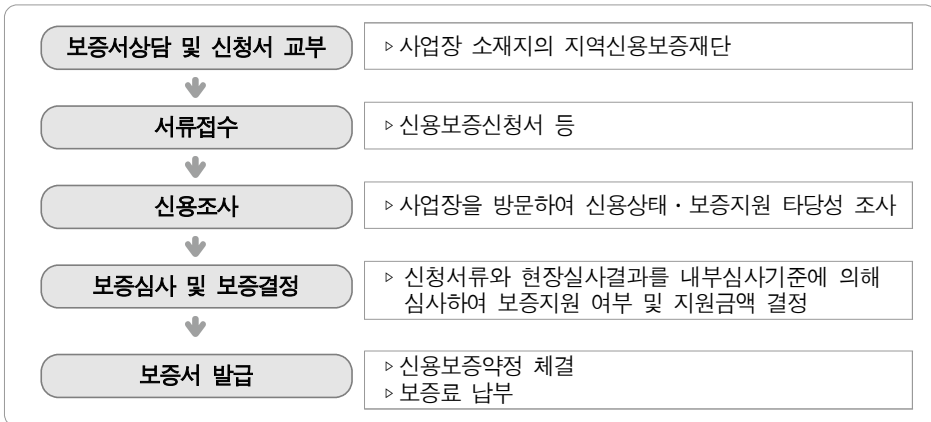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 조합설립신고필증 및 출자지분표 사본 (협동조합 등) • 마을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서 (자활기업)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단, 1~3등급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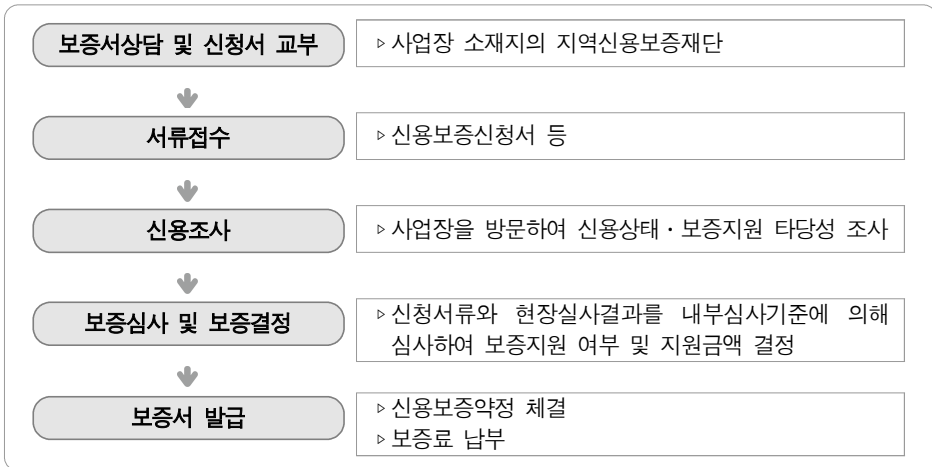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문체부 융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등 총 33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 모바일 기반 금융회사 공동지원 신용보증

생업유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지원 대상

- [모바일보증]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서,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개인기업
- [플러스대출] 모바일보증 대출취급 대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지원 내용

- [모바일보증] 업체당 최대 17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플러스대출] 금융회사 평가결과에 의해 대출지원

신청·접수

-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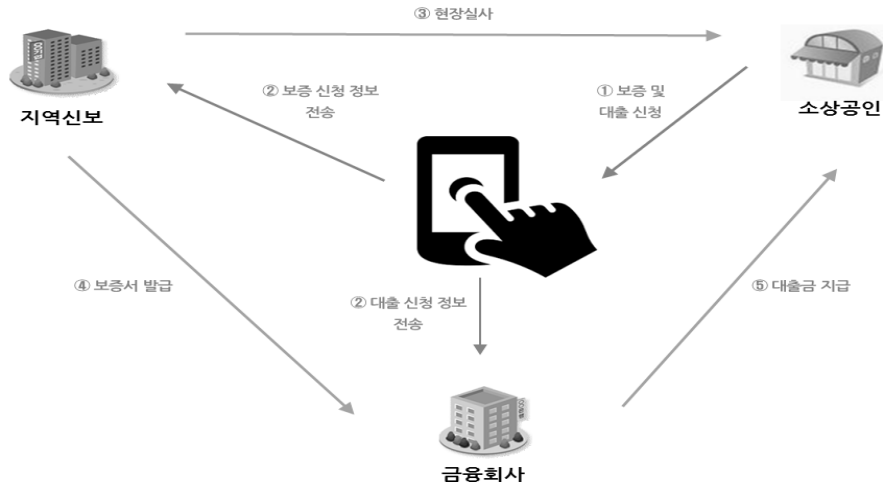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기반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취급금융회사 :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전북

지원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가동)중인,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예정인 잠재수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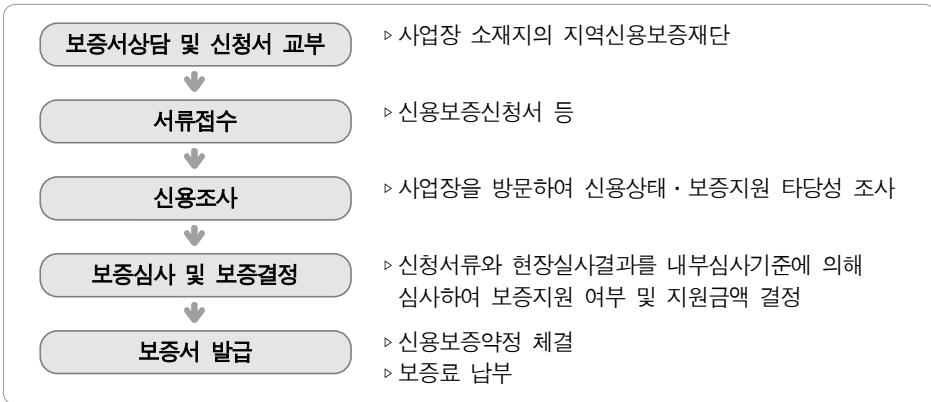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잠재수출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실적 확인용)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잠재수출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면세점*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납품실적은 없으나, 납품계약서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수출창업기업을 의미합니다.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종결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재도전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 결정된 기업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대위변제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 ✓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1.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연대보증인
2.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연대보증인

<법적채무 종결기업>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거나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관리종결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 단, 대위변제기업의 경우 본건 3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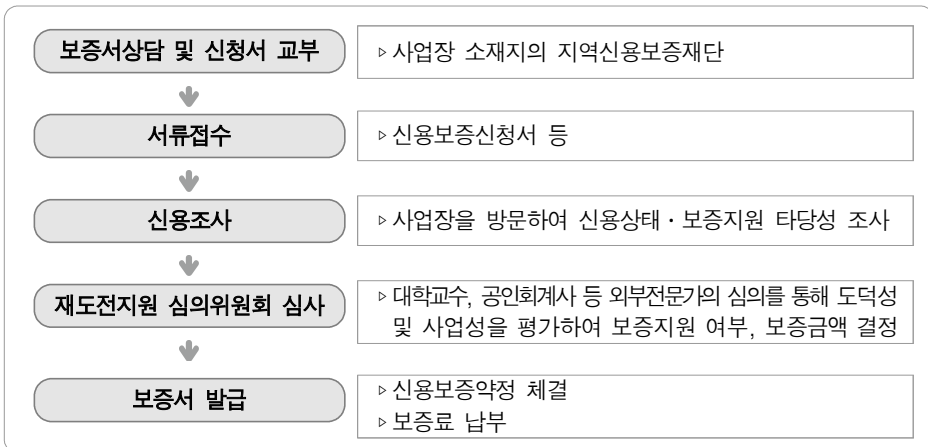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재기계획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주거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A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지원제한업종 예외 기업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용 소상공인정책자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0백만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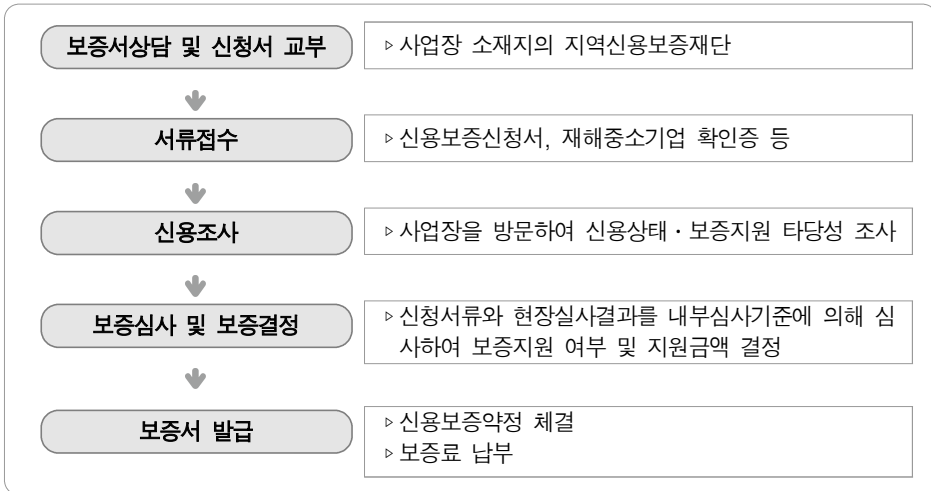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재해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보,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한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권에 신보, 기보 채무 포함
- 위 면책으로 신보, 기보가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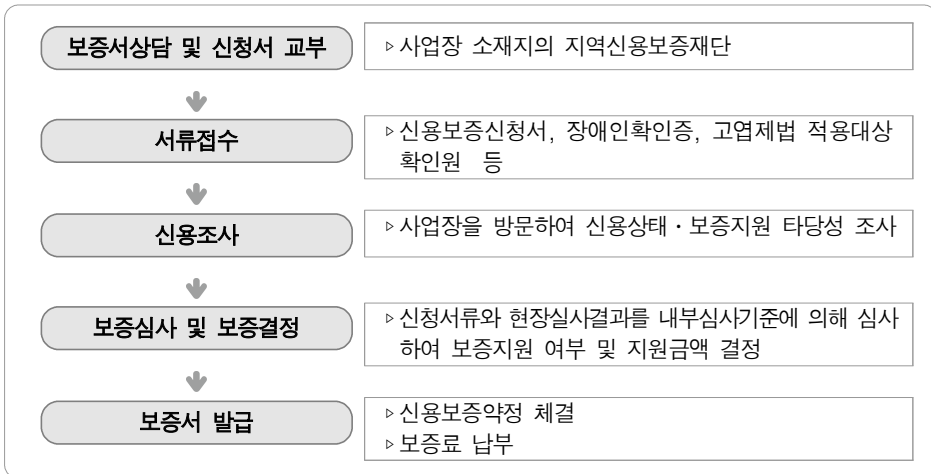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업력 6개월 이상" 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34,226	35,246	31,515	100,987
	금액	3,579	3,895	3,545	11,019
보증 잔액	건수	113,046	116,755	116,824	346,625
	금액	7,829	8,162	8,374	24,365

지원 대상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4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히행)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	
보증심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시정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지역신용 보증재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부 록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568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209호	종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능동로275, 비전빌딩2층(군자동)	종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605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6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4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톨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지점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자로 268 kdb 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두암동)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내(남악리)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신대리1988)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505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2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 동구
(충남)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서산시, 보령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상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총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중앙회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제4편

공동사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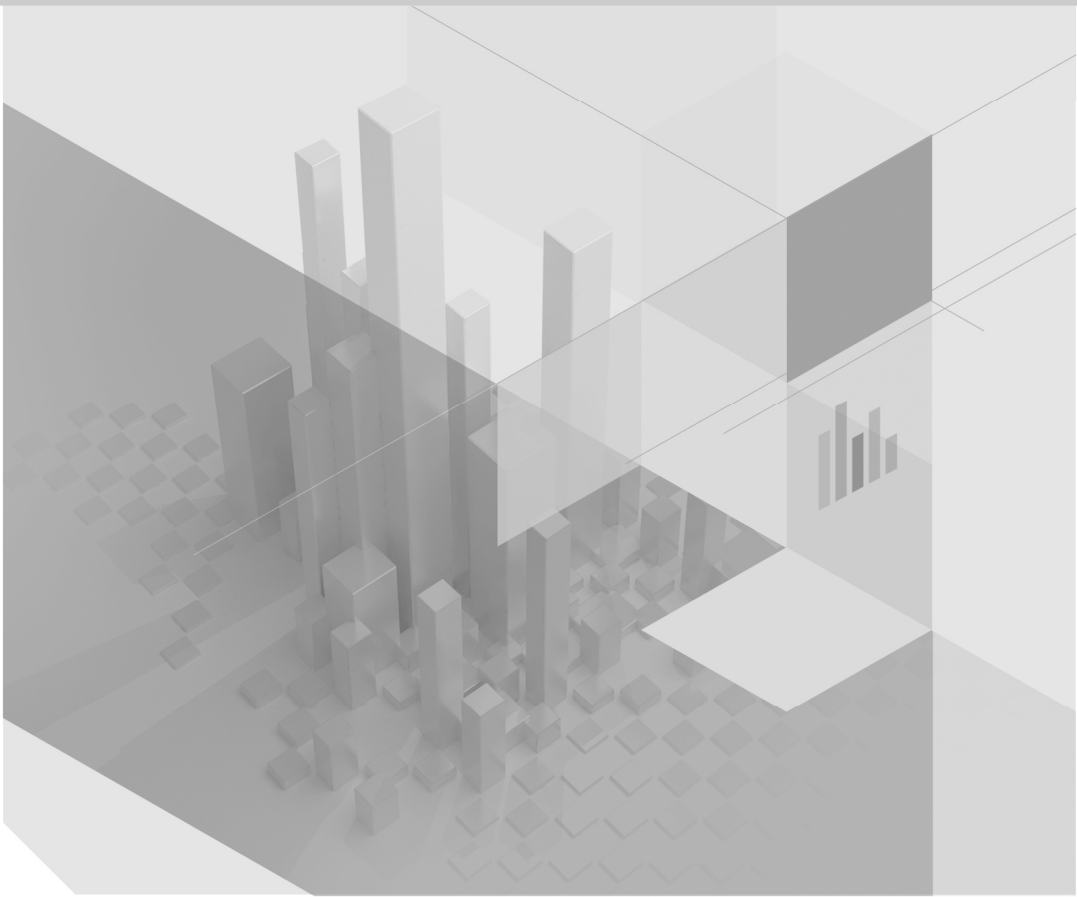
제 1 부

기 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574
-----------------------	-----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전문가 상담) 제한없음, (현장클리닉) 2,000개사 내외
- * '19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10만 건, (현장클리닉) 2,012개 업체

지원 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결(통상 3일, 최대 7일)

현장클리닉 지원 제한

< 지원제외 업종 >

-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틱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지원 조건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당 35만원
(기업부담금 20%, 7만원)

상담 신청

- 전 화 : 국번없이 1357
- 인터넷 : <http://www.bizinfo.go.kr/link>
-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아래 참조)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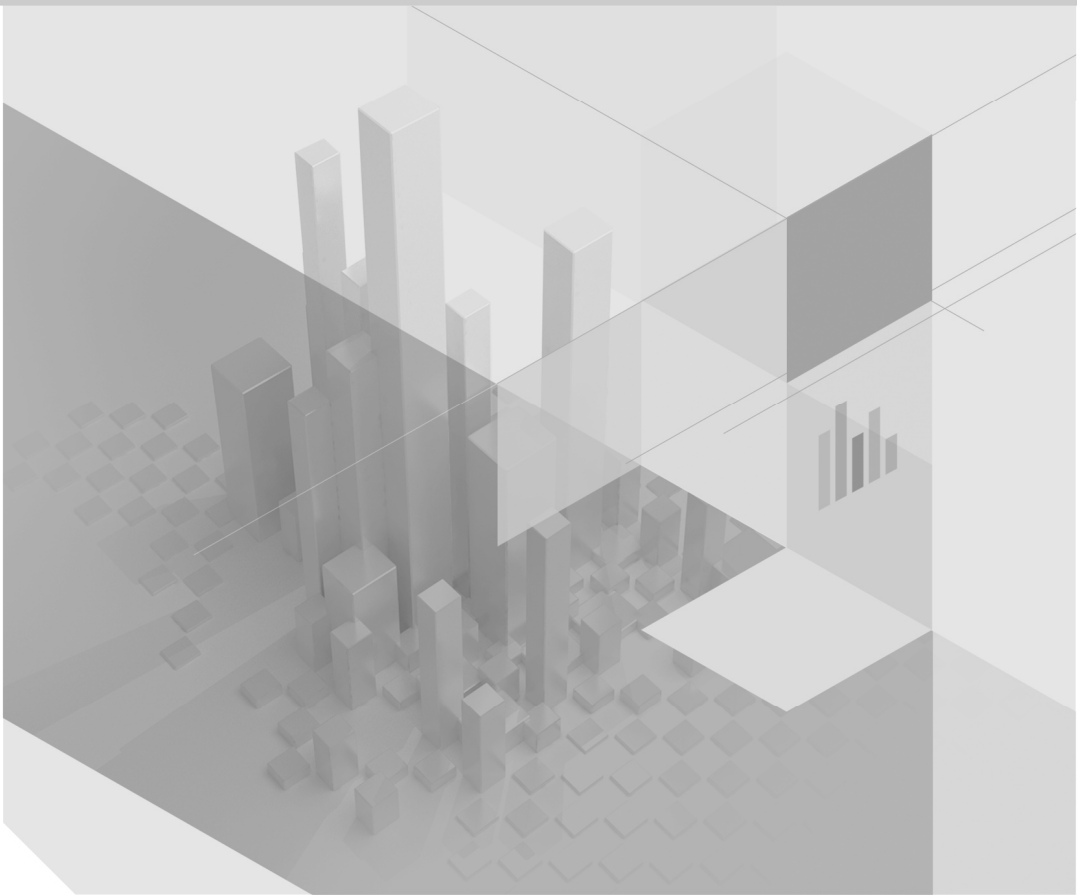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 중소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5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2층
광주·전남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일로 17번길 12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융합지원센터 206호
인천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천안)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2-1 거래 공정화	578
2-2 성과공유제	584
2-3 협력이익공유제	587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589
2-5 상생결제제도	591

2-1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 공정거래 교육, 납품대금조정협의 지원

지원 대상

- (법률상담, 신고·분쟁조정)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 (납품대금조정협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회가 필요한 수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신고·분쟁조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수탁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고조사 및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을 통해 피해해결 지원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 지원사항: 강사로,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의 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용이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단체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추가 설치
 - * 총 69개소 : 기존 29개소(중기부, 지방청,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15개소) → '19년 40개소 추가('19.6)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
- (신고·분쟁조정) 온라인, 유선,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poll.mss.go.kr)
 - 유선접수 : (신고·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분쟁조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공정거래교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lhy@win-win.or.kr / 팩스 : 02-368-8940
 - 우 편 :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콧벤처센터 9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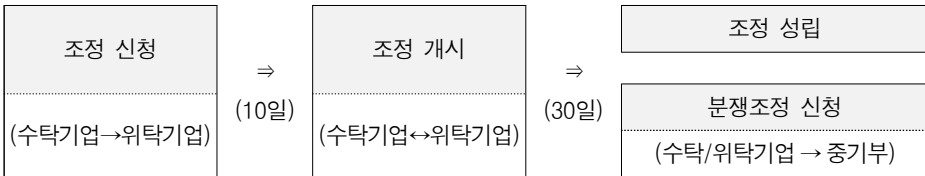
- (신고·분쟁조정)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1부, 신고의 원인 및 사실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등
 - *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별지 1호 서식 참고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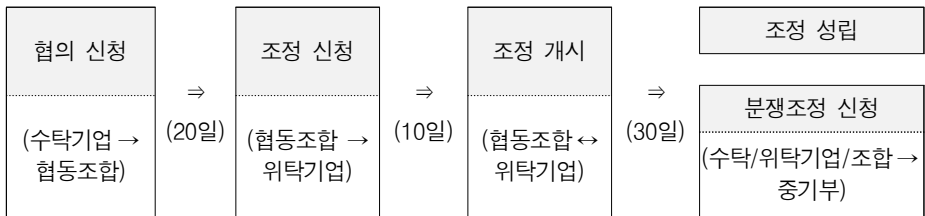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를 통해 법률상담
- (신고·분쟁조정)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해 신고·분쟁조정 절차 진행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 신청하는 경우



- (공정거래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 02-368-8470(lhy@win-win.or.kr)



-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업자단체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8958 F)042-481-8960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02-368-8463 F)02-368-8940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F)02-2110-066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3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5 F)031-201-695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032-680-3922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F)032-818-020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6 F)052-283-0354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F)055-262-5560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F)053-626-2602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F)062-366-9613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2 F)063-210-6460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F)042-865-6139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F)043-235-249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F)033-260-1629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업자단체명	연락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0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786-4116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02-6240-1153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71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31-8023-9953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10-5318-3066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주)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10-3805-0158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10-5414-0151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2-2 성과공유제

|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 내용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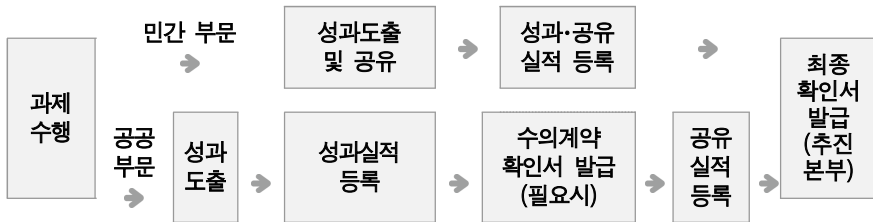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대표모델

① 신제품·신기술 개발	②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 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③ 기술이전	④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 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⑤ 성능개선	⑥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⑦ 관리시스템 개선	⑧ 서비스 용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 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4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2-3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의 협력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발생시킨 재무적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등록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사업 내용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의 협력활동을 협력이익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www.winplus.or.kr)을 통해 확인

○ 협력이익공유제의 요소

① 협력관계

- * 이익 공유 대상에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중견)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등 등록·협력기업

② 협력이익

- *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③ 공유방식

- *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등록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하되, 다수의 협력사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④ 사전계약

- *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수행주체
자율협의·계약	자가 체크리스트 실시 계약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등록·승인	과제등록 과제등록 심사	등록기업 추진본부
과제수행		등록기업·협력기업
협력이익공유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확인	과제확인 신청 과제심의 확인서 발급	등록기업 심의위원회 추진본부

과제유형

① 협력사업형

R&D등 공동의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등록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공유하는 계약모델

② 마진보상형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협력사의 단가, 수수료, 마진을 등 수수료 인하·면제에 연계되도록 하여 협력사에 추가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모델

③ 인센티브형

등록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협력사가 노력한 기여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이익을 추가 공유하는 계약모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3
- 협력이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winplus.or.kr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대·공기업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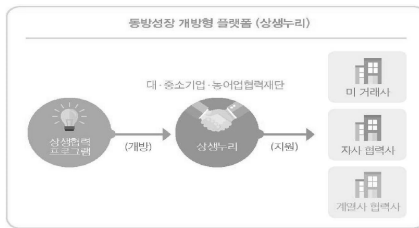
대·공기업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사업 개요

대·공기업 및 협력사 간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

-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상생누리 운영 흐름도>



<상생누리 홈페이지>



지원내용

- 상생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
 - 166개사 3,106건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등록(19.11 기준, 누적)
 - * 대기업 107개사 1,162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59개사 1,944개 프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상생누리 카드뉴스 발행 및 배포
 - 매일 등록된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과 상생협력 관련정보 제공
 - * 홈페이지와 메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배포

이용절차

- 회원가입
 - 회사 정보 등록 필요, 대·공기업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정보 등록 및 승인 필요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검색 조건 설정 가능
- 신청접수
 - 상생누리를 통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업 자체 접수(이메일, 유선 등)
- 선정결과 확인

지원분야

- 대·공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7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 : 02-368-8407, 8441, 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2-5 상생결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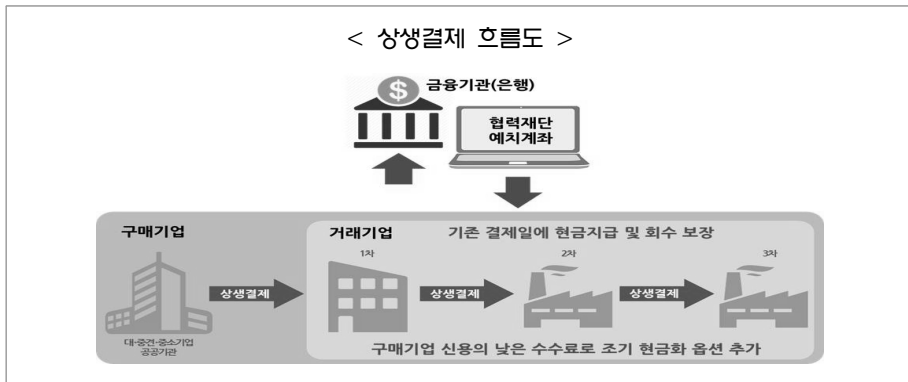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대금지급 보장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제도입니다.

사업 개념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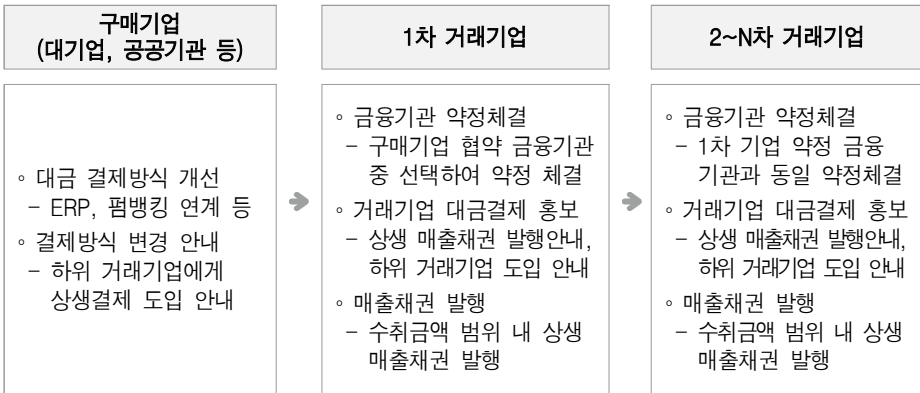


활용 혜택



이용 절차

1. 상위기업(구매기업)의 약정여부, 약정 은행 확인(미도입 시 도입요청)
2. 상생결제 약정 체결(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3. 은행별 상생결제 사이트(www.winwinpay.or.kr내 은행별 현황 참고) 회원가입
4. 상생결제 사이트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도입 은행

- 총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은행)

문의처

- 상담번호 : 1670-0833(약정/시스템이용), 0834(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winwinpay.or.kr>

용어설명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상위 거래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하위 거래기업 할인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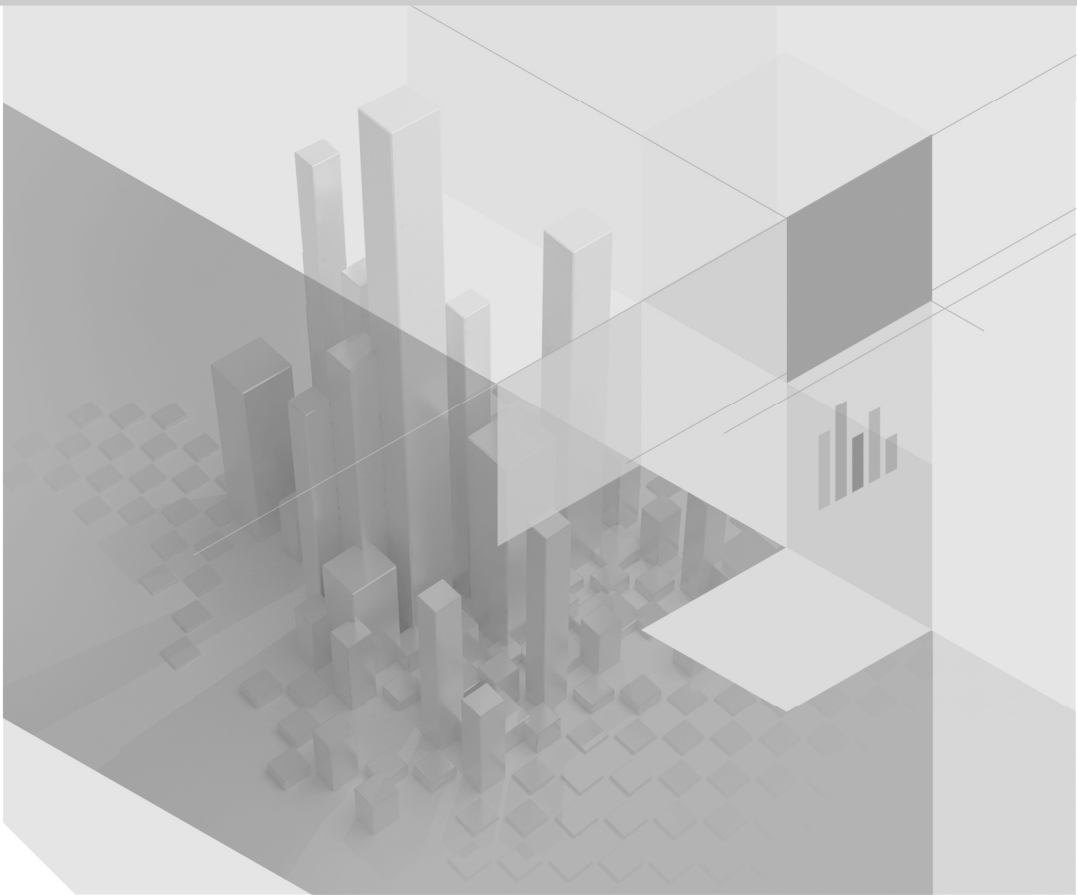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3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596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598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602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605
3-5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608
3-6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610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613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

중소기업인 여러분! 기업마당에 접속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기업경영에 힘이 되는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

- 중소기업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적시 제공하는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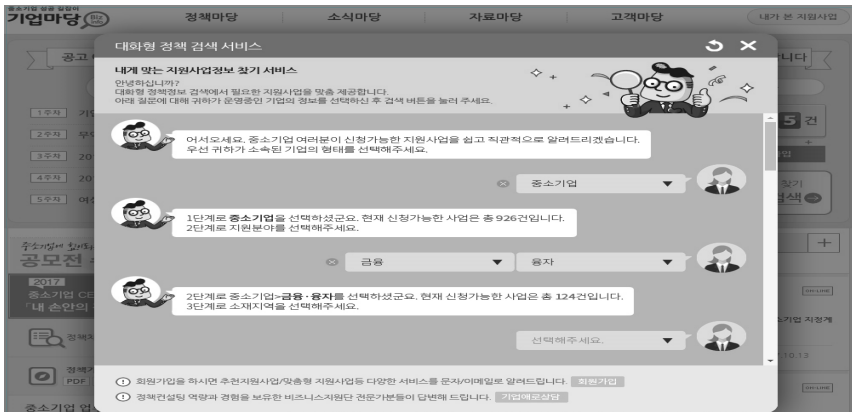
이용 대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기관 사업담당자 등

주요 기능

- (정책정보 제공) 최신 분야별 지원사업,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휴대폰 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화면 : 대화형 정책검색서비스 >



- (부가서비스) 대화형 정책검색서비스(중기씨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 (기업애로상담)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하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답변

< 기업마당 접속 첫 화면 >



기대효과

- 여러 기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적시 제공해줌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탐색 시간 절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통계분석과 : 042-481-6861
- 중소기업연구원(운영기관) : 02-707-8230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 모바일웹 : m.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선별·육성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벤처기업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심사 후 확인서 발급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투자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콘텐츠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기술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 부문 52점 중 31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40점 중 24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절차



지원 혜택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6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③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기업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포함 	특허법시행령 §9 실용신안법 시행령 §5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를 0.2%p 감면 	기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 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중기부공고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벤처특별법 §16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벤처특별법 §16의2①

분류	내 용	법적근거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3의2②
인력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특별법§16의 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벤처특별법시행령 §11의3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시행령 §16의2①
기술 임치	• 기술임치 수수료 1/3 감면(신규300천원→200천원, 갱신150천원→100천원)	기술임치제도 운영요령§15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기준 30억원 한도)	kobaco 규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1635
- 기술보증기금 : 051-606-765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586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33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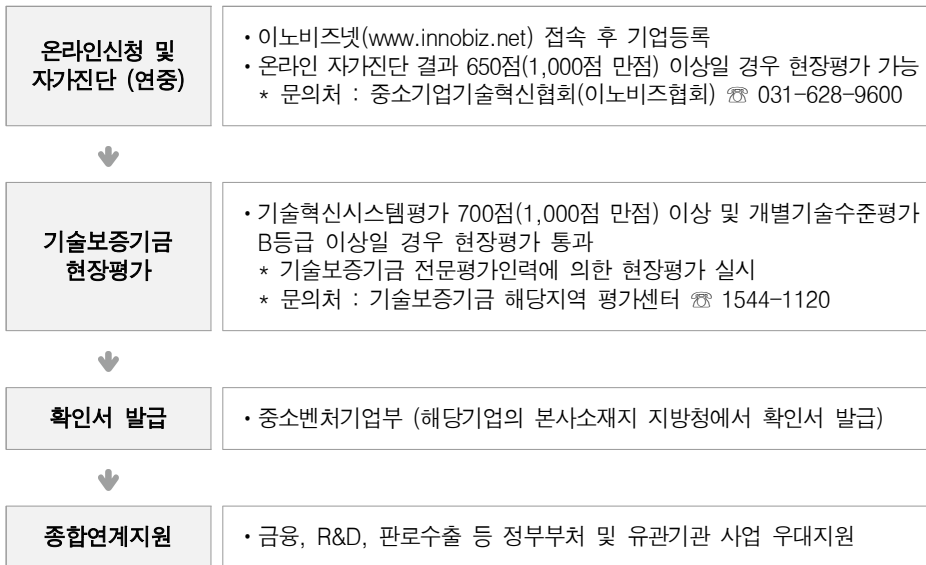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기업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현장평가 시 인쇄)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선정 절차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수도권 취득세 증과 면제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증과 3배 → (개선) 증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금리 우대	· NH농협은행 이노비즈 채움금융(최대 1.65%) · KB국민은행 운전 및 시설자금 (최대 2.8%) · 신한은행 소재·부품/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최대 1%) · 하나은행 소재·부품·장비 금융지원 (최대 1.3%)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0.2% + 추가우대 최대 0.6%)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자본금 30억 이상)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기술혁신개발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등 R&D 사업 참여 우대
	판로 및 수출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우대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가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
	인력 및 기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선정제외 대상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영위기업
- ✓ 국세체납 및 신용도 취약기업(직전년도 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등)

선정 기준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 평가지표

-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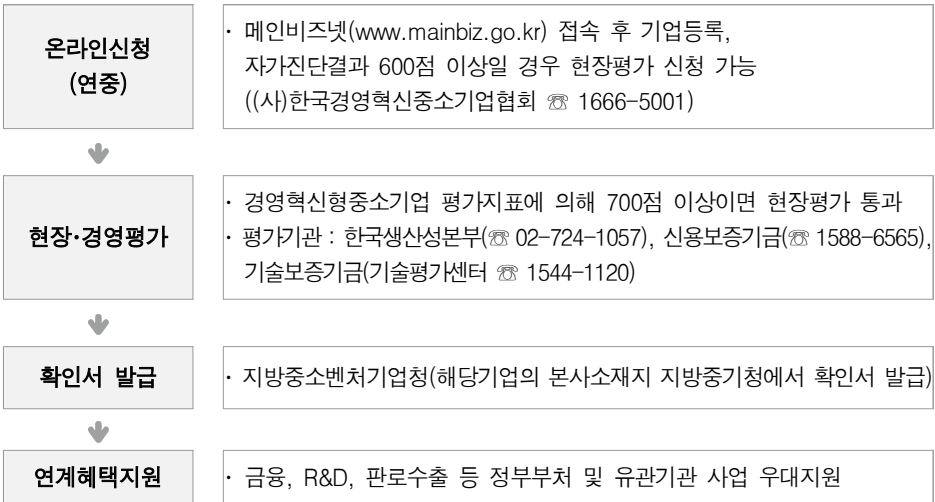
제출 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품,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 3년간 재무제표, 산업재해율확인서,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선정 절차



* 메인비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자동 취소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정기세무조사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 국세부와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관세조사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
	금융지원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혁신기업에포함(지역별상이) 농협 대출금리 최대 1.65%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외 정책자금 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신성장진출지원 자금 우대
정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점 도시주택 기술.제품개발 지원가점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해외규격 인증사업 가점 방송 광고비 감면,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능 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연구인력 파견지원 인쿠르트,사람인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컨설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Q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3-5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규제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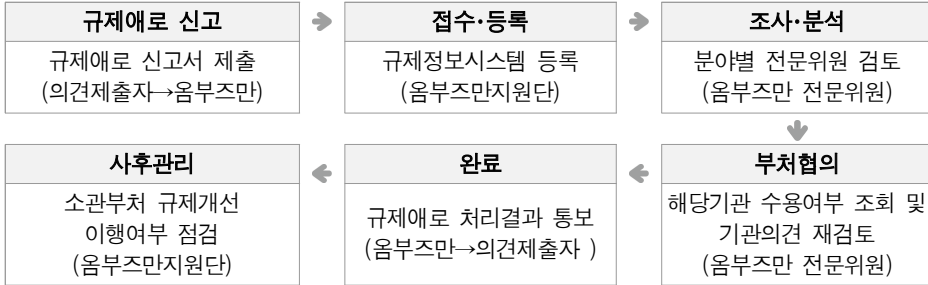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제출 서류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원탁 협의)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원클릭 바로 알림)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업종·업체·지역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지도 나침반)에서 지역별 규제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 옴부즈만지원단(대표) : 전화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전문분야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입지, 환경, 기술	02-730-2471
	판로, 기술, 상생	02-730-2408
	판로, 입지, 세제	02-730-2474
	보건, 창업, 환경	02-730-2461
	환경, 규제스 관리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10

3-6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선정 규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제외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 내용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신청 방식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 제출처 : (0415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5층)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서류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3~'18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청 납세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3년~'18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 3146)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02-3275-3098)
- 정책문의(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042-481-4363, 4376)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홈페이지(www.dle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자발적 기술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드리는 혜택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신청·접수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적립 및 사용 가능

적립 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 수 X 300점) + 추가가점 (혁신성과 있을 시)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14. 7 이후 성과에 대해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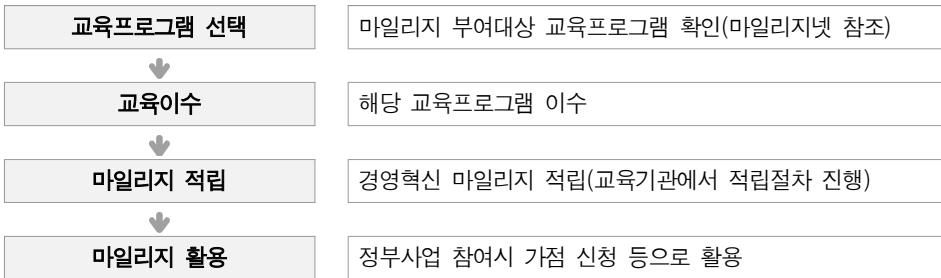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 절차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 활동마일리지 적립



활 용 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1점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마케팅 역량강화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정책매장 운영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가점 5점 / 한도 외 추가 1점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1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83
-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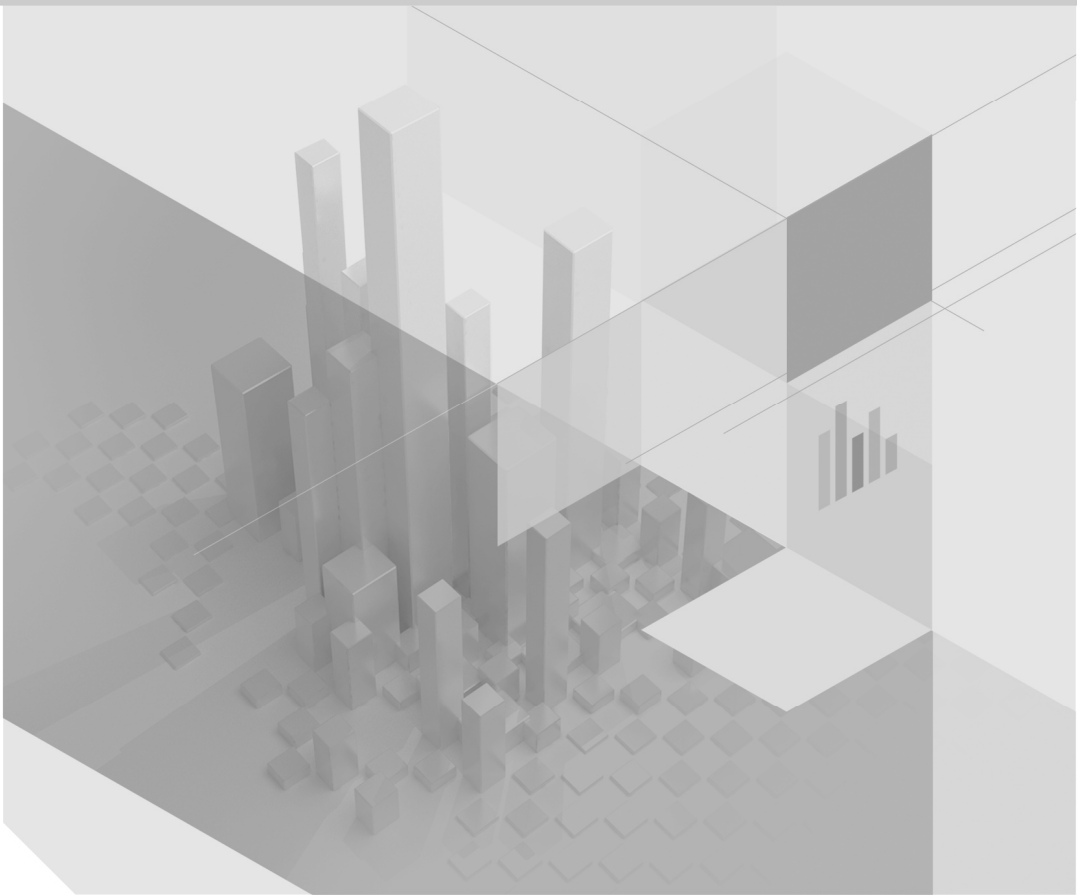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대상에서 탈락 시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을 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618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621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626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 창업 중소기업
-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업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지원 내용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2년간 50%(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은 제외)은 50%)
 -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가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 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수도권 외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3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엔젤투자 세제지원
 -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2천만원 한도)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종과세율 적용 배제

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 세액공제

○ 기타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7%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기술유출 방지설비등 투자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7%
환경보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0%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700~1,100만원 (청년은 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7백만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시 세액 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7 가업상속 지원

- 가업상속공제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 10년 미만:200억원, 20년이상:300억원, 30년이상:50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8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4천만원~1억원 3백만원, 1억원 초과 2백만원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소속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2-2110-6350 (팩스) 02-2110-066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1-601-5111 (팩스) 051-338-5180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3-626-2601 (팩스) 053-626-260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본관동 2층
경북북부사무소	(전화) 054-859-8167 (팩스) 054-859-8169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62-360-9205 (팩스) 062-366-9126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584)
전남동부사무소	(전화) 061-727-5715 (팩스) 061-727-5418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로4로 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1-201-6800 (팩스) 031-201-6804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전화) 031-820-9001 (팩스) 031-820-901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융합지원센터 2층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2-818-8323 (팩스) 032-818-7469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42-865-6100 (팩스) 042-865-618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사무소	(전화) 041-564-2286 (팩스) 041-564-385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융합지원센터 2층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2-210-0011 (팩스)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3-260-1600 (팩스) 033-260-1609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전화) 033-655-4145 (팩스) 033-655-4149	(2544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43-230-5300 (팩스) 043-235-2491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63-210-6400 (팩스) 063-210-6428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5-268-2511 (팩스) 055-285-5382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2020년도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6859, 8913

팩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
1-1-③ 신성장기반자금	20
1-1-④ 재도약지원자금	23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8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1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4
1-3 수출바우처	36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40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43
1-6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45
1-7 연수사업	47
1-8 기술사관 육성사업	50
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3
1-10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57
1-1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0
1-12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63
1-1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65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67
1-15 창업성공패키지	70
1-1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74
1-1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77

1-18 내일채움공제	80
1-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3

제2부

신용보증기금 / 85

2-1 신용보증	86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90
2-3 보증연계투자	92
2-4 투자옵션부 보증	95
2-5 유동화회사보증	98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02
2-7 매출채권보험	105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110
2-9 잡매칭(Job Matching)	113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14
2-11 컨설팅	118

제3부

기술보증기금 / 121

3-1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22
3-2 기술보증	123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26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29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32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35
3-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138

CONTENTS

3-8	기후기술보증	141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44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48
3-11	R&D 보증	152
3-12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55
3-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58
3-14	기술평가	161
3-15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64
3-16	특허공제사업	166
3-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68
3-18	기술신탁관리	171
3-19	기술임치제도	173
3-20	TTRS	175
3-21	보증연계투자	177
3-21	투자연계보증	179
3-22	엔젤투자연계보증	181
3-23	벤처확인평가	183
3-23	이노비즈 인증평가	186

제4부

기업은행 / 189

4-1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90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91
4-3	IP사업화자금대출	192
4-4	IBK혁신기업대출	194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196
4-6	IBK강소기업대출	197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98

4-8 IBK문화콘텐츠대출	199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01
4-10 IBK시설투자대출	202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204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 205

5-1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06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207
5-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09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210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12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14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16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18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20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23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25
5-12 해외사업금융	227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230
5-14 이행성보증	232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234
5-16 해외온렌딩	236

제6부

한국산업은행 / 241

6-1 온렌딩대출	242
-----------------	-----

CONTENTS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245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24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48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250
7-4 수출신용보증(매입)	251
7-5 단기수출보험	252
7-6 중소기업Plus+보험	256
7-7 환변동보험	257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260
7-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262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65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6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70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74
1-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78
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82
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285
1-7 연구기반 활용	289
1-8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292
1-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296
1-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99
1-11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305
1-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307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310
1-1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312
1-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315
1-16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318
1-17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320
1-18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23
1-19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326
1-20 산학연 Collabo R&D	329
1-2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332
1-2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335

CONTENTS

1-2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338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340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343
1-2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345
1-2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348

제2부

중소기업중앙회 / 351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52
2-2	사업조정제도	356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60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63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65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367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70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72
2-9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373
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374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77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81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83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85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87

3-1	소공인특화자금	388
3-2	성장촉진자금	390

3-3 일반경영안정자금	392
3-4 청년고용특별자금	394
3-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396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98
3-7 상권정보시스템	401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404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406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407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09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11
3-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13
3-14 나들가게 육성	416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19
3-1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422
3-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25
3-18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428
3-19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430
3-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432
3-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34
3-2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35
3-2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437
3-2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39
3-25 백년가게 육성사업	442
3-26 희망리턴패키지	445
3-27 재창업패키지	447
3-2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49
3-2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51
3-3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3
3-3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56
3-3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458
3-33 온누리상품권 발행	461

CONTENTS

3-3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63
3-35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467
3-36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471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74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77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79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 483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84
4-2 제로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486
4-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488
4-4 AI 인재매칭 서비스	490
4-5 기업 방문의 날 시행	491
4-6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492
4-7 계약서 검토 서비스	494
4-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95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97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498
5-2 이동 KOTRA	500
5-3 해외시장조사	501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502
5-5 수출상담회	503
5-6 무역사절단	504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505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507

5-9 한국우수상품전	508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510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511
5-12 수출바우처사업	512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515
5-14 지사화사업	516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517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519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522
5-18 크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523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524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525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526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527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528
5-24 해외 IT 지원센터	529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530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531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532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533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34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535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537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38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539
5-34 해외시장 설명회	540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541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542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544
5-38 수출인큐베이터	546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548

CONTENTS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50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552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553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54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557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558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559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61
5-48 교육·연수	563
5-49 열린무역관	564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566

제6부

한국무역협회 / 567

6-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68
6-2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569
6-3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570
6-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71
6-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573
6-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75
6-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577
6-8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579
6-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81
6-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583
6-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87
6-12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589
6-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91
6-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593
6-15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595

6-16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597
 6-17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598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599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600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601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603**

7-1 거래 공정화 604
 7-2 성과공유제 610
 7-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613
 7-4 상생결제제도 615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617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620
 7-7 기술보호 역량강화 627

제8부 **창업진흥원 / 631**

8-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632
 8-2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634
 8-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636
 8-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637
 8-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641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44
 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46
 8-8 예비창업패키지 648
 8-9 초기창업패키지 650
 8-10 청소년 비즈쿨 652

CONTENTS

8-11 메이커 문화 확산	654
8-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656
8-13 창업에듀	659
8-1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660
8-15 K-스타트업	663
8-16 실전창업교육	664
8-17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666
8-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68
8-19 창조경제혁신센터	671
8-2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673
8-21 재도전성공패키지	676

제9부

기 타 / 679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680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682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684
9-4 산재예방요율제	686
9-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688
9-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690
9-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692
9-8 근로복지기금지원	694
9-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697
9-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99
9-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701
9-12 기업복지 컨설팅	703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705
9-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706

9-15 청년내일채움공제	708
9-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0
9-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712
9-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716
9-19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719
9-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721
9-21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723
9-2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725
9-23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727
9-24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729
9-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731
9-26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733
9-27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734
9-28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737
9-29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738
9-30 문화산업완성보증	740
9-31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744
9-32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746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748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750
9-3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751
9-3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753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757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59
9-39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61
9-4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63
9-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765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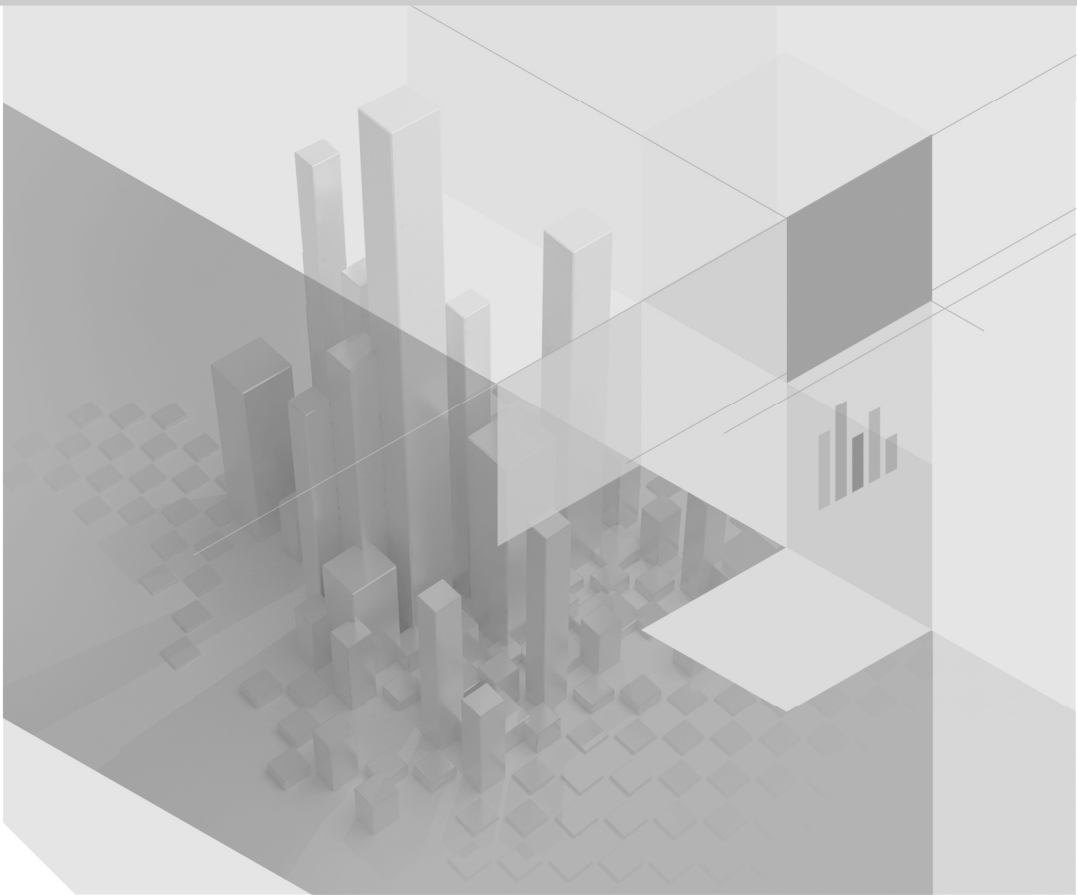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 1 편

유관기관(금융기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4
 - 1-1-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2
 -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17
 -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20
 - 1-1-④ 재도약지원자금 / 23
 -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28
 -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1
-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34
- 1-3 수출바우처 / 36
-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40
-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 43
- 1-6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 45
- 1-7 연수사업 / 47
- 1-8 기술사관 육성사업 / 50
- 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53
- 1-10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 57
- 1-1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 60
- 1-12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63
- 1-1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 65
-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 67
- 1-15 창업성공패키지 / 70
- 1-1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 74
- 1-1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77
- 1-18 내일채움공제 / 80
- 1-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83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 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5,90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5,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 자금(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3,300억원), 제도약지원자금(2,100억원), 긴급경영 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 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 방식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자금상당) 신청예약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 (Rating)을 산정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차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들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 기업, 소재·부품·장비 대중소상생모델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⑪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 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 자금)은 신청가능)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수산정 예외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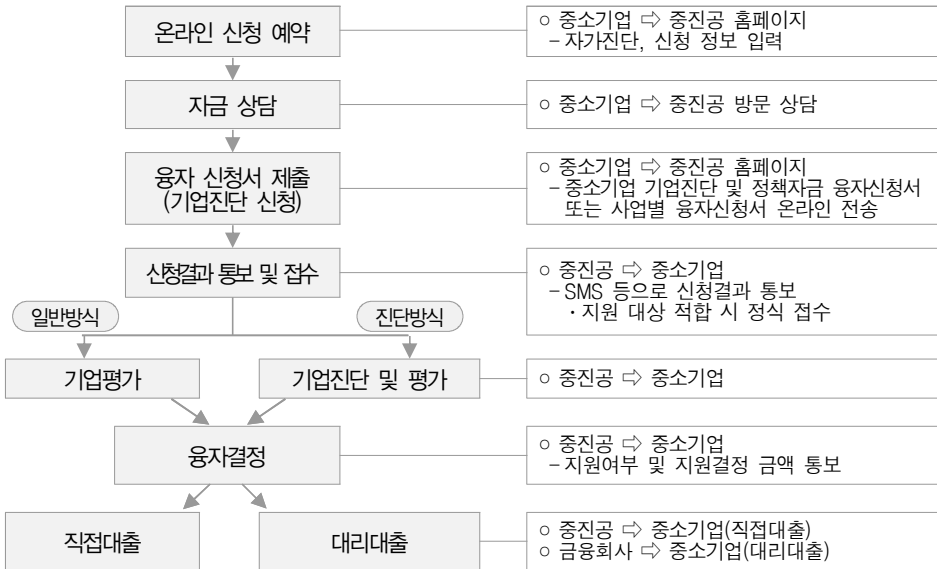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용자신청은 온라인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1-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응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추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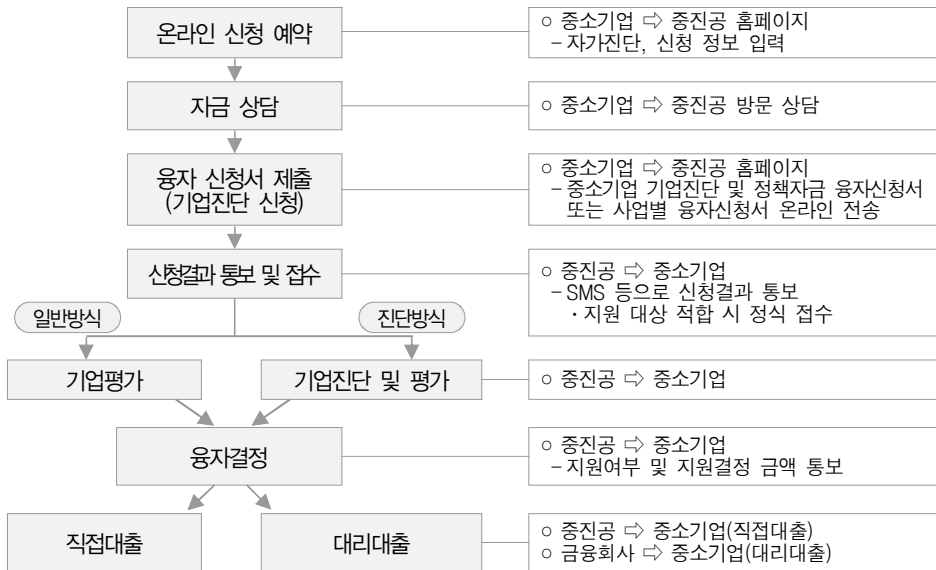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2,00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 2019년 성장공유형대출 6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2.6억원

지원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 (용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 (용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 용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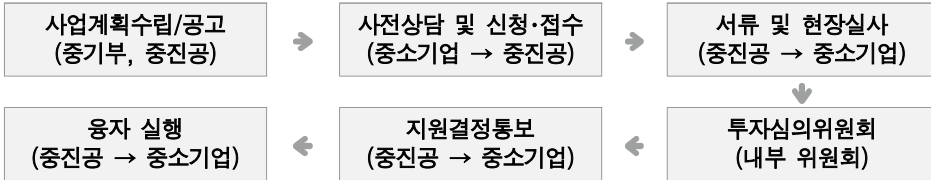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성장공유형 대출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13,3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1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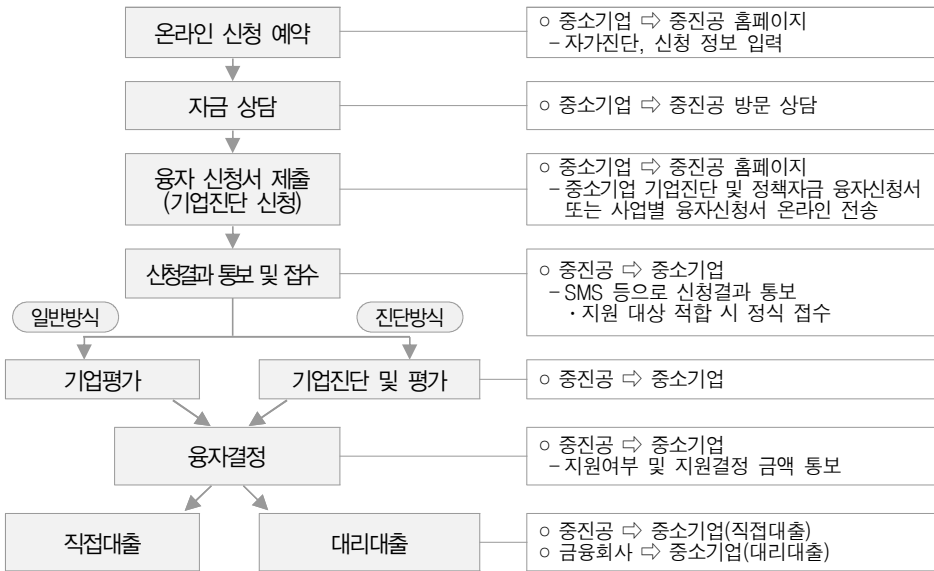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④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융자제한기업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용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용자제한기업종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용자제한)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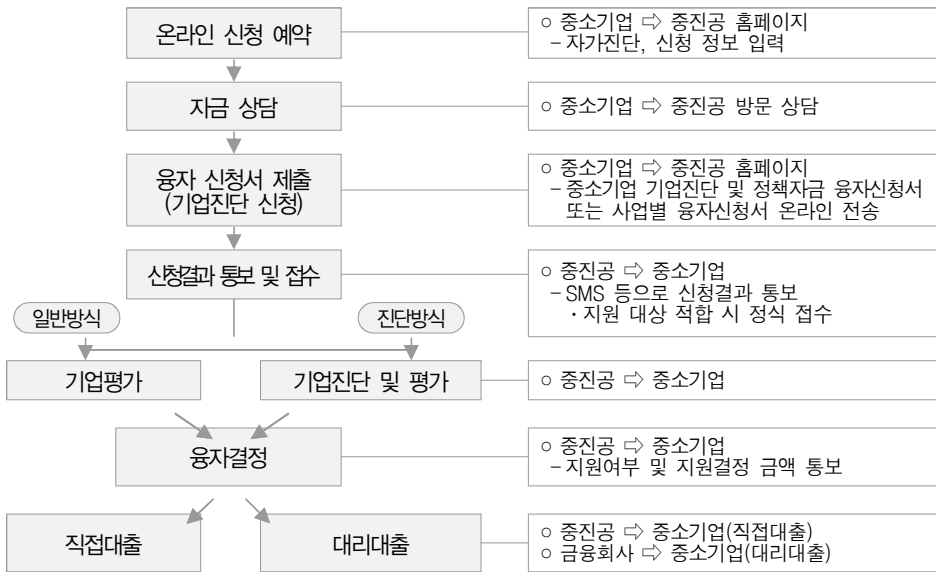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진흥부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 규모

1,0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13개사 중 1,11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용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용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용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유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일본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 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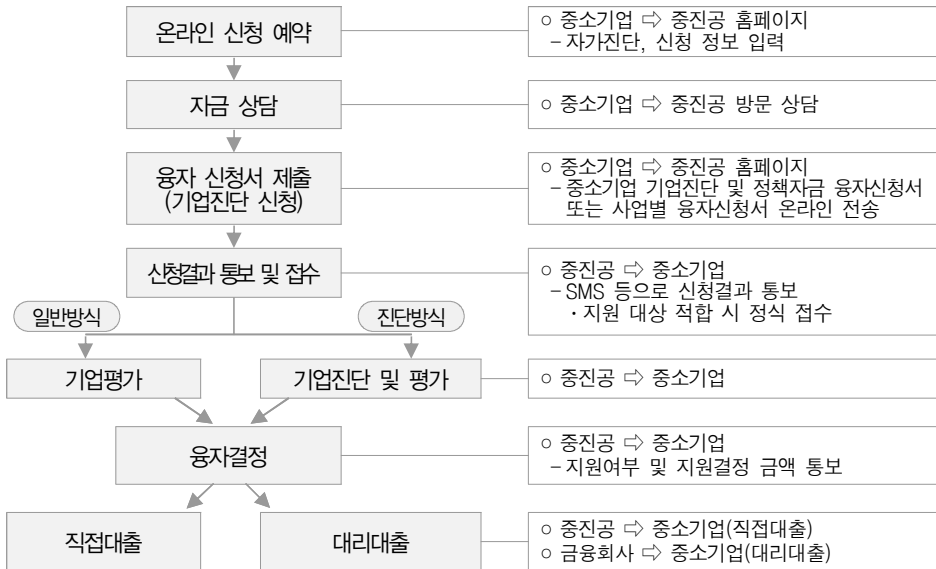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2,0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1,439개사 신청기업 중 1,335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1억원)

지원 대상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차세대 글로벌기업(직전년도 수출 300만불 이상) 육성 자금의 용자대상, 용자조건, 용자 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용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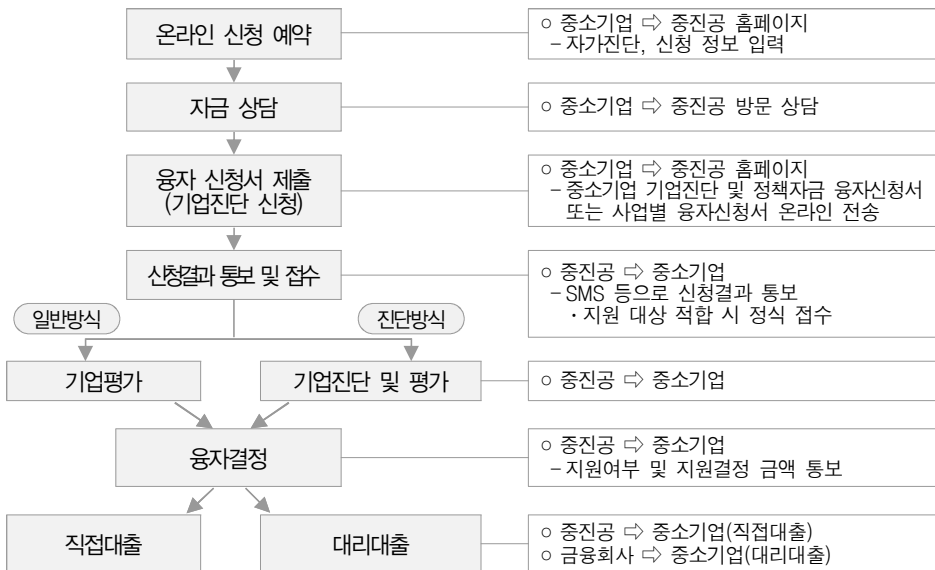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무역사절단 105회, 해외전시회 16회, 수출상담회 4회, 지역특화사업10회 등 총 135회 사업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증대 지원
- * '19년 기준이며,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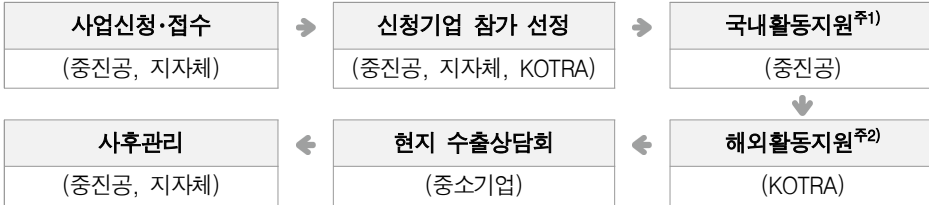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 055-751-971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사후관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컨설팅 및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3 수출바우처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934여개사(전체 예산 99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43억원	141개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253억원	936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237억원	878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216억원	48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139억원	279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강소	110억원	22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1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최대 1억
합 계	998억원	2,934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공고 시 예외로 정한 별도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 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영역	지원항목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협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협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협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출바우처사이트(www.exportvoucher.com)를 활용,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바우처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신청·접수

‘19.12월, ‘20.5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문의처

구 분	전 화	주 소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www.exportvoucher.com



!

Q

A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4개국 23개소* 내 입주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총 283개 독립실 : BI 13개국 21개소, KSC 2개국 2개소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팅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상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 제출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진출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평가* 등
 - * 성과공유 20점, 고용창출 노력도 5점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회사업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우대

신청·접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3, 9682, 968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중소벤처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지원합니다.

Q 독립실의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2년).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인이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중기(3개월 수준) 또는 단기간(1개월) 출장하는 경우, 세계 14개국 23개소 해외거점(BI, KSC) 내 공동 사무공간을 활용 지원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 글로벌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 분야

분야	내용
글로벌협력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벤처기업 역내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지원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2,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 · 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6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1,400여개사 내외

* '19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0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50개사,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800개사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인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고비즈B2B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즈코리아 내 동영상 기반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 고비즈코리아 내 Seller's store를 활용한 중소기업 영문홈페이지 제작 지원 • 유튜브, SNS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MCN마케팅 • 구글 등 대형검색포탈을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검색엔진마케팅 등
온라인거래알선 및 구매오피사후관리 (중복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해외진성바이어가 요청하는 물품을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1:1 직접매칭 • 인콰이어리 유효성 검증부터 통·번역, 수출 계약 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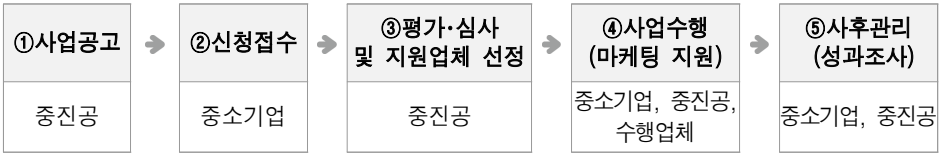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접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A 기업부담금은 고비즈B2B지원에 한해서 50~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피사후관리는 전액 무료로 지원 예정입니다.

용어설명

검색엔진마케팅 :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7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인력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간 40,000명(직무역량향상연수·온라인·정책연수인원), 400개사(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9년 지원현황 : 31,809명, 맞춤연수 425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 내용

- 9,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 접근성 개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 MOOC(온라인 무료공개수업)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융합 연수 중점 추진

신청·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별도 심사, 평가 절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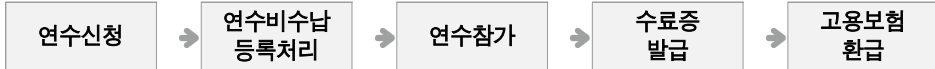
- * 직무역량향상연수, 온라인연수 : 과정 개설 전 신청 필요
- * 과정별로 신청 기업의 연수비 부담 필요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기업확인서 :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등
- * 연수원 환급과정의 경우 훈련비 환급 지급을 위한 사업자 통장사본 제출

처리 절차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기술 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 춤 연 수	○ 문제해결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On line	온라인 연수	○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MOOC(온라인무료공개수업),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 모바일연수	

연수비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 실시

- 신규연수과정은 2019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온라인연수를 제외한 **NEW** 표시 과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이내 고용보험 환급 가능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환급여부 및 처리절차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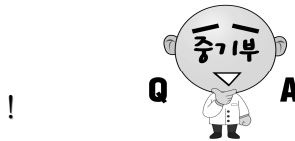
< 연수비 감면제도 >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정의
 - * 매출액 :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충족
다만,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i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ti.kosmes.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1-8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2개 사업단(20년 예산 28.9억원)

* '19년 지원현황 : 12개 사업단(12개 전문대, 17개 특성화고, 864개 협약기업) 1,528명 교육

지원 대상

- 사업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테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 참여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 사업단('19년 기준 12개 전문대) 중 채용희망 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3자협약을 진행
-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

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1순위 배정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687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혜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의 15개 사업단의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 학과로 진학해야 합니다.
-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기술사관 개설 현황('19.11월 기준)>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과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부산울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환경화학공업	-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계열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동의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항공전자통신과	서부산공고, 울산공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계열	영남공고
광주전남	순천제일대학교	기계자동차과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과	산본공고, 평촌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과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통신과	상일미디어고, 양영디지털고
대전충남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스마트폰콘텐츠학과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2개 사업단(전문대 12개 + 특성화고 17개)

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1개 주관대학 71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9년 사업비 110.8억원)

* '18년 지원현황 : 학생(근로자) 1,851명

지원 대상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재교육형)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전문학사·학사는 등록금의 85%, 석·박사는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재교육형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채용조건형)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지원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추진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신규 주관 대학 모집공고 (https://sanhakin.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		
신청·접수	•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관리기관 (별도공지)
↓		
현장실태조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관리기관 → 대학 (별도공지)
↓		
대면평가	•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중진공 → 대학 (별도공지)
↓		
주관대학 선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		
협약	•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당사자 (별도공지)
↓		
학생/기업 모집	• (재교육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에 추천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각각 대학에 참여 신청	주관대학 (봄학기 : 11~2월) (가을학기 : 6~8월)
↓		
3자 계약	• (재교육형)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대표-근로자-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학생과 기업을 대학이 선발한 후, 상호 매칭이 완료되면 3자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학기개시 전)
↓		
학과운영	•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참가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문의처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042-481-4493)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9876, 987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2019년 가을학기 기준 전국 51개 대학 71개 학과)
 - <https://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조 2항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A 중진공은 매년 1월,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준등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등록금은 전문학사 과정 1,753,000원, 학사 과정 2,294,000원, 석·박사 과정 2,886,000원입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Q 재학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학 중 근무 중인 참여기업이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된 등록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10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맞춤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와 청년취업을 촉진

지원 규모 14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2개 전문대학, 1,367개 협약기업, 1,772명 교육

지원 대상

- 대 학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전문대 및 폴리텍 대학
- 기 업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학 생 :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참여대학은 수요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참여학생은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이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 분	지 원 내 용
대 학	•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등
학 생	•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 업	•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대학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에서 다운로드

대학 심사·평가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대상 대학 선별

기업 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산학협력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학생 취업조건부 채용협약 가능

구 분	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회·단체간 산학협력 체결 • 회사 인력 수요, 공동 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 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 참여기업의 50%이상 회원사로 구성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참여기업 혜택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687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Q** 산학맞춤 기술인력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의 참여신청은 대학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양성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학과 사전에 산학협력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지원 규모

230개 특성화고, 346억원

* '19년 지원현황 : 199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 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신청·접수

'20년 2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공고 사전설명회 개최 	2월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월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3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사업비교부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중간점검 (지방청→참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사업비 정산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042-481-446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5, 9862~3, 986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 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1-12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인식개선 특강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중소기업 체험 및 특강, 토크콘서트,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

지원 규모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4.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일반고등학교 10개교, 특성화고등학교 45개교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고등학생 및 고등학교에 재학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 내용

- 고등학생 : 전국 고등학교 대상 토크콘서트(중소기업 CEO·인사담당자 등과 취업 관련 상담 및 AI전용 채용관) 및 지역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인공지능 면접시스템 구성(AI 미니채용 박람회 실시 등)

신청·접수

- 고등학교 : 전국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접수
- 기업 : 지역 우수 중소기업 유선 신청 접수

제출 서류 고등학교 : 참여신청서(학교장 직인 필)

처리 절차

- 고등학생 대상 중소벤처기업 바로알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1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 기업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지원 규모

'20년 신규 2만개사, 누적 5만개사

* '19년 성과공유 누적 기업현황 : 3만개사

지원 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공제(내일채움공제)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조합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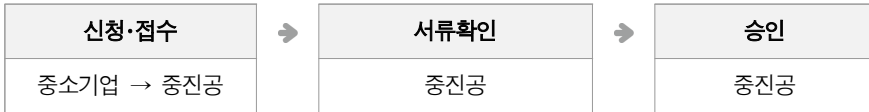
지정 혜택

- 중소기업진흥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점수 부여
 - * 일자리평가지표 도입 사업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부여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신청·접수

- 수시 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처리 절차



제출 서류

- 미래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온라인 발급분)
- 성과공유도입기업 : 고시*에 따른 유형 별 증빙서류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50호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5, 9829)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원 규모 '20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여개사 지정('19.12월)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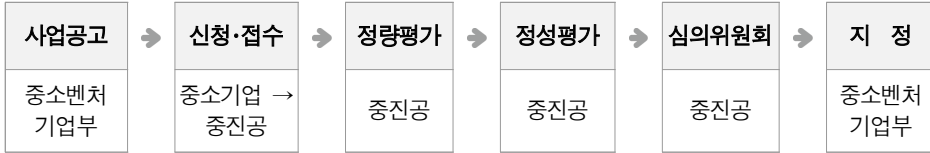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처리 절차



지정 기준

- 정량·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평가 방법

- 정량·정성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CEO의 의지 (10)	1-1.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방문평가	정성	5
	1-2. 우수인재 확보 노력	방문평가	정성	5
이익창출능력 (10)	2-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2-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성과공유제도 (40)	3-1. 일자리 양 증가수준	일자리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정량	20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3-2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실적	성과공유 실적	정량	15
	3-3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 (https://sanhakin.mss.go.kr)	정량	5
근무환경 (25)	4-1. 임금 수준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정량	10
	4-2. 복리후생 수준	방문평가	정성	10
교육훈련 (20)	5-1. 교육훈련비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정량	10
	5-2. 교육훈련 인프라	방문평가	정성	10
합 계				100

신청·접수

- '20 하반기 중 중소기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9)

1-15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CEO의 창업 수단계 패키지화 지원

제조업 위주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수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진출 지원

지원 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1,035명(개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0명(개사) 내외(예산 1,041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00명(팀)(예산 922억원)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기업) (일부제한)
-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 인프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실 운영, 신속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통한 One-Roof 제품개발 지원
 -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 (해외진출)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 (후속 연계지원)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 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관지원
 - (글로벌화 지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제품·서비스 현지화, 글로벌 인력 채용, 해외 마케팅, 현지 파트너 구축비용 등 지원
 - (글로벌역량진단) 제품·BM/기업현황/인적역량 관련 입교자의 글로벌 진출 준비도 진단
 - (교육 및 코칭) 전문적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수준별, 진출 국가별 맞춤형 교육·코칭
 - (현지화 지원) 창업기업의 현지진출 및 국내지원 프로그램 동시 운영을 통한 시너지 강화
 - * (해외) 글로벌 창업기관 파견, KSC 및 글로벌 BI 입주, (국내) 해외마케팅, 제품보완, 해외인증 등
 - (혁신성장 지원) 정책자금(융자), 투자유치 등 정책패키지 일관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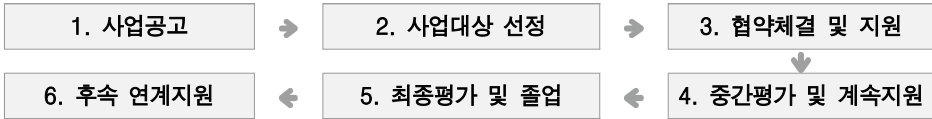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주 소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278
	서울(서울)	02-6678-4131
	인천(인천)	070-4243-0927
	경기북부(파주)	070-4243-0911
	강원(원주)	033-269-6942
호남권 및 제주	광주(광주)	062-250-3030
	전북(전주)	063-210-9928
	전남(나주)	061-280-8020
	제주(제주)	064-754-5160
충청권	충남(천안)	041-589-0832
	충북(청주)	043-903-9356
	대전세종(대전)	070-4243-0890
영남권	경북(경산)	053-819-5059
	경남(창원)	055-548-8020
	대구(대구)	070-4243-0922
	울산(울산)	070-4243-8575
	부산(부산)	051-630-7430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9년 기준)

1-1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 레저장비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19.64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포함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9년 지원현황 : 전체예산 20.66억원[기술개발 8개 과제, 맞춤형사업화 11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사업화 :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사업화 추진 (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접수미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內 '20년도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 기술개발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맞춤형사업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맞춤형사업화 : R&D성공기술, 특허기술, 이전기술 등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후 맞춤형사업화 비용 지원

구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비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기술사업화 (75%)	맞춤형사업화 사업화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하 • 제품 디자인·설계 개선, 시제품·시금형 제작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홍보물, 포장/패키지 디자인 등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신청·접수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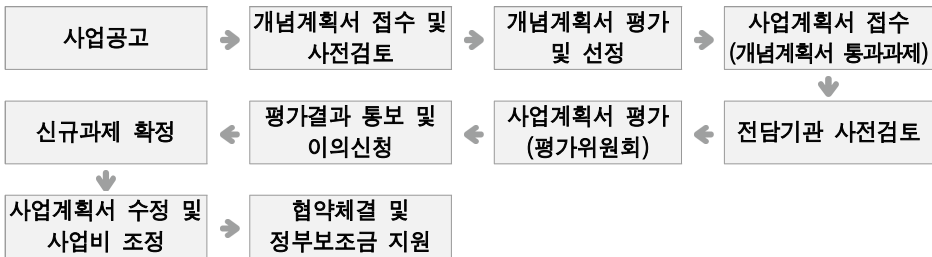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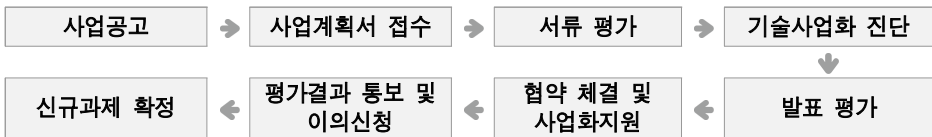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절차

- (기술개발)



- (맞춤형사업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54, 985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혁신 촉진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예산 58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역별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제외 업종 : 33402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 차등지원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포함)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재산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사업 기간 최대 1년

신청·접수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제조혁신바우처 활용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사업」 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 참조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사업 중 "제조 중소기업혁신 바우처" 사업설명 메뉴에서 "소기업 판단기준"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18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중견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1.67% (2019년 4/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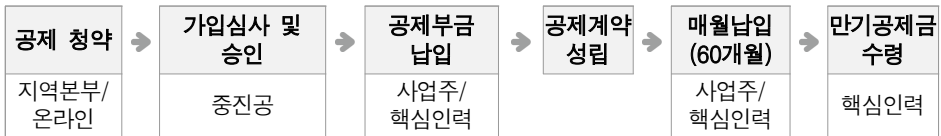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일부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청약서 작성·접수
-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1-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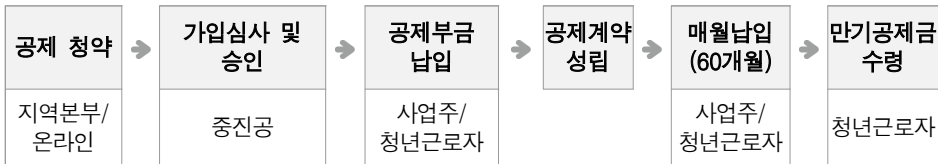
가입 혜택

-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일부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제 2 부

신용보증기금

- 2-1 신용보증 / 86
-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 90
- 2-3 보증연계투자 / 92
- 2-4 투자유선부 보증 / 95
- 2-5 유동화회사보증 / 98
-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102
- 2-7 매출채권보험 / 105
-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 110
- 2-9 잡매칭(Job Matching) / 113
-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114
- 2-11 컨설팅 / 118

2-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9.3조원으로 운용예정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47.5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
|---|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서 제출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 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 경영혁신형기업 발굴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선정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8.4조원 지원

* '19년 11월말 현재 3,798개 기업 신규 선정 및 보증 8.4조원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금융지원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전화상담 1588-6565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mainbiz.go.kr), 전화상담 1666-500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2-3

보증연계투자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11월말 기준 지원현황 : 455억원

지원 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보증심사등급별로 차등적용

설립후 3년초과 기업		설립후 3년이내 기업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6이상	30억원	K1~K7	15억원
K7~K8	15억원	K8이하 등	10억원
K9 이하 등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심사·평가 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가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투자결정	투자심의회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투자금융센터
투자금 회수(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투자금융센터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4 투자옵션부 보증

|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11월말 기준 지원현황 : 420억원

지원 대상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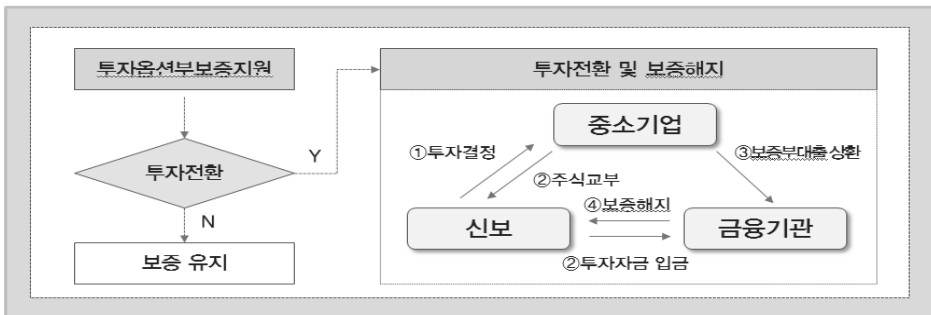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종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제도개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를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및 스타트업지점에 신청 및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상담·접수	기보증기업 또는 신규보증이용기업 보증상담 및 접수 (영업점 상담기업은 스타트업지점으로 추천)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신용조사·심사	현장조사, 신용조사서 작성 및 보증심사	스타트업지점
보증서 발급	스타트업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스타트업지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5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9년(11월말 기준) 중 2,054개 기업에 2.0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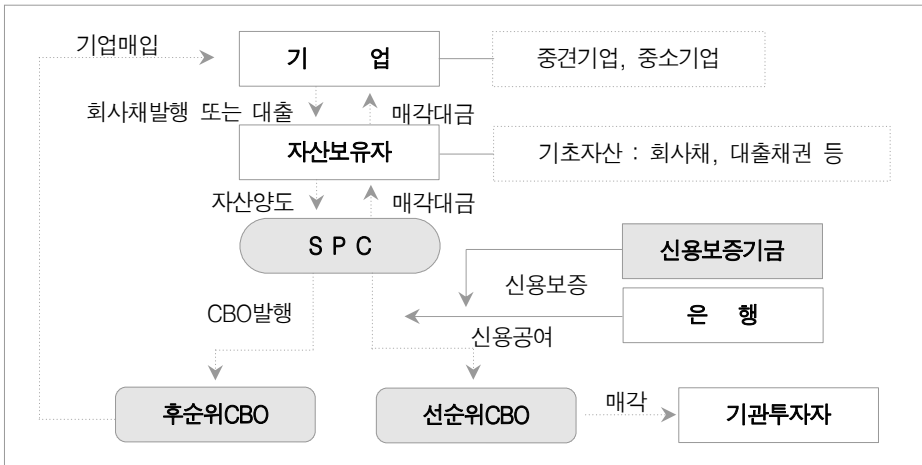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5) 이하로 EBITDA 이자보상 배율이 최근 2개년 계속하여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10”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영위 기업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편입한도	250	220	170	120	70	50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K5이상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70	50	40	30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III·IV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 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2.48%(K1등급) ~ 4.58%(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2.53%(A등급) ~ 4.08%(BB- 등급) 수준
상기 금리수준은 2019.12.0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중소기업은 연 0.9~1.2%)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편입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제출 서류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만약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공급계획(연간) 2.0조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53가지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회생,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기업

지원 한도 같은 사업당 최고 5,000억원 보증

- 토지선보상을 위한 보증은 3,000억원을 한도로 별도 운용

지원 내용 보증지원 누계 : 205개 사업, 총 27조 8,337억원 ('19.11월말 기준)

- 도로 :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38개 사업 13조 5,484억원
- 철도 : 신분당선 등 10개 사업 5조 452억원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2조 4,548억원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1조 279억원
- 환경 : 순천에코그린 등 26개 사업 9,728억원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2개 사업 4,364억원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1개 사업 1조 5,525억원

신청 · 접수

- 보증상대처의 확인을 받은 보증신청서를 서면 제출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내용

- 사업타당성, 출자자 자금조달능력, 주무관청의 보장내용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시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㉞)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053-430-448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보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구 분		온라인 간편보험	온라인 심플보험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보 험 한 도	보험계약자	20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자의 구매자별	10~50백만원	20~40백만원	10백만원
	구매자 한도	30~200백만원	60~100백만원	30백만원
보 험 료 율		1.0~1.5%	1.1~1.5%	1.0~1.5%
신 용 등 급		(10등급 중) 7등급 이상	<좌 동>	등급산출생략
신용도 취약기업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성 보험(B2B PLUS+보험) 출시

- (상품내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계약자가 B2B Plus+ 보험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보험대상)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보험계약자)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1년, 신용등급 AR12 (UR7) 이상인 제조업
- (구매자) 당기말 기준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보유한 AR11(UR6)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들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 유망창업기업 융복합 패키지 지원

성장잠재력을 갖춘 Start-up이 본격적인 성장계도로 진입할 때까지 4단계 지원체계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우수 Start-up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 내외 선발

* '19년 지원현황 : 200개 기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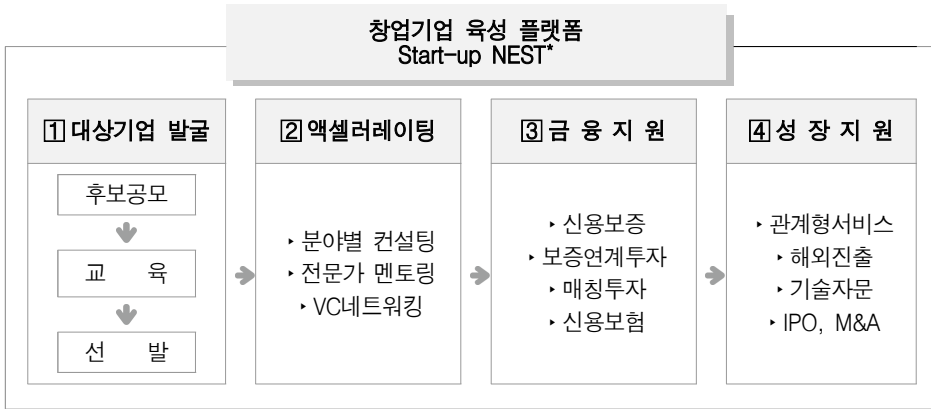
지원 대상

-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전기·자율차,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AR·VR,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 유사 지원사업 예시 :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연계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제도 개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New)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성(Expandability)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Start-up)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복합 육성 플랫폼(Total Platform)

지원 내용

- Pre-NEST 교육
 - NEST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서 Level-up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복합 지원 (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VC라운드테이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 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 및 회수전략 지원,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기술자문 전문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대상기업 공모시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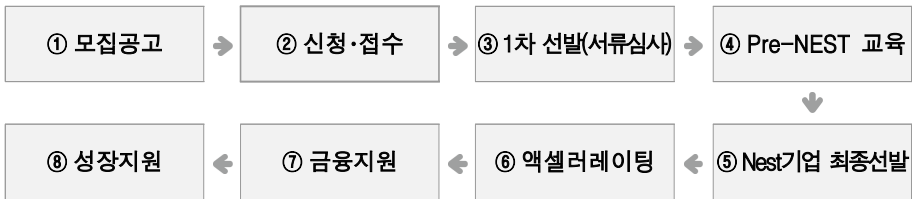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지속성장가능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사업화가능성 등

제출 서류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3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9 잡매칭(Job Matching)

|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신보 거래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보거래 중소기업 분류 :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등
- 일자리지원 및 구직자pool 확보를 위해 다수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온라인 채용사이트 (잡클라우드)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신보 선정 좋은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기업 등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

지원 내용

- 신보가 운영하는 채용지원사이트인 잡클라우드(Job Cloud)에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 (고용노동부 채용사이트)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1년중 특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참가 시 참가비 등 전액 무료
 - 온라인 채용박람회 : 민간 포털사(예: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에 채용광고 게시 및 배너 홍보 등
 -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면접절차 진행을 위한 부스 설치 비용 및 참가비 등 무료
- 신보 기업연수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발 및 채용직원에 대한 직무 연수 제공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접속 후 '잡클라우드' 클릭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88~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유형 및 창업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약 9조원

* '18년 지원현황(공급) : 31,401개 업체, 9조 294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유망창업기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창업보증 : 창업前 6개월부터 → 보증한도 10억원
- 신생기업보증 : 창업後 3년이내 → 보증한도 10~20억원
- 창업초기보증 : 창업後 3~5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창업성장보증 : 창업後 5~7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퍼스트펍권보증 : 창업後 5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퍼스트뱅크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 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 령		• 창업 후 5년 이내		
대상기업		• 제조업·신성장 동력기업·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중 신보의 “퍼스트뱅크 창업유형별 평가표 평가” 결과 80점 이상		
보증 한도	총한도	• 총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 3년간 지원한도 →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연차별 한도*	Min(Credit Line의 4/6, 1년차 추정매출액, 소요자금)	Min(Credit Line의 5/6, 2년차 추정매출액)
보증료율		고정보증료율 0.7%p		
보증비율		100%	95%	90%
비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요청시 우선 지원 •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금리 우대 • 전문 경영컨설팅 및 Job-Matching 서비스 제공 		

* 경영목표 달성 점검 결과 '양호'시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지원대상 요건은?

A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종 류	대 상
전문자격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격증(산업인력공단 등) 보유 · 교수, 박사, 연구원(3년이상) · 제조업, 프로그래밍제작업 등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 경력 10년 이상
아이디어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진대회 수상 ·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높은 기업 · 지식기반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Q 유망창업기업 단계별 우대내용?

구 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업 력	창업前 6개월	창업後 3년내	창업後 3~5년	창업後 5~7년
보증한도	10억원	10~20억원	30억원	30억원
보증료율	0.7%p 차감	0.4%p 차감	0.3%p 차감	0.3%p 차감
보증비율	100%	95~100%	95%	90%

2-11

컨설팅

|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경영·특화·신용관리컨설팅 총 1,994건

지원 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주식상장(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 기업승계, 지식재산(IP) 등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 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 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 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 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최대 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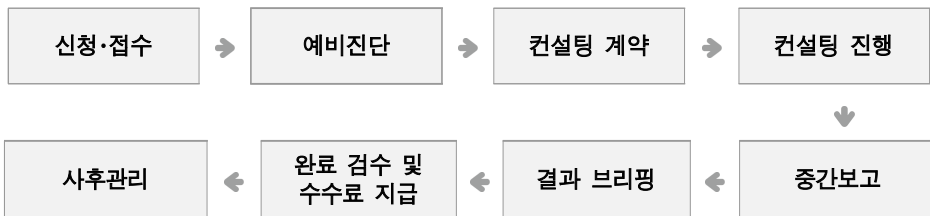
신청·접수

- (경영·특화컨설팅) 컨설팅플랫폼(www.kodit.co.kr/consult)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 컨설팅)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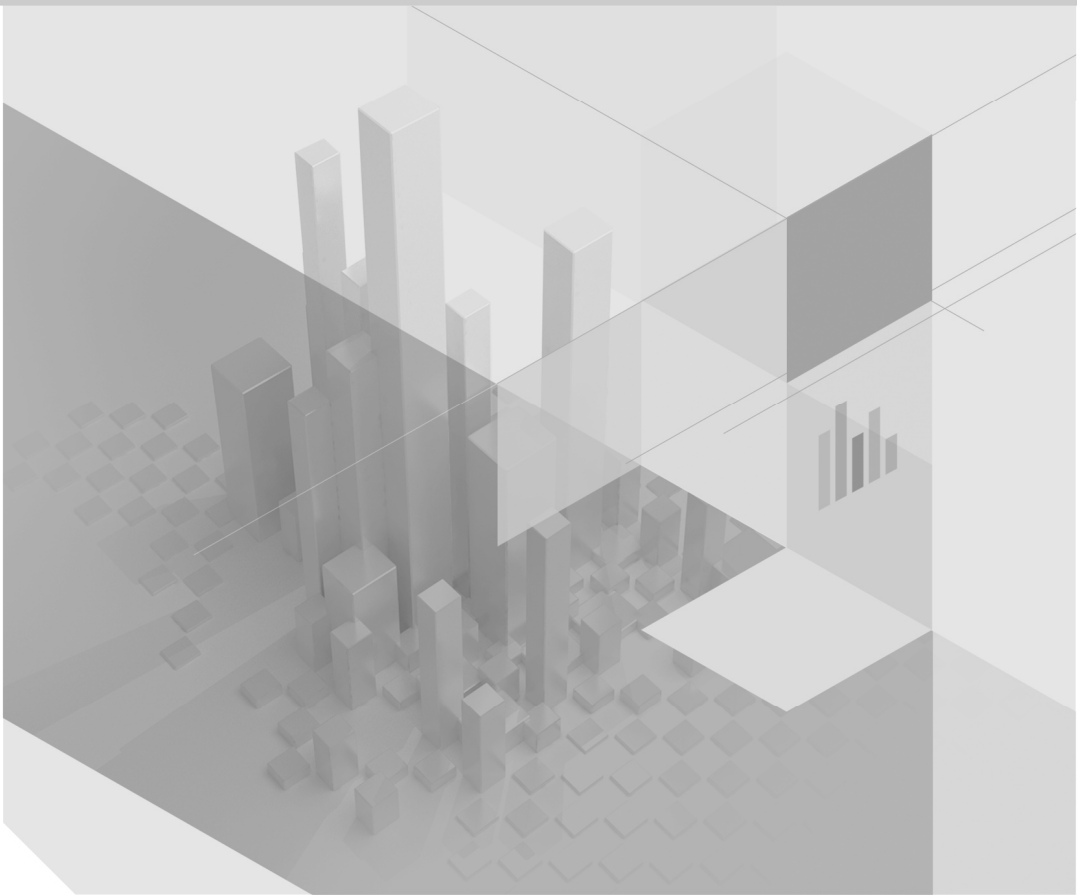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3부

기술보증기금

- | | |
|----------------------------|--------------------------|
| 3-1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22 | 3-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158 |
| 3-2 기술보증 / 123 | 3-14 기술평가 / 161 |
|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126 | 3-15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 164 |
|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129 | 3-16 특허공제사업 / 166 |
|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 132 | 3-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 168 |
|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 135 | 3-18 기술신탁관리 / 171 |
| 3-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 138 | 3-19 기술임치제도 / 173 |
| 3-8 기후기술보증 / 141 | 3-20 TTRS / 175 |
| 3-9 문화산업완성보증 / 144 | 3-21 보증연계투자 / 177 |
|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148 | 3-22 투자연계보증 / 179 |
| 3-11 R&D 보증 / 152 | 3-23 엔젤투자연계보증 / 181 |
| 3-12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155 | 3-24 벤처확인평가 / 183 |
| | 3-25 이노비즈 인증평가 / 186 |

3-1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20년도 총보증 규모는 22.5조원으로, 신규보증 4조원을 포함하여 총 21.0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22.5조원

* '19년 11월말 현재 보증잔액 : 22.3조원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잔액	213,000	223,127	224,500	+11,500
기술보증	209,000	219,895	221,500	+12,500
유동화회사보증	4,000	3,232	3,000	△1,000
보증지원	202,000	205,245	210,000	+8,000
기술보증	200,000	203,686	209,000	+9,000
신규지원	45,000	45,514	40,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2,000	1,559	1,000	△1,000

○ 중점지원분야(창업·R&D·일자리창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40,000	51,064	45,000	+5,000
일자리창출기업	49,000	51,129	50,000	+1,000
수출중소기업	27,000	28,194	31,500	+4,500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3-2 기술보증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20년 기술보증 잔액 22,2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19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 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 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 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 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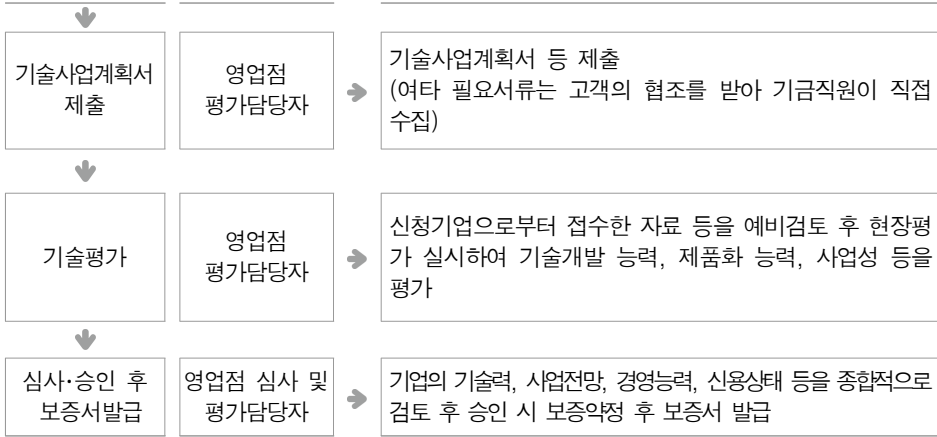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 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채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 95%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지식문화창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중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 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 규모

2020년 일자리창출기업보증 5조원

* '19년 지원계획: 4조 9,000억원

지원 대상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셰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일자리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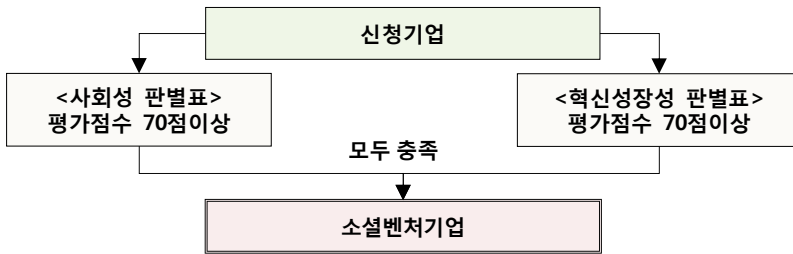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소셜벤처기업 우대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5%p 감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소셜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됩니다.

3-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4조 5천억원

* '19년 지원계획 : 4조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펌리스 기업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 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또는 기선정)으로 확인된 기업, 자체 구축 기업으로 구축수준을 확인받은 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예정포함)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p감면~고정0.5%p

신청·접수

'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 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혁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거나,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테마

3-8 기후기술보증

|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 및 사업화 준비자금은 R&D보증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 R&D보증제도와 동일하게 R&D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 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 된 기업이다. 본 건 보증신청금액 3억원 미만의 경우 경제성 분석 생략
- 사업화자금
 - R&D사업화의 경우 CTRS(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기타 기후기술 사업화의 경우 KTRS 평가표 등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 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R&D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후기술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기업자체 R&D과제 판단표'를 만족하는 과제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원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기타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입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 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CTRS평가표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후기술(제품)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

3-9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100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크라우드펀딩 신청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 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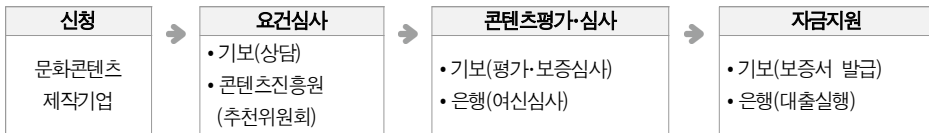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입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 증명	사전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사전동의서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동의서

처리 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000억원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 산업 중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중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중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 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준비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 금 수 집 서 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3-11

R&D 보증

I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50,000억원

* '19년 10월 현재 지원현황 : 48,053억원

지원 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 '된 기업

구분	주요내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 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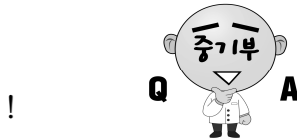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승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12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897건, 1,829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당초 특허청이 평가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특허청과 금융기관(또는 신청기업)이 평가료 지원을 분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 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3-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1,00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5,095건, 10,444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사문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평가로 지원은행 확대(수협, 경남은행)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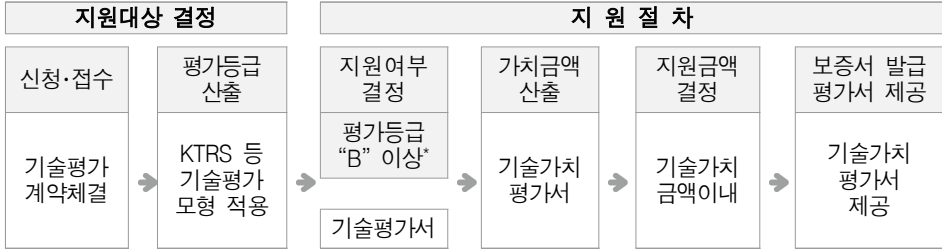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 공 행정 정보: 산업재 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 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3-14 기술평가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용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지원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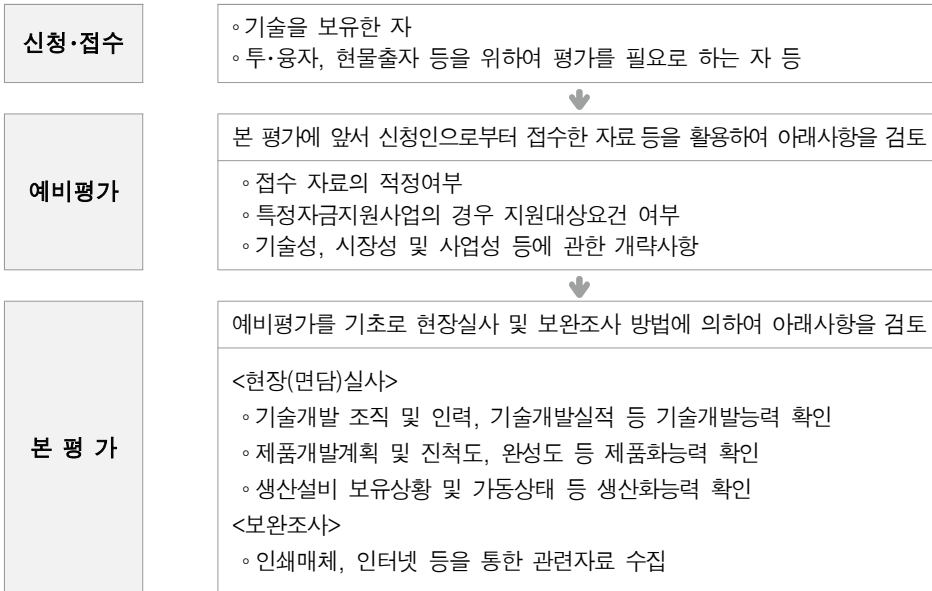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처리 절차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p>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가	<p>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p> <p><현장(면담)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p><보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5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900억원 내에서 지원

* '19년 지원현황 : 89개 업체 / 101.3억원 지원(평균 1.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나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 내용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계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금집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중소기업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흥공단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 절차

재창업재기지원보증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 신보, 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3-16 특허공제사업

|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 규모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최대 25억원)

* 부금월액은 30만원~1,000만원이며, 12회 이상 납부 후 조건 충족시 대출 가능

지원 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옥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체종일 때
-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반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특허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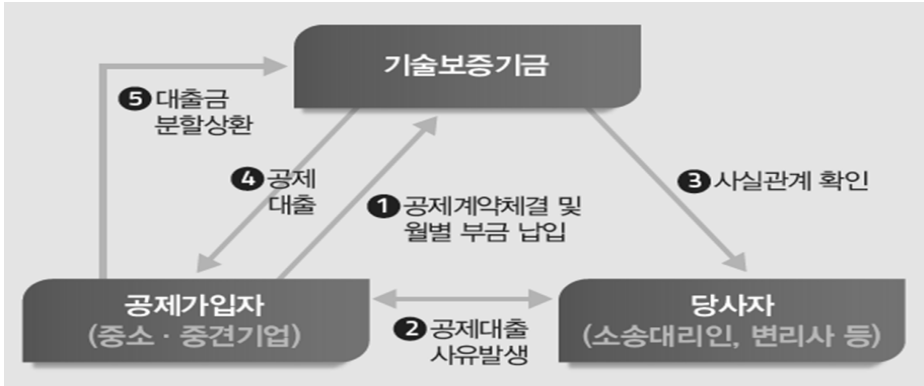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접수

특허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특허공제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운영센터: 02-3484-8900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특허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

**Q**

특허공제사업인데 특허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12월 현재 연 단리 2.00%)

3-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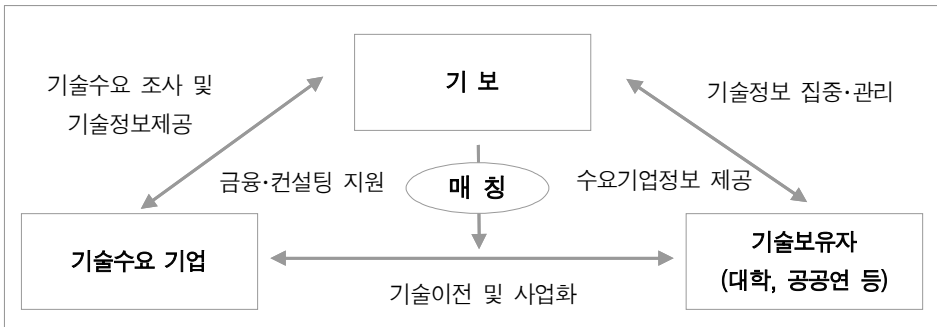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 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제출 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IP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3-18 기술신탁관리

|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신탁관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 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 내용 기술신탁관리 서비스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지원한도 250만원)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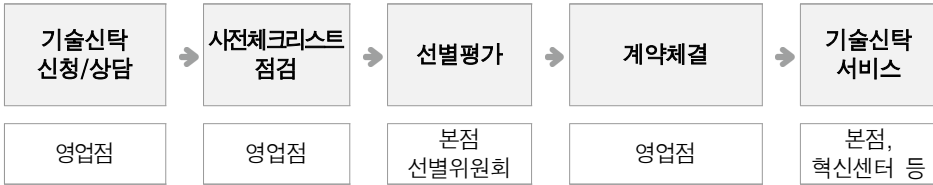
- 사전체크리스트 : KPAS(기보 특허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제출 서류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자세한 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기술신탁관리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29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 신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탁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특허자동평가시스템) : KIBO Patent Appraisal System의 줄임말로, 빅데이터(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3-19 기술임치제도

| 공개되지 않은 기술 노하우를 위한 기술보호 수단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임치서비스 대상물

-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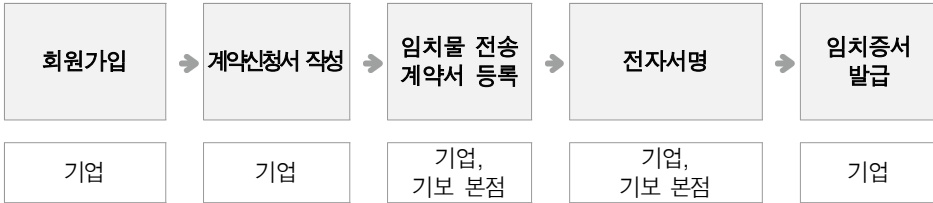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출 서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 절차

○ 기술임치서비스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중략>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20 TTRS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 대상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등록 대상물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 절차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Q TTRS는 어떤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 ('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21 보증연계투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60억원('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14억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법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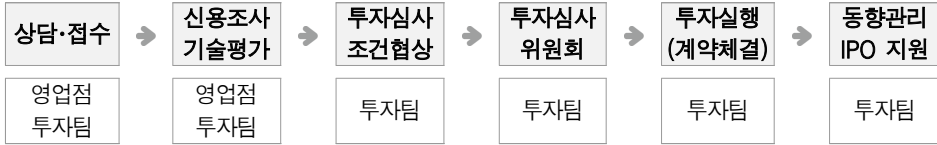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2 투자연계보증

| 민간투자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215억원

지원 대상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는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구분	종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 분은 투자로 불인정

지원 내용

- 보증비율 :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 0.3%p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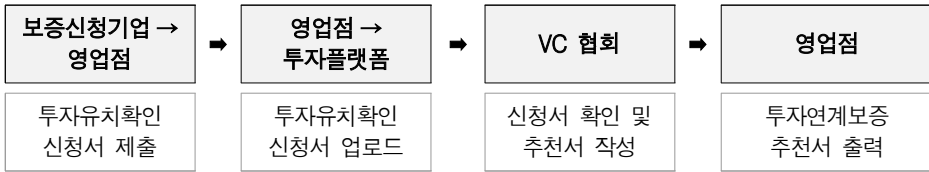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3

엔젤투자연계보증

| 엔젤투자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200억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49억원

지원 대상 최근 3년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 신청 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5천만원 이상 투자)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 기업**
 - *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주식, 현물투자 제외
 - **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종인 기업
- ✓ 기금과 채무관계에 있거나 신용관리정보대상인 기업(대표자 등 포함)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 기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금액사정특례 : 엔젤투자금액의 2배이내(최대 3억 한도)에서 지원
- 보증료 : 0.3%p 감면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4

벤처확인평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 중으로 유형 및 평가기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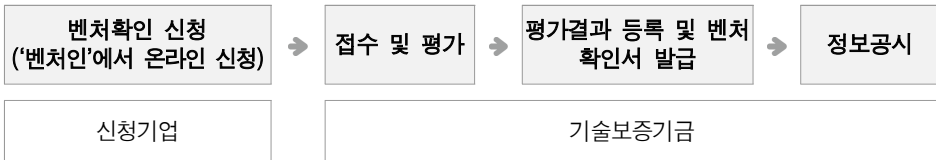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 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순 번	업 종 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3-25

이노비즈 인증평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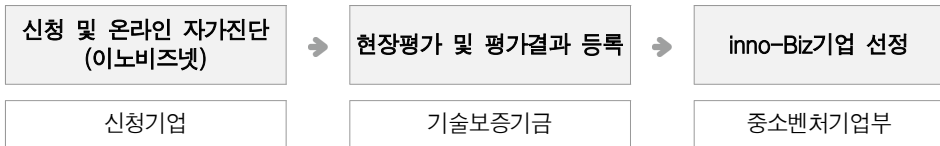
연중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8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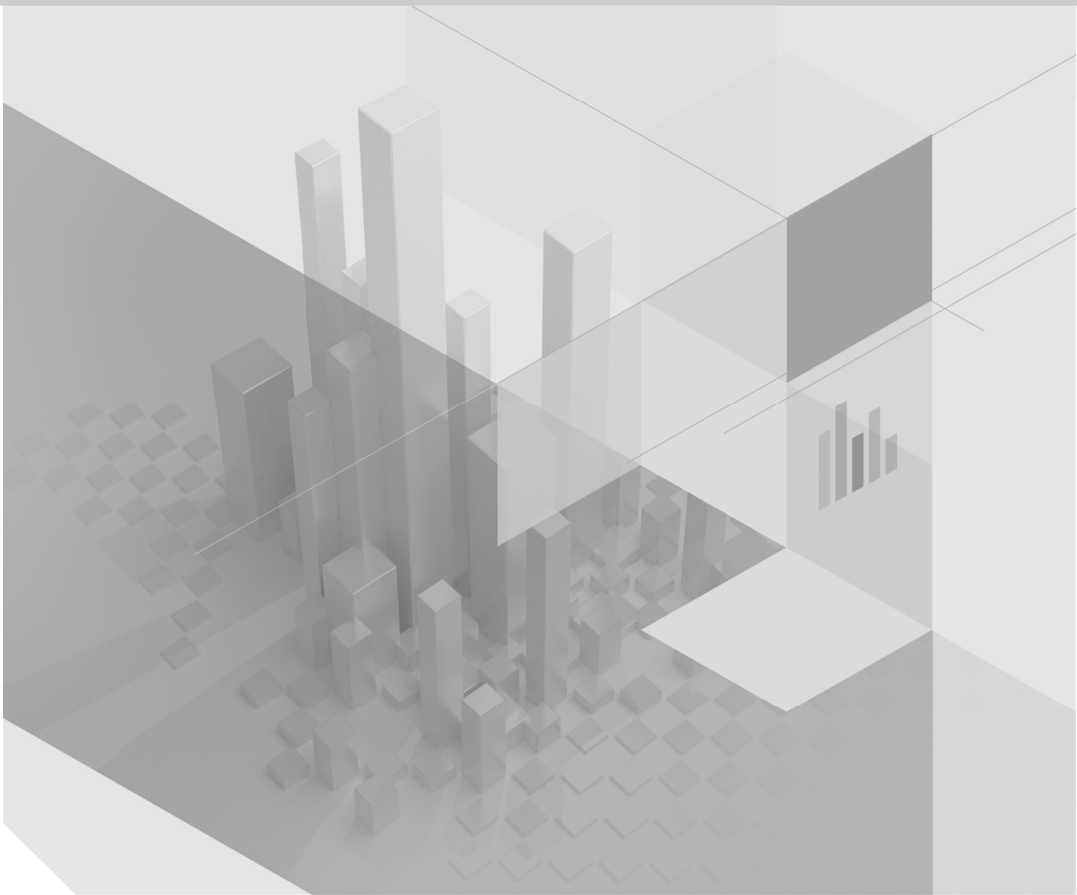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4 부

기업은행

- 4-1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190
-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191
- 4-3 IP사업화자금대출 / 192
- 4-4 IBK혁신기업대출 / 194
-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196
- 4-6 IBK강소기업대출 / 197
-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198
- 4-8 IBK문화콘텐츠대출 / 199
-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201
- 4-10 IBK시설투자대출 / 202
-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204

4-1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 상품

구분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 고
유스기술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혁신기업대출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수출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자금 지원	
수출인지원	IBK강소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설투자	IBK시설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 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1조원

지원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주담보 취득대상 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 운전자금 : 담보 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100% 이내

대출 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 조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주담보 운용 가능

우대 사항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3 IP사업화자금대출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IBK테크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지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IBK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 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 가. 운전자금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 평가등급' 및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나. 시설자금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 조건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 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4

IBK혁신기업대출

|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수출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1조원

지원 대상

- ◆ IBK혁신기업 : IBK기업은행의 'IBK혁신기업' 선정기업
- ◆ 성공기업 :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SD 100,000불 이상 기업, IBK트레이드클럽 선정기업
- ◆ 일반기업 : IBK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가치평가등급 FV(firm value) 1~2등급,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서 당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4 이상인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혁신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우대 사항

구 분	IBK혁신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연 1.0%p 이내	연 0.5%p 이내	연 0.3%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등급 제공기관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기술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 IBK기업은행	BBB 이상	T4 이상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일

지원불가 기업

-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운전자금

담보 조건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6

IBK강소기업대출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4-8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규모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준용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 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 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4-10

IBK시설투자대출

|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

대출 대상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

대출 한도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 사항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 5 부

한국수출입은행

- 5-1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206
-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207
- 5-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209
-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 210
-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212
-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 214
-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 216
-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218
-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220
-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223
-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 225
- 5-12 해외사업금융 / 227
-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 230
- 5-14 이행성보증 / 232
-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 234
- 5-16 해외온렌딩 / 236

5-1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 기술금융 프로그램
 - * 상생금융 프로그램
 -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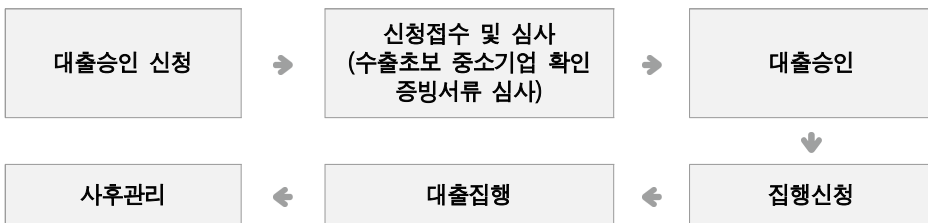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정부의 월드클래스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신부점 및 출장소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경영정보서비스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금융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 02-3779-6435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사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정책조정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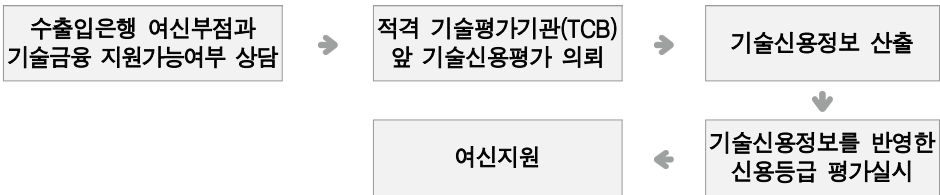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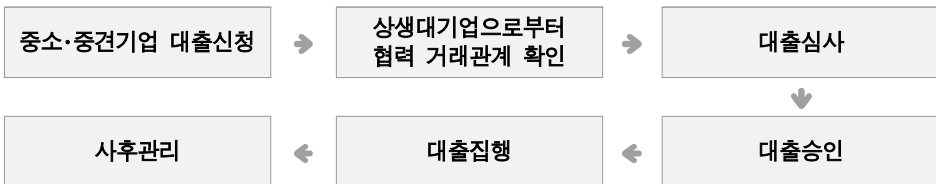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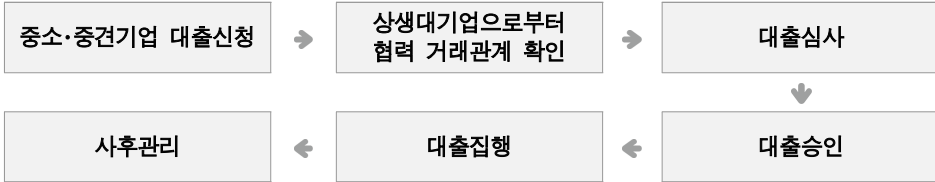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서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원청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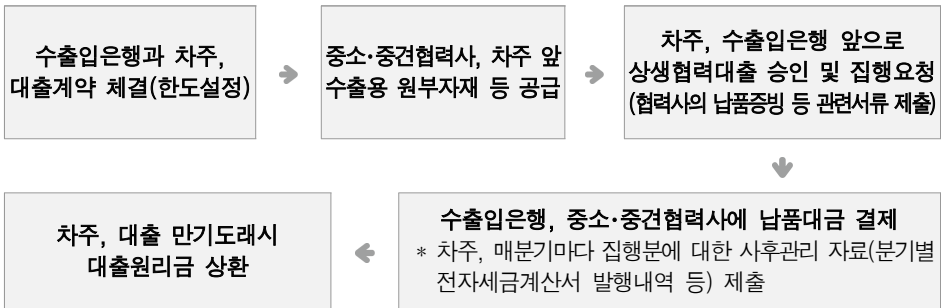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기업·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 02-6255-5410
- 기업금융2부 : 02-6255-5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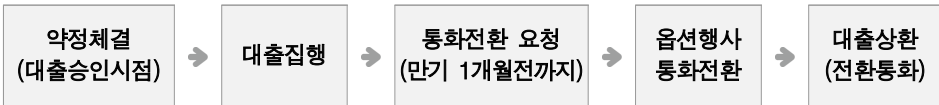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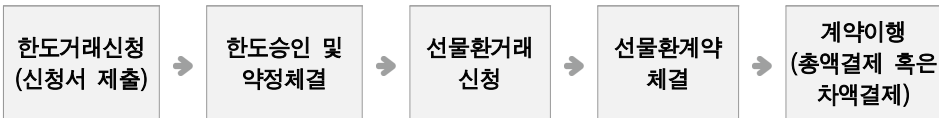
①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 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하든챔피언팀 (02-6255-5293)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5-5712)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 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 협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 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영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원(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가능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 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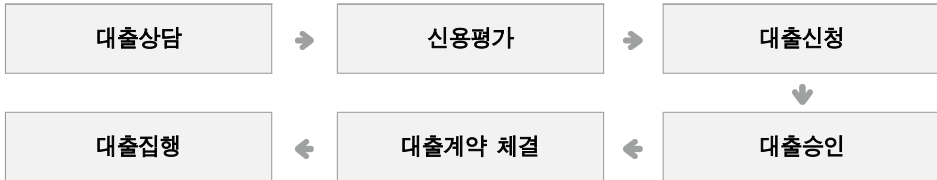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해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2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 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 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울산지점 : 052-274-5276
- 청주지점 : 043-237-0475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울산지점 : 052-274-5276
- 청주지점 : 043-237-0475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4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7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 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최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대출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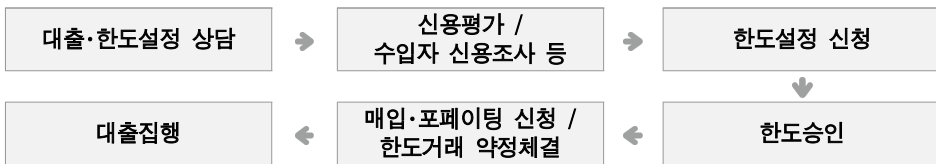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6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19.1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중국은행, 우리소다라은행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 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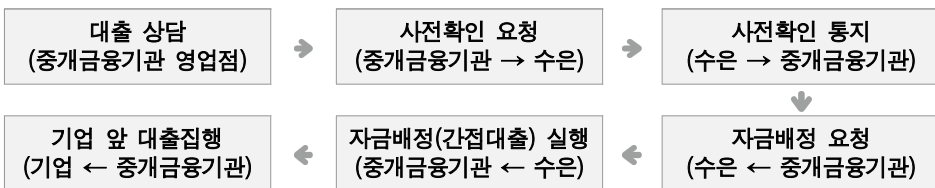
신청·접수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 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6255-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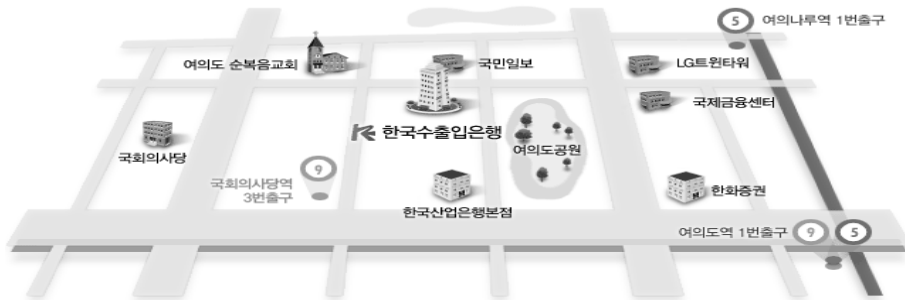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322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제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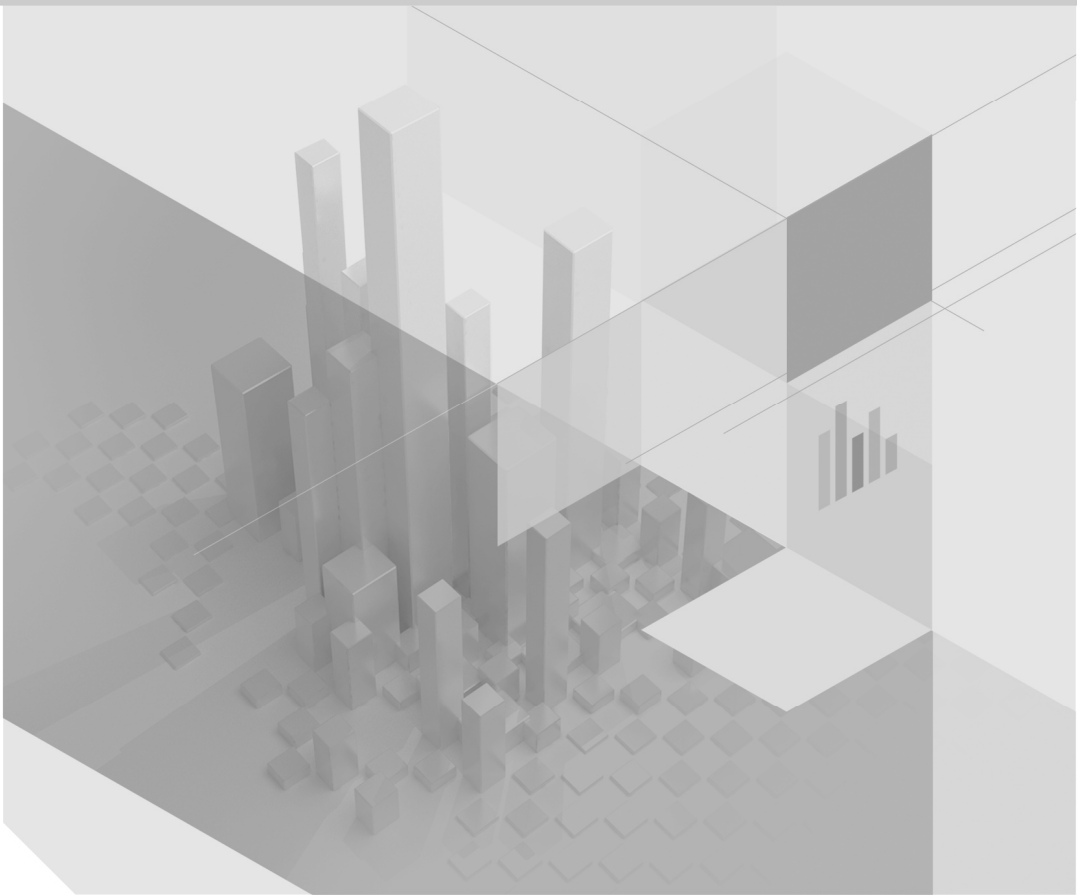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 (02)3779-6114 / FAX: (02)784-1030

〈국내지점〉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천 천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원 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전 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주 주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산 산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구 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원 원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산 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주 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주 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미 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수 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빌딩 4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주 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 242

6-1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상품별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분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분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 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혁신성장 공동 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출 구매용 자금

구분	지원요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중 차세대 동력장치,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화 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재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A,B,C등급) * 단,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 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승인일 7년 이내)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300개)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시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등 기존 특별온렌딩 지원분야 영위 중소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및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등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온렌딩 지원요건 내 6T 중 BT 관련 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E)건강진단 품목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

- *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규온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대출 기간

구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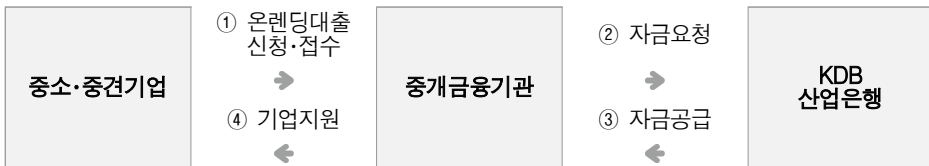
신청·접수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9.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쿠온캐피탈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 0580

! Q 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근처에 산업은행 영업점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A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으로 가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7 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246
-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248
-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250
- 7-4 수출신용보증(매입) / 251
- 7-5 단기수출보험 / 252
- 7-6 중소중견Plus+보험 / 256
- 7-7 환변동보험 / 257
-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260
- 7-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262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 영업점에서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 회원사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용-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3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 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 이내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6

중소중견Plus+보험

| 중소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3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최대 U\$50만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클레임 위험의 경우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최대 3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7 환변동보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일반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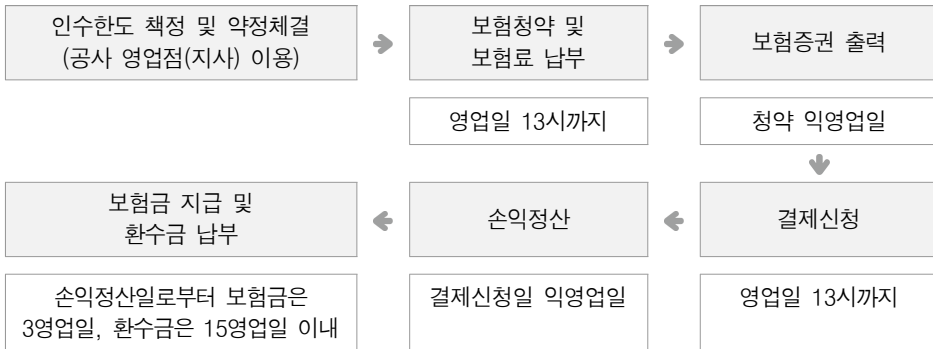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과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무역협회,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중(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청약 및 결제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
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지원 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 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 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 절차**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5% (공사수수료 4% 별도)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 수입가능성 확인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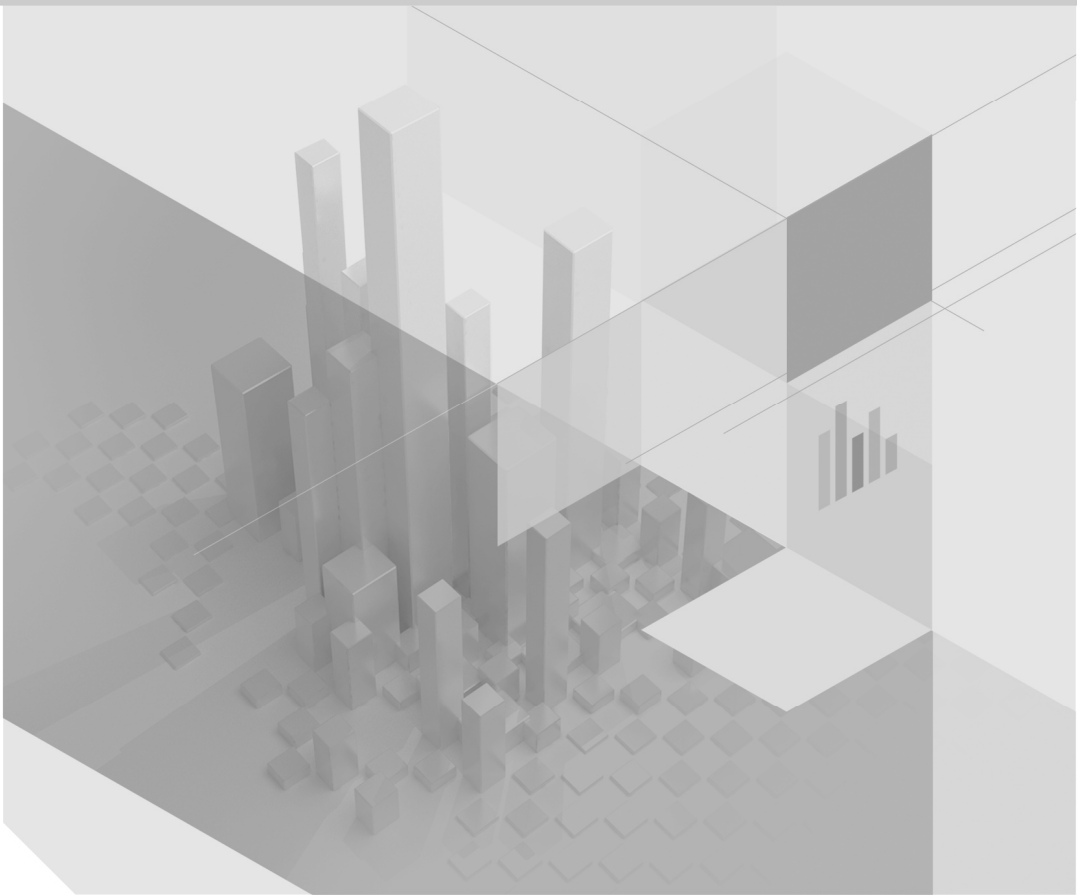


제 2 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266
-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70
-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274
- 1-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278
- 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282
- 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285
- 1-7 연구기반 활용 / 289
- 1-8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 292
- 1-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299
- 1-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299
- 1-11 시가만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305
- 1-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307
-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310
- 1-1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312
- 1-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315
- 1-16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318
- 1-17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 320
- 1-18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323
- 1-19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326
- 1-20 산학연 Collabo R&D / 329
- 1-2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R&D) / 332
- 1-2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 개발 / 335
- 1-2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338
-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340
-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343
- 1-2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345
- 1-2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348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R&D지원 공통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단 내역 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세부내용 공고 확인 요망)

지원 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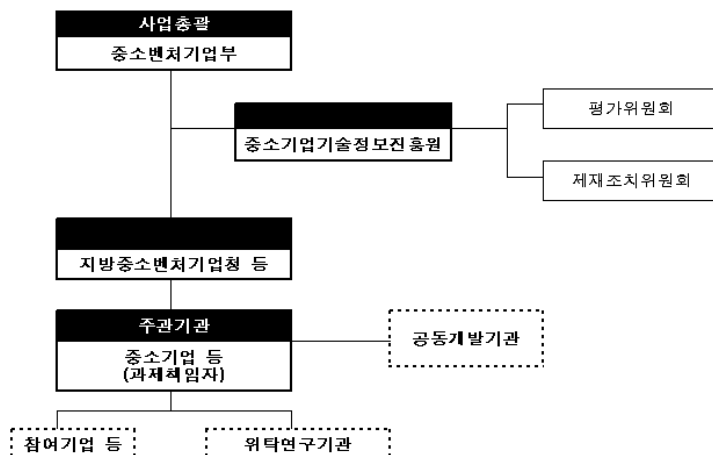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구체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글로벌화 역량, 고용친화도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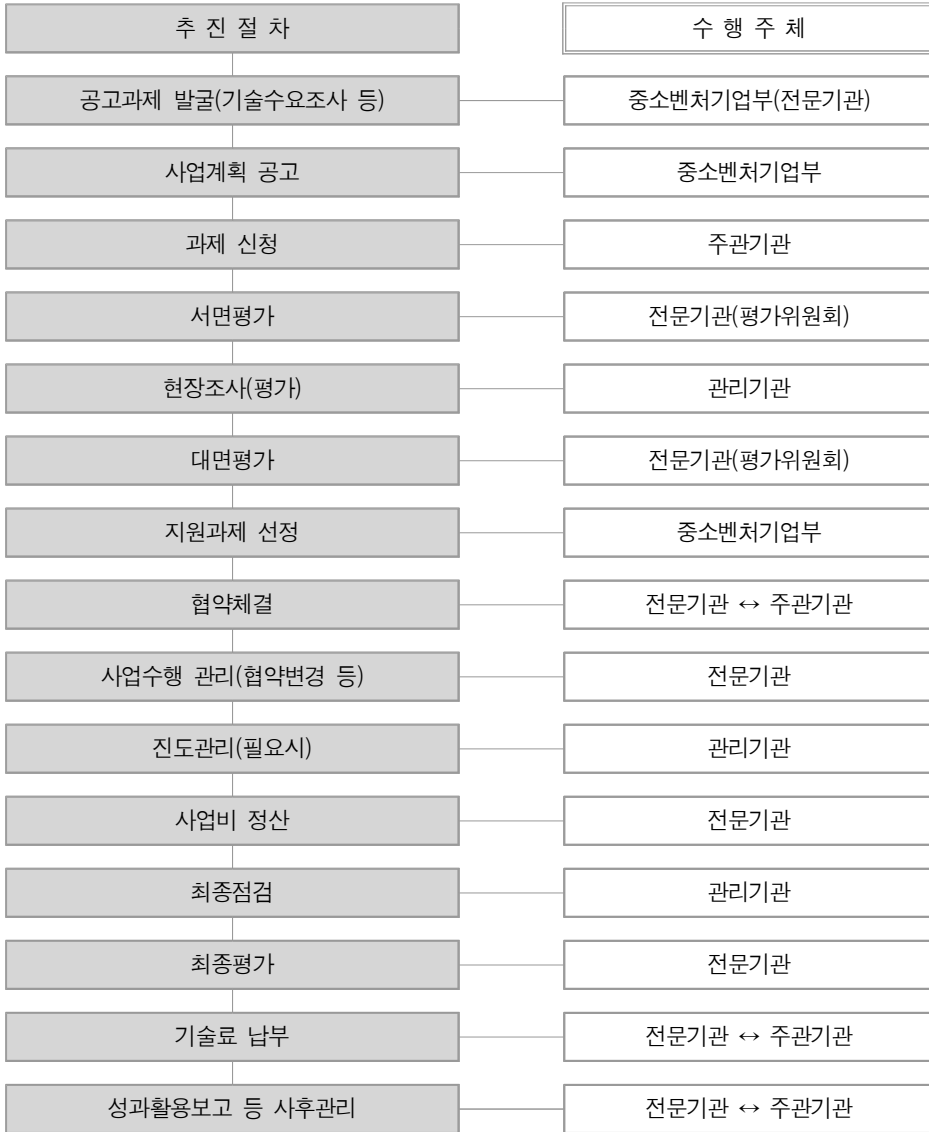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및 사업별 공고 양식 참고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 또는 통합하여 추진

문 의 처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유선은 042-1357)

용어설명

관리기관 :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획기관 :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

협약기간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총 기술개발기간(최초 기술개발 시작일 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과 동일함

서면평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현장조사(평가)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투자심사 :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연구비관리시스템 :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료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 규모

2,441억원(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 ~ 700억원의 중소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 등 시장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사업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별도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4년, 20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65% 이내)

- 수출지향형(125억 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9억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788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 개편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수출지향형 (글로벌 경쟁)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시장확대형 (경쟁 단계)	최대 2년, 6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 활용
시장대응형 (역량 초기)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고용창출 및 유지계획)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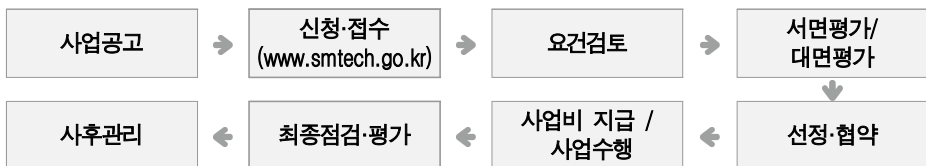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



<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기술개발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 A**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피노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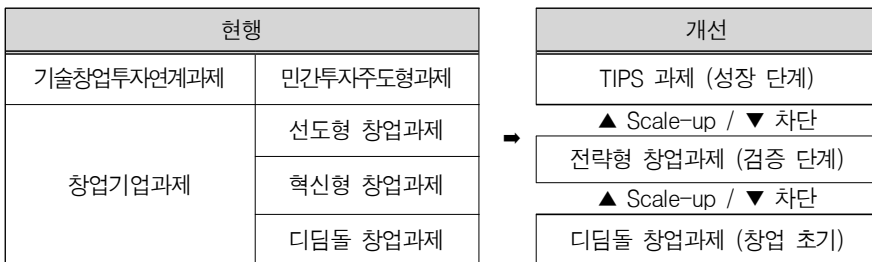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 미만) 추가 설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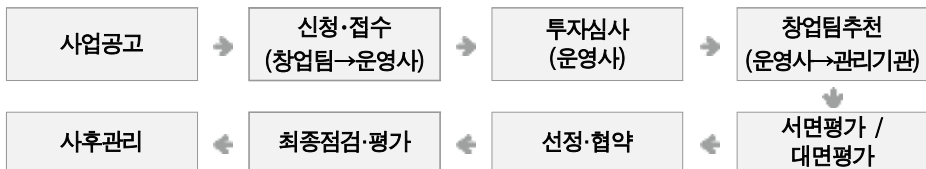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1-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025억원(신규 1,096억원, 계속 9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750개 중 520개 선정지원(3.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0)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 1:1, *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수시접수*)

* 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 수요처 부담금 확대 : 수요처 부담 비중 상향(15%→20%) 및 현금 부담비율 60% 적용(5%→12%)
 - * 다만, 사전에 수요처와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부담 비율 상향 및 수요처 부담금 면제(정부 65%, 주관기관 35%, 수요처 0%)
- 공동투자형(민관공동투자)
 -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과제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¹까지 확대
 - * 정부출연금 12억원 + 투자기업출연금 12억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 기타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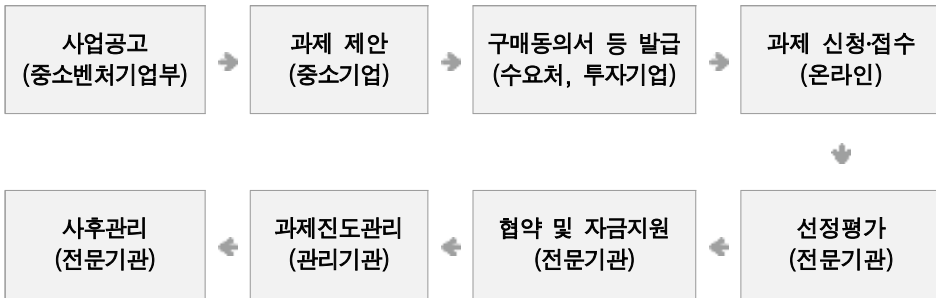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자유응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smt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smttech.go.kr)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 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 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 주도형 R&BD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73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5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93개 중 34개 선정지원(11.6:1)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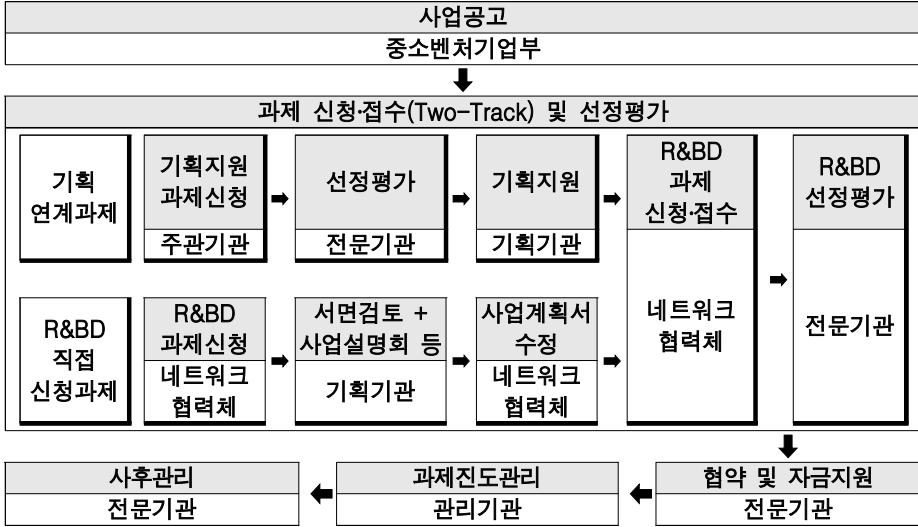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 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지원 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4
- 홈페이지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규모 총 396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억원)

* 기획평가비 14억 포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324개 기업, 81억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35개 기업, 18억원)
- 혁신형 R&D(213개 기업, 133억원)
- 현장형 R&D(423개 기업, 164억원)

지원 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혁신형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기업 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이 가능한 기업
- 현장형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혁신형 R&D : 스마트공장 수준향상(고도화)을 위한 공정자동화를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협력하는 도전적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
 - * 과제당 연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이내
- 현장형 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 지원
 - * 과제당 연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형 R&D 및 현장형 R&D를 통해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제조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과 제조혁신을 촉진
 - * 혁신형 R&D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공정혁신 지원 / 현장형 R&D :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형 R&D	'20년 1월	'20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 ~ 9월	'20년 4월 ~ 10월
현장형 R&D	'20년 1월	'20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 ~ 9월	'20년 4월 ~ 10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은 '19년 선정과제에 한하여 지원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심층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술평가본부 : 042-388-0762, 0763, 0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Q "기존제품" 에 타사의 기존제품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자사의 기존제품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사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7 연구기반 활용

I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132억원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 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 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 활용 촉진비로 지급

○ (지원 내용) 장비 이용료 총액의 60~70%

구 분	기 준	지원 비율	비우처 발행 한도*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7,142천원 (2,142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8,333천원 (3,333천원)	116,666천원 (46,666천원)

* 해당 금액까지 발행 시 국비 지원 한도는 공유확산형 500만원, 연구집중형 7,000만 원임.(공유 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을 합산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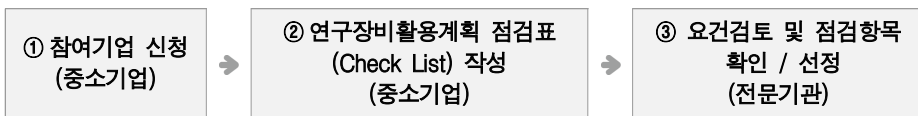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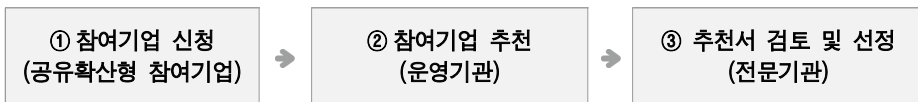
처리 절차

신청 완료 후 요건검토 완료까지 7일 내외 소요

○ 공유확산형



○ 연구집중형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유확산형은 연구 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연구 집중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Q 연구집중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중 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1-8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스마트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27억원(신규 35개 과제 79억, 계속 19개 과제 48억)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제품·공정설계-생산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 제조현장에 다양한 ICT를 결합하여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자율 운영에 필요한 제조현장 고도화에 필요한 가상물리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지원

○ K-앱시스트 : 숙련기술자의 노하우 디지털화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앱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지원확대

- 현장수요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83억원)

○ 내내역사업 신설

- (신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内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신설(20.25억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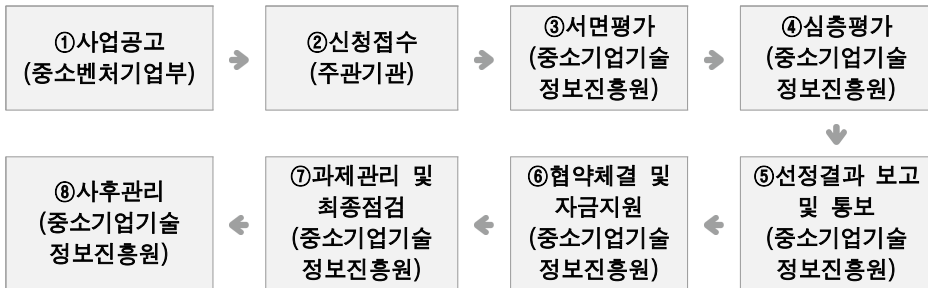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20.1월 末	1월~2월	3~4월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6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앱시스트(APPsist) : 독일에서 시작된 디지털 도제시스템의 명칭, 생산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상물리시스템(CPS) :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1-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희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 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사전진단) 희망기업 진단	기업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기술개발) 산연협력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 *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주관하는 선도연구기관에 지급
- * 3단계(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산연협력 기술개발)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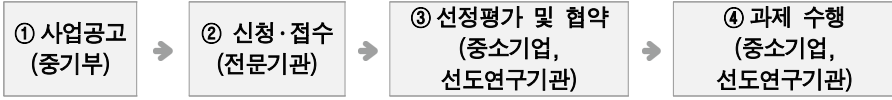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도연구기관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R&VD 지원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단계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연협력 적합도, 2단계 개발결과물의 사업성, 기술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선도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3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용어설명

선도연구기관 :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이 우수한 기관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 창출을 추가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1-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R&D 교육 및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38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10억원)

- R&D기획지원(38억원) : 13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49억원) : 126개 과제 내외(R&D과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포항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순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 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첫걸음 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혁신기업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2~8백만원	100%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위기지역 R&D 지원대상에 포함지역 중소기업 포함
 - 17년도 지진으로 인해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포함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사업계획서 신청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등록 완료 후 방문접수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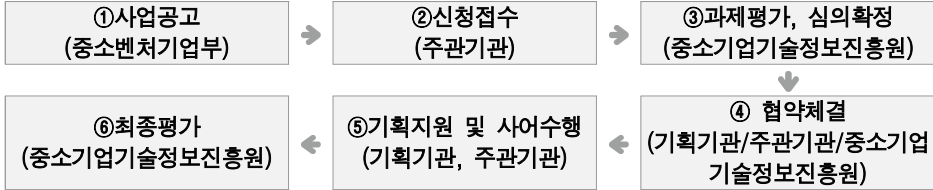
제출 서류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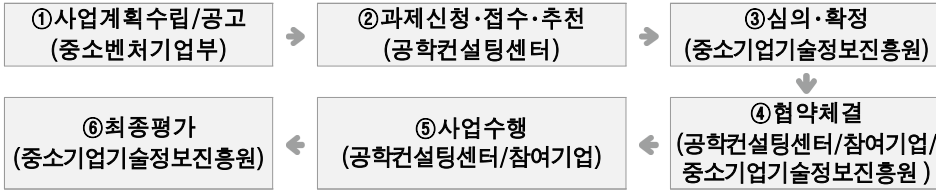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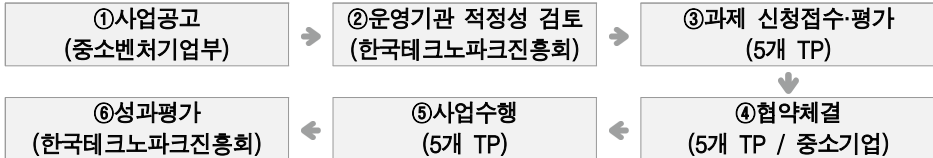
■ R&D기획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첫걸음 기획	1차/ 2차	'20.1월/4월	2월/5월	3월/6월	5/7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20.1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2차	'20.1 / 6	2~3 / 6~7	3~4 / 7~8	5 / 9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20.1월	2월	3월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6, 0741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홈페이지
 - (기획지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ntech.go.kr)
 - (Scale-up) 아래의 각 지역 TP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남TP(www.gntp.or.kr) ▪ 울산TP(www.utp.or.kr) ▪ 전남TP(www.jntp.or.kr)
 - 전북TP(www.jbtp.or.kr) ▪ 포항TP(www.ptp.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전략·분석보고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Q**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위기업종은 각각 무엇인가요?
-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조선·자동차 업종에 해당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지역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1-11

시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AI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동력 확보

기존 제품·서비스에 시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9억원(신규 14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등) 참여기업으로 시전문기업 필요시 참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시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1-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국민생활공간 및 중소형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국민생활 밀착공간 및 중소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 증대

지원 규모 103억원 (신규 10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를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배출 규모 4종, 5종 중소기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공간(식당, 학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개선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19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미세먼지 대응기술 : 미세먼지(PM10, PM2.5) 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술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69.75억원(신규 69.75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IL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1-1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기획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컨설팅 연계 지원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총 95억원(신규 기획과제 160개, R&D 60개 과제)

지원 대상

- (기획기관)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
 - *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리스트 공유
-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이노비즈(Inno-Biz)기업
- ③ 벤처기업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준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 * 규제내용·절차 검토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을 검토·제시할 수 있는 기관
 -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 내용 및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등 규제 대응 기획지원
 -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과제기획	3주 이내, 5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과제수행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 (1단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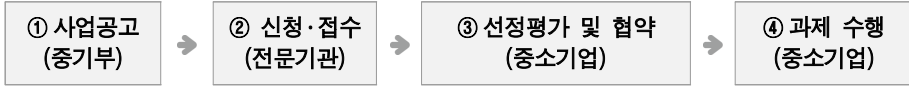
단계별 평가 주요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기획대상 서면평가 → 기획과제 선정
 - 기술규제의 애로사항, 사업추진 역량, 기술개발의 요약, 기대효과 등을 평가
- (2단계 R&D지원) 대면평가 → R&D 지원과제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
- Q** 기획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 A** 시험, 인증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Q**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기술규제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약 37%정도 과제만 2단계 R&D+규제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연구과제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나요?
- A** 네,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1-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한-러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복방 新시장 개척 지원

지원 규모

24.4억원(신규24.4억원)

- (기술진단기획) 약 25개 과제,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약 13개 과제,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진단기획) 러시아 협력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로부터 기술기획 및 진단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65%이내	품목지정

*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불가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기술진단기획)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상용화기술개발) '20. 1월 중 사전공고, 3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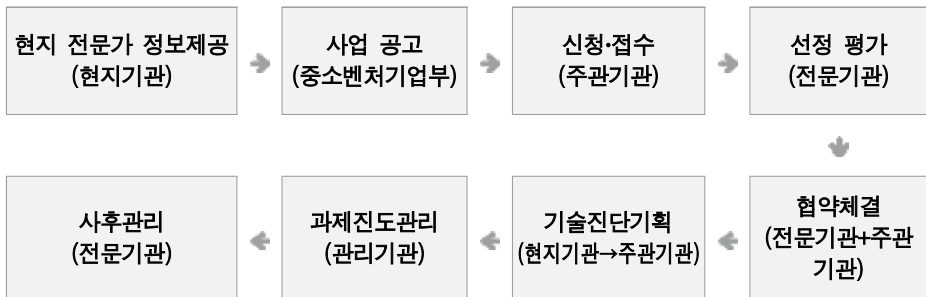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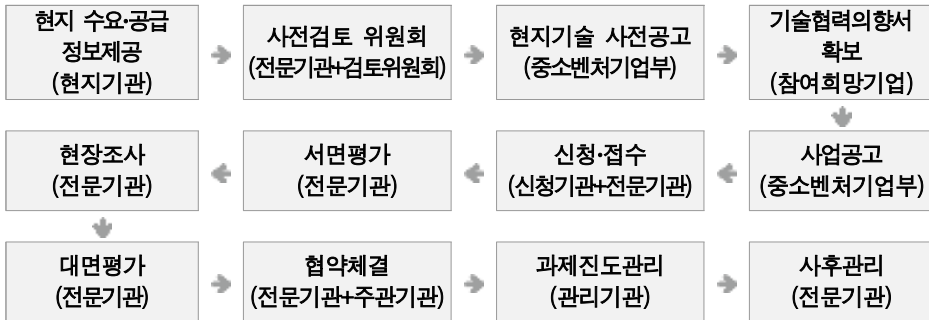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기술진단기획 추진절차 >



< 상용화기술개발 추진절차 >



* (전문기관) 기정원 (상용화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라혁신센터 (주관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1, 0176
- 홈페이지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기술협력의향서' 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지원 시, 자발적 기술협력의향서는 러시아 현지기관과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매칭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금지됩니다. 단, 기술진단·기획 혹은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완료 후 차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16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

지원 규모 72억원(신규 7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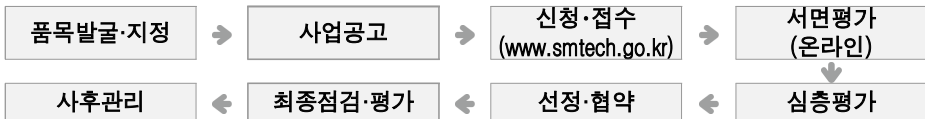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47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고성장 유망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품목 지정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17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총 62.5억원(신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전략분야 설정 (품목지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R&D)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 비중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6월	'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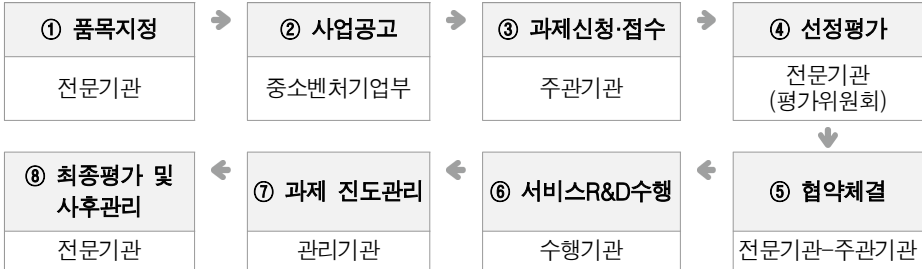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데이터 분석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BM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의 적정성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
- (사업성)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의 적절성, 과제 종료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화의 적정성을 검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92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 데이터 관련 업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Q** 본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자체보유데이터 및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1-18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 규모 125억원(신규 12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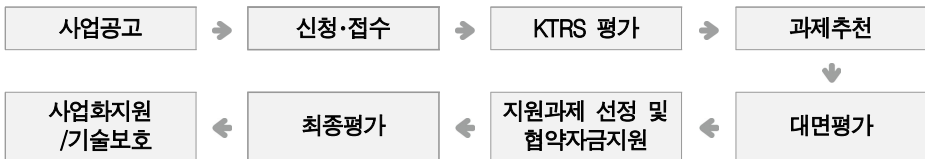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테크브릿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등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KTRS 평가: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1-19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45억원(신규 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인 경우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65% 이내)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신청 ·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3월	'20년 3월 ~ 4월	'20년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 →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4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1-20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지원 규모

317억원(신규 317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① 예비연구(PoC) → ② 사업화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8개월, 0.5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2년, 4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8개월, 0.5억원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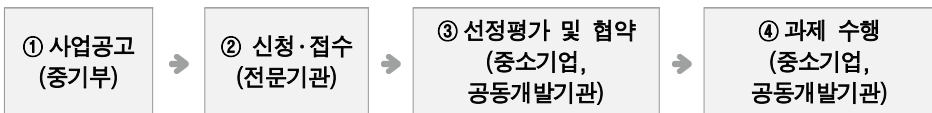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시에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1-2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 대학을 활용한 맞춤형 R&D 종합 지원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게 개방하여 산학협력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지원 규모

60억원(신규 60억원)

지원 대상

- (주관 운영기관)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권역별 1개씩, 총5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기간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 분석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중소기업 파견인력과 대학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기술역량 분석	기업 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최대 2년, 3억원	75% 이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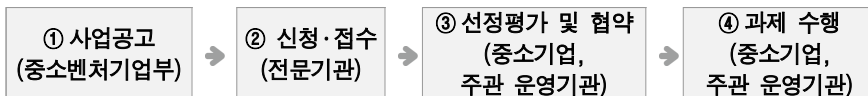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 운영기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맞춤형 R&D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 운영기관 추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협력 적합도,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고용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지원내용 중에 맞춤형 R&D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여건에 필요한 R&D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대학의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기술이전·교육 등을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과제 수행기간 동안 중소기업 인력 1인 이상을 대학에 파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A 네 의무이며,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을 파견해야 합니다.

→ 용어설명

주관 운영기관 :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기술개발, 연구장비 지원, 기술이전,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권역별로 1개씩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5개 대학

1-2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대학·연구기관·지역 조합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지역 조합을 활용한 보급·확산 지원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 개발과제 기획
 -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 개발
- *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8개 권역. 권역별 최소 2개, 최대 4개 과제 선정

-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지원 및 지역 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단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비율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6개월, 최대 0.3억원	100% 이내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대학·연구기관	2년, 최대 10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중소기업	1년, 최대 1억원	75% 이내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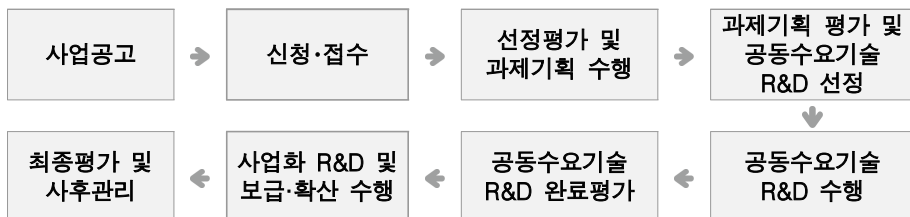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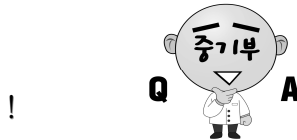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된 근거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04, 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수요기술 R&D를 주관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사업화 R&D를 수행할 권역 내 지역 중소기업 3곳 이상, 그리고 공동수요기술의 보급·확산을 수행할 지역 조업 또는 협·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의 민간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A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기업(최소 3곳)과 지역 조업 또는 협·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용어설명

공동수요기술 :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기술

1-2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공정·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173개 과제 내외, 34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BM개발과제) BM수요발굴 + BM기획(6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컨설팅(2개월) + R&D(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6개월, 25.5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6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75%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 034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월 공고예정)

지원 규모

- 예산 : 4,149.7억원(6,000개사, 민간포함)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 신규구축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정부지원) 고도화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상생형) 신규구축 최대 0.6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상생형) 고도화 기업당 최대 0.9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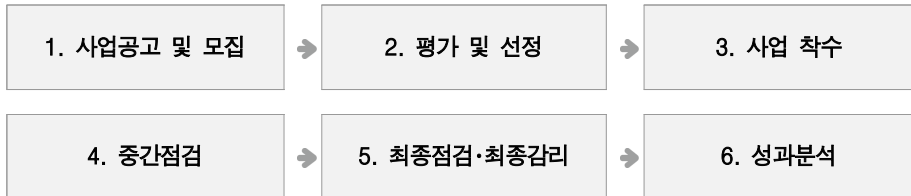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5, 0853, 0861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컨설팅 지원)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지원 성과제고

지원 규모 '20년 30억원(6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자문지원
 - (사전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전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 효과 및 보안·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 (구축 중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과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조건

-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부담 10%(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신청서(스캔본 등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일반문의), 042-388-0856

1-2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 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협·단체 내외(40.6억원)

* '19년 지원현황 : 24개 협·단체 신청, 12개 협·단체 선정 및 컨소시엄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수요·공급기업 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특화솔루션은 '13 ~ '19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공동활용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 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수요·공급기업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 '20. 1월 ~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6, 0862
- 경영혁신플랫폼 상담센터 : 1644-173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 사업신청 및 과제관리 : it.smplatform.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ICT솔루션 도입을 지원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ICT솔루션 구축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월말 공고예정)

지원 규모

- 예산 : 93억원(150개사)

지원 대상

- 국내 서비스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흥·향락업
-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이 필요한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IoT, AI,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0.6억원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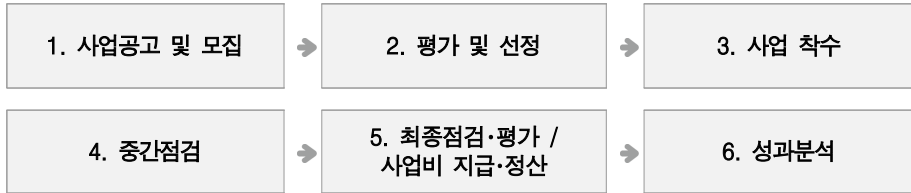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심사평가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 절차



문의 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 352
- 2-2 사업조정제도 / 356
-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360
-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 363
-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365
-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 367
-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370
-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372
- 2-9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 373
- 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 374
-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 377
-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381
-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 383
-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385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20년 대출 4,700억원, 가입 업체 수 18,000개 목표

대출종류	대출금액(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18억원
어음·수표대출(제2호)	382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4,300억원

※ 대출 3,683억원, 가입 업체 수 17,681개(* 19. 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육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 한도
부도매출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대출조건

구분	부도대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 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8.38%	신용등급별로 연3.5%~9.63%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담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공제부금 납부 등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3종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금납부기간
 - 20, 30, 34, 40, 42, 50, 60개월
- 지급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가입 및 대출신청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방문,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및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처리 절차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 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2-2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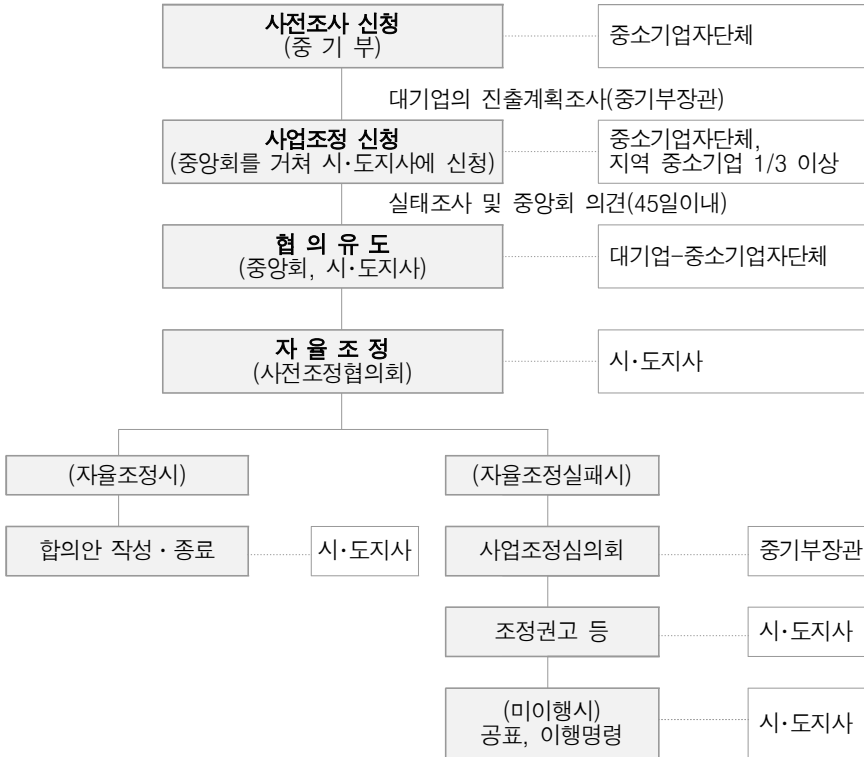
신청 절차

- 일반업종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4477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업) 소상공인벤처산업부 : 02-2124-3172
제조업) 상생협력부 : 02-2124-31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A**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기업 간 하도급거래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조정 대상

- 업 종 : 제조, 수리, 용역업
- 기 간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 범위
 - (제조·수리)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 1조5,000억원 미만
 - (용역)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 원사업자 매출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신고
- 수급사업자 요건
 - 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한 원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 유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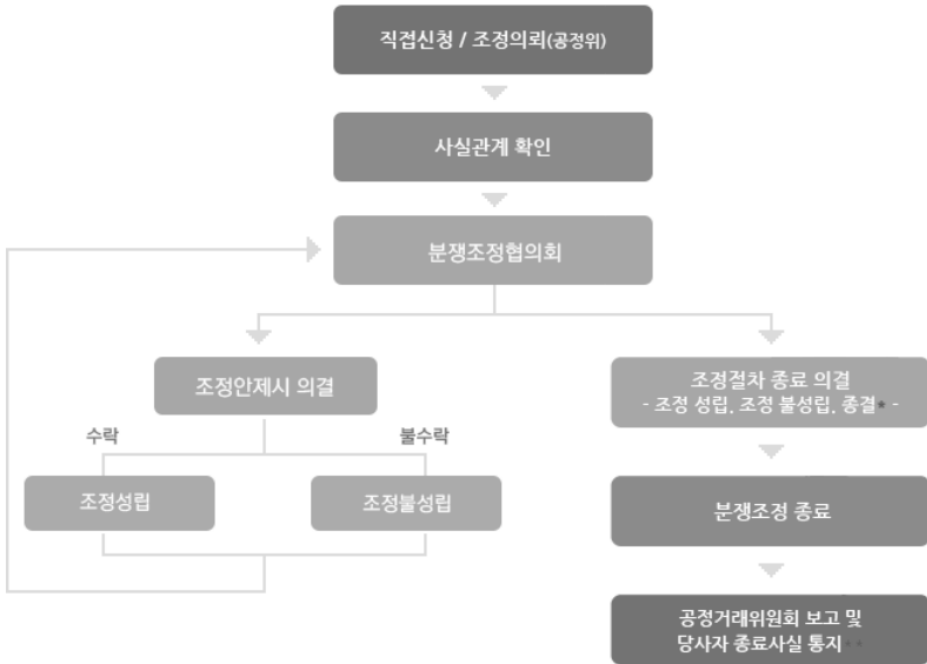
-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접수)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3층 상생협력부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서류 제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 신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하도급분쟁조정 → 분쟁 조정 신청안내(양식)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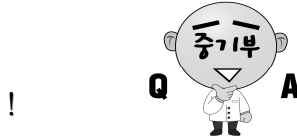


• 취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1



Q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포함)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 장수(60점)
 - 45년 이상 업력 유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지속발전 가능성) 등 평가 필수요건(법인세 납부실적, 법규 준수, 연구개발) 및 항목별 최저 점수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명문장수기업 지원 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기업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금융,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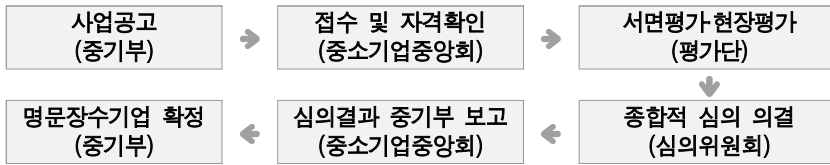
연중 (개별 사업별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5~6
- 관련 홈페이지 : www.succe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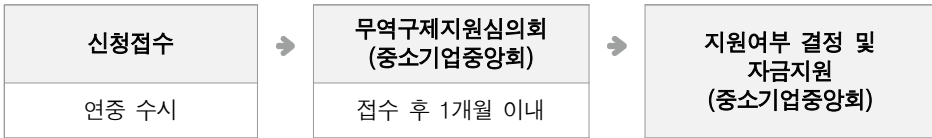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 서류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 기업 및 해외민간네트워크(GMD) 등을 활용하여 수출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175개 컨소시엄 내외, 155.5 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6개 컨소시엄 (2,000개사 내외) 총 155.5억 지원

지원 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 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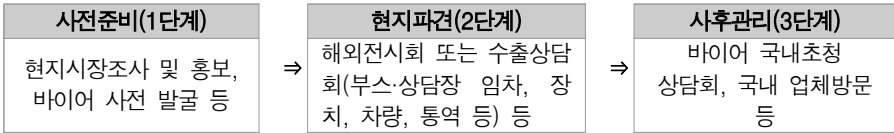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 지원

-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 컨소시엄별 성과에 따라 단계별 소요비용의 50~70%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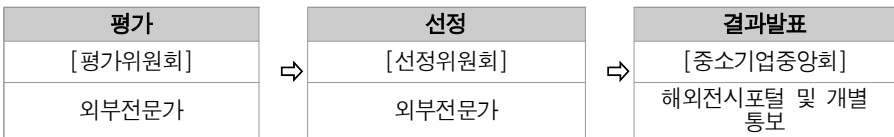
신청·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必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전시회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사업모집공고 신청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제출
 - 주관단체:
 -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각 지방청으로 제출
 - 참여기업: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컨소시엄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 전략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성과평가 포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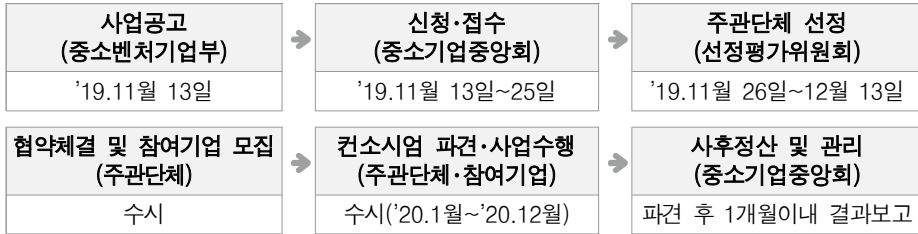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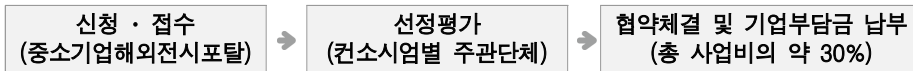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 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19~'21년 적용)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5천만원 미만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추진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 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편견 해소 및 인식도 제고
 - ① 중소기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유튜브) 취업 관련 인기 크리에이터 협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 (인스타그램) '19.6. 신설, 총 게시물 54개, 팔로워 700명('19.11.29. 기준)
 - (블로그) 월평균 17만명, 누적 방문자 620만명 달하는 파워블로그, 연간 콘텐츠 300여개 지속제작 중
 -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수필, 지도자보고서 부문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③ 중소기업 역사관 운영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중기경영대상 시상
 - 일자리창출/인식개선/경영혁신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
-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실태 조사 및 언론 모니터링
 - TV·신문 등 언론에 비친 중소기업 이미지 실태 연구 통한 정책방향 제언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3

2-9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발표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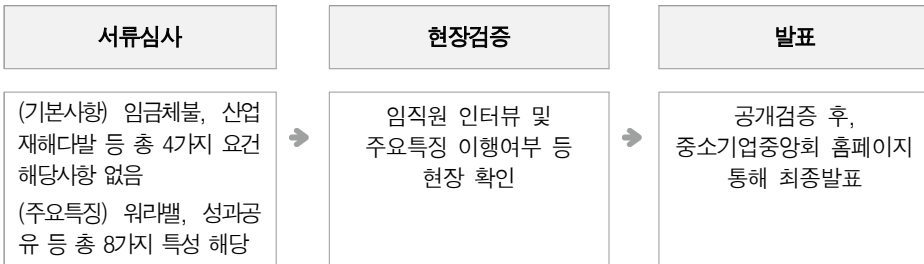
청년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찾고, 널리 홍보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스마트한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문화 확산

사업 내용

- 스마트 중소기업 104개사 선정 및 발표
 - 워라밸, 성과공유, 직원성장 등 청년들이 중시하는 특성 갖춘 중소기업 선정 및 발표



- 스마트 중소기업 방송 프로그램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 SBS CNBC 공동 중소기업 신입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마트청년일자리프로젝트 JOB談' 방영
 - 대학생 크리에이터 활용 스마트 중소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
 -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 대전 개최, 청년-중소기업 간 직접 일자리 매칭 지원
-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가이드 마련 및 보급
 - 중소기업 스스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표 발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2

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20년도 제조업 지원 규모는 40,700명+ α

구 분	배정인원	비 고
일반인력쿼터	29,880명	3, 6, 9, 12월 신청 예정
재입국취업자	10,820명	수시접수
합 계	40,700명+ α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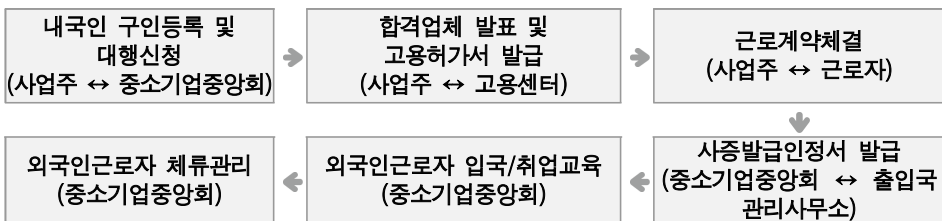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국민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5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5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제출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보광장 → 각종 서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4390~3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성실외국인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혈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혈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0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6명

※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1명 추가 및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 방문취업제(H-2)**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 용어설명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업증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다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 내용

-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음
 - 노령사유 발생 시(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공제금 신청하면 지급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41.8%=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44.0%=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46.2%=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가능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병원 건강검진, 복지물 이용 할인 등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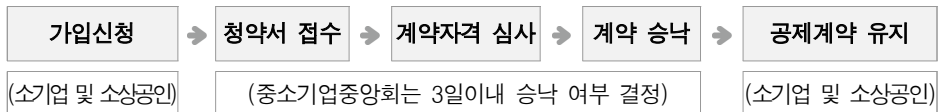
월 부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가입 절차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 서류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 경감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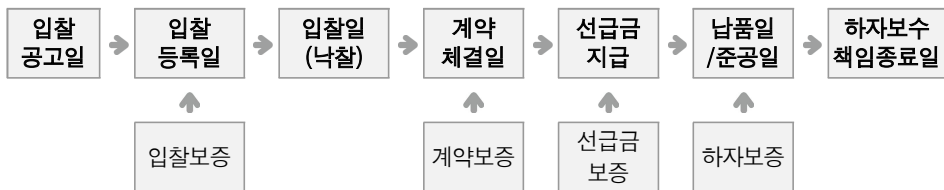
지원 대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급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한도거래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청약 신청(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인터넷 이용 가능

제출 서류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 절차

- 약정 신청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41~3 Fax.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 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경감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 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지원 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서울,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80%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 대책 지원
 -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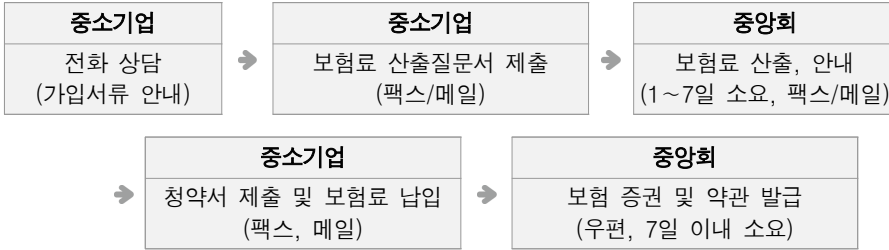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 질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plkorea.com)>PL자료실>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참조

처리 절차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1~3,
Fax.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www.plkorea.com)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 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 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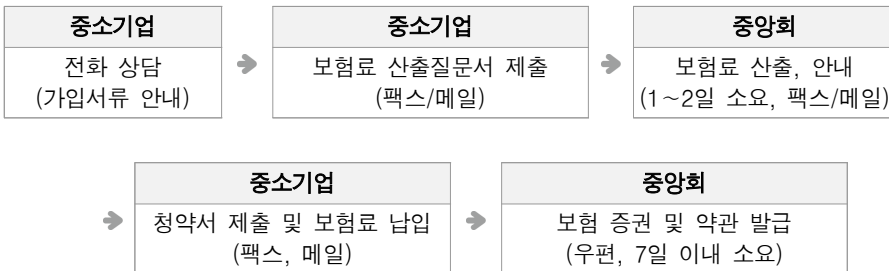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insbiz.or.kr>자료실>설문서) 참조

처리 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7~8,
Fax.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제 3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1 소공인특화자금 / 388
- 3-2 성장촉진자금 / 390
- 3-3 일반경영안정자금 / 392
- 3-4 청년고용특별자금 / 394
- 3-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396
-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398
- 3-7 상권정보시스템 / 401
-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404
-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406
-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 407
-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09
-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411
- 3-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413
- 3-14 나들가게 육성 / 416
-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419
- 3-1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422
- 3-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425
- 3-18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428
- 3-19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430
- 3-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432
- 3-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434
- 3-2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435
- 3-2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437
- 3-2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 439
- 3-25 백년가게 육성사업 / 442
- 3-26 희망리턴패키지 / 445
- 3-27 재창업패키지 / 447
- 3-2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449
- 3-2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451
- 3-3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453
- 3-3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456
- 3-3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458
- 3-33 온누리상품권 발행 / 461
- 3-3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463
- 3-35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467
- 3-36 상권 르네상스 사업 (상권활성화사업) / 471
-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474
-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안전점검 / 477
-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479

3-1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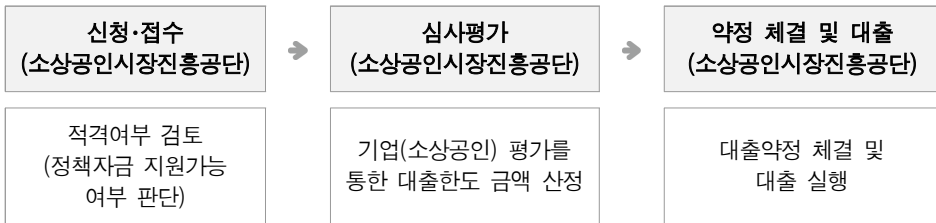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2 성장촉진자금

I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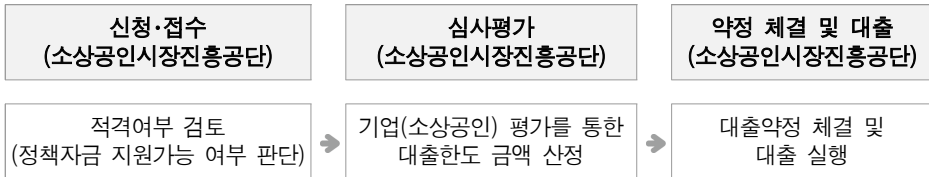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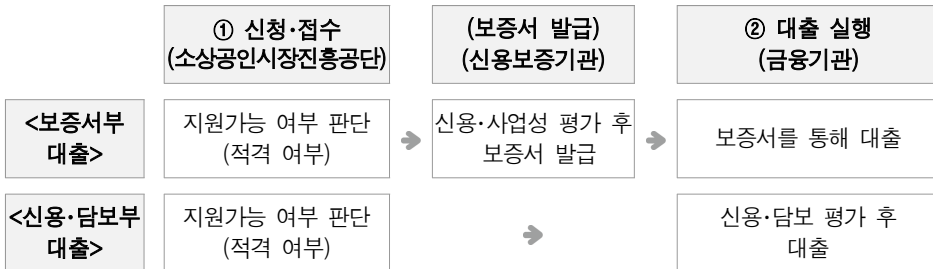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 10,00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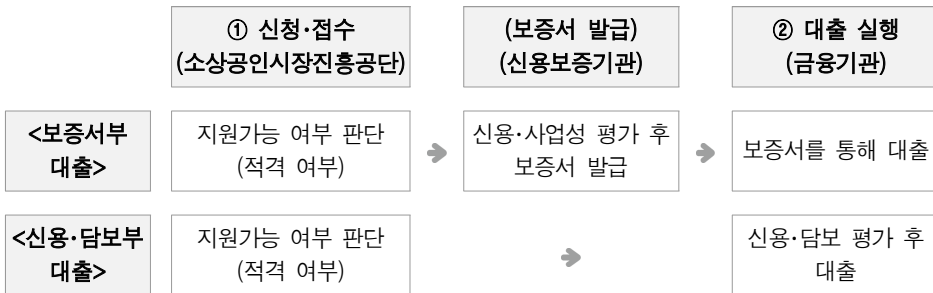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4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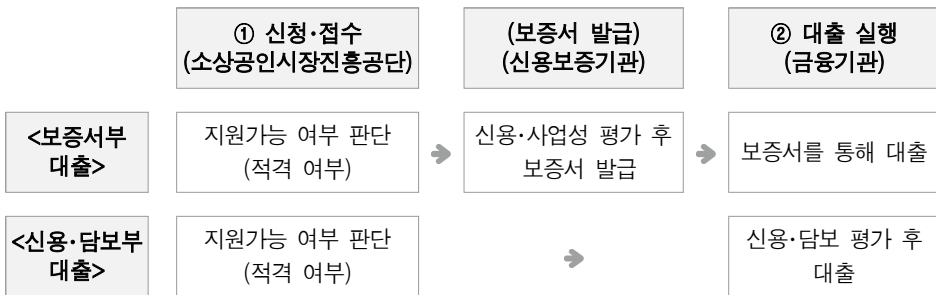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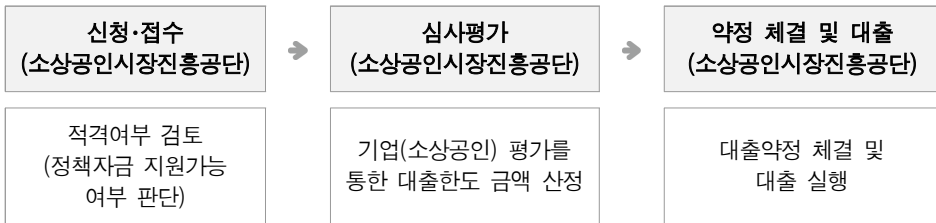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450명 내외(예산 166억원)

* '19년 지원현황 : 388명(예산 187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점포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창업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

- 창업 기초교육 및 상품화 지원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MD 연계하여 제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약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약 16주)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20.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2개지역, 기수 당 225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 * 인천, 경남, 전북 및 하반기 신설되는 3개 지역의 경우 별도 계약한 교육장 활용
- (창업자금)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 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 검사 결과표 등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기초교육 및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	사업화지원
11기	'20.1월중 ~'20.2월중	'20.2월말	'20.3월초 ~4월초	'20.4월말 ~8월말	'20.9월초 ~12월말
12기	'20.5월중 ~'20.6월말	'20.7월초	'20.7월중 ~8월말	'20.9월초 ~12월말	'21.1월초 ~'21.4월말

* 12기 사업화 보조금 지원의 경우, 2021년 예산으로 지원 예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고객센터: 1357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네,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A** 네, 사업화 지원 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총 사업비의 50%, 예정)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 예시 :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3-7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업종별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순국민(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 내용

- (상권분석)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정보 등의 상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 소분류 83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추이, 유사업종 추이, 전년대비 증가·감소 업종, 음식업종 업소 변화 추이, 전년대비 업소수 비교, 업소변화 추이, 한식업종 업소수 증감 추이, 한식/백반/한정식업종 업소수 증감, 중·대분류 업종별 창/폐업을 및 업력 통계, 선택업종·유사업종·시설
매출	월평균 매출액 비교, 건당 매출액 비교,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중분류 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주말/요일별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인구	인구 구성, 주거인구·직장인구·유동인구 현황,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세대 규모별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면적별 세대수, 아파트 기준기사별 세대수, 아파트 동/세대수 추이, 선택상권의 배후지 인구 변화 추이,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
지역	주요 집객시설 현황·추이,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지역별 점포 평균 임대시세 추이, 학교시설 현황, 교통시설,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 기업체수 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 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 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쟁컨설팅) 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5)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한식/백반/한정식,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	---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3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신규 제공 서비스〉

- (창업자가진단) 예비창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 (프랜차이즈정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의 위치정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정보 제공
 - * 프랜차이즈 상호명, 평균매출액, 임직원수 등

이용 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 : 042-363-7152, 7154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6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용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지원 규모

1,000명 내외(발굴 6.36억원, 연계자금 150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00명(1인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 확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용자 지원

* 용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A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성공불용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소상공인 사업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소상공인 전체

- '19년 지원현황 : 159,638명 수료

지원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먼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문의 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7,000명 내외(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20,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 (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7,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전문기술교육



○ 경영개선교육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창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용어설명

민간교육기관 : 학원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점포운영·경영진단·세무·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0개 업체 지원(지원예산 79.8억원)

* '19년 지원현황('19.11. 기준) : 4,551개 업체에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진단컨설팅 시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2~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컨설팅 자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 A**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분야 등이 결정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Q** 컨설턴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자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시스템을 통해 컨설턴트의 경력 등을 확인하신 후 직접 선정이 가능합니다.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예산 1억원)

지원 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금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법인사업자사업 수혜업체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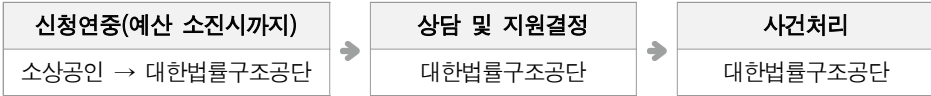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4,604,000원, 4인가구: 5,649,000원 <2018년 기준>

3-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50개 조합(207억원)

* 공동사업(250개 내외), 판로사업(200개 내외)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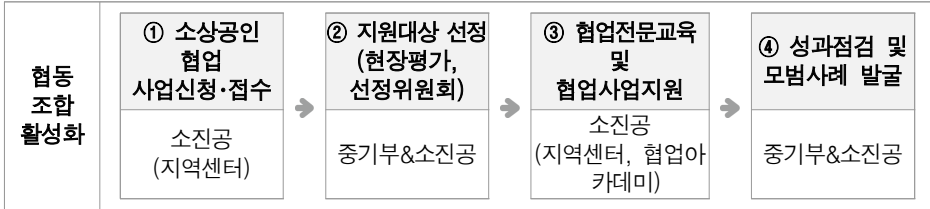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3-14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00여개 나들가게(지원예산 52억원)

- 점포경영 지원 : 1,200개 내외 나들가게
- 나들가게 선도지역 : 10개 선도지역, 500개 내외 나들가게

지원 대상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① 점포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부진점포 회생지원(자부담 10%),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점주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접수 '20.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규개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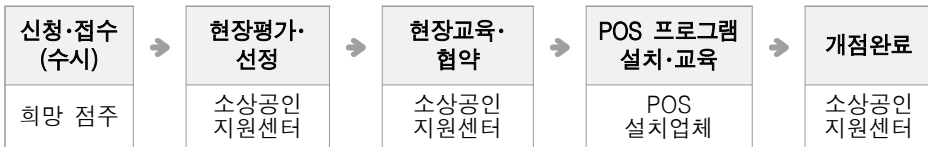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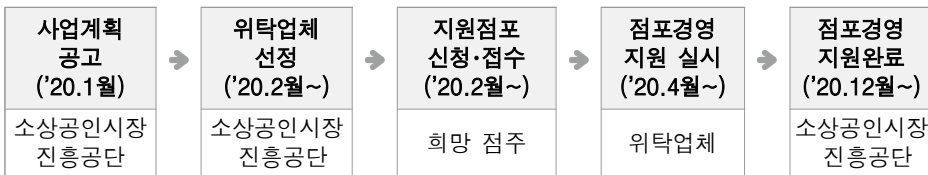
- 신규개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문의처

-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3952, 4583



Q 나들가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 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내외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가맹점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15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업력 최소 1년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항목	내 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60백만원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 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팸플릿,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신메뉴 개발	시장조사, 현지화, 소비자 기호조사, 등록·인증 등	
	가맹점 교육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 가맹점 운영관련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기타분 야 신청가능)	- 시스템 체계 구축	선택형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 가맹점 교육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② 홍보, 교육(예비가맹창업자)	-	

신청·접수

' 20. 1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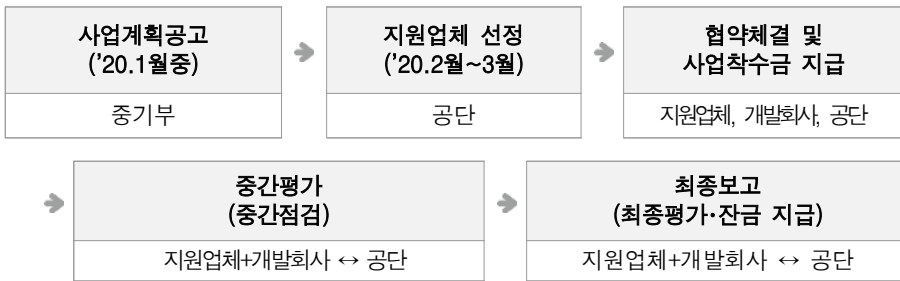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급	지원 내용	비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 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급	지원 내용	비고
I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기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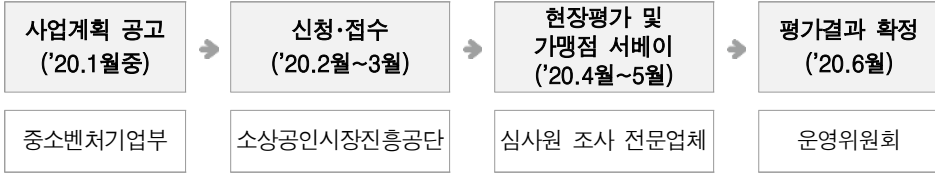
신청·접수 ' 20. 2~3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이메일(fc@semash.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3-17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Ⅰ 집적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4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센터 설치·운영(예산 131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 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기술·경영 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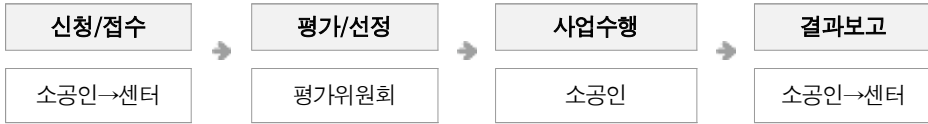
- 작업환경개선 : 소공인 작업장의 환풍시설, 분진제거기, 집진기, 위생 작업대, LED 조명 등 설치·교체 지원(45억원)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신청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04,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품품 (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76-2692
8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 (한복)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8
9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3
1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1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 (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3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4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5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2050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0
17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족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8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19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0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2-2634-7727
21	경기	양주시(남면)	섬유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	031-860-0994
22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4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5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2-865-9213
2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1
28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2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31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대구 평리 의류 봉제 센터	053-721-7442
32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031-454-4881
33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 대봉 의류 봉제 센터	053-783-3399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김해 진례 도자 센터	055-345-6161

3-18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5.2억원)

* 지원현황 : 전국 23개 집적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2/3 지원(1곳당, 14.4억원 내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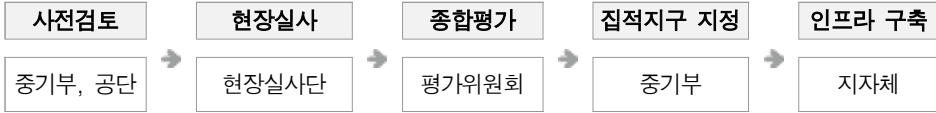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2, 79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9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61개사 지원(예산 80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80%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인증 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조사·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해외배송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항목별 한도를 폐지(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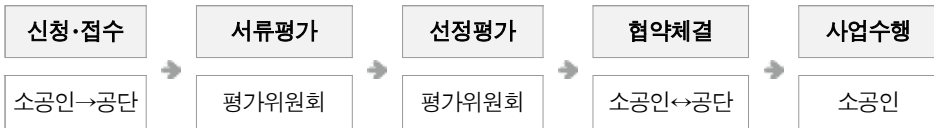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08, 79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3-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개사 내외(예산 3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69개사 지원(예산 39.2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 내용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정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신설
- 스마트공장 전문기관을 통한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인식변화 및 활용역량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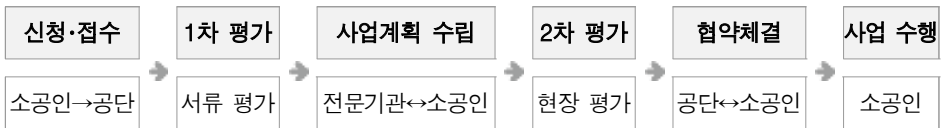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3-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복합지원센터 구축 2개 내외(예산 50억원)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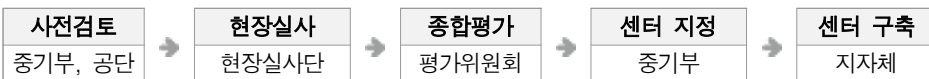
지원 내용 소공인 집적지에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신청·접수 '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2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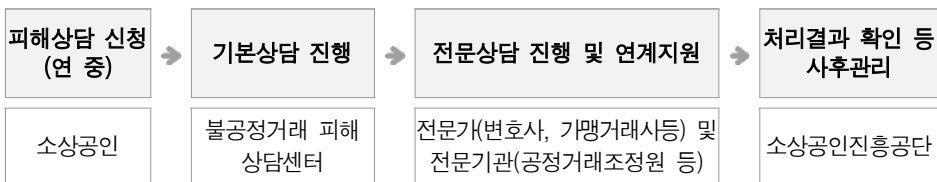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62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전국 62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http://www.semas.or.kr>)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357
- 중소기업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4, 7742



Q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공정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광고행위, 수위탁/하도급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반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2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소상공인 판로지원확대를 위하여 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313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홈쇼핑 입점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 지원('19. 200개사 → '20. 300개사)
- (V-커머스) 민간 쇼핑몰(예: CJ 쇼크라이브 등) 입점,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19. 200개 → '20. 1,000개)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쇼핑몰 메인화면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19. 25회 → '20. 100회), O2O 플랫폼에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 (해외 채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19. 50개사 → '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105개국)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PD, 편집)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 교육('19. 200명 → '20. 500명), 콘텐츠 제작 지원('19. 100개사 → '20. 1,000개사)

신청·접수 '20.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카달로그 등),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2
- 소상공인마당 : <http://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2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 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3990, 45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팀 : 042-363-7691, 7696~7699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01~5929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

Q 제로페이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페이,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도 결제할 수 있는가요?

A 아니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3-25

백년가게 육성사업

|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 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융)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공고문 참조)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20년도 우대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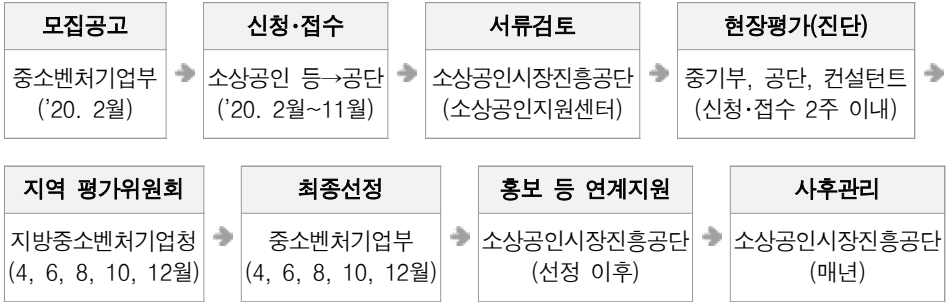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신청기간) ' 20.2월~11월말(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3	증빙자료(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해당부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
4	사업자등록증	1부	업력, 업종 등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5/798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3914/3916), 홈페이지(www.mss.go.kr)



-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3-26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45억원, 25,000여개 업체

* '19년 344억원, 22,480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채무 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 취업성공패키지 : 3단계(취업상담 → 취업훈련 →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만 18~69세,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 법률자문 지원 : 폐업시 각종 법률(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급 지급 등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법률자문 지원 규모 : ('19) 480명 → 1('20)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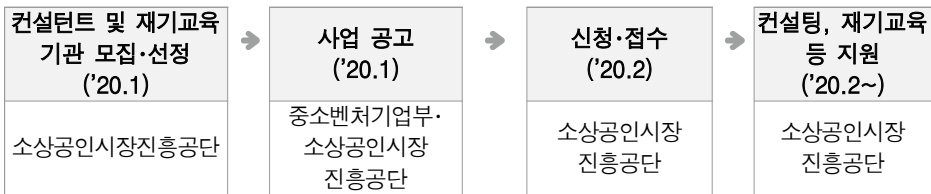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3-27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75억원, 6,000여개 업체

* 19년 75억원, 6,000개 업체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과정당 60시간)
- 재창업멘토링 : 재창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1588-5302, 042-363-7827



!

Q 재창업패키지사업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3-2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 '18.9월부터 16개 시중은행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하여, 가입자의 공제금 수급권 강화(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 지급 금액 : 적절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8.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22.06억원, 9,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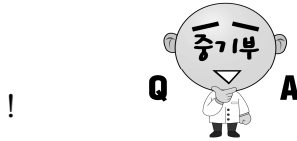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

처리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786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시장(1,424억원)

* '19년 지원현황(1,469억원) : 73곳(주차장 건립지원), 28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
- 지역과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설계·디자인 공모 의무화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20.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 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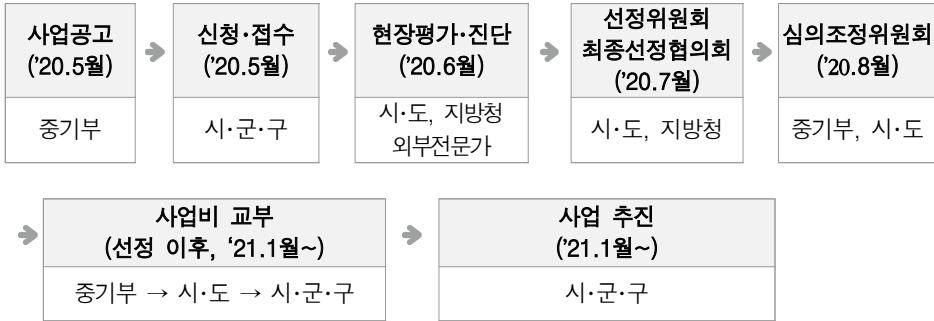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3-3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 '19년 지원현황 : 50개 시장 ('19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선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지자체 부담가능)
- 시장당 5억원 이내(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20.1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3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 바우처 지원 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곳

-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

바우처 등급	가	나	다
바우처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 바우처 활용 범위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 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PPL,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지원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지적권 등록,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의 시장 자문
	홍보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배송 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매니저 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 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비 일부 보조 등

○ '21년 지원대상 신청·접수 : '20. 5~6월 예정

* '20년 지원대상은 '19. 9월 조기 선정 완료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1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Q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는 사업·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교육기관, 이벤트 회사 등)에 제시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에 지급)

3-33

은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은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

발행규모

'20년 2.5조원 규모 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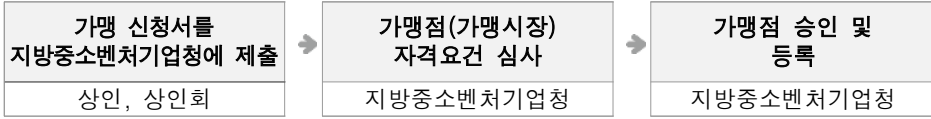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3개 간편결제사 앱(APP)
 - 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 체크페이·비플·머니트리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s://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 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 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46, 7632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30

3-3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20년도 예산 292억원)

- * '19년 지원현황 : 신규 104곳 포함 179곳, 361억원 지원(국비 기준)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신청접수예정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 ('20년 신규 2곳 이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20년 신규 44곳 내외-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에서 도약하는 시장 포함)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20년 신규 30곳 내외)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20년 신규 20곳 내외)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국비 100%)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지원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진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지원 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등)을 지원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 공고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은 곳
- ✓ 사업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자세한 내용은 '20년도 공고 확인)

지원 내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와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 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2년 연속지원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당해연도 상반기 공모하여 사업 착수 및 추진
- (올해) 전년도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청·접수

매년 5월경 다음년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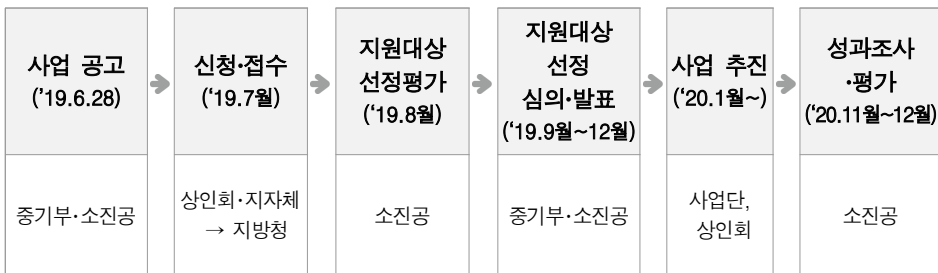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등)
②고객신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 서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사업 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6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과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과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과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과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Q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35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 청년몰 조성 및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3곳 내외(22.5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7곳 내외(53.5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19년 지원현황
 - * 청년몰 조성 : 6곳 12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상인 도약지원 : 218명 (1인 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자부담 0~10%)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2곳 8억원 (활성화 최대 3억원, 확장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몰 대학협력 : 12곳 16억원 (1곳 당 1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 대상

-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이며,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및 상권르네상스 선정지에 포함된 경우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중이거나, 설치한 곳

지원제외(청년몰)

-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 공고일 기준 시장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지원제외(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 ✓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의 참여자
-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에 선정 후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지원 우대사항(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상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디자인 개선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3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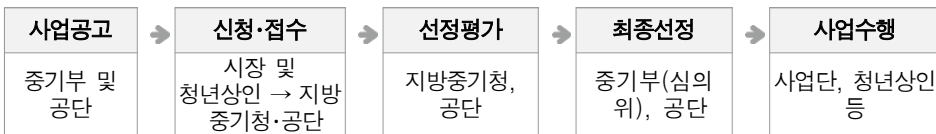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 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78, 7774
-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2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지원대상인 전국 청년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청년상인육성사업- 청년몰조성에서 전국 청년몰 지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3-36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19년 지원현황 : 총 12곳('18년 3곳, '19년 9곳) 선정하여 지원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0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정한 기한까지)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필요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지자체 ·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 · 커뮤니티 · 청년 창업, 힐링(문화 · 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 (기존) 상권당 80억원 → (변경)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총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신청·접수

'20년 상반기 공고예정

-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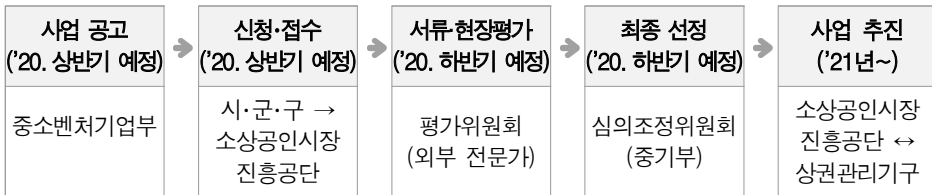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협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1, 7779, 75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 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 Q** *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② 재고자산
 -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1599-5460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처리 절차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62개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2,458백만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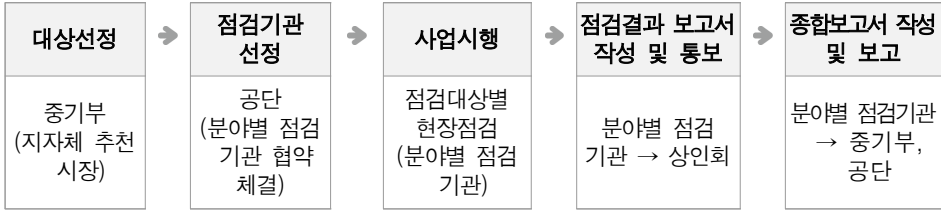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상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97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공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 규모 2,3만점포(132억원)

지원 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및 민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법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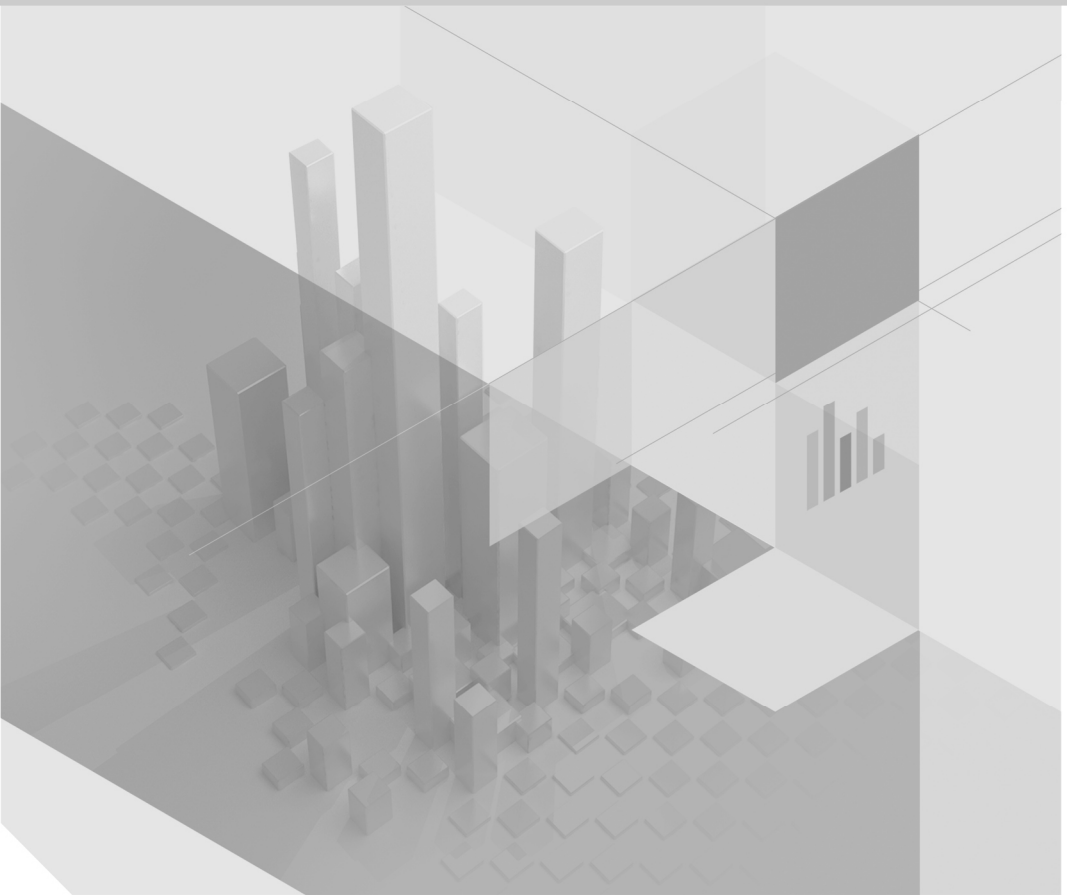
- Q**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나요?
- A**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Q** 신청점포수가 전통시장 영업점포수의 30%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3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멘트로 소방서(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비

주소형감지기: 화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감지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4 부

대한상공회의소

- 4-1 코참경영상담센터 / 484
- 4-2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 486
- 4-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 488
- 4-4 AI 인재매칭 서비스 / 490
- 4-5 기업 방문의 날 시행 / 491
- 4-6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 492
- 4-7 계약서 검토 서비스 / 494
- 4-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495

4-1

코참경영상담센터

|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실무 애로 해소 지원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연간 약 14,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지원 대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경영상담 서비스	내 용	상담분야
전화 상담 (1600-1572)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무 ● 세무회계 ● 인사/노무 ● 무역/관세 ● 특허 ● 창업/경영
온라인 상담 (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방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 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신청·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1600-1572를 통해 즉시 상담 가능
(업무시간 평일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방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행사/교육 메뉴에서 '코참경영상담' 선택)

처리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572 전화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 방문 상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4-2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PL보험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보험료 산정 및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보험료 안내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가입 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를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 지역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가입 절차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지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손해배상 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8 / 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4-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인력개발원에서 현장실무 중심 교육훈련 실시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실업자를 위한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
 - ①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 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
 - ② 교육분야 및 기간
 - 교육분야 : 기계, 전기, 전자 IT, 스마트팩토리, 가구, IoT융합, 드론 분야 등
 - 교육기간 : 1년 이하
-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교육
 - ①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상의 등의 운영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 ②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③ 지원내용
 - 협약을 체결한 참여 기업체의 재직근로자는 교육훈련비, 식비 전액 무료
 -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고용유지훈련 등 실시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 ①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 ② 지원대상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③ 지원내용
 - 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설계
 -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 훈련과정 운영 컨설팅 및 행정지원

교육장소(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Tel.02-6050-3916(대) /Fax.02-6050-3599)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hrd.net>
- 개발원별 문의처

개발원	주 소	전화	Fax
부산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051-610-3123	051-626-4293
인천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032-810-6520	032-810-6526
광주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	062-940-3010	062-940-3019
경기	(10901)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	031-940-6830	031-943-3767
강원	(2511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199-9	033-430-9723	033-430-9729
충북	(2903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283	043-730-0114	043-731-0608
충남	(3251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041-850-9563	041-852-1280
전북	(54004)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19	063-472-2512	063-472-2519
서울	(07702)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6	02-311-1000	02-2697-9700

4-4 AI 인재매칭 서비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추천

인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40만 구직자풀에서 딱 맞는 인재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초대졸 신입인재 채용 중소기업

이용절차

- 인재매칭 홈페이지(www.comento.kr/korcham) 방문
- 기업회원 가입 후, 채용공고 등록
- 채용공고에 맞는 인재와 채용전형 진행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대상 초대졸 우수인재 추천
 - 40만명 이상의 우수 구직자풀 보유
 - 이력/역량/관심사 등을 인공지능(AI)이 분석, 딱 맞는 인재 추천
 -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고등록 공문 자동 발송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T. 02-6050-3454
- 홈페이지 <http://comento.kr/korcham>
- 이메일 polikhan@korcham.net

4-5 기업 방문의 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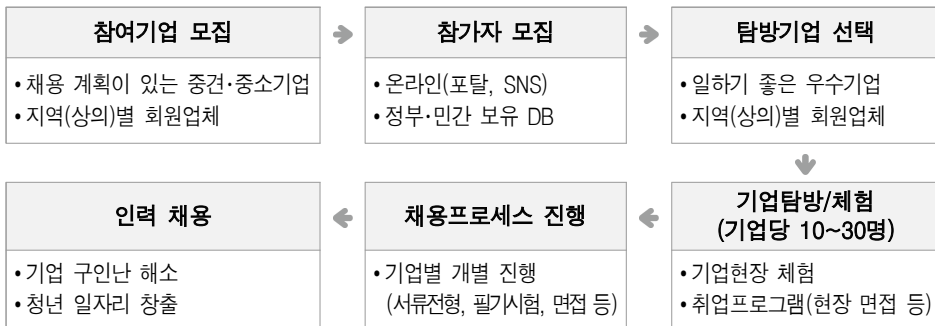
| 기업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인재와의 직접 만남 주선

알맞은 인재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방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합한 인재와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재매칭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용방법 기업방문의 날(opencompany.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진절차



이용횟수 제한 없음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T. 02-6050-3454
- 홈페이지 <http://opencompany.korcham.net>
- 이메일 opencompany@korcham.net

4-6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 정부지원제도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을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지원 규모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

* '18년도 컨설팅 지원현황 : 서울소재 중소기업 60개사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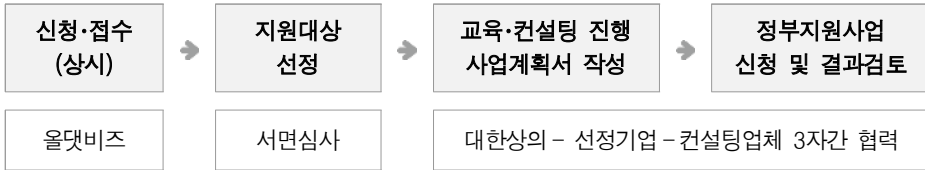
분야	내용
정부지원제도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분야,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자금, 판로, 인력, R&D, 인증, 창업, 회계 등 지원분야별 검색 가능
정부지원제도 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 정부지원제도 검색,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사업 매칭,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준비 등

신청·접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팀 T. 02-6050-3455
- 이메일 hjnam@korcham.net

4-7 계약서 검토 서비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

이용절차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지원 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이용횟수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http://allthatbiz.korcham.net>
- 이메일 review@korcham.net

4-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건강검진·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지원대상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가입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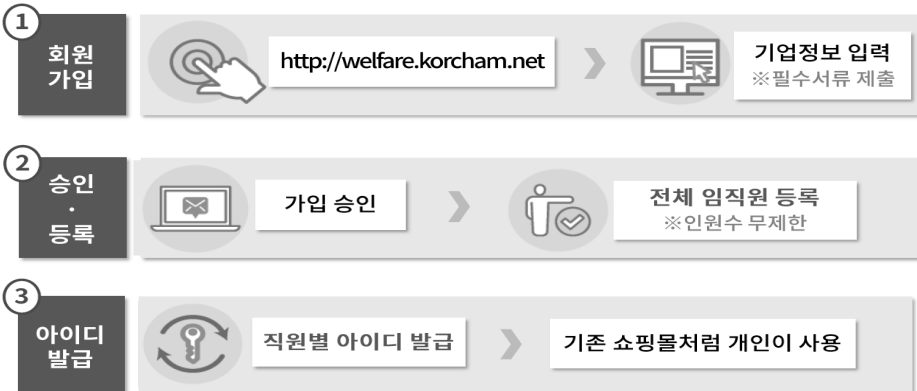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 휴양소·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쇼핑몰 등 복지 분야별 주요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 주요 서비스업체 : 하나투어(여행), 아고다(숙박), 그린카(렌트), CJ CGV(영화), 교원(생활안정), 예다함(상조), SK멤버스서비스(SK임직원몰), 온라인메드(건강검진) 등

이용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절차

회원신청 후 24시간 이내 승인

문의처

중소기업 복지센터 1588-6500(welfare.korcham.net)



Q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복지플랫폼은 임직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로 비용(예산)을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Q 임직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하고 회원승인이 되면, 관리자페이지에 임직원들을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 5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 498
- 5-2 이동 KOTRA / 500
- 5-3 해외시장조사 / 501
-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502
- 5-5 수출상담회 / 503
- 5-6 무역사절단 / 504
-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 505
-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507
- 5-9 한국우수상품전 / 508
-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 510
-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 511
- 5-12 수출바우처사업 / 512
-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515
- 5-14 지사화사업 / 516
-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517
-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 519
-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 522
- 5-18 클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 523
-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 524
-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 525
-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526
-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 527
-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K-Global@) / 528
- 5-24 해외 IT 지원센터 / 529
-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 530
-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 531
-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 532
-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533
-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34
-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 535
-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 537
-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 538
-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 539
- 5-34 해외시장 설명회 / 540
-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 541
-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542
-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544
- 5-38 수출인큐베이터 / 546
-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 548
-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 550
-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 552
-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 553
-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 554
-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 557
-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 558
-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 559
-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 561
- 5-48 교육·연수 / 563
- 5-49 열린무역관 / 564
-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 566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해외 진출 및 인증 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용료

무료

상담 내용

수출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 지역별 상담

지 역	연 락 처
미주 및 유럽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중화권	
아세안 및 인도	
중동, 아프리카, CIS	
일본, 서남아, 대양주	
해외 인증상담	
기타 상담 (문의 지역 부재 시)	

○ 법률 상담

지 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전화
중국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02-3460-7218

이용 방법

- 1)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2)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218

5-2 이동 KOTRA

‘이동 KOTRA’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용료 무료

상담 내용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수출전략 수립지원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 KOTRA 해외시장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 사업 안내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최상단 지원서비스 안내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전화상담(이동 KOTRA)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유선 상담 진행

지역	부서	연락처
서울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19
경기북부	경기북부KOTRA지원단	070-7931-0442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32-822-9817
경기	경기KOTRA지원단	031-273-6035
부산	부산KOTRA지원단	051-740-4153
경남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4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4
대구, 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80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12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9054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KOTRA지원단	042-341-8319
충북	충북KOTRA지원단	070-4185-8448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33-261-5312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19

5-3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9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미포함)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2~3개사) *先 입금 후 사전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만원/1항목 (예: 수요동향+경쟁동향 =300,000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만원(3~5개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알고 있는) 해외 업체가 신청 고객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해외 업체 1개사당 5만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비우체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비우체로 사용가능)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 사업’ 온라인 신청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 (약 9일) → 조사 시작(3주)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기 다름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5/7346/7337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1.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2.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등 컨설팅 제공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 답변 → 분석 정보 확인(역량, 시장, 지원 사업) → 1차 유선상담(KOTRA 수출전문위원) → 2차 방문 컨설팅(이동 KOTRA)

문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4

5-5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고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가비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 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0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5-6 무역사절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가비

- 참가기업은 개인 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등) 자체부담
- 해외사업비 예산은 파견기관이 부담

지원 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해외 무역관에서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에서 준비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추진 → 해외무역관 후속지원-지자체 무역사절단 구성, 파견활동은 중진공이 대행 수행

* 2020년도 무역사절단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수출기업화팀 : 02-3460-7330, 7331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수출실적
- 기업경쟁력(정부기관 인증서 등)
- 전시적합성 등

참 가 비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 전시품 운송비 : 편도 해상 운송비 1CBM 한도 100% 국고지원
- 행정서비스 :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정지원(디렉토리 제출, 출입증 신청 등), 한국관 협력사 선정(장치, 운송, 여행)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통역원 주선, 사후관리 등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관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의처

해외전시팀 :

02-3460-7297 (건축자재)

02-3460-7292 (일반기계, 정보통신)

02-3460-7288 (자동차조선)

02-3460-3330 (섬유패션)

02-3460-7291 (생활소비재)

전시회 정보는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참고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시 KOTRA가 부스비, 장치비, 전시물품운송비,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자금지원 : 기업당 연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기본 지원내역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수출) 해상/항공 운송비(1CBM/부스),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 * 항공임,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전시회 참가 직접비용
- 전시마케팅 지원 : 해외무역관을 통한 전시회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 글로벌 전시 포털(www.gep.or.kr)를 통한 사업신청(매년 1~2월 중)
 - 서류 심사평가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참가(연중 수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256, 7285, 7293
- 글로벌 전시 포털 : www.gep.or.kr

5-9

한국우수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등

지원 내용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 (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 현지 통관법 의거 정식 통관 불가시 지원 불가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참가비

1부스 당 110만원 (잠정)

신청·접수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입력), 참가각서 (인터넷 신청시 동의)
- 전시품목 상세서 (기본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요망)
-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문의처

전략전시팀 : 02-3460-7262, 7272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한국우수상품전은 연간 평균 2~3회 열리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는 개최일 2~3개월 전에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나갑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8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업

식품업체 및 식품관련 기기 분야

시기/장소

2020. 5. 19(화) - 22(금) / KINTEX

참가비

구분	참가비(Vat 포함)		제공내용
	1전시장	2전시장	
독립식 부스	2,750,000원	2,42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조립식 부스	3,080,000원	2,860,000원	면적+기본장치+상호간판+조명

* 부스규모별/ 소상공인(4인 미만 사업장) 참가비 할인

* 자세한 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www.seoulfood.or.kr) 참고

신청·마감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 절차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계약금 납부
→ 부스 배정 →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기업)

문의처

- (식품분야) KOTRA 전략전시팀 : 02-3460-3250, 7258
- (기기분야) 킨텍스 : 031-995-8077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buyKOREA는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B2B 수출지원 플랫폼으로써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해외바이어 구매오퍼(Buying offer)가 제공됩니다.

이용 방법

KOTRA 기업회원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로그인

이 용 료

무료

주요 서비스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 해외홍보	상품정보 등록을 통해 해외홍보를 지원
바이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수/발신	관심오퍼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송기능과 상품정보별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buyKOREA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바이어들이 온라인 결제 가능 ▶ KOPS 카드결제(VISA, Mastercard, JCB), 페이팔(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수출상품 발송	EMS (할인율 7~17%), DHL(최대 60%까지) 할인혜택 이용 가능 (번동가능)
해외기업정보	www.buykorea.or.kr에서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연 200건 한도)
화상상담 지원	글로벌화상상담주간 등 해외 원격상담 지원
사이버 무역상담실 장소 제공	해외바이어와 무역거래, 파트너십, 상품개발을 위한 기술협의 등을 원격 화상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전예약 시 상담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문 의 처

빅데이터팀 : 02-3460-7432, 7433

5-12 수출바우처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각 사업별 대상 및 규모 상이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산업부 (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견기업 · 지원기간 : Pre, Post 3년 / 중견 글로벌 5년(매년 협약 갱신) · 사업내용 : 기업별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 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제조기업* 및 해당품목 e커머스 기업** * 식품, 화장품·뷰티,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전문몰 보유 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과 KOTRA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마케팅 전략 수립(로드맵 작성) - 로드맵 기반, 메뉴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광고/홍보, 한류마케팅,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디자인 개발, 인허가 등록 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지원대상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보건의료서비스,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 지원기간 : 최대 2회(1회=1년) · 지원사항 :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을 통한 현지 밀착지원,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업 수요 및 전략에 따른 맞춤형 목표시장 선정 지원 - 산업별 로드맵 작성 지원 및 로드맵 기반 컨설팅 제공 -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글로벌파트너링 중점 토달 패키지 등) 	

*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를 통해 '20년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예정('19.12월 예정)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 기업분담율은 30~70%로 사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2개 분야, 5,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IP 전략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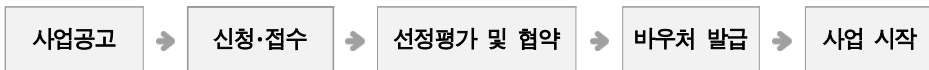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19.12월 공고 예정)

제출 서류

온라인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4,200개사

선정 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GCL Test 선정기준 40점 미만 기업

지원 내용 선정 직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수출기업화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신청 절차

업체모집 공지



온라인 신청



신청심사 후 선정



종합컨설팅 지원

문의처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3, 7543

5-14 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 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잠정)

- 진입단계 : 500,000원
 - 발전단계 : 2,500,000원 - 3,500,000원(지역별 상이)
 - 확장단계 : 6,650,000원 - 10,150,000원(지역별 상이)
- *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홈페이지 참조(www.exportvoucher.com/jisahwa)

지원 내용

구분	기간	지원내용(잠정)
진입	6개월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발전	1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장	1년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서비스 개시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중진공) 해외사업팀 : 055-751-9680, 9679, 9674
 (OKTA) 해외마케팅팀 : 031-927-9218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 지원규모 : 연간 지원기업 22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매칭펀드 기준 기업당 최대 1억~2억원

< 세부 구성 >

구분	PRE	중견 글로벌	POST
지원대상	후보·유예·예비 중견기업*	①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매칭펀드 총액	최대 10,000만원	최대 20,000만원 (월클 중소기업은 최대 15,000만원)	최대 15,000만원
국고지원한도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추후 안내

** 기업별 최대 지원기간 : 8년 (PRE 사업 참가 시 POST 사업 참가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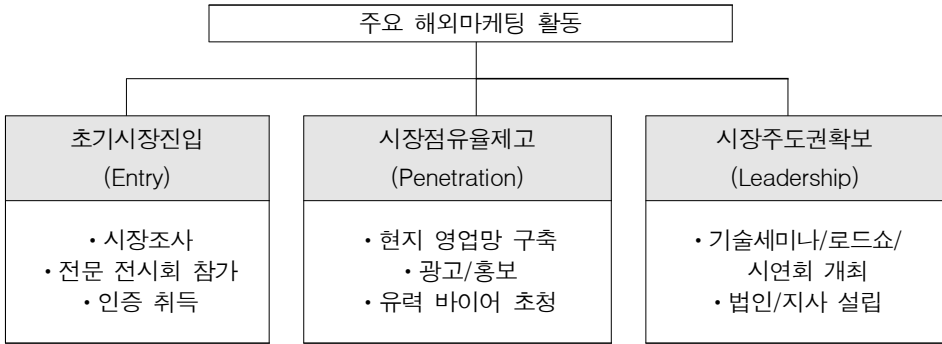
지원 대상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견기업 및 예비·후보·유예 중견기업

지원 내용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및 실행

-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수출바우처사업 內 메뉴판 선택을 통해 시행)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www.수출바우처.com)를 통한 신청

처리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문의처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51 / 7233

용어설명

- 후보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
- 유예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 중견기업 : 기업모집시 공고문에 별도로 제시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수출을 선도하는 상품의 다양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7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과 간접지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850개 상품 및 950개 기업(예산 3억원)

* '19년 선정현황 : 817개 상품 및 917개 기업(예산 3억원)

선정 기준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 중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기업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 내용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로고 사용 지원과 타 유관기관의 수출관련 지원 제도와 연계한 간접지원을 병행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 지원 및 KOTRA 인프라를 활용한 선정기업 해외마케팅*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공인검사원(주) 등

* 지원대상 기업 선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www.wcp.or.kr)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B2B e마켓 플레이스 및 온라인 전시관*을 통한 선정기업 온라인 홍보
 - * 추후 변동 가능
- KOTRA 인프라를 활용한 對바이어 홍보활동 진행

신청·접수

www.wcp.or.kr 공고문 확인 후 간사기관별 접수

- 업종별 추천위 및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현재일류상품'과 '차세대일류상품'으로 구분하여 품목 및 기업 선정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심사·평가 주요내용

- 추천심의위원회 및 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한 필수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성장 가능성 평가

제출 서류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세계일류상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품설명서, 재무제표 등

문 의 처

- 사업계획 :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7)
- 세업시행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35)
- 온라인 문의 : wcp@kotra.or.kr 또는 www.wcp.or.kr 홈페이지 참조



Q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공고는 언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개 6~7월경, 산업부 홈페이지 공고(www.motie.go.kr) 및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www.wcp.or.kr)을 통해 게재되며, wcp@kotra.or.kr 메일 및 간사기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간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분야의 경우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wcp@kotra.or.kr로 신청하시면 전담 가능한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KOTRA에서 진행되는 추천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 용어설명

* 간사기관 : 신청기업의 선정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추천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별/품목별 협회 및 조합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됨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및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글로벌기업 10여개사, 참가기업 150개사 이상

지원 대상

바이오, 핀테크, AI, IT 등 혁신 기술, 서비스, 소비재 분야 스타트업

지원 내용

- 글로벌기업 수요 연계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발 기회 제공
 - 글로벌기업 개별 수요에 대한 스타트업 매칭 사업으로 사무공간 제공, 사업 관련 멘토링,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등 지원
 - * (獨)Bayer, Merck (日)KDDI, (英)RBS, (美)BMS, (佛)Sanofi 등
 - ** '20년 글로벌제약사 협업 규모 확대 예정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협력 사업**
 - *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안센, 베링거인겔하임, MSD 등 협회 산하 글로벌제약사와 협업
 - ** 인허가·임상실험 등 교육, R&D, 기술사업화 관련 협업 및 멘토링 진행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교육/사업 참가

* 각 사업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의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5-18 클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클라우드 펀딩 활용/오픈마켓 입점 지원교육을 통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기업 참가

지원 대상 해외 클라우드 펀딩 시장 진출/오픈마켓 입점 희망 또는 클라우드 펀딩 성공 후 해외마케팅 희망 스타트업

지원 내용

- 해외 클라우드펀딩 입점 지원 및 클라우드 펀딩 성공제품 해외무역관 전시, 현지 수출 지원
 - 해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점 상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레퍼런스 활용 현지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에 이르는 혁신형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 '19년도 (일) 마쿠야게, (중) 정동, (대만) ZECZEC, (미) 인디고고 진행
- 해외 오픈마켓 입점 교육을 통한 소비재 해외 수출 지원
 - 아마존(JP, US) 입점 교육 및 배송비 일부 지원(상세내용은 추후 모집공고 참조 요망)

신청·접수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의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혁신소비재, 혁신서비스, 혁신요소기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 VC·유망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200여개 기업 최종 선정

지원 대상

혁신소비재, 서비스, 요소기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스타트업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 북미, 유럽, 동남아, 중국 등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쇼케이스, 투자유치 IR, 1:1 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
- * (핀)SLUSH, (프)Viva Technology, (미)TechCrunch Disrupt, Bio USA, (싱)Singapore Fin-tech Festival, (일)Innovation Leaders Summit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컨퍼런스 참가 지원

* 각 글로벌 컨퍼런스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의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 안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참가기업 200개사 이상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1-4주) 현지 유명 투자가 및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강연 및 멘토링 제공, 기업별 맞춤형으로 현지 바이어 · 투자자 ·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미팅 주선
 - 스타트업 사절단을 구성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된 지역(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세미나, 현지 바이어/VC 1:1 상담회, 기관 방문, 네트워킹 등 진행
 - * LA 코워킹오피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국 내륙 진출 멘토링패키지, 선전 화창베이 인큐베이팅 입주 프로그램 등

신청·접수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의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이메일, 전화,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현지 법규, 회계, 금융 등 시장진출 장벽, 리스크 관리, 대응책 등 상담

진행 절차

애로 상담 신청(이메일, 전화, 팩스) → 신청 내용 검토 후 해외수주 애로상담센터 자문위원이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문 의 처

프로젝트공공조달팀 : 02-3460-7486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ICT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기업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및 기타 ICT 융합기기
 -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 모바일앱 등)
 - IT 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등) SI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지원 내용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의사결정, 시험판매, 전략적 제휴(유통/자본/R&D), 협상 및 계약
 - 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현지거점 설립

상담 방법

- ICT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상담
 - 하드웨어/소프트웨어(02-3460-7753), IT서비스(02-3460-7754)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속



지원서비스안내



무역투자상담



온라인 상담

- ICT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상담 (KOTRA 본사 5층, 융복합산업팀內)
- 수출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 상담 가능

문의처

융복합산업팀 02-3460-7753 / 7754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K-Globa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ICT시장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수출을 확대하며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IT서비스 분야 모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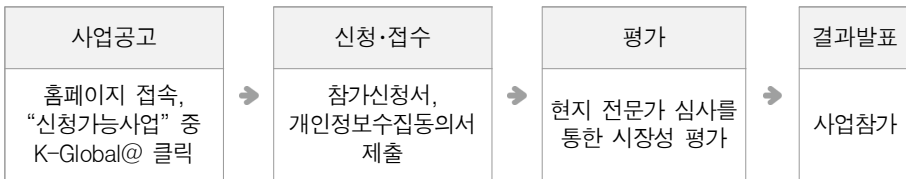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 국내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기업
- ✓ 대기업은 유료 참가 (참가비 추후 공지)

지원 내용

- ICT 분야 융복합사업 지원
 - 무역(전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IR), 네트워킹 등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 참가비 무료 (항공료, 체재비 등 개인경비는 참가기업 자체 부담)

선정 절차



문의처 융복합산업팀 02-3460-7472

신청·접수 매 개최 시기 약 3~4개월 이전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사업 신청공고문이 게재 (세부일정 문의 요망)

5-24 해외 IT 지원센터

국내 ICT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IT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설치 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대상 기업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ICT기업

*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제외, 국내에 본사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선정 절차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지원 내용

- 현지 사무공간(입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바이어 발굴,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지원 → 산업별 특화 서비스 → ICT →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담당자 이메일 서류접수)

제출 서류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기업소개서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 제품성 - 시장성

문의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72, 7470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2008년 최초 개최된 B2B 전시상담회 'GMV'는 ICT분야의 우수 국내 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신시장 개척,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시상담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ICT분야 (모바일, 무선통신, AI, IoT, AR/VR,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전자정부/정보보안, 핀테크 등) 기업

참가비 (VAT포함)

부스안내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제공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x3m 조립부스 - 안내데스크(의자1) - 조명 - 전력(1kW) - 원형테이블(의자4) - 국·영문 상호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x1.5m 현수막 - 백월 - 일반테이블 - 의자 전력(1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x3m (면적만 제공)
참가비용	275만원	350만원	80만원	150만원

* 조기할인 20~40% 적용

신청방법

- GMV 홈페이지(www.gmv.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문의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7, 7473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국내IT기업의 신시장 IT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타깃 지역별 해외무역관에 현지 전문가를 채용 및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 ICT 분야(ITS,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중소·중견기업
-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조사한 유망프로젝트와 신청기업의 수요 반영
 - * 매년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 기업 개별 발굴 프로젝트 및 지역 추진 가능

지원 내용

- (1:1 전담지원) 프로젝트별 무역관 및 현지 전담직원 배정
- (맞춤형 정보제공) 개도국 시장 및 기술력 분석 등 상시적인 시장분석 보고
- (바이어 발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바이어 및 협력 채널 발굴
- (마케팅 지원)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선정기준

- 마케팅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 * 매년 10월 차년도 사업공고

신청방법

기간	9~10월	11월	12월	다음 해 1월
제공내역	- 컨소시엄 모집 - 해외 프로젝트 조사	- 1차 선정평가 - 무역관 매칭	2차 대면평가	사업착수

문의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7, 7473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사업’은 KOTRA가 채용한 서비스 전담직원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법인설립,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미팅 등을 1년간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개요

- 사업기간(잠정) : 2020년 2월 ~ 2021년 1월 (1년)
- 지원규모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70개사 내외
- 지원방식 : 기업별 서비스 거점 무역관 1:1 매칭지원, 파트너 발굴, 현장(출장)지원, 시장조사, 기업별 요청사항 처리 등
- 참가비 : 서비스거점 당 250만원~300만원 (거점별 상이)
 - * 수출바우처로 이용 가능

지원 대상

- (서비스분야)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지재권, 유통 등
 - 콘텐츠 :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웹툰, 음악, 게임
 - 의료 : 스마트헬스케어, 병원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 관광 : MICE 유치, 의료관광 유치, ICT 관광콘텐츠, 숙박플랫폼
 - 교육 : 이러닝, 플랫폼 운영, 학원
 - SW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물류 : 물류신기술, 新운송수단
 - 유통 : 외식, 이·미용 프랜차이즈
 - 금융 : 핀테크

지원 내용

- 서비스 거점별 1명의 서비스 전담직원이 상주, 서비스 전담직원 1명이 5~7개사의 서비스기업을 담당하며, 기업이 요청하는 업무를 1:1 맞춤형으로 지원

신청·접수

- 사업 공고(2019년 12월중)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서비스 개시

문의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경제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융합한 한류 박람회,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진출기업의 시장확대 및 초기 진출기업의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한류 기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KBEE)’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2019년 개최지 : 방콕, 두바이 / 2018년 개최지 : 모스크바, 싱가포르)
- 한류스타 IP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사업(송지효의 뷰티플라이프 연계 사업 등)
- 한류 콘텐츠 연계 쏠주기 지원 사업(한류 방송콘텐츠 매칭페어, 온라인 이커머스 입점, 제작발표회 연계 전시상담 등)

문의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3318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 성약을 제고하고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콘텐츠 분야 제작사 및 개발사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절단 파견
-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매칭을 통한 공동 제작
- Cartoon Connection, Korea Service Market(KSM),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링 로드쇼(중국 등 2곳) 등

문의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1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KOTRA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국내 방위·보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해드립니다.

구 성 (KODITS)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조직

지원 내용

사 업	주 요 내 용
정부간(G2G)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KOTRA의 G2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수출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DAS 등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등 국내업체 대상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방산·보안수출선도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 정보(인콰이어리)를 국내업체에 제공
절충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절충교역 의무보유 기업과 국내업체를 매칭하는 마케팅 및 절충교역 희망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파이낸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를 국내업체에 제공
패키지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를 국내업체에 지원

진행 절차

- (정부간거래)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 (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
-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에이전트 모집 → 국내기업-해외바이어간 상담주선 → 최종 상담스케줄 안내 → 사후관리 및 지원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유치 및 상담주선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 사후 관리 및 지원

문의처

- 기획총괄실 : 02-3460-7813, 정부간거래관리실 : 02-3460-7808
- KODITS 홈페이지(kodits.kotra.or.kr)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달 전문기업 1000개사 육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수출기업 1000개사 (KOTRA 500개사, 조달청 500개사 선정)

선정 기준 해외마케팅 역량(70%) + 재무건전성(30%)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벤더등록 지원, 해외조달시장 정보, 입찰보증 한도확대/금리우대/자금지원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 제공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안별 지원 → 점검 및 평가

문의처 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92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분야 중소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분야 중소기업

선정 기준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 기업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 수요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GP EUROPE, GP USA, GP JAPAN, GP CHINA 등
 - 국내 :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연중수시)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사업 공고 → 국내 기업 신청 → 바이어 시장성 평가 → 상담회 실시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국내기업의 참가 신청 후 글로벌 기업의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참가기업 선정

문의처

소재부품팀 : 02-3460-3257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해외시장뉴스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29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접속
- 일반 정보는 로그인 불필요, 진출전략 보고서는 로그인 후 열람가능
- 매주 화·목요일 해외시장정보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신청 : 열린마당-뉴스레터 메뉴)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유 형	내 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전문가기고 등
상품·산업정보	상품DB, 트렌드, 국별 주요산업 정보
국가·지역정보	세계 89개국 국가·지역정보, 진출전략 보고서, 출장자료, 현지소식 등
보고서	심층보고서, 수출동향 보고서 등
비즈니스	기업성공사례, 무역사기사례, 해외인증정보, 국제무역통계 등
생생현장	포토뉴스, 카드뉴스, 생생글로벌 비즈 트렌드, 설명회·세미나 영상정보
해외직접투자	해외투자 안내, 직접 투자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무역자료실	무역자료실 서비스 안내, 자료검색, 간행물 판매정보

문 의 처

시장정보팀 : 02-3460-7414, 7415

5-34 해외시장 설명회

KOTRA는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사업 내용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구분	서울 설명회	지방 설명회
일자 (잠정)	'20.12.1(화)	'20.12.2(수),3(목)
장소 (잠정)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울산, 충북, 경남
대상기업	2021년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주요 프로그램	글로벌 경제전망 및 권역별(북미, 중국, 유럽, 일본, 중남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중동, CIS) 진출전략 소개	
참가비 (잠정)	일반접수 : 120,000원(부가세별도) 조기접수 : 100,000원(부가세별도)	무료
상세안내	www.kotra.or.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서비스 안내] > [지금 신청가능한 사업]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클릭	

* 지난 설명회 자료는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생생현장 - '설명회 영상·자료'에서 열람 가능

문의처

무역분석팀 : 02-3460-7589, 7583, 7597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행사 (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용 방법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 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 공고·선정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2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FTA 혜택을 활용하고 싶는데 복잡한 내용 때문에 어려우시다구요?
KOTRA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FTA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애로해소까지 FTA 활용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용료 무료

사업 내용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 직원 및 전문가 배치



정보제공

FTA 홍보활동

-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제공
- 무역협회, KTR 등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전시회 공동 홍보 부스 운영



활용상담

FTA 홍보활동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애로해소
지원

FTA 홍보활동

- 동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FTA 자문단

기능별(법률·통관·회계 등), 산업별(화장품·식품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센터 연락처

센 터	전 화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www.kotra.or.kr/KBC/qingdao
청두	(86-28) 8672-3501	www.kotra.or.kr/KBC/chengdu
광저우	(86-20) 2208-1939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	www.kotra.or.kr/KBC/dalian
톈진	(86-22) 2329-6631	www.kotra.or.kr/KBC/tianjin
하노이	(84-24) 3946-0511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84-28) 3822-3944	www.kotra.or.kr/KBC/hochiminh
자카르타	(62-21) 574-1522	www.kotra.or.kr/KBC/jakarta
뉴델리	(91-124) 4628-500	www.kotra.or.kr/KBC/newdelhi
첸나이	(91-44) 2499-7283	www.kotra.or.kr/KBC/chennai
방콕	(66-2) 035-1555	www.kotra.or.kr/KBC/bangkok
마닐라	(63-2) 8894-4084	www.kotra.or.kr/KBC/manila

문의처

통상지원팀 : 02-3460-3316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수료

일반서비스 : 500,000~700,000만원 (VAT별도)

프리미엄서비스 : 1,000,000~1,400,000만원 (VAT별도)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상담주선 +사후지원 (2개월)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상담 참가비 : 50~70 만원 (3~4 개사) + 부가세 (10%)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상담주선+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사후지원(2개월)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직원이 상담지원 참가비 : 100~140 만원(3~4 개사) + 부가세 (10%)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기업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상담 참가비 : 50~70 만원 (2~3 개사) + 부가세 (10%)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기업 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 상담지원 (통역, 차량 지원)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참가비 : 100~140 만원(2~3 개사) + 부가세 (10%)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출장지원 가능시 對고객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 출장시행

참고 사항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122개 무역관

- * 출장지원 제외지역(여행금지국) : 시리아(다마스쿠스), 이라크(바그다드), 리비아(트리폴리) 무역관

문의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5-38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시안	7		LA	22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8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4
싱가포르	싱가포르	10	UAE	두바이	6
칠레	산티아고	9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미얀마	양곤	10

수 수 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지역별 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입주 기한

최장 4년

지원 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 의 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 055-751-9685, 9682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참가비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 연 460만원, 2인실 연 770만원
- 나고야 : 1인실 연 660만원, 2인실 연 1,090만원
- 프랑크푸르트 : 1인실 연 1,030만원, 2인실 연 1,860만원 (보증금 100만원)
- 상하이 : 공유오피스 체제로 전환 예정(2020년)

지원 사항 (직접지원 서비스)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 사항 (간접지원 서비스 : 물류, 정착지원, 기타)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랩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랩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진행 절차

- 참가신청서 개별 접수 (관심기업 → 본사)
- 무역관의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확정 통보
- (空사무실 有)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 (空사무실 無) 대기명단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문의처 소재부품팀 : 02-3460-7664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2020.2.1. ~ 2021.1.31.

지원 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 내외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의 제조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운영 방식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최대 1억원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수출바우처란?

- 정부의 보조금과 참가기업의 분담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구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각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직접 선택하여 수출마케팅을 지원 받는 사업

참가비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바우처 금액의 30%~50% 책정

지원 내용

- 참가기업 수요 및 전략에 따른 맞춤형 목표시장 선정 지원
- 산업별 로드맵 작성 지원 및 로드맵 기반 컨설팅 제공
- 기업별 수요에 맞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글로벌파트너링 중점 토탈패키지

신청 방법

사업공고 (2019년 12월 中) 확인 후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사업신청

문의 처

소재부품팀 : 02-3460-3257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협력물류 회사와 제휴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하며,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잠정)

-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기업 분담 비중 30% : 국고분담 비중 70%)

참가비	국고지원금	한도 총액
최대 300만원	최대 700만원	최대 1000만원

- * 최소 참가기준 : 참가비 30만원 + 국고 70만원 = 100만원
-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10단계)

지원 사항

- 기업 지원기간 : 1년(상시, 선착순 모집)
- 현지통관, 수입대행 및 입·출고, 보관, 포장, 반품지원 등 종합 물류서비스 지원
 - * 터미널비, 운·배송비 등 기타 물류서비스는 참가기업이 현지 협력물류회사와 직접 정산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 및 현지 최적 물류수단 등 컨설팅 제공

진행 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신청 → 해외무역관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참가업체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개시

문의처

- 유망기업팀 : 02-3460-7438, 7428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투자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 해외진출 우리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운영 조직

14개국 21개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미얀마	태국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마닐라	양곤	방콕	
캄보디아	인도	폴란드	몽골	멕시코	브라질	독일	러시아					
프놈펜	뉴델리	바르샤바	울란바토르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프랑크푸르트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문의처

투자 MnA팀 : 02-3460-7357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8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해외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등록 절차, 지재권 침해,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구 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및 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운영 조직 8개국 15개소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인도	인니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방콕	호치민	도쿄	뉴델리	자카르타

지원 세부 내역

구 분	지 원 비 용
상표 · 디자인 출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신청기업별 연간 8건) * 중국, 인도네시아 : 최대 \$300/건 * 태국 : 최대 \$550/건 * 일본 : 최대 \$500/건 * 홍콩 : 최대 \$650/건 * 베트남 : 최대 \$300/건(상표), \$600/건(디자인) * 인도 : 최대 \$300/건(상표), \$200/건(디자인) * 미국 : 최대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 독일 : 최대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

신청 · 접수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처리절차

○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 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침해조사 기관)와 계약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침해감정서 작성 후 기업 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문의처

-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ip-desk@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교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전(全)과정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세부 지원 제도



문의처 유턴지원팀 : 02-3460-7361~5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범위 : ① 지분인수 ② 사업부문 인수(Spin-off) ③ 유무형 자산인수

지원 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전략수립) 팀 내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매물기업 발굴
 - (딜 실행) 매물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 절차

-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팀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문의처

- 투자 M&A팀 : 02-3497-1110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관련 기관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개 최 주 기
글로벌 CSR 국내 CSR	A형 : 자사 제품· 서비스 기부	우리기업이 자사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스타트업 기업인 D사는 케냐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기부하여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교육 인프라 사업진출 및 약 2.1만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첫 수출을 달성
	B형 : 해외 기술 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 기여 * K 공사는 이집트 교통부에 한국의 철도 현대화 및 철도사업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이집트 공공 입찰 참여 자격 획득
	C형 :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C 사는 인도네시아 코코넛 설탕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사 제품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설탕 완제품의 내수 판매도 지원
	D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한국의 시험인증(연구개발)·제품생산·공공 서비스 분야의 운영 경험과 장비를 신흥국에 제공하여 국내 기관과 협업 지원 및 우리나라의 산업 표준, 적합성 체계, 연구 성과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 * K발전사는 유휴장비를 라오스 전력청에 이전하고 변전교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현지 전력시장 진출 기반 마련
	D-1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사후관리	D형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1회 한에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기증된 유휴장비의 활용도 제고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등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추진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에 대한 지원은 최대1인에 한함.

선정 기준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현지 사회공헌 정도, 사업의 효율성 등

지원 내용

사업 기획, 실행, 사업비 일부, 현지 홍보 등

진행 절차

업체모집(상·하반기 각 1회*) → 선정 → 사업계획 확정 → 사업추진

* 신청 사업의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개발협력실 : 02-3460-7532, 7524
- KOTRA 홈페이지 → 지원서비스안내 → 해외진출지원 → KOTRA CSR → 공지사항 및 공고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해외 마케팅, R&D 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해외 전문인력 수요기업 239개사 362명('18년)

대상 기업

국내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기업·기관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

유치 대상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직종에 해당하면서, ①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② 석·박사 ③ 경력 5년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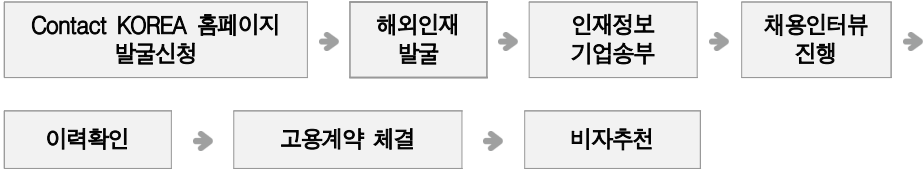
이 용 료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110만원 (적격인력 발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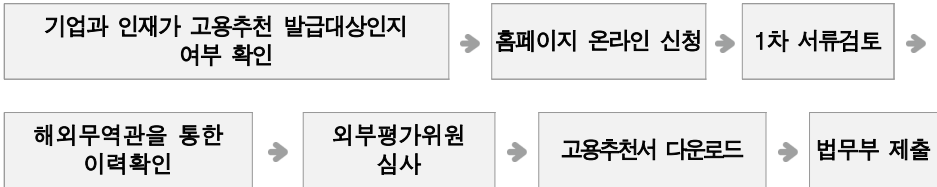
진행 절차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신청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문의처

○ 해외취업팀(02-3460-7387~8),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5-48 교육·연수

KOTRA 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과정명	주요 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란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산업별 수출 마케팅 역량강화 과정 *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의료의약, 패션의류, 식품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초보/유망/중견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연수 * 수출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과정, CEO아카데미 등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배양 과정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실무, 국제비즈니스계약, 협상, 해외전시마케팅 등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 글로벌 기업 동향 및 선진국 경제동향 연구, 선진국 인프라 체험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과정	-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과정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

과정별 상이

신청 방법

- KOTRA 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참고
- 교육공고 카테고리에서 과정별 신청방법 확인

문의처

- KOTRA 아카데미 : 02-3497-1194 / 042-338-1702(대전분원)

5-49 열린무역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KOTRA 해외무역관 방문고객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지원 내용 근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무역관별 분기당 1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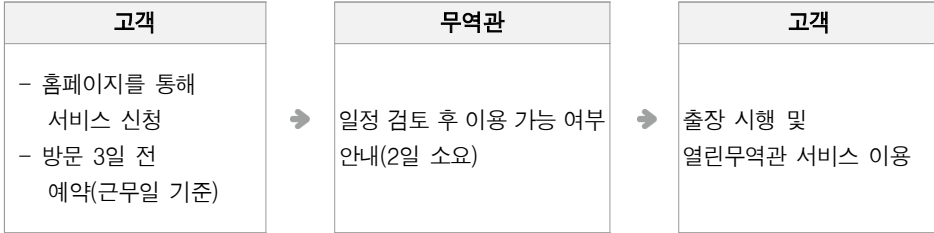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지원서비스 안내’ → 사업 신청하기 메뉴 중 ‘열린무역관’ 선택 → ‘사업 신청하기’
 - 지원 무역관 : 81개국 122개 무역관
 - 여행금지국, 신설 무역관 등 7개 무역관을 제외한 전 무역관

처리 절차



- 별도 선정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7339
- 각 해외무역관: 대표 e-mail (KOTRA 홈페이지 참고)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신남방, 신북방 및 기타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1: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2
- 신남방팀 : 02-3460-7666
- 신북방팀 : 02-3460-7662



제6부

한국무역협회

- 6-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568
- 6-2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 569
- 6-3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 570
- 6-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571
- 6-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573
- 6-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575
- 6-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577
- 6-8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 579
- 6-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581
- 6-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 583
- 6-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587
- 6-12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 589
- 6-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591
- 6-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593
- 6-15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595
- 6-16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 597
- 6-17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 598
-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 599
-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 600
-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601

6-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무역정책 애로 해결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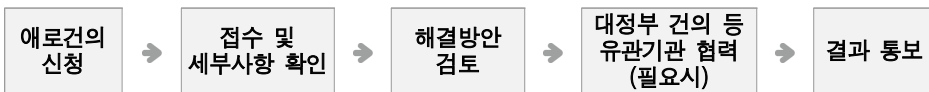
지원 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2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절차,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전자상거래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해외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무료)

분야	상담요일	컨설턴트
수출입실무/신용장/대금결제	월~금	전문상담역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통관/관세/HS분류/FTA원산지		관세사
무역실무 분쟁대응	월	전문변호사
국제계약서/클레임	화, 목	국제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외환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e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금	공인노무사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실무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실

6-3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 업체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품목 및 분야별 무역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1: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자문 상담(무료)
 - 총 72명(2019년 11월 기준), 무역협회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자문서비스 제공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수출현장 MC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6-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개최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 지원(부스임대료 최대 50%, 장비비 최대 50%)

베트남·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10개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시장 수출증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부스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한국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해외전시회 지원, 약 42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동경 한국우수상품전	3.24~25	100	국내 각 지자체
2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ISC West)	3.18~20	15	코트라
3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5.26~27	20	중기중앙회
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6.4~7	50	국내 각 지자체
5	말레이시아 이미용전	8.24~27	10	중기중앙회
6	함부르크조선해양전시회	9.8~11	15	코트라
7	LA 무선통신전 (MWC LA)	10.28~30	10	코트라
8	뮌헨전자부품전시회	11.10~13	20	코트라
9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5~10	150	산업부
10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11.5~7	30	국내 각 지자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전시회별 지원을 상이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신청·접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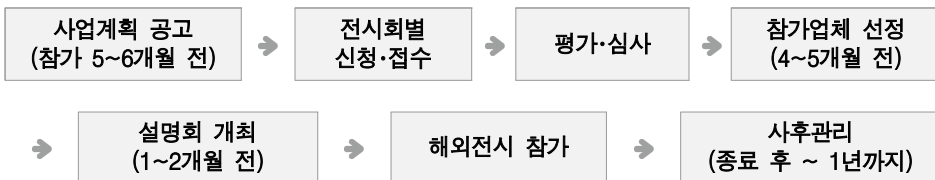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sme-expo.go.kr>)
- KOTRA (<http://www.gep.or.kr>)

제출 서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I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 개최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원 규모 4개의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약 22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상담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초청 바이어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수출상담회	2.27~3.1	40
2	월드IT쇼(WIS)수출상담회	5.6~8	40
3	신남방 비즈니스워크 수출상담회	상반기	40
4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수출상담회	11.15~17	100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권역 진출희망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바이어 초청·바이어 매칭·상담회장 조성 등 지원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부대행사 동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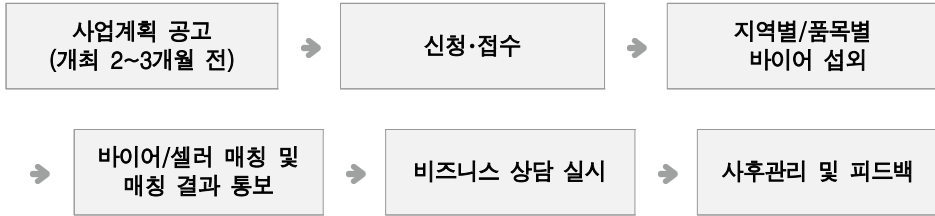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지원 규모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규모 변동 가능

	사 절 단 명	시 기	규 모	지 역
1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9월	50개사	러시아

지원 대상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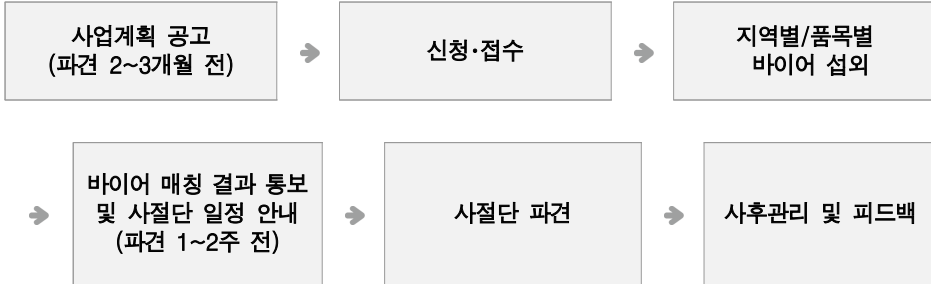
- 공통경비 전액 지원
 - 각종 부대행사 개최비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공식 오찬 등
 - 파견국 내 단체차량 임차비,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통역비 등
- 현지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 제외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B2B e-Marketplace 기반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kr.tradeKorea.com에 접속하세요. 거래제의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등 온라인마케팅부터 계약성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일부 서비스는 협회 회원사만 제공)

지원 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타겟 마케팅
 - 국내 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 * 1개사 월 3회 이용 가능하며, 1회 20개 바이어 선택 가능
 - * 年 720개 바이어에게 C/L 발송 가능
-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무역협회 해외지부 관할 지역 대상
 - 해외지부에서 직접 마케팅 통해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1회 신청 시 최소 1개 ~ 최대 3개 지역 서비스 원칙 (연 3회 최대)
 - * 이 서비스의 경우, 협회 회원사만 지원 가능
-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국내기업과 상시 알선 지원
 - * 월 3곳의 빅바이어 초청

○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 tradeKorea 내 기업/제품홍보 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 홈페이지처럼 이용 가능한 도메인 및 웹사이트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바이어로부터 공개가 허가된 인콰이어리에 한해, 구매오피 공개게재
- 바이어가 지정한 기간동안 노출이 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접수

- tradeKorea 국문 페이지(kr.tradekorea.com)에서 신청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 02-6000-5407

6-8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 한국 우수 상품을 위한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 Kmall2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Kmall24(영문, 중문) 입점 및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 연계 판매를 통한 B2C 해외판매를 지원합니다. Kmall24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Cross-Border e-commerce)을 선점하세요.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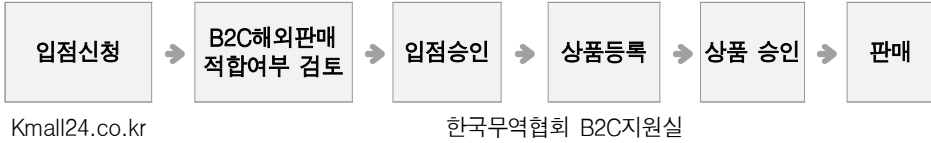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 한국 브랜드인 패션, 뷰티, 유아, 생활용품, 식품, 문화상품 등 소비재 취급업체
 - * 지원 제한 품목 : B2C해외판매 부적합 상품(예. 중장비, 의약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지원 내용

- B2C 해외직판 제반 절차
 - * 결제 시스템, 국내외 물류창고 활용, CS응대, 대금 정산 등
- 해외소비자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 * SNS/키워드 마케팅, 전시회 샘플 참가, PPL/한류 연예인/인플루언서 마케팅, 쇼핑데이 이벤트 등
- 해외오픈마켓 판매
 - * 아마존, 티몰글로벌, 이베이, 쇼피 등
- B2CB 거래 연계
 - * 바이어가 상품 소개 사이트의 Wholesale Inquiry 클릭 시 B2B 매칭 전문가가 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신청·접수

- Kmall24 국문 홈페이지(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제출 서류

- 기업은행 약정 확인서, 판매약정서 등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콜센터 : 1566-5114
- Kmall24 국문 홈페이지(www.kmall24.co.kr)

6-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 내용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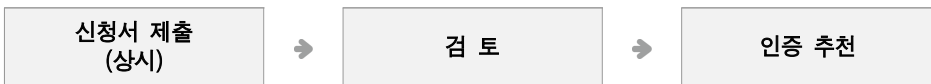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 인증추천 - 추천서 다운로드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실

제출 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 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 사업배경(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 판매사업 계획 등

처리 절차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 신속한 출입국 수속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59~9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천 대상

법무부 훈령 제1007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추천 제외 대상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추천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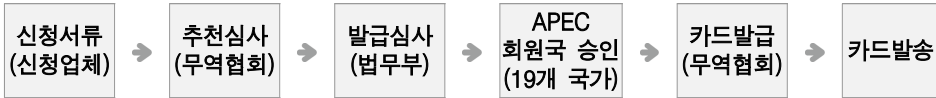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중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 주민등록 후단번호 와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사본 제출
- 정보이용동의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온라인발급(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함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 납부한 날로부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6-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2 KITA무역진흥자금 용자

|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신규 용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단, 기 용자업체는 더 많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시 감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

지원 내용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용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유의 사항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용자 조건

- 금리 : 연 2.7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 4, 7, 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또는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6-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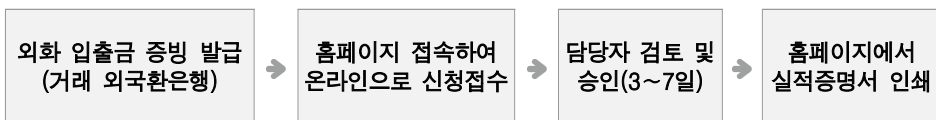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제출 서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해당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6-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FTA 활용 지원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500~6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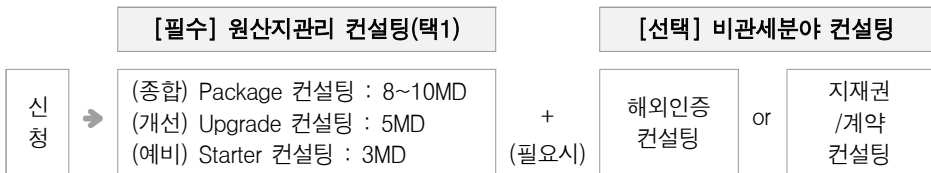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지원 현황
 - * '18년 지원현황 : 619개사, '19년 지원현황 : 639개사

지원 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 관세법인 소속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아래 3가지 컨설팅 유형 중 택1)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또는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인증 또는 지재권/계약 중 선택)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10일(MD)까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1) 중소기업(대기업진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이하 : 10% ③ 50억원~100억원 이하 : 20% ④ 100억원~500억원 이하 : 30% ⑤ 500억원~1,000억원 이하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처리 절차

○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02-6000-7583~4(또는 1380)

6-15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확보, 후속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10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총 22회, 20개 대기업과 맞업 개최, 창업기업 219개사 참가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다국적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별 자율운영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영문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6-16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코엑스와 무역센터의 물리적 가치를 활용해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을 시연 및 일정기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약 3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총 5개사 참가, 47개사 1차 선정 미팅 진행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실증 테스트를 통한 소비자 반응 정보수집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 **용어설명**

※테스트베드 :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소규모 집단, 지역, 영역

6-17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밋업을 집대성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관계자 간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2,00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이노브랜치 플랫폼 구축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신청·접수

이노브랜치 홈페이지(www.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영문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 대중소기업 연계 개방형 혁신성장 촉진

무역협회 회원사 중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수혈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게 자금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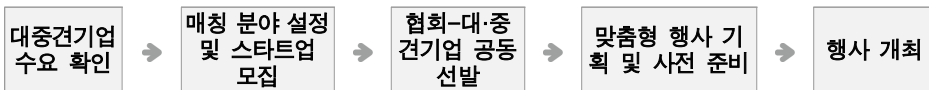
지원 내용

- 대·중견기업에 대한 니즈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2,5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협업 가능성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하는 대·중견기업과 연결 및 협업 모델 공동 구축 검토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공지사항 -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 민간주도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기반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타트업에게 해외진출 바우처를 교부합니다.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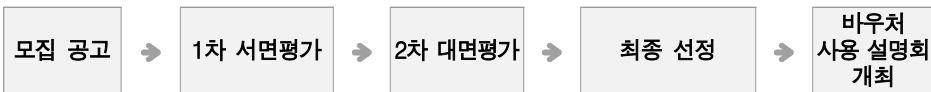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참여 기업 당 최대 2,94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급
 - 기업 자부담금 최대 1,260만원 입금 시 국고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자부담금=70:30)
 - 신청 최대 금액 4,200만원 최소 금액 3,000만원으로 바우처 발급 진행
- 스타트업 맞춤형 메뉴판 구성 및 서비스 제공
 - 홍보동영상/해외규격인증/전시회/해외영업지원/법무·세무·회계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공지사항 -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검색 및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민간주도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기반 확충

스타트업 브랜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된 스타트업 브랜치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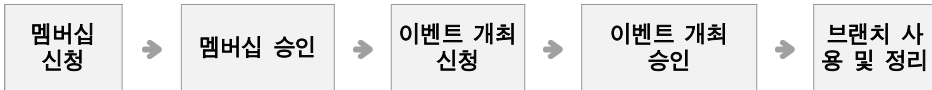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스타트업 브랜치는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4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로 구성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 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형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스타트업 브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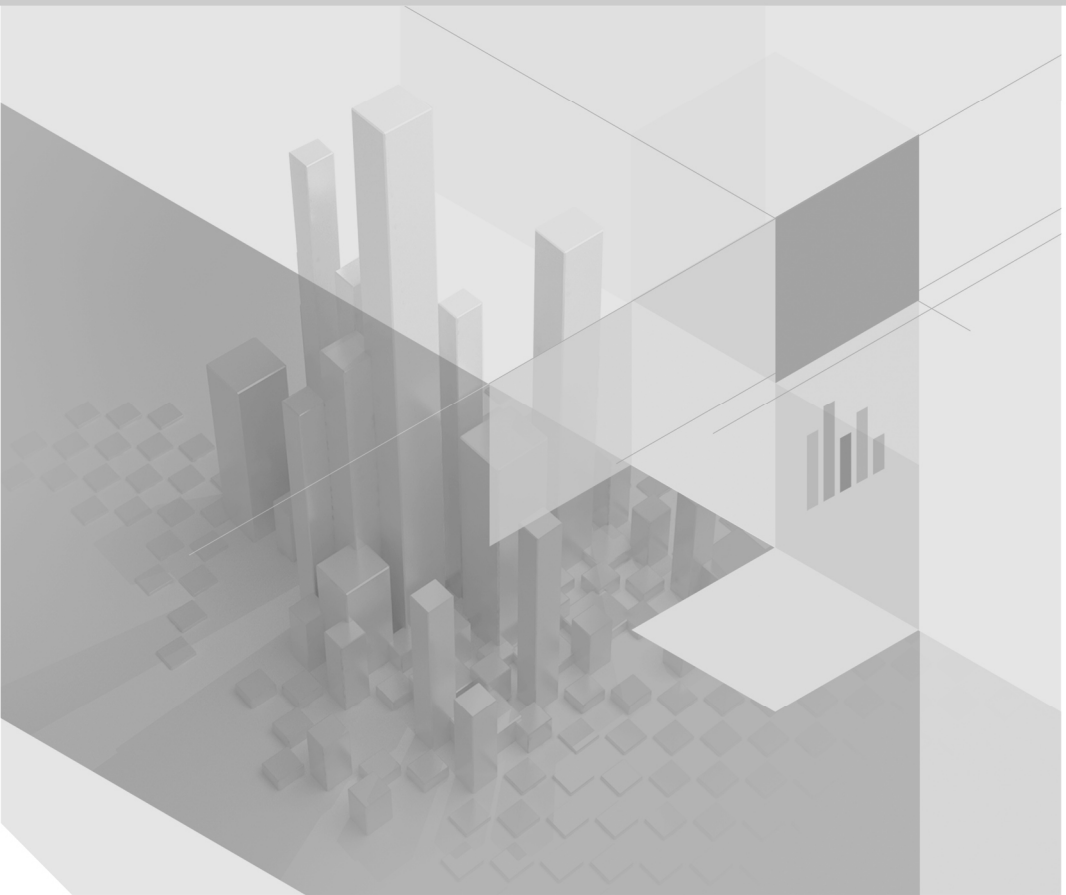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7 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7-1 거래 공정화 / 604
- 7-2 성과공유제 / 610
- 7-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613
- 7-4 상생결제제도 / 615
-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617
-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620
- 7-7 기술보호 역량강화 / 627

7-1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접수 및 법률상담,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교육,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분쟁조정)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상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가능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 지원사항: 강사로,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신청·접수

연중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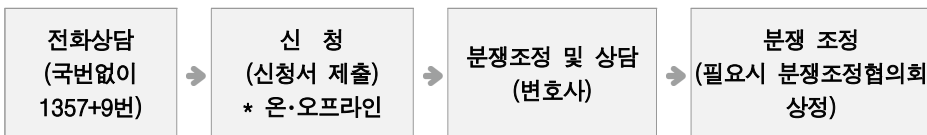
- 불공정신고센터 법률 상담(1357+내선9)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poll.mss.go.kr)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
 - 이메일 : lhy@win-win.or.kr / 팩스 : 02-368-8940
 - 우 편 :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쿠스벤처센터 9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제출 서류

- (분쟁조정, 법률자문)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거래 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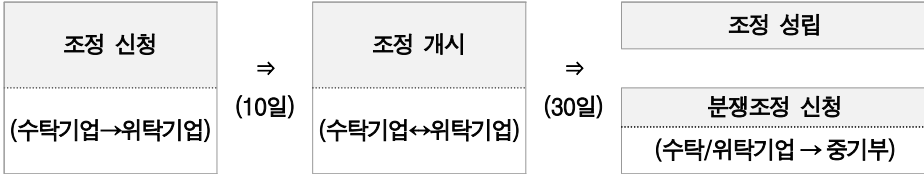
처리 절차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전화 등 상담 후 신청을 통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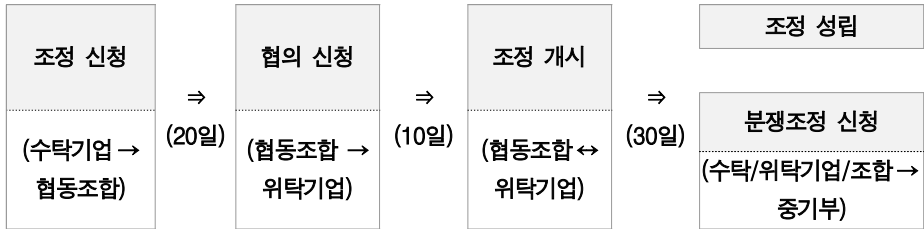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 신청하는 경우



○ (공정거래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166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 02-368-8470(lhy@win-win.or.kr)



-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8958 F)042-481-8960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F)02-2110-0665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5 F)031-201-695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 OBIZ)	031-628-963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F)032-818-020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032-680-3922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6 F)052-283-0354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F)055-262-5560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F)053-626-2602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F)062-366-9613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2 F)063-210-6460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F)042-865-6139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F)043-235-2492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2280-8222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F)033-260-1629	한국의로기기산업협회	02-596-638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02-368-8463 F)02-368-894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0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02-716-1611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786-4116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02-6240-1153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71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31-8023-9953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10-5318-3066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10-3805-0158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10-5414-0151
한국전등기구엘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7-2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 내용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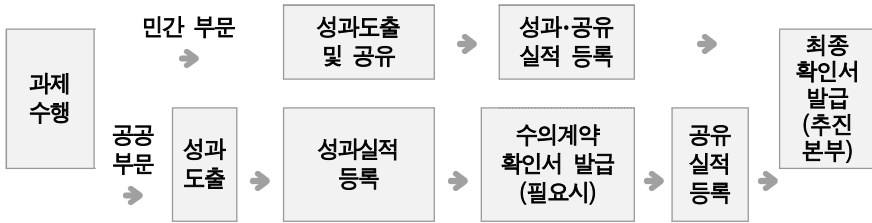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대표 모델

① 신제품·신기술 개발	②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 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③ 기술이전	④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⑤ 성능개선	⑥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⑦ 관리시스템 개선	⑧ 서비스 영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 하거나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4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7-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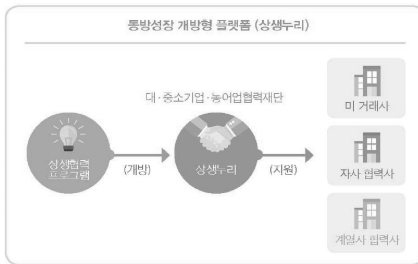
대·공기업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개방

대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사업 개념

- 대·공기업 및 협력사 간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
 -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상생누리 운영 흐름도>



<상생누리 홈페이지>



지원 내용

- 상생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
 - 165개사 3,106개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등록('19.10 기준, 누적)
 - * 대기업 105개사 1,162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60개사 1,944개 프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상생누리 카드뉴스 발행 및 배포
 - 매월 등록된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상생협력 관련정보 제공
 - * 홈페이지와 메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배포

이용 절차

- 회원가입
 - 회사 정보 등록 필요, 대·공기업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정보 등록 및 승인 필요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검색 조건 설정 가능
- 신청접수
 - 상생누리를 통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업 자체 접수(이메일, 유선 등)
- 선정결과 확인

지원 분야

- 대·공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7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41, 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7-4 상생결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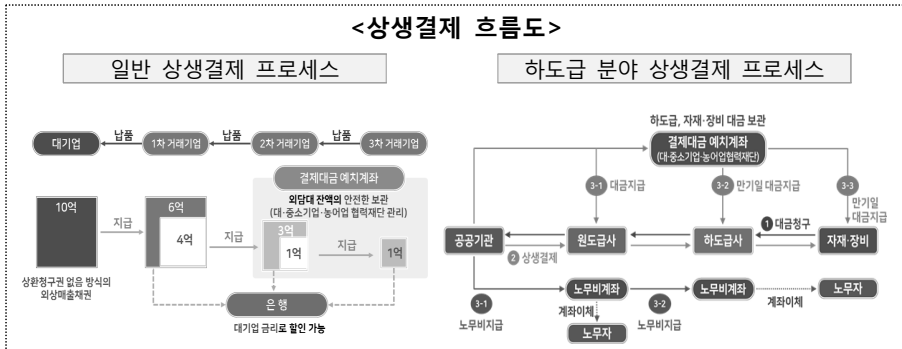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대금지급 보장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제도입니다.

사업 개념

-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
 -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생결제 흐름도>



활용 혜택



대금회수 안정성

예치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직접 지급으로 대금회수 안정성 보장



금융비용 절감

만기일 전 대기업·공공기관 신용도로 저금리 할인 가능



환출이자·장려금 수익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상위 거래기업의 추가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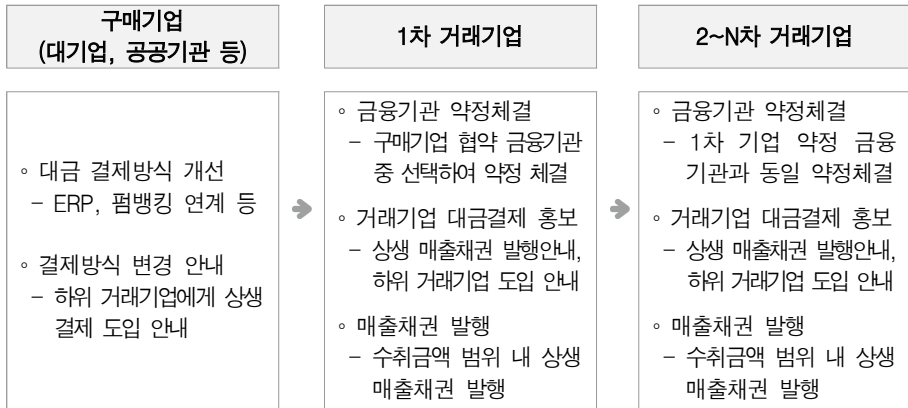


세액 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0.1%~0.2%)

이용 절차

1. 상위기업(구매기업)의 약정여부, 약정 은행 확인(미도입 시 도입요청)
2. 상생결제 약정 체결(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3. 은행별 상생결제 사이트(www.winwinpay.or.kr내 은행별 현황 참고) 회원가입
4. 상생결제 사이트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도입 은행

- 총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은행)

문의처

- 상담번호 : 1670-0833(약정/시스템이용), 0834(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winwinpay.or.kr>

용어설명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상위 거래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하위 거래기업 할인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00개사 내외 (115.75억원)

* '18년 지원현황 : 1,189개사, 기업 당 평균 약 9.7백만원 지원(※ '19년 사업 진행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 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업종 공통/특화, 이업종 융합 동반진출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한류(K팝, K푸드, 드라마/예능, 게임 등) 연계하여 뉴미디어(인플루언서, SNS, V커머스 등) 및 한류스타 IP 활용, 수출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일괄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구분	사업 유형 별 주요 지원 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제품현지화, 운영·행사비, 홍보·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등 * 참여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단, 공동수주 등 현지화개발비가 높은 과제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
해외홍소품 발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홍보·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등 - 중소기업 발송지원은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운반보관료(국내)에 한함 * 지원제품당 최대 2,500만원(중소기업 발송지원 2,500만원, 특화지원 1,500만원) •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 임차료, 운반보관료(해외), 지급수수료, 운영·행사비 등
한류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행사비, 홍보·마케팅비, 영상제작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등 * 지원업체당 최대 1,000만원(단, 한류스타 IP 활용 등 마케팅비가 높은 과제에 한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신청·접수

'20.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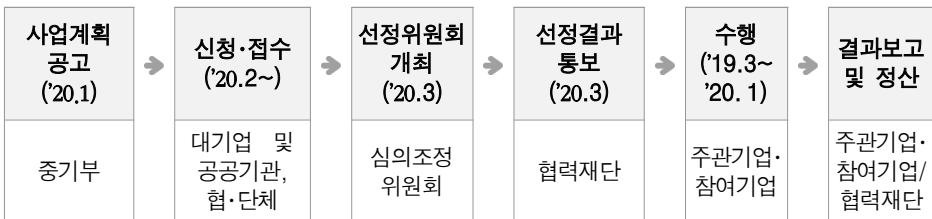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 효과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19년 지원현황 : 535건(11월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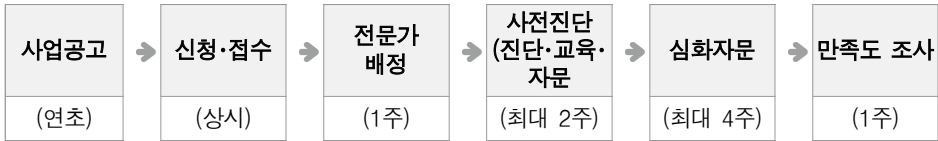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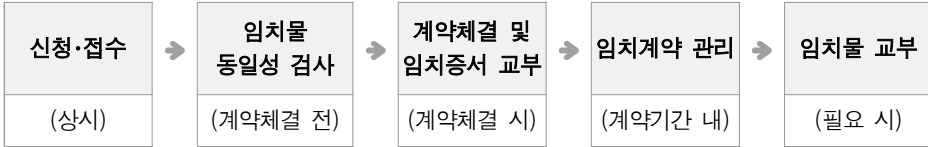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으로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05, 445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입치센터 : 02-368-8484 / www.kescrow.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 기술자료 입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입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입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입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 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94건('19.11월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0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규모 12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유출·분쟁 등 기술침해 관련 법적대응, 지적권 분야 및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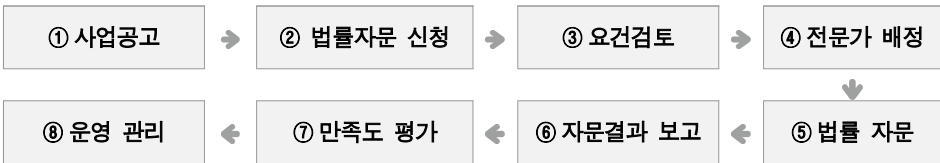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술유출·분쟁 등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의 비밀 유지협약(NDA) 체결 등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지원 확대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go.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7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 ‘20년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9년 지원현황 : 55개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447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 02-368-8737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19년 지원현황 : 7,559건(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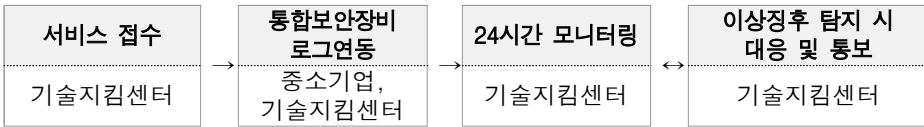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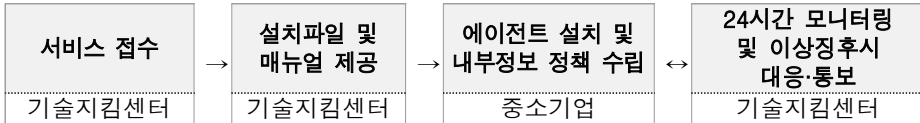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기술보호올타리 : www.ultari.go.kr



제8부

창업진흥원

- 8-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632
- 8-2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 634
- 8-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 636
- 8-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637
- 8-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641
-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644
- 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646
- 8-8 예비창업패키지 / 648
- 8-9 초기창업패키지 / 650
- 8-10 청소년 비즈쿨 / 652
- 8-11 메이커 문화 확산 / 654
- 8-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 656
- 8-13 창업에듀 / 659
- 8-1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660
- 8-15 K-스타트업 / 663
- 8-16 실전창업교육 / 664
- 8-17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 666
- 8-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668
- 8-19 창조경제혁신센터 / 671
- 8-2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673
- 8-21 재도전성공패키지 / 676

8-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글로벌 진출 30억원, 희망기업 60개사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2개사, 선정 기업 60개사, 평균지원금액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적용
-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아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기 수혜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6주) : 국가별 현지 보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매칭된 1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시장조사, 아이템 현지화 등 밀착지원
 - 정부지원금(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참가비로 약 10백만원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현지 마케팅, 특허 출원, 체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다 준비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20년 3월경**<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로 상이하며, 글로벌 진출 준비도가 높은 창업기업의 신청·접수 서류를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평가 후 대면 평가 진행

제출 서류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과 : 042-481-6815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부 : 02-3440-7326, 732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 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약 6주) 등을 제공합니다.

8-2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창업기업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내 최대규모, 최대상금의 창업경진대회로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과 후속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도전!K-스타트업 2019」 4개 부처(중기부, 교육부, 국방부, 과기부) 합동 운영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23.5억원, 4,000개팀 내외
 - * '19년 지원현황 : 관계부처 통합공고(5/24)를 통해 3,894개팀 참가신청 → 부처별 예산(152개팀 선정) → 도전! K-스타트업(부처통합 대회를 통해 최종 20개팀 선정)

지원 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7년 이내의 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창업 7년이 초과한 창업자 (공고일 기준)
-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舊 미래부), KC-Startup Festival (교육부)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 과거,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한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창업경진대회에 누적 상금을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통합본선 진출자(팀) 상금 및 맞춤형 멘토링, 특허출원비 지원
- 왕중왕전 진출자(팀)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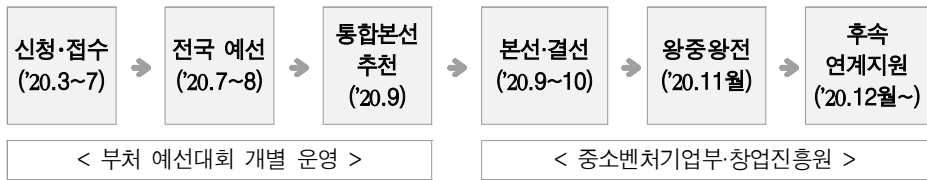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부처별 예선리그의 신청·접수방법 상이(모집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는 예선(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별도 접수(개별 안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363, 439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창업 붐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합니다.

행사명

K-Startup Week ComeUp 2020

지원 대상

국내·외 스타트업 및 관계자(VC, 미디어, 정부관계자, 지원 단체 등)

기간·장소

'20.11.19(목) ~ 11.21(토), 서울 DDP 예정

세부 내용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스케일업(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사업 절차

민간주도 회의체

ComeUp
조직위원회
구성

행사 기획

민간주도
행사기획

수행사 선정

세부 사업 운영
수행사 선정

행사개최

전시, IR, 강연,
포럼 등 다채롭게
구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4426)
- 창업진흥원 해외협력부 (042-480-4316)

8-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 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TIPS) 총 예산 1,777억원, 300개팀 내외
 - * (R&D) 1,456억, (연계사업) 321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팀 내외

지원 대상

-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20년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확'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TIP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Post-TIPS) 틱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틱스 프로그램 성공판정 기준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Pre-TIPS)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개 창업기업으로 선발

- (TIPS)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억원, 지분투자)를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Post-TIPS)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 (판로확대 등)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 (TIPS) 상시 접수 (팁스타운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 (Pre, Post)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Pre)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발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Post)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고용창출 효과 등

제출 서류

- (TIPS) 사업계획서(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 (Pre, Post)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 절차

- (Pre-TIPS 선정절차)



○ (TIPS 선정절차)



○ (Post-TIPS 선정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3, 894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9, 7306, 7314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www.k-startup.go.kr), 팁스타운 홈페이지(www.jointips.or.kr)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사업신청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A 팁스 홈페이지에 운영사를 지정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운영사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Q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창업팀이 원하는 경우 R&D 선정 이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8-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지원 규모

1,350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내외(예산 1,2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016개사(중복지원가능), 선정지원기업 976개사, 평균 지원금액 사업화 1.5억원, 성장촉진 25백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3억원)

- 성장지원 서비스 :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투자,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형별 맞춤지원 : 데스크빌리 극복, R&D연계, 혁신성장 등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고기술 중심으로 개편 : 고기술 중심으로 해외전시회를 개편하고, 디자인 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장촉진 강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01, 4482
- 정책문의 : 중소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09, 3991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사업 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유망 사내벤처 ·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규모 총 200억원, 150개사 내외

* '18~'19년 지원현황 : 운영기업 57개사,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133개사 운영 중

지원 대상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운영기업이 발굴·추천한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및 R&D 자금 등 연계지원

지원대상	구분	지원내용	운영기업 협력
사내벤처팀	사업화	①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 운영기업 1억원 매칭	100개 사업비 매칭지원, 상생협력 (의무)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②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 민간부담(30%이상) + 운영기업 협력	
	사업화 실증	② 최대 1년, 2억원 이내 (정부)	50개 -
분사창업기업 (4IR 분야)	R&D연계	③ 최대 2년, 4억원 이내 (정부 80%이내+민간 20%이상)	미정 상생협력 (자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분사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실증 지원* 신설

- * 사업화 실증지원 : 제품개선 구체화, 개선제품 개발,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소비자공개 · 검증을 통해 시장적응력 확보 지원

< 사업화실증을 통한 주요 지원내용 >

구분	항목	내용
실증	시제품 성능 및 사업화실증	시제품의 안정성, 기능성, 안정성, POC 지원
	후속 실증 보완	실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보완
확산	기술융합	이업종 제품·서비스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 모색

신청·접수

2020년 상반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3, 7305, 730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20년, 44.6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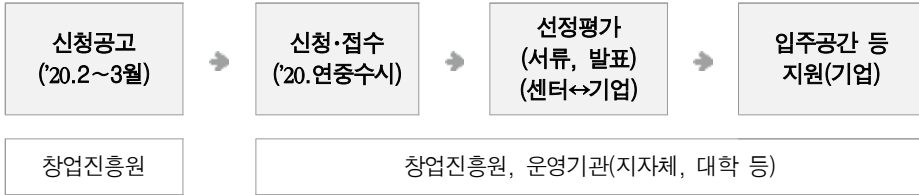
분 야	내 용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 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 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 절차



* '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연중수시)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7, 4423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7
부산	부산시	051-581-4050	인천	인천시	032-726-3883
대구·경북	계명문화	053-589-7558	강원	춘천시	033-240-9832~3
	달서구	053-643-7994~5	경기	경기	031-259-6079
	수성구	053-784-8261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4~9605	의정부시		031-850-5815~7	
광주·전남	광주시	062-236-3262	경남	고양시	031-936-7485
	전남	061-280-7499, 7494		경남	055-751-3610
충북	청주시	043-254-8666	경남	영산대	055-380-9573
	충북	043-217-1311~2		김해시	055-346-8440
충남	당진시	041-354-8558	전북	익산시	063-841-7480
대전	대전	042-939-4740		전북	063-717-1321
제주	서귀포	064-732-0039			

8-8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700개 창업팀 선정(1,113.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8,403명 / (선정) 2,205명

지원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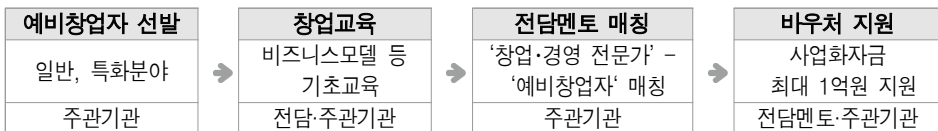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이용자에게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주요 사업절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과 지속적 성장 위해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실전창업교육, 초기창업패키지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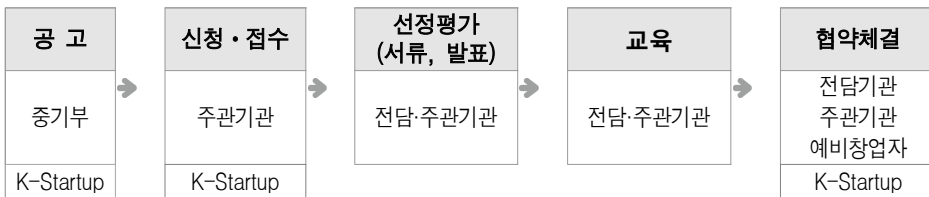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20.2월 말 예정)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문기관) : 042-480-4487, 4379, 4352, 438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8-9 초기창업패키지

| 유망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30개사 내외 (예산 1,0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1,078개사, 최대 1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특화(실험실/연구중심병원)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 일반기술트랙(최대 1억원), 특화트랙(최대 1.5억원)
-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주관기간별 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초기창업기업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트랙을 나누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을 세분화·고도화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 절차**문의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54~8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 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신청 시 나이제한은 없나요?

A 예, 없습니다.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8-10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20년 예산 : 66.68억원, 전국 약 495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495개 기관(초등 144개, 중등 91개, 고등 220개, 특수 25개, 대안 4개, 센터 11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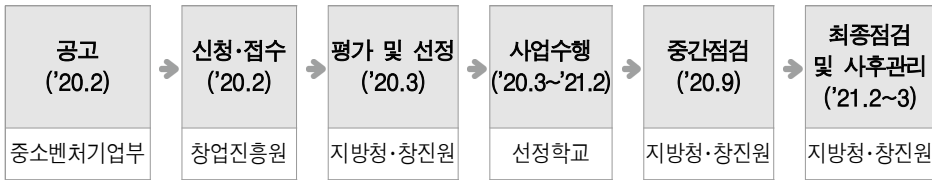
신청·접수

2월 접수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19년 기 선정된 비즈쿨 운영학교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비즈쿨 운영학교의 자진 포기, 평가에 의한 탈락 등 잔여 TO를 확인하여 추가 모집 예정
 - * 비즈쿨 운영학교 잔여 TO에 따라 '20년은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1651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1~2, 4464, 4465, 430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8-11 메이커 문화 확산

| 메이커 창작활동 등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메이커 창작활동 등 350여개 과제(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320개 과제(62억원)

지원 대상

-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 메이커 동아리, 창작 프로젝트, 행사, 찾아가는 교육 등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8-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지원 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63개소(예산 311.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128개 메이커 스페이스(예산 285.2억원)

지원 대상

- 사업 목적에 따른 시설 조성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

지원 내용

-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시설 구축, 장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 소요비용을 지원

구 분	전문랩	일반랩
유 형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	생활밀착형 창작활동공간
지원규모	최대 15억원	최대 1.75억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응투자(현금 15%) 전용공간 1,000m ² 내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투자(현금 10%) 전용공간 100m ² 내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문랩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 18~19년 구축지역(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경남)은 선정하지 않음
- 주관기관 대응자금은 현금(전문랩 15%, 일반랩 10%)을 필수로 대응해야함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 구조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의 적절성, 입지/인프라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전문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4580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042-480-4400, 4427, 4429, 4463, 4468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엔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8-13

창업에듀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 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 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45, 4394
- 중소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1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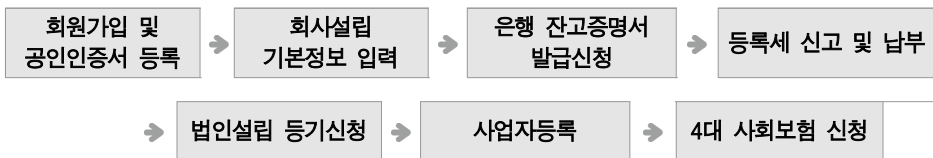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사용가능

처리 절차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2
- 중소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16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8-15 K-스타트업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본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 주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 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전시·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 멘토링·경영지원) ② 창업실행(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재도전) ③ 창업성장(융자·보증, R&D)
 - ④ 창업인프라(창작공간, 입주공간, 지원센터)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2,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8-16

실전창업교육

| 준비된 창업자 양성 사업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 교육과 MVP제작,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4,805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3,060명(팀) 교육, 332명(팀) 린스타트업 선정, 평균 788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 창업경력이 있더라도 사업 공고 전 폐업한 경우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 (지원내용) ‘아이디어 개발→비즈니스모델 수립→린스타트업’ 등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아이디어개발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
- 비즈니스모델 수립 : 아이디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고객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지원
- 린스타트업 :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없음(린스타트업 단계 선정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처리 절차

사업공고	창업실습 교육	시장검증	최종보고 등 (1차 : '20.9) (2차 : '20.12)
(K-Startup 홈페이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45, 439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2-481-8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8-17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초기 창업기업 18,000개사 내외(예산 1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000개사 내외 과제(예산 160억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19년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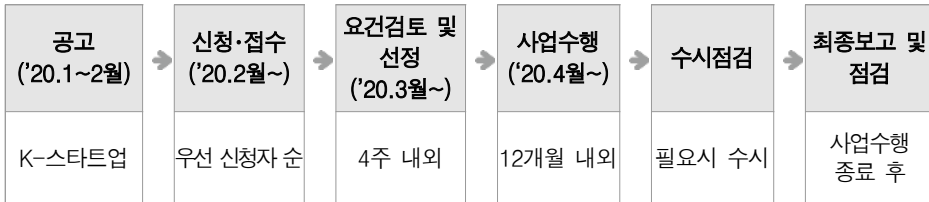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발급 매출 증빙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2-480-4481, 447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선정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세무대리 계약(유지 가능)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마우처 사업 수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업종료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0개소 내외('20년 53억원)

* 마케팅 150개소 내외 ('20년 23억원)

지원 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가 상담지원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케팅	• 홈페이지, 전자 카탈로그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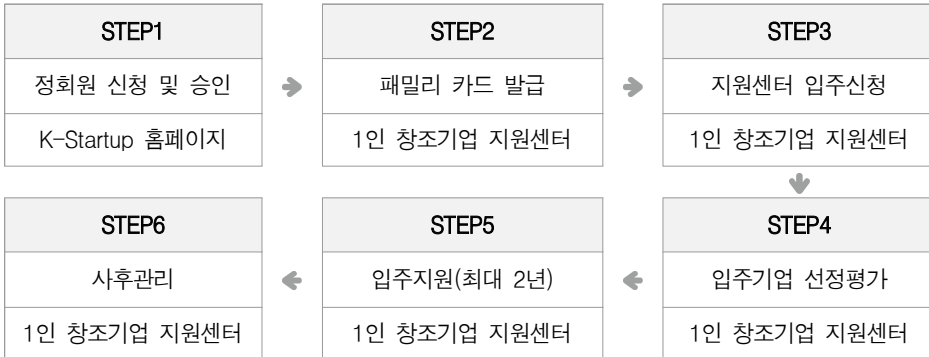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접수 (마케팅은 '20.2월 예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32, 4363, 447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0-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8-19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98.12억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0, 1692, 1693
- 창업진흥원 창업생태계조성부 : 042-480-4410~4414, 4416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0005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015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64~7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28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8138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8-2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 (예산 61.64억원)

* '20.1월 입주 모집 공고 예정(약 70개사)

지원 대상

-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보육 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멘토링 등 지원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시제품 제작 및 모바일 기기 테스트 등 지원

구 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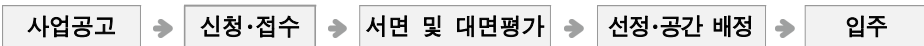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입주 적합성, 사업목표, 아이템의 사업성, 사업추진계획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입주신청 동기, 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창업준 입주 후 목표 등을 종합 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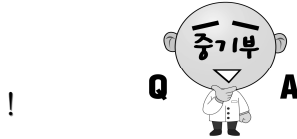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31-5182-9104~6,
- 창업존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pangyo>)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되며, 전용면적 3.3㎡당 평균 42,00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8-21 재도전성공패키지

| 성실실패기업인에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 지원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300개사 내외 (총 1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7개사 대상, 재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 기업은 예외)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실패원인분석,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재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예정)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 042-480-4434~38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5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지원조건에 나이, 지역, 폐업한 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A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Q

재창업 전 폐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9부

기 타

-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680
-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682
-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 684
- 9-4 산재예방요율제 / 686
- 9-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688
- 9-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690
- 9-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692
- 9-8 근로복지기금지원 / 694
- 9-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697
- 9-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699
- 9-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 701
- 9-12 기업복지 컨설팅 / 703
-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 705
- 9-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706
- 9-15 청년내일채움공제 / 708
- 9-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710
- 9-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712
- 9-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716
- 9-19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 719
- 9-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721
- 9-21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 723
- 9-2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 725
- 9-23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727
- 9-24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 729
- 9-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731
- 9-26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 733
- 9-27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 734
- 9-28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737
- 9-29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자유공모-단비) / 738
- 9-30 문화산업완성보증 / 740
- 9-31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744
- 9-32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 746
-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 748
-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750
- 9-3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 751
- 9-3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753
-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757
-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 759
- 9-39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761
- 9-4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763
- 9-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765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 1~2%)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 고용노동부 : 1350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2 고용 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①고용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②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③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재도약프로그램」, ④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준비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⑤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⑥여성가족부 운영 「학교밖청소년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⑦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⑧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특화훈련」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 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3 고용 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예산 181억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5인 미만 기업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최저임금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단,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없음

추진 절차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의 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4

산재예방요율제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지원 규모

전국 약 30,0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산재보험 가입업종이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 ✓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받거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기단축하면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청구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근로시간 조기단축)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사업장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30일까지, 10%
 -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 사업주가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모두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인하율은 다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합산하여 인하율 적용

신청·접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인정심사 후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
- (사업주교육)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및 상시근로자 증명 자료
 - 상시근로자수 증명 자료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9-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규모 983억원

* '19년 지원현황(11월 기준) : 사업장 6,036개소(576억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제조·서비스업 등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요율 상위업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지원비율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명 미만 (10억원 미만) :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20명 이상 (10억원 이상) : 공단판단금액의 5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판단금액의 60% (단, 3억원 미만은 65%)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50%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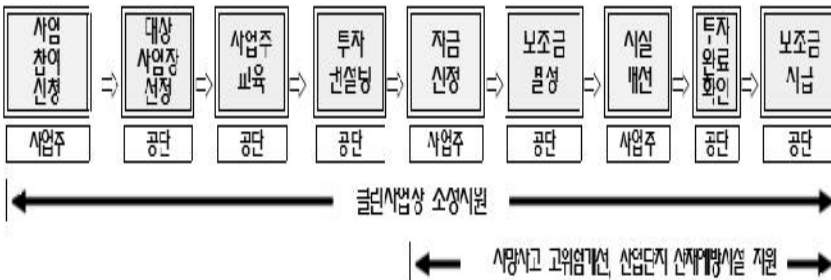
- 클린사업장 인정 : 온라인(<http://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접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업)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접수(연내 온라인 접수 예정)
 - * 관련서식 : <http://clean.kosha.or.kr> → 고객센터 → 서식모음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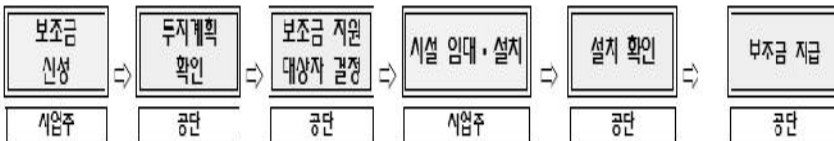
사업신청서, 위험성평가표 등

처리 절차

[클린사업장 인정, 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 사업]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77)

9-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규모

50,000개소(350,000명) (예산 377억)

* '18년 지원현황 : 40,024개소(179,940명) (예산 377억)

지원 대상

-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전체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별표 2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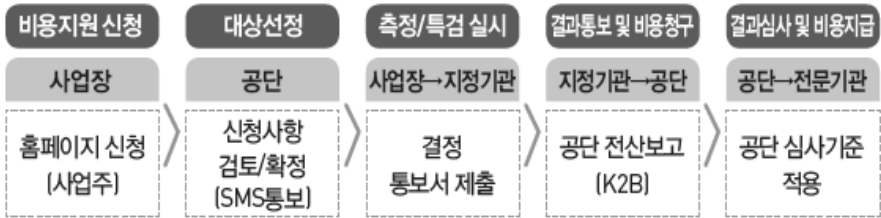
- 비용지원
 - '19년 기준 작업환경측정 비용 70%(한도 40만원), 특수건강진단 1차·2차 검사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액
 - * 단, 작업환경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한도 100만원)
 - *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당 최대 19명까지 지원

신청·접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제출 서류

사업장 근로자수 확인을 증명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제출

처리 절차**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80)

9-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취약직종 노동자의 건강형평성 제고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1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예산 124억)

* '18년 지원현황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노동자(179,315명)

지원 대상

-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직업병예방 등 전문 건강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금연, 절주, 영양프로그램 등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 콜센터상담원, 보육교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제외되는 취약직종 노동자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등
 - * 센터 전문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상담 심리전문가
- 지원형태 : 내방상담, 센터 전문가의 이동상담(찾아가는서비스), 화상상담
 - 직종별 모든 유해요인(Job Hazards) 파악 → 건강영향 안내(교육 차원의 기초정보 제공) → 전문 건강상담 방향 설정(우선순위 결정)

9-8

근로복지기금지원

|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규모 '20년 예산: 172억원

* 지원현황('19. 11월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23개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5개소 지원

지원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하청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강화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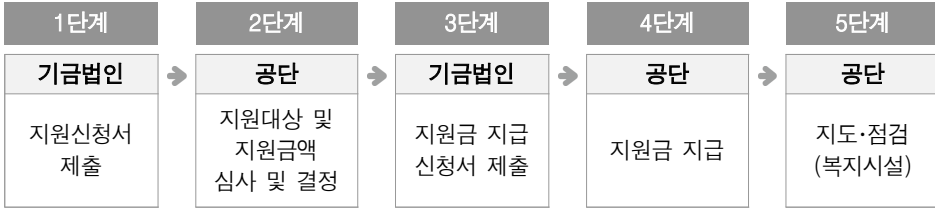
신청 및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우편(팩스) 또는 방문, 온라인 E-mail 접수
 - *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팩스) 0502-267-3230
(온라인 E-mail) ansology@kcomwel.or.kr / qumran7@kcomwel.or.kr

제출 서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 근로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 (신청서식)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우측의 바로가기: 서식자료 마당

처리 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 Q**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 A**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하며, 기금법인 설립 이후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Q**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 A**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052-704-7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 2020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폐지 예정

지원 규모 7,500명 (예산 144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616개 기업, 584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舊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탱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단, 임신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중소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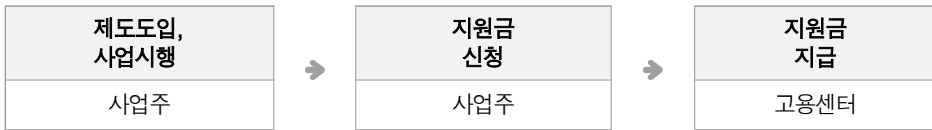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전·후) 등

처리 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도 확산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8,200명 (예산 150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023개 기업, 12,038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테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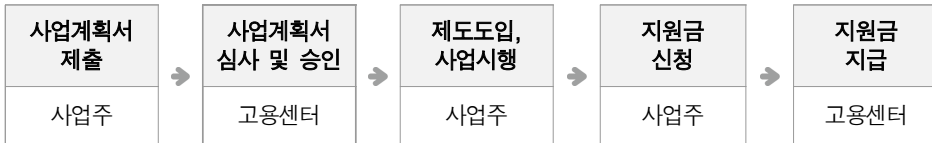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 50개소 (예산 7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26개 기업, 311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틱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직접 지원

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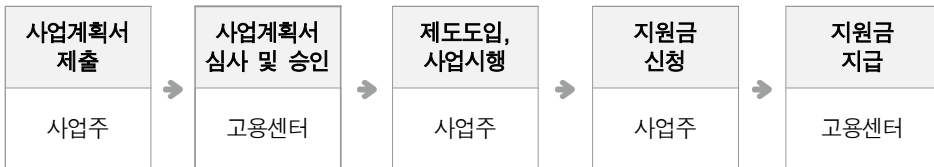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프라구축 견적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2 기업복지 컨설팅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원·하청)간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규모

'20년 예산: 265백만원

* 지원현황('19. 11월말 기준): 컨설팅 지원건수 1,972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희망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컨설팅 실시
- * 컨설팅 횟수: 기본컨설팅 1회, 심화컨설팅 1회, (도입희망시) 도입컨설팅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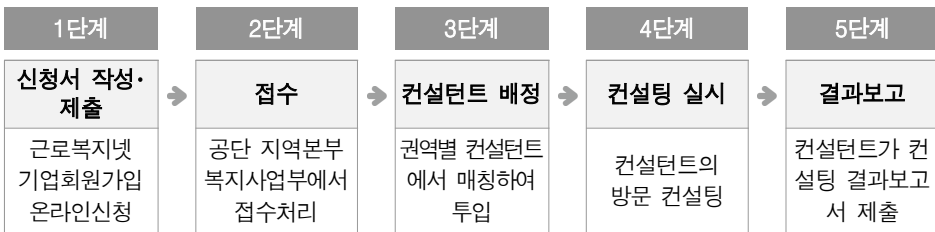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컨설팅에 집중
 - 분야집중: 선택적 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EAP, 퇴직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 컨설턴트 확대 재편
 - 컨설턴트 확대: 공인노무사, 기업복지전문가 → 노무사, 세무(회계)사, 법무사, 기업복지전문가

신청·접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기업복지컨설팅 ▶ 설명회/컨설팅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52-704-7356)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없이 지원)
 - * ('18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153천개소, 2,82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 훈련 수료인원 × 훈련시간 × 직종별 지원단가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1,000인 미만 60~80%, 1,000인 이상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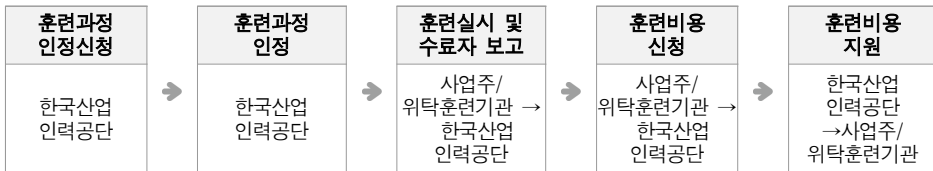
신청·접수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제출 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비 지원신청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9-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및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노동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지원이 안되는 사업주

- ✓ 고소득 사업주
-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 일용노동자는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11만원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최저임금 인상률(2.87%) 감안, 월 보수 기준 상향 조정(210만원 → 215만원 이하), 지원금액 인하(15/13만원 → 9/11만원)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 서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고용보험 신고서 * 온라인 신청가능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은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9-15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지원 규모 14만명

* '19년 : 청년 10만명 신규지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단,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 * 매출액 3년평균 3천억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②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2018) 참조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희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2년 근속 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 ②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4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 ③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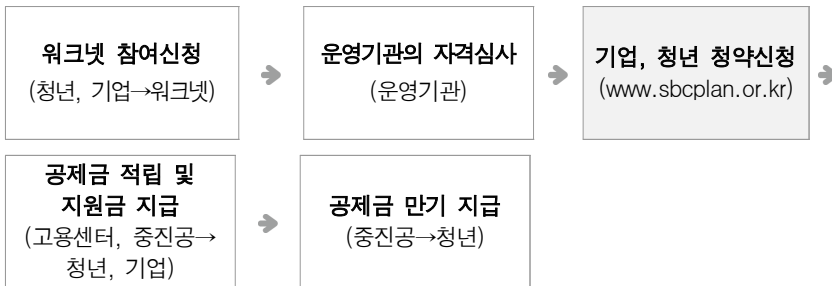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접수

선발 심사 주요내용

-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해당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로자 수 확인 등

처리 절차

반드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9-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 단, 사행·유혹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운영업 등
-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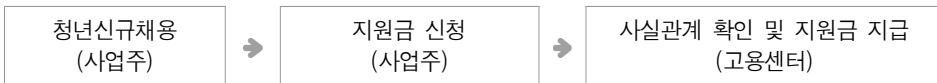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참조

9-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3. 시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자원이 안 되는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자체로 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 대체인력의 임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지원인원 한도는 없으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사직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지원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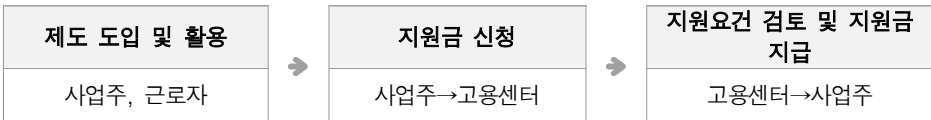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2,200건 목표 (' 20년 예산: 187억원)

* '19년 지원현황 : 2,132건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컨설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근로자수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무료 지원

- * 단,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지원분야) ① 근로시간단축, ② 인적자원관리, ③ 인적자원개발
 - 교대근무 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등 마련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 시스템
 -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 조직 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 근로자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을 통한 혁신 활동 지원
 - 경영전략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원 등
- (지원기간)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상이(최대 21주)

신청·접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예산 및 물량 달성 여부에 따라 연내 마감될 경우 차년도에 심사 선정 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구분	평가항목
사업장 여건	업종·규모별 적정성 사업장이 갖춘 인적·물적 인프라 적정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도입의지	경영자 및 근로자의 혁신의지, 실행가능성 노시간 상호작용 극대화
수행효과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 및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제출 서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비고
컨설팅 신청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컨설팅 수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근로자규모입증서류	4대보험 중 택일(PDF)
고용보험안납증명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증명서(PDF)
노사대표협의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처리 절차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76, 1167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 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도 설계안이 사업장 내에 정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19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 중소기업 웹보안 강화 및 디도스 공격 대응 지원 서비스

보안에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보안 강화 서비스 (웹취약점 점검, 웹셸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내 지원 기업 수 제한 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중견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웹보안 강화 서비스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 제공
- 웹셸 탐지도구(휘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셸 및 악성 코드 은닉사이트를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대상 해킹 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DDoS 트래픽을 분석,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접수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각 서비스 전용 이메일로 송부

	웹취약점 점검	웹셀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신청서 안내	boho.or.kr > 보안서비스 > 웹 취약점 점검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휘슬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캐슬	boho.or.kr > 보안서비스 > 사이버대피소
이메일 주소	toolboxadmin @krcert.or.kr	whistl2010 @krcert.or.kr	cas- tle@krcert.or.kr	antiddos @krcert.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 절차

- 웹취약점 점검



- 웹셀탐지도구(휘슬) / 웹방화벽(캐슬)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단 (웹취약점 점검/휘슬/캐슬) 02-405-5562,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02-405-5164
- 자세한 사항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과업 해결을 원하는 200여개 기업 (예산 81억원)

* '18년 지원현황 : 232개 기업·기관 지원(예산 81억원)

지원 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3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년 1월중 공고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10점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20점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제의 적절성	20점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20점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제가 지속적인 예술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제출 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 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0년 3~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행(6개월)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9-21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관광분야 예비 및 창업초기기업('20년 예산 8,514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약 115개 기업 지원(3,402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미만(공고일 기준)
- 재도전관광벤처사업 : 재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등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지원 내용

- 창업초기기업과 관광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5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금액은 공고안 확인)
 - * 사후원가정산(선집행, 후정산), 아이템개발비, 인프라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아이템 고도화비 등으로 활용 가능(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컨설팅 및 담임 컨설팅 지원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초기→성장→재도전 등 창업시기별로 지원 대상을 체계화하여 선발, 기업 자금 지원 금액 상향(평균 2천만원→4천만원)

신청·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 절차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3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현장평가 등/4~5월) → 지원내용 협약체결(5~6월) →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6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5)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9-2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지원 규모

관광분야 중소기업('20년 예산 900백만원)

지원 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배팅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 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기본상담	기업 현황 분석	심화컨설팅	1:1멘토링	홍보컨텐츠 컨설팅 및 제작비지원	클라우드펀딩 등록 지원	펀딩 홍보 및 투자연계
관광 산업 관련 및 자격 등 기본 사항 검토	·기업 현황 분석, 펀딩 방향 검토	재무제표 등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컨설팅	기업 방문, 대표자 면담 및 투자 유치전략 로드맵 작성 등	클라우드펀딩 등록 및 투자 IR 위한 컨텐츠 제작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기업 및 프로젝트 유형별 펀딩 상품 구성, 구비서류 지원	펀딩 관련 홍보 및 후속 투자 연계

·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전 단계 상시 컨설팅 지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02-792-9463)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9-23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관광 분야 중소기업('20년 예산 600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 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점,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처리 절차

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애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애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4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 지역 관광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활성화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역관광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창업 및 영세 관광기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관광혁신 거점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지자체 3~4개소('20년 예산 6,200백만원/정부안)

지원 대상

서울, 제주 및 부산(기 지원 중)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정안 참고)

지원 내용

* 공모계획 수립 중으로 계획확정 후 상세내용 공고 예정

- 지역기반 관광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대상)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등
 - (내용)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비즈니스센터 장소 제공,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화 지원금 제공 등
- 지역기반 관광기업 혁신 지원
 - (대상) 관광진흥법 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 (내용) 관광특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역량 지원을 위한 정기 경영진단 실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
-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 (대상) 지역 소재 구인 기업, 구직 희망자 등

- (내용) 일자리 정보 상시 제공, 구직자 DB 구축, 지역특화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재 육성 지원 등

신청·접수

연초 공고안 참조

- 주요평가 내용: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증대 방안, 지자체 예산 투입 계획 및 물리적 거점 확보 방안 등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전국공모→서류전형→발표면접→현장심사→최종선정 발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 02-729-9487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관광역가 사회 실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대상 휴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7,518개 기업 선정(근로자 8만명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국내여행상품 패키지, 숙박, 교통, 관광체험시설 입장권 등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공통사항)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및 여가친화기업 인증(문화체육관광부)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참여증서 발급 및 참여 기업 홍보 등
 -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187개) 우대

- (우수기업)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 참여근로자 : 국내 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전용 온라인몰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온라인)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처리 절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자주하는 질문

9-26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 해외 합법유통 활성화 및 분쟁예방 활동 강화

해외 진출(예정)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의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 내용

- 저작권 상담, 컨설팅, 현지 업체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 검토(상시)
- 해외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저작권 인증(중국) 지원(상시)
-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 저작권 상담·컨설팅, 계약서 검토, 저작권 등록 및 인증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중국·동남아 합법이용 교류회 사전 참가 신청 후 이용 가능(유선 문의)

제출 서류

자사 소개서 및 관련 서류 등(유선문의)

처리 절차

-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신청문의



신청·접수



상담 및 검토

- 해외 저작권 등록

신청문의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등록비 납부



등록증 수령

- 교류회/설명회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류회/설명회 참석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5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9-27

|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2억원, 센터별 1억7천만원)

- * '19년 지역센터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대상

지역 중소 및 1인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 내용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저작권 상담

- (맞춤형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무료서비스]
 - * 정례적 집체교육, 지역 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산업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작권상담) 저작권 일반 및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무료서비스]
 - 저작권일반 상식 상담 및 저작권 지원 사업 소개,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 소개
- (저작물활용)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지원금 지급]
 - 지역특화 창작물(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자 연계(전시회참여지원, 저작권설명회), 시제품 제작,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선정 기업 당 500만원 지원(각 센터별 2~6개사 선정)
- (SW공정이용) SW자산관리컨설팅 [무료서비스]
 - SW자산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SW라이선스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신청·접수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https://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를
 통한 온라인 및 각 센터별 오프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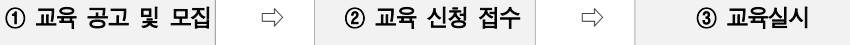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각 센터별 상시 신청·접수
- (저작권 사업화 지원) 대상기업선정 서면평가 → 발표평가 → 과업 경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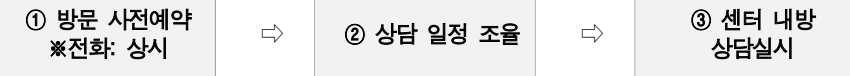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사업화 지원) 지원신청서, 사업화계획서, 실적 증빙자료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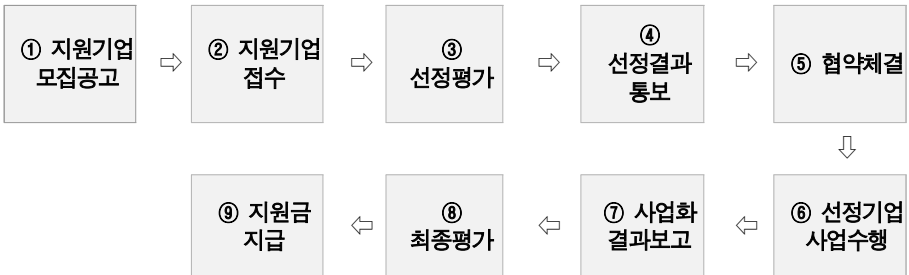
- 저작권교육



- 저작권 상담



- 저작권 사업화 지원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본부) : 055) 792-0222~0224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www.copyright.or.kr)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연락처
 -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 650-3388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안양창조산업진흥원): 031) 8045-6705
 -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 213-8085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054) 840-7064
 -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 610-2427
 -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 655-1090
 -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 864-5055~6
 -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 749-9155, 9166
 -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울산경제진흥원): 052) 283-7136
 -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 458-5072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 339-6991
 -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 281-4145, 4146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043) 210-0852
- 센터 위치 소개



9-28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자문 및 교육 지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실무자문,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1인·중소기업, 1개사 당 연 3회 이내(예산 243천원)

지원 대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예비창업자, 1인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법률자문, 실무멘토링, 해외진출자문, 현장교육
※ 무료서비스 (단, 1개기업당 연 5회 제한)

- 저작권 분쟁관련 무료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저작권 실무상담(저작권 등록, 관리 등)
- 해외진출을 위한 저작권 활용방안 자문
- 기업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신청·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kcc)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 055-792-0223, biz@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kcc)

9-29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총 70.8억원, 24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과제수 18개, 지원금 55억원, 과제당 평균 3억원

지원 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신청·접수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제출 서류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 절차**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팀 : 061-900-6531, 653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0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2개 콘텐츠에 1,136억원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신청요건

〈 기보 〉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신보 〉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기보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보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차등 지원 >

- 이번 보증신청금액은 다음 각 호 중 적은 금액을 소요자금 보증한도로 운용

①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②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총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순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 * 지원비중(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 : 50% (90점↑), 40% (80점↑), 30% (70점↑), 20% (60점↑)
- * 비중조정 : 유통사의 특성, 기관투자자 투자지분을, 제작기업의 특성, 제작콘텐츠의 특성 등에 따라 0% ~ 20% 비중 조정
-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총제작비 - 기투입비용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순제작비 - 기투입비용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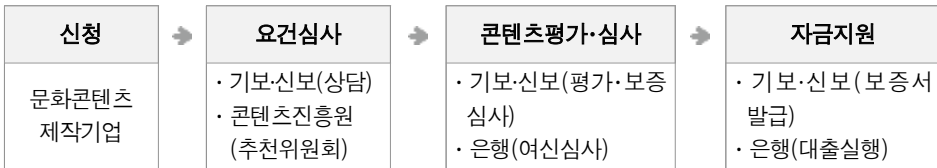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 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02-2014-0281)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9-31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저변 확대

지원 규모

최대 200백만원 이내, 22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애니메이션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 * 애니메이션 초기 기획이 완료되어 제작 바이블이 완성된 프로젝트
 -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작역량, 콘텐츠 경쟁력, 예산합리성 등
 -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9-32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의 완성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기여

지원 규모

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 메인프로덕션 이후 제작 안정 단계의 애니메이션 완성 지원
-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2020년 12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애니메이션 메인프로덕션 후반부분 제작지원
 - 평균 400백만원(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 산학·후속시즌·국제공동 등 본편 성격의 애니메이션 형태 지원 가능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콘텐츠가치평가 이수 확인증
- 영상 관련 매출 실적,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실적, 시청률/관람객수/조회수, 국내외 수상 실적 등
-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

제도 구분

①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②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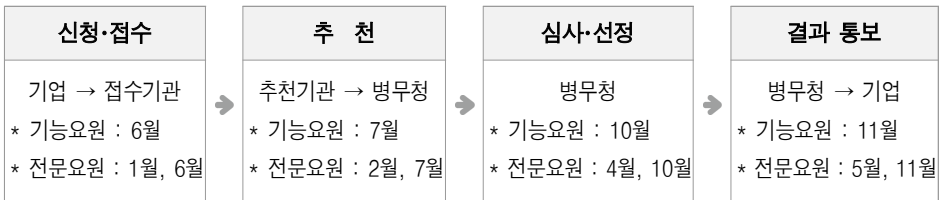
신청 자격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연구기관 •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공장 등록)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3자, 기업-학교-학생) 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한 연구소 보유 법인 *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요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보충역) 조건 없음. 단,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요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 석사 이상 * 보충역은 자연계 학사이상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34개월 • (보충역) 2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

신청기간 및 접수처

- ① 산업기능요원 : 매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 ② 전문연구요원 : 연2회(1월,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 절차



- * 접수기관, 추천기관 현황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문의처

-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 2816)
- 산업기능요원 접수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 전문연구요원 접수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122)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겪는 사업화 애로사항(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발굴 등)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방식

- 연간 77개사 내외, 과제당 최대 6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한도 지원
- 과제당 최대 5개월 이내 심층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 내용

- IP 제품혁신 :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 이종분야 특허검색 등을 활용하여 제품문제 해결, 신제품 발굴, 제품디자인 개발 등 지원
- IP 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 (지원공고) 4~5회 실시(' 19. 12월 이후)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기업심사(서류, 발표) →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37, 2814

9-3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IP 전문가를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중소·중견 기업 350~400여개사(예산 90.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403개사 지원(예산 98.2억원)

신청 대상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 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중소 기준, 최대 28백만원)

신청·접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서면 및 발표평가
-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관련 기술의 독창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수출 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컨설팅 활용 계획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등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

9-3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지원 규모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700개사(예산 117.6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570개사 지원(예산 95.88억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1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신청·접수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지역	연락처	주소
서울	02-2222-38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경기	031-500-304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1층 경기지식재산센터
인천	032-810-28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강원	033-749-3327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충남	041-558-57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대전	042-930-44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호
세종	044-998-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402호
충북	043-229-27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부산	051-714-695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A동 305호
울산	052-228-3087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대구	053-242-8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경북	054-274-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경남	055-210-30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전남	061-242-858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광주	062-954-384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월출동987)
전북	063-252-9301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TP벤처지원동 105호
제주	064-755-2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

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

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 출원·심사·등록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맞춤형 IP맵	특허	특허/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	
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브랜드 개발		기업브랜드(CI), 제품브랜드(BI) 및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특허&디자인융합 개발		제품, 포장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 디자인융합 개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융합 개발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 지원 내용은 '20년 신규로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는 기업의 자부담 30%(현물 10% + 현금 20%)를 우선 적용(해외 권리화 제외)하며,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7,000만원/년(최대 3년간 지원)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I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원 사업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력 체계 기반 IP 교육 기획 및 운영(4.36억원)

- * '19년 지원현황 : 6개 창업보육센터 IP교육거점센터 선정 운영,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협단체 2개 선정 운영

지원 대상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연계교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 3년내),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 기업 보육을 담당하는 창업보육매니저 등 교육 대상자 포함 운영

지원 내용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 ·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을 통해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의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 교육센터 선정,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발굴
- 선정된 거점 교육센터 교육 수요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pool) 구성, 센터별 현장 교육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회차당 3시간 내외)
- *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IP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운영안 : '19년 6개센터 → '20년 10개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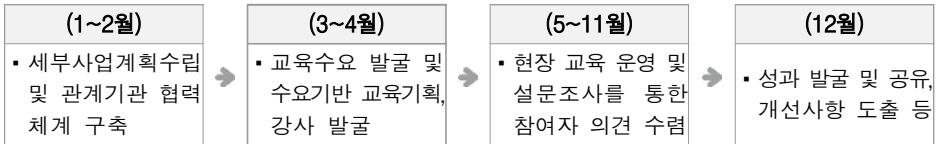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예정(수시)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공지 양식 제출

사업 절차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진행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중국·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지원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신청·접수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심사·평가 주요내용 (온라인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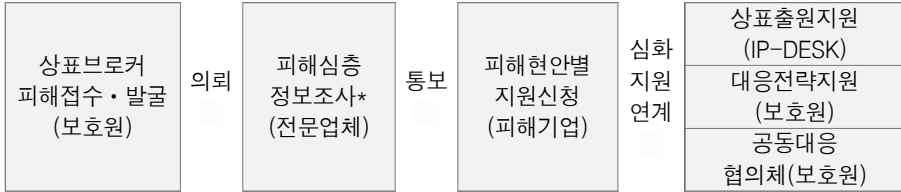
- 서류확인 : 지원대상 확인
- 서면평가 : 기업규모, 전담인력 유무, 증빙자료 제출 유무 등 적합성 평가

제출 서류

- (상표브로커 대응) 해당없음,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칼라)등

처리 절차

해외 상표선점 대응지원 절차



* 해외 출원상표 조사 및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의 비교 분석 후 무단선점 사실 확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절차

①지원기업 선정	②모니터링	③기업검토·대리신고	④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신청접수 ▪기업별 전담인력 배정, 연간 반복 단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조상품 유통 정보 (URL)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신고진행여부 회신 ▪해외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 접속, 대리신고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최종결과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공 ▪연중 반복 재단속, 연간 단속리포트 제공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02-2183-5896, 588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9-39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해 시제품 제작, 상품화·홍보 등 창업기업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규모** 15개 창업기업 선정(45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53개 / (선정) 13개 / (평균지원금액) 20백만원

-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외)
-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항목 지원

-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위탁 제작,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상품화 지원) 인증, 홈페이지 구축,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지원
- (홍보 지원) 제품 카달로그 제작, 사진 촬영,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별 지원예산 증액(2019년 20백만원 → 2020년 30백만원)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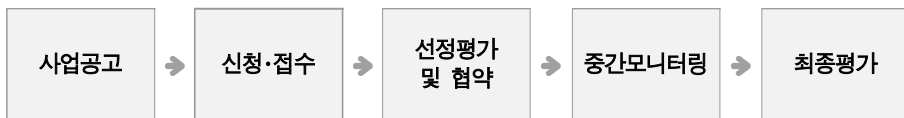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02-3460-4047
- 이메일상담: jw11101@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9-4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 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5개 내외 (예비)창업자 선정(80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144개 / (선정) 27개)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술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시설 등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으로 구성되며 공고 시 평가 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화 상담 : 02-3460-4023
- 이메일 상담: sypark@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9-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우수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예산 130.3억원)

- (개발촉진) 40개사 내외(127.3억원/최대 3억원 이내)
- (투자유치) 60개사 내외(3억원/간접지원)

* '19년 지원현황 : 기반구축 13개, 개발촉진 23개, 투자유치 46개 과제(예산 48.3억원)

지원 대상

- (개발촉진)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발생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기술주도형),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중기술 보유기업(기술도입형)
- (투자유치) 중소기업(업력 무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30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환경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개발 촉진	기업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이내/ 40개 과제 내외
	기술 도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투자유치 교육 기술최적화 및 상품성강화(기술도입형)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 투자설명회(IR)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투자자 발굴 지원 	간접지원 / 60개 과제 내외

- (매칭비율) 개발촉진의 경우 정부지원금 70%+민간부담금30% 매칭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개발촉진 사업 지원금액 증액(과제당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 개발촉진 내 ‘기술도입형’ 분야 신설(이전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접수: ‘20.1월 예정
- 중소기업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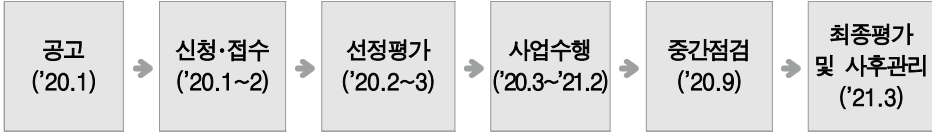
- (개발촉진)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평가
 -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진행
- (투자유치) 참여제한 및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

제출 서류

- 사업화계획서(신청용), 구비서류(자격기준, 가점 등)

처리 절차

- (개발촉진) 연1회 공고 및 접수(필요시 추가 공고)



- (투자유치) 상시접수



문의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 (개발촉진) 02-2284-1745, 1743, 1744, 1737
 - (투자유치) 02-2284-1742



!



개발촉진 사업 세부분야인 '기업주도형' 및 '기술도입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기업주도형'의 경우 자체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단독추진)를 지원하고, '기술도입형'의 경우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의 사업화(단독추진 혹은 기술개발기관과 컨소시엄 추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 (IR, Investor relations)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6859, 8913

팩 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